

軍史

Military History

2015. 6. 제95호

- ‘中朝聯合司令部’ 再論: 설립배경과 과정
-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군 철수 의제
- 한국 국방정책의 변천 연구: 국방목표를 중심으로
- 탈냉전 이행기 동유럽의 안보 및 동맹전략의 변환과정과 경로에 관한 연구
- 『전쟁론』 1편 1장에 대한 이해와 재해석
-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와 大對盧
- 고려 대몽전쟁기 海島 관련 전투에 대한 재검토
- 세종대 파저강(婆猪江) 재정벌(再征伐)과 대외정벌 정책
-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 임진왜란과 固城 의병의 활동 양상
- 최용덕(崔用德)의 항공독립운동과 광복군 내 역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第 95 號
2015. 6.



· 卷 一 ·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15. 6. 제95호

- | | | |
|-----|--|-----|
| 1 | ‘中朝聯合司令部’ 再論: 설립배경과 과정 | 서상문 |
| 55 |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군 철수 의제 | 김보영 |
| 89 | 한국 국방정책의 변천 연구: 국방목표를 중심으로 | 이미숙 |
| 141 | 탈냉전 이행기 동유럽의 안보 및 동맹전략의 변환과정과
경로에 관한 연구 | 백준기 |
| 185 | 『전쟁론』 1편 1장에 대한 이해와 재해석 | 김태현 |
| 231 |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와 大對盧 | 윤성환 |
| 281 | 고려 대몽전쟁기 海島 관련 전투에 대한 재검토 | 윤경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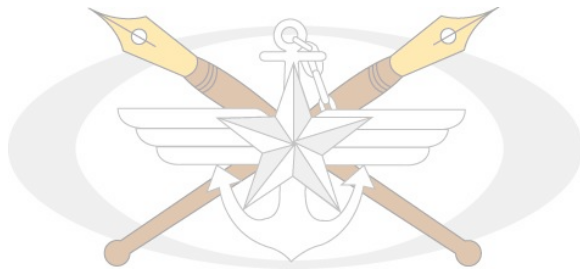
軍史



- | | | |
|-----|--------------------------------|-------------------|
| 333 | 세종대 파저강(婆猪江) 재정벌(再征伐)과 대외정벌 정책 | 이규철 |
| 363 |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 김경태 |
| 395 | 임진왜란과 固城 의병의 활동 양상 | 신윤희 |
| 427 | 최용덕(崔用德)의 항공독립운동과 광복군 내 역할 | 김기동
강창부
이지원 |

부 록

- | | |
|------------------------|-----|
| 1. 연구소 동정 | 461 |
|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안내 | 463 |
| 3. 『軍史』誌 투고안내 | 465 |
| 4. 연구윤리예규 | 468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朝聯合司令部’ 再論 : 설립배경과 과정

서 상 문*

1. 문제 제기
2. 기억과 문헌에 나타난 ‘中朝聯合司令部’ 설립과정
3. 쟁점 1 : 중국군의 파병은 조건이 없었던 것인가?
4. 쟁점 2 : 설립을 둘러싼 스탈린, 毛澤東, 김일성의 입장
5. 맺는 말

1. 문제 제기

국내외 6·25전쟁 학계에서 1980~90년대에 공개되기 시작한 러시아와 중국의 관련 사료들에 힘입어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 연합사령부’(이하 ‘중조사’로 약칭)의 존재를 밝힌 연구가 나오게 2000년대 초였다. 毛澤東과 김일성의 합의로 1950년 12월 초순에 창설된 뒤 실로 반세기 만에 세상에 그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그 후 1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중조사를 주제로 한 논저(단행본 가운데서 최소한 하나의 독립된 장절로 편성된 연구 포함)는 손가락을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꿈을 정도에 불과하다.¹⁾ 그러나 그 뒤로 더 이상 진전된 연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꼽는다면 중국학계의 沈志華의 논저와 한국학계의 이종석과 최태현의 논저를 들 수 있다.

沈志華는 작전통수권을 둘러싼 중북 지도부 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중조사의 설립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중조사의 존재를 최초로 소개한 이종석이 중조사의 설립과 그것이 6·25전쟁의 전개양상과 북한정치에 미친 영향을 논급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최태현은 이 기구의 존재를 밝혀낸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발 더 나아가 이 기구가 김일성 개인의 북한 조선노동당(이하 ‘노동당’으로 약함) 내 권력 장악과의 관련성 그리고 북한군의 재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 논저들은 각기 논구하고자 한 주제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전제하고 있는 게 있다. 즉 중조사의 실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중국지도부가 중국군이 입북한 후에야 비로소 중조사 설립의 필요성을 깨닫고 북한 측에게 설립을 제의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환언하면 논의를 중국군 참전 후에 작전지휘권 통합과 연합사령부 창설을 논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 기구의 실체를 밝히려는 것이거나 혹은 여기서 파생된 주제들, 즉 중조사 설립에 반대해오던 김일성이 왜 찬성하게 됐는가 하는 사실에 관해 논의를 전개하는 형식이다.

과연 기존 연구처럼 중조사의 창설논의가 정말 중국군이 입북한 뒤에 시작된 것이었을까? 이 의문이 사실이라면 중국수뇌부는 참전 전 북한 측과 아무런 군사협조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중국군을 입북시켰다는 의미와 같다. 1차에만 약 26만 명

1) 姜廷玉, 「中朝聯合司令部成立始末」, 『縱橫』, 總第130期(2000年10月); 이종석, 「6·25전쟁 중 중조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軍史』, 제44호(2001년); 최태현, 「조중 연합사(朝中聯合司)가 ‘조선인민군’의 재편성에 미친 영향」, 『軍史』, 제76호.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 1945-2000』(서울: 중심, 2000년); 沈志華 著, 金東吉 譯, 『조선전쟁의 재탐구』(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년) 등이 있다.

이라는 대군을 타국에 내보낸다면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사적, 정치적 의견조율과 관련해 현지 당사국과 어떤 식이든 합의를 거치는 게 상식이지 않을까? 예컨대 당시 중국과 북한 간 군사적 측면에서의 협력에만 국한시키더라도 협력의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²⁾ 그럼에도 만일 중국수뇌부가 북한군과의 아무런 협조관계의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파병했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기존 연구들이 착안하지 못한 곳으로 들어가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시계가 흐린 불투명한 그 지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상정돼 있다. 하나는 중국지도부가 파병에 즈음해 중국군의 북한 체류기간 동안 지위 보장과 전투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었는가 하는 거다. 다른 하나는 스탈린의 압력이 주된 요인이 된 결과 중조사는 김일성과 중국수뇌부 사이에 만들어진 타협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상식적인 세 가지 의문에 토대를 두고 있다.

첫째, 중국군의 전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명분으로 참전 전에 이미 중국수뇌부가 전쟁수행의 원활성 보장 차원에서 북한 측에게 중국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도록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둘째, 김일성은 개전 초기부터 중북 양군의 작전지휘권 통합을 강하게 거부해 왔었는데, 왜 중도에서 느닷없이 찬성하게 됐을까 하는 점이다. 셋째는 김일성이 돌연 찬성으로 선회한 것은 필시 자신이 피치 못할 정치적, 군사적 사정 혹은 국익을 우선시 한 고려나 스탈린, 毛澤東 등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 자신의 의지나 목적을

2) 첫째, 연합사령부를 창설해 작전지휘권을 통합하는 형태, 둘째, 유엔군과 한국군의 관계처럼 연합사령부를 설립하지 않고 우군에 대한 작전지휘권만 행사하는 방식, 셋째, 양군이 각기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면서 상호 협조하는 방식, 넷째, 전투, 후방지원과 교육을 분리해 각기 역할을 담당하는 형식, 다섯째, 우선은 각기 독자적으로 전투에 임하다가 나중에 작전지휘권을 통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달성하기 위한 모종의 타협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본고는 위 주장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해 먼저 현재 수집 가능한 중북 양군의 작전지휘권 통합과 중조사 관련 ‘기억’들과 ‘해석’들을 종합해 이 기구의 설립과정을 재구성할 것이다. ‘기억’은 주로 중국 측 회고록들에서 취해질 것이다.³⁾ 이를 통해 중국지도부가 그러한 요구조건을 제시했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말하자면 기존 논저들과 달리 중조사 창설논의는 이미 중국군의 입북 전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중조사의 창설배경과 과정을 다루면서도 파악하지 못한 쟁점들, 예컨대 처음부터 중북 양군의 작전지휘권 통합을 묵살해오던 김일성이 하루 이를 사이로 돌연 찬성으로 돌아서게 된 것에 대한 배경을 미세하게 들여다보겠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거나 간과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중조사 창설이 가능했던 것은 스탈린, 毛澤東, 김일성의 타협의 결과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쟁점들 외에 중조사가 창설되고 난 뒤에 새로 설립된 ‘중조공군연합사령부’를 포함해 전체 중조사의 구성원, 편성, 임무, 지휘, 운용 그리고 중조사가 중북, 혹은 중국-북한-소련 간의 관계, 김일성의 위상을 포함한 노동당 내부의 권력 변화와 북한군에 미친 영향 등은 서술의 범위 안에 두지 않는다. 이에 관한 온전한 전모는 「中朝聯合司令部」再論：운용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별도의 후속 논문에서 논할 것이다.

3) 중국 측 회고록의 내용을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정치지도자나 군사지도자들이 회고록을 집필하기 전에 반드시 중국공산당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이 소장하고 있는 1급 기밀자료들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집필하며, 완성된 뒤에도 당의 엄격한 검열을 거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 측 회고록은 내용들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때로 1차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다.

2. 기억과 문헌에 나타난 ‘中朝聯合司令部’ 설립과정

彭德懷가 북한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난 북한 측 고위 인사로는 중국군의 압록강 도강 개시 직전 1950년 10월 19일 安東으로 자신을 찾아온 박일우가 최초였다. 安東에서 신의주로 압록강을 건넌 후에는 彭德懷를 영접하러 나온 ‘이씨’ 성을 가진 어떤 ‘위원장’과 부수상 박헌영이 처음이었다. 彭德懷가 이들과 나눈 대화에는 전황, 환영 인사말과 김일성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전부였지 중북 양군의 작전협조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

彭德懷와 김일성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은 중국군 입북 3일째인 10월 21일 오전 9시 평안북도 삭주군 소재 동창과 북진 사이의 대동(大洞)에서 가진 첫 회담에서였다.⁴⁾ 이 회담에 북한 측에서는 박헌영이 동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의 참찬 柴成文이 배석했다. 중국 측 회고록들에는 이날 회의 내용이 자세히 소개돼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날 10월 22일 오전 중에 속개돼 최소 2시간 이상이 지나 대략 오후 2시 경에 끝난 두 번째 회의에서는 분명 彭德懷가 중조사를 설립하자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북 양군의 작전지휘권 통합문제는 거론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 회의에서 보인 김일성의 반응이 어떠한지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만일 彭德懷가 작전권 통합문제를 거론했다면 아마도 김일성은 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중국군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이상 그들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柴成文의 진술과 김일성의 거동이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⁵⁾ 김일성의 거동은 논의가 전개되면서 자연스레

4)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 解放軍文藝出版社, 1991年), 46쪽.

5) 예컨대 柴成文의 진술에 의하면, 김일성은 참전하는 중국군도 자신이 지휘하길 원

드러날 것이다.

洪學智 회고록에는 10월 22일 이전까지의 회의에서 김일성은 전황만 설명했고, 彭德懷는 향후 중국군이 처할 세 가지 가능성만을 언급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와 있다.⁶⁾ 이 내용 외에 작전협조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언급돼 있지 않다. 彭德懷의 표현대로라면 “김일성 동지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이 회의는 결국 彭德懷와 김일성이 쌍방의 군사협조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재논의하자는 선에서 끝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는 패주하면서 흩어진 북한군 부대들의 수습과 전력이 회복되기까지 당분간 중국군 단독으로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은 彭德懷와 김일성 사이에는 중국군 단독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쌍방의 연락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박일우를 중국군사령부에 보내 연락임무를 맡기기로 결정됐을 뿐이다. 중북 양군의 연합사령부 창설이나 작전협조에 관한 문제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⁷⁾

洪學智 회고록에 김일성과의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서전을 하루 앞둔 10월 24일 彭德懷가 급히 군사지휘부를 중국군만으로 구성했다고 언급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군사령부의 설립이 늦은 것은 10월부터 본격화된 파병준비에서부터 북한 잠입에

했지만 중국이 수십 만 병력을 파병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나중에 중북 양군의 지휘부만 통합할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는 대목이다. 沈志華 저, 김동길 역, 『조선전쟁의 재탐구』(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년), 531쪽.

- 6) 세 가지란 중국군이 북한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다면 적을 섬멸하고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피아간에 대치 상태에 들어갈 것이고, 근거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중국군은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할 가능성을 말한다. 彭德懷는 첫 번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44쪽.
- 7)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44~45쪽; 柴成文、趙勇田, 『板門店談判』(北京: 解放軍出版社, 1992年第2版), 85~87쪽.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입북 전 毛澤東의 지시를 즉각 이행하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어쩌면 중국 측은 양군 연합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해 김일성의 승낙을 기다렸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彭德懷는 鄧華와 洪學智에게 중국군 단독으로 출전하겠다고 하면서 毛澤東의 지시에 의거해 중국군사령부(志願軍 사령부)의 주요 보직과 임무를 전달했다. 彭德懷 자신이 중국군총사령관 겸 정치위원, 鄧華가 제1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으로서 간부관리와 정치공작을 담당하고, 洪學智는 제2부사령관으로서 사령부 관련 업무와 특과병, 후방보급을 맡게 됐다.⁸⁾ 특이하게 박일우는 중국군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자격으로 중국군사령부에 파견돼 중조사가 설립되기까지 줄곧 중북 양군의 연락업무를 맡았다. 彭德懷와 김일성은 그 뒤로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회의를 가졌는데, 김일성-彭德懷가 상호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박일우를 통해 부대배치 등을 포함한 중국군의 작전계획이 김일성에게 전달됐으며, 김일성의 의견도 중국지휘부에 전해졌다.

그런데 제1차 전역이 치러지면서 중북 양군간 협력체계가 미비된 탓에 상호 약정 등의 통일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군이 중국군에 대해 오인 공격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다. 예컨대 11월 4일, 중국군 제39군단의 한 예하부대가 박천 동남쪽에서 미 제24사단을 포위 공격하고 있을 때, 순천을 향해 전진하던 북한군 전차사단이 제39군단을 적으로 오인해 공격한 결과 포위된 미 제24사단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든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물자공급, 교통과 수송분야에서도 지휘통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스런 상황이 초래됐다.⁹⁾

야전에서 직접 전쟁지도를 총괄하는 彭德懷로서는 협조 미흡으로

8)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48쪽.

9)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2卷, 167쪽.

발생하는 오인사건을 막고 후방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작전지휘권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절실했다. 그래서 彭德懷는 11월 7일 먼저 박일우와 중북 양군의 지휘통일 문제, 남한지역에 잔류하고 있는 북한군에게 적 후방에 전장을 열도록 하고, 중국군이 이 작전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이날 彭德懷는 박일우를 평안북도 만포의 김일성에게 보내 자신과 논의한 내용을 보고하게 하면서 적 후방에서 전장을 여는 문제, 중북 양군의 작전협조, 포로정책 등에 대해 협의케 했다. 이 자리에는 북한 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Terenty F. Shtykov)와 소련군사고문단장 바실리에프(Nicolay A. Vasilyev)도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적 후방에서의 전장개설에 대해 김일성과 슈티코프는 동의했지만, 바실리에프는 동의하지 않았다.¹⁰⁾ 중북 양군의 이른바 ‘작전협조문제’에 대해선 김일성은 양측이 각기 참모를 파견해 통신연락과 정보교환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양군 사령부가 통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심지어 김일성은 중북군의 두 사령부가 가까이 있는 것도 좋지 않다고 했다고 한다.¹¹⁾ 회의 후 중국군 사령부로 돌아온 박일우는 彭德懷에게 김일성과 소련군사고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한편, 북경의 周恩來는 북한수뇌부와 의 군사협조 문제는 단순히 중북 양군 사이만이 아니라 양당, 양국 관계와도 관련돼 있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박일우를 매개자로 한 간접 대화가 아니라 중북 양군의 최고지휘부가 나서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보고 彭德懷에게 직접 김일성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¹²⁾ 周恩來는 11월 8일 毛澤東, 劉少奇, 朱德과 聶榮臻이 검토한 전문을 북한 주재 柴成文에게

10)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67쪽.

11) 王焰主編, 『彭德懷年譜』(北京: 人民出版社, 1998年), 448쪽; 張民、張秀娟, 『周恩來與抗美援朝戰爭』(上海: 人民出版社, 2000年), 159쪽.

12) 張民、張秀娟, 『周恩來與抗美援朝戰爭』, 158쪽.

보냄과 동시에 彭德懷와 高崗에게도 김일성의 의향을 타진하게 했다. 즉 “毛澤東 주석은 김 수상에게 현재 차기 전역 직전까지의 틈을 이용해 이 달 10일 전후 彭德懷 동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高崗, 彭德懷 두 동지를 만나 한반도에서의 작전과 보급, 북한군과 그 기관들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진입한 후의 훈련 안배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해 의논하라고 건의하는데, (이에 대해) 김 수상의 의견이 어떤지 高崗 동지가 알고 북한에 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알려주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¹³⁾

지시를 받은 柴成文은 직접 김일성에게 이 의사를 전했고, 김일성은 彭德懷, 高崗과 이 문제들을 상의하겠다고 답했다.¹⁴⁾ 11월 10일 11시, 柴成文은 周恩來에게 전보로 김일성이 회답에 응하겠다고 한 사실을 보고했다. 김일성이 柴成文에게 彭德懷, 高崗과 협의하겠다고 응답한 시점은 彭德懷가 제안한 ‘3자 회담’에 대한 毛澤東의 지원요청이 스탈린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스탈린의 의사가 결정되기 전이었다.

11월 11일, 彭德懷는 박일우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전보로 毛澤東과 高崗에게 보고했다. 중북군 사이에 전투 중 오인공격이 빈발해 작전지휘권 통합이 시급함에도 김일성과 소련군사고문들은 연락장교만 중국군사령부에 보내 정보교환만 하길 원하고, 중조사 설립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 두 사령부가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까지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¹⁵⁾ 이 보고전문에서 彭德懷는 자신과 김일성, 슈티코프가 참여하는 ‘3인 위원회’를 조직해 작전과 관련된 지휘협조와 군사정책 등을 책임지고 결정하겠다고 했다.¹⁶⁾

13) 張民、張秀娟, 『周恩來與抗美援朝戰爭』, 158쪽.

14)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67쪽.

15) 王焰主編, 『彭德懷年譜』, 448쪽.

16)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67쪽. 그런데 이 자료에

彭德懷가 김일성, 소련군사고문들과 격론을 벌였지만 그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조사 창설이 결정되지 못했다는 보고를 접한 毛澤東은 북한 측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원인이 김일성의 반대와 배후에서 그를 지도하는 소련군사고문들의 반대 혹은 입장 차이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김일성을 설득하고 소련군사고문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스탈린의 지원과 압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1월 12일, 毛澤東은 彭德懷에게 “북한과의 협력에 관련된 각 항목은 모두 타당한 것”이지만 북한지도부와의 논쟁과 의견대립은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왔으며, 앞으로도 중국군이 전투에서의 승전이 쌓이지 않는 한 상당기간 존재할 것이니 완곡한 어법과 부드러운 태도로 협상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강인하고 충직하며 전쟁경험이 풍부한 군사전략가로서 원칙문제에서는 좀처럼 양보하지 않은 彭德懷의 성격을 감안한 지시였다.¹⁷⁾ 여기서 毛澤東이 彭德懷에게 말한 “북한과의 협력에 관련된 각 항목은 모두 타당한 것”은 무얼 가리킬까?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 가서 논의를 이어가겠다.

당시 毛澤東은 彭德懷 이외 정무원 정무위원 李富春이 중국 동북 지역을 보름 간 시찰하고 돌아와 올린 보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李富春의 보고서는 북한군이 전쟁 방침, 정책과 조직 면에서 독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련, 중국, 북한 3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을 소련에 건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였다.¹⁸⁾ 또한 11월 13일 동북군구 당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제1차 전역을 총결산함과 동시에 제2차 전역에 대한 작전 방침, 중북 쌍방의 작전협조 등을 연구한 결과를 북경에 보고함에

는 문헌의 전거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彭德懷年譜』 11월 11일자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王焰主編, 『彭德懷年譜』, 448쪽을 보라.

17)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 『建國以來毛澤東軍事文稿』(北京: 軍事科學出版社、中央文獻出版社, 2010年), 上卷, 348쪽: 師哲, 『在歷史巨人身邊: 師哲回憶錄』(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5年), 503쪽.

18) 沈志華 著, 金東길 譯, 『조선전쟁의 재탐구』(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년), 536쪽.

따라 북한과의 후방지원 문제는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

같은 날, 毛澤東은 스탈린에게 중국군이 북한군을 포함해 단일화된 지휘권을 가지도록 슈티코프를 움직이게 하고, 김일성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에서 毛澤東은 이렇게 언급했다. “彭德懷 동지는 김일성 동지와 슈티코프 동지가 전방에 상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김일성, 슈티코프, 彭德懷가 3인위원회를 조직해 전군, 작전, 정면전장과 적 후방전장 그리고 작전 관련 많은 현행 정책들을 포함한 군사정책을 결정함에 서로 의견일치를 구해 전쟁진행이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의에 동의했는데, 지금 특별히 전문을 보내 당신의 지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만약 동의하면 귀측에서 슈티코프 동지와 김일성 동지에게 타당하다는 의사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덧붙여 毛澤東은 전보 말미에 승리는 자신하고 있지만, “현재 중요한 문제는 북·소·중 3국의 지도자 동지들이 잘 단결하여 각종 군사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견일치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북한군과 중국군이 작전에서 보조를 맞출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¹⁹⁾ 즉 毛澤東은 스탈린에게 소·중·북의 공동 결정으로 통합 지휘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전보를 받은 스탈린은 당시 남진 일변도의 전쟁지도를 해온 북한 주재 소련군사고문들에게 작전지휘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11월 15일 중국, 소련, 북한 대표가 함께 하는 3자 회담이 평북 동창군의 대유동 소재 중국군사령부에서 열렸다.²⁰⁾ 毛澤東의 장남

19)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67~168쪽.

20) 王焰主編, 『彭德懷年譜』, 449쪽; 戴茂林, 趙曉光, 『高崗傳』(西安: 陝西人民出版社, 2011년), 249~250쪽;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67쪽.

毛岸英이 중국어-소련어 통역을 맡은 이 회의에 북한 측에서 김일성과 박일우가, 중국측에선 彭德懷와 高崗이, 소련측에선 ‘3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라는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슈티코프가 참석했다. 이 회의는 기본적으로 제2차 전역의 작전방침을 논의하고자 한 자리였는데, 중북군의 작전지휘 통일문제와 군수지원 문제가 핵심의제였다.

무려 6시간이나 지속된 이 회의에서 전황과 작전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한 彭德懷에 이어 高崗, 김일성, 彭德懷, 高崗, 슈티코프 순으로 발언했다. 참석자들이 모두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향후 조치들에 대해 각자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분위기를 유도한 高崗에 이어 발언에 나선 김일성은 전쟁 경과를 서두로 장시간 언급했지만 중국군 파병에 대한 사의 표명 이외에 중북 양군의 작전 조정 문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진 그의 발언은 북한 정부와 북한군 지휘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 즉 퇴각한 사단들의 정비, 9개 예비사단 편성과 훈련, 조종사 양성, 유격투쟁 전개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유격투쟁을 위해선 북한군 제2군단 참모부를 철원에 남겨 뒀고, 3~4개 사단을 적 후방지역에 내려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또 “소련은 북한의 지원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기왕에 파병을 결정한 이상 평양이 점령당하기 전에 군대를 보내 평양을 지켜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향후 반전을 위해 북한군을 재편, 양성하고 유격전과 적 후방 전투를 계획하고 있지만 “주요 산업 지역들과 비식량 손실로 현재 심한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²¹⁾

김일성의 발언은 彭德懷의 작전지휘 단일화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하고 북한군의 단독 작전을 시도하려는 속내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는 북한군의 독자적인 전황반전을 도모하려고 했지 중국 측에서

21) 국사편찬위원회 편역, 『6·25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02~203쪽.

제기한 중북군의 연합작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내비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이에 대해 彭德懷는 2시간에 걸쳐 김일성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에둘러 반박하면서 제2차 전역의 작전계획과 목표 및 고충을 밝혔다. 예컨대 중국군은 적절한 시기에 참전해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지만 11월 하순에 착수하기로 계획돼 있는 제2차 전역에서는 중국군이 탄약과 비상식량 마련이 어렵고, 차량운송이 부족한데다 북한의 도로상태가 좋지 못하며, 철도운송도 부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방당국 기관들이 중국으로 피신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중국군에게 협조해줄 사람들이 없다고 했다. 그는 중북 양군이 “더욱 긴밀하고 일치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하면서 전쟁수행 관련 논의를 위해 자신과 김일성, 슈티코프가 더 자주 만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²²⁾ 즉 간접적으로 작전 지휘권 통합을 요청한 것이다.

彭德懷의 발언에 이어 또 다시 발언에 나선 高崗은 彭德懷의 권위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김일성에게 중국군의 군수문제 해결에 협조해줄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국군에게 보급품을 원활하게 수송해 줄 수 있도록 북한 내 대형 도로를 확충시켜 주고, 중국군사령부와 북한철도관리 간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었다. 이 요청은 한반도가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투에서 통일된 지휘를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서 彭德懷의 간접 요청에 대한 부연설명이었다. 계속해서 高崗은 중북 양군의 작전문제와 관련해 연안파에게 군사지휘권을 놓칠 것을 우려한 김일성의 의심과 불안을 의식한 듯 노동당은 毛澤東이 당내 의견을 일치시키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을 결속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강조했다. 요컨대 김일성을 중심으로 노동당의 정치사업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毛澤東의 의중을 전달한 것이다.²³⁾

22) 위 책, 204~205쪽. 沈志華 저, 김동길 역, 『조선전쟁의 재탐구』, 537쪽.

23) 국사편찬위원회 편역, 『6·25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06쪽.

중국 측이 바랐던 중조사 창설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이 회의에서 끝 차례로 발언한 슈티코프의 입을 통해서였다. 슈티코프는 유격투쟁의 확장과 노동당이 정치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국 측의 입장에 대해 옳은 판단이라고 긍정하고, 개인적 소견이라고 하면서 양군의 작전조정을 위해선 “통일된 작전군사령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²⁴⁾ “통일된 작전군사령부가 필요하다”는 언급은 이 시점부터 작전지휘권 통합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슈티코프가 스탈린의 의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 회합에서 기본적으로 중북 쌍방이 군사작전과 군수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소련-중국-북한 3자 사이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중북 양군의 작전지휘권 통합 건에 대해선 슈티코프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김일성이 여전히 양군의 “작전 조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바람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끝 무렵에 高崗과 彭德懷는 제2차 전역 후에 다시 중조사 창설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²⁵⁾ 이처럼 彭德懷와 소련 측이 작심하고 김일성에게 “통일된 작전군사령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이번에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세 번째 협상도 결렬되고 말았다.

회의 내용과 결과는 모두 모택동과 스탈린에게 전해졌다. 스탈린에게는 중국 측의 전술전략에 관해서도 보고됐다. 중국 측의 작전 방침이 옳다고 판단한 스탈린은 중국이 중북 양군의 작전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것을 동의해주고 이를 위해 소련군사고문들의 생각을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한 毛澤東의 건의를 받아들여 11월 16일 毛澤東에게 중국 측의 통합적 작전지휘에 찬성한다고 통보했다. 동시에 그는 김일성, 슈티코프와 중국 주재 소련군사고문들에게도 이

24) 위 책, 1950~53년』, 207쪽.

25) 위 책, 207쪽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67쪽.

뜻을 알렸다.²⁶⁾ 그러나 김일성에게는 이 전보가 슈티코프의 실수로 “7일” 늦은 10월 23일(혹은 24일)에야 전달됐다. 그 사이 김일성은 11월 20일과 21일 연이어 사단장, 군단장, 군사회의 위원, 정치기관 책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주재해 전투 평가, 몇몇 군지휘자들과 사단장들의 과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북한군의 재조직과 편성, 남한에서의 유격활동을 벌일 계획을 밝히면서도 중국군과의 작전지휘권 통합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의 전시 군사지휘권 행사를 지지한 스탈린의 전보를 접수한 毛澤東은 이 사실을 彭德懷와 高崗에게 알렸다.²⁷⁾ 이 시기 毛澤東은 서부전선에 주력을 투입한 지난 제1차 전역 때와는 달리 이번 제2차 전역에서는 동부전선에도 병력을 증강시켜 원산까지 밀어 붙이기로 하고, 북한군을 동부전선에 투입할 생각이었다. 당시 3개 군단 14개 사단 7만5,000명 정도로 수습돼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된 북한군 병력에 대한 지휘여부가 제2차 전역의 승패에 미칠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毛澤東은 제2차 전역을 개시하기 직전 또 한 번 작전지휘권 통합을 재촉하기 위해 전역 개시 이틀 전인 11월 23일 전선의 병참공급 상황을 파악할 겸 瀋陽의 高崗을 재차 중국 군사령부로 보내 김일성, 彭德懷와 중조사의 수립과 지휘계통 통합 문제를 상의하게 했다. 이는 洪學智 회고록에 근거한 내용인데,²⁸⁾ 현존 ‘毛澤東文稿’에는 없는 내용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일우-彭德懷, 김일성-彭德懷의 최초 회담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중북지도부 간 회의는 네 번째였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김일성과 중조사 설립을 논의한 이 협상에서도 쌍방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작전지휘권 통합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군과의 연합작전이 이루어

26)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68쪽.

27) 張民、張秀娟, 『周恩來與抗美援朝戰爭』, 160쪽.

28)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77쪽.

지지 못했다.²⁹⁾

당사자인 김일성의 의심과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선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북경은 그의 의심과 불안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毛澤東은 김일성을 직접 북경으로 불러들여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김일성이 스탈린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이전에 김일성은 11월 29일에 소집된 노동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중조사에 관한 스탈린의 전문에 대해 당내 토론에 부쳐 스탈린의 “연합사령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올바르게 시기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중조사 “사령관도 말할 필요 없이 중국인이 되어 하고, 부사령관은 조선인이 맡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³⁰⁾ 스탈린의 지시를 “지도적 지시”로 받아들인 김일성은 毛澤東의 방중 초청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2차 전역의 서부전선 전투가 끝난 12월 3일, 예정 보다 하루 늦게 김일성은 동북의 高崗과 함께 북경 中南海의 毛澤東을 찾아가 周恩來, 劉少奇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중조사 설립문제와 중북 양군의 작전권 통합문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高崗이 양군 간에 작전지휘가 통일되지 않아 서로 충격전을 벌인 사례를 들면서 재차 지휘권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毛澤東도 이에 찬의를 표시했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예전과 달리 중국 측에게 북한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의 입장변화는 스탈린의 지시에 따른 것임은 불문가지다. 그는 스탈린이 전보로 중북 양군이 지휘를 통일해야 한다고 전해왔다고 하면서, 중국군은 전쟁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 동지가 정(正), 북한 동지가 부(副)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점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도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³¹⁾ 또한 김일성은 자신이 인천

29) 姜廷玉, 「中朝聯合司令部成立始末」, 『縱橫』, 總第130期(2000年10月), 35쪽.

30) 국사편찬위원회 편역, 『6·25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23쪽, 226쪽

31) 葉雨蒙, 『黑雪：出兵朝鮮實記』(濟南：濟南出版社, 1991年), 239쪽.

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의 퇴각을 잘못 이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휘를 맡기 어렵고, 박일우와 김웅을 북한 측 지휘관으로 내세우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³²⁾ 특기할만한 것은 김일성이 병사들의 휴식과 부대 정비 후에 공격을 재개하려고 한 彭德懷와 달리 공격을 38도선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毛澤東의 의사를 확인한 점이다. 이는 곧 그간 계속 공격이냐 휴식 후 공격이냐를 두고 의견대립을 보여 온 彭德懷의 의사를 철회하게 만든 수확이었다.

회담 결과 김일성과 毛澤東은 중조사 창설과 양측의 고위 지휘관이 참여하는 연합참모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군사령부와 북한군참모부는 중조사에 소속되며, 업무는 중국군사령부에서 보기로 했다.³³⁾ 북한군 가운데 고위급 인사를 중국군사령부의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자격으로 상주시키기로 합의했다. 중조연합사령관 겸 정치위원은 중국군 측이 맡기로 했고, 부사령관은 중북 양군에서 각기 1명씩을 선출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누구를 인선할 것인지, 또 이 기구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작전방침과 관련해서는 북한군이 38도선 이남에서 유격투쟁을 담당하기로 합의가 됐다.

북경을 떠난 김일성은 중국군이 평양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12월 5일 밤 9시 북한에 귀환했다. 그는 도착 즉시 북한 주재 소련대사 겸 군사고문단장으로 새로 부임해온 라주바예프(V. N. Razuvaev)에게 북경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렸다. 위 내용과 함께 중조사 및 연합참모부 설립과 군사작전방침에 대해 쌍방의 합의가 있었으며, 毛澤東이 북한군 패퇴의 과오를 비판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는데, 자신이 이에 동의했다는 내용도

32) 위 책, 239쪽 ; 와다 하루키 지음, 서동만 옮김, 『한국전쟁』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9년), 202쪽.

33)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 『周恩來軍事文選』 (北京 : 人民出版社, 1997年), 122~123쪽.

덧붙였다.³⁴⁾

12월 6일, 彭德懷는 다음 날 김일성이 중국군사령부로 와서 중조사 간부 선임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毛澤東에게 긴급 전문으로 보고했다. 이에 毛澤東은 그날 밤 10시 彭德懷에게 신속히 김일성과 함께 중조사, 중국군사령부를 덕천 이남의 적당한 곳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강계, 정주 지역에 모여 있는 북한군 2개 군단에게는 彭德懷, 김웅과 박일우의 지휘를 받아 중국군을 따라 평양 이남으로 출동해 중국군의 작전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라고 지시했다.³⁵⁾

12월 7일, 김일성과 彭德懷는 중조사 지휘부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협의한 결과 의견 일치를 봤다. 彭德懷는 북한군에 대해 “금후로 더 이상 지휘에 직접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³⁶⁾ 이는 그 때까지 彭德懷가 북한군에 대해 지휘 간섭을 해왔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지휘부 구성면에서 중조사 사령관 겸 정치위원에 彭德懷, 중국 측 부사령관에는 鄧華, 북한 측 부사령관에는 연안파인 김웅을 임명했고, 박일우에게는 부정치위원을 맡겼다.³⁷⁾ 연안파의 약진이 돋보이는 인선이었다.

12월 8일, 彭德懷와 김일성은 중조사 설립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은 周恩來가 중공중앙을 대표해 작성했다. 같은 내용을 담은 한글합의문도 작성됐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지금까지는 공개된 바 없다. 합의문의 전문은 다음 장의 관련 논의에서 자세하게 거론될 것이다. 합의문에는 명기돼 있지 않지만, 이 회담에서 쌍방은 원활한 작전협조를 위해 북한군 측에서 3~4명으로

34) 국사편찬위원회 편역, 『6·25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29~230쪽.

35)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 『建國以來毛澤東軍事文稿』(北京:軍事科學出版社、中共文獻出版社, 2010年), 上卷, 399쪽; 王焰主編, 『彭德懷年譜』, 453쪽.

36) 王焰主編, 『彭德懷年譜』, 453쪽.

37)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101쪽.

구성된 연락조를 중조사에 상주시켜 중국군 작전처와의 업무연락에 원활을 기하기로 했다. 북한군 지휘부는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부 부부장 왕송운 대좌를 조장으로 한 군사연락조를 중조사에 상주시켰다.³⁸⁾ 또한 쌍방의 합의에 의거해 중국군사령부와 북한군 참모부 등 2개 기구가 한 곳에 같이 있게 됐다.

이날, 毛澤東이 彭德懷에게 중조사를 밖으로 공개하지 말고 실제 조직만 하자는 지시를 내렸다.³⁹⁾ 이 조직의 창설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중조사의 존재는 대외적으로 비밀이 됐다. 중조사라는 존재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대내적으로 문서상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중조사가 명령을 내릴 경우 중국군 부대에게는 중국군사령부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 북한군에게는 중조사 명의를 사용하기로 했다. 중북 양군 간에는 중조사를 ‘聯司’라고 간략히 칭하기로 약정했다. 따라서 중조사가 彭德懷, 김웅, 박일우 3인 연명으로 명령을 내리는 대내적인 명령도 군단 지휘부와 독립사단 사령부까지로 제한했으며, 관련 작전만 통일적으로 지휘하기로 했다. 작전범위와 전쟁지도 같은 전선의 모든 활동은 중조사가 관할하도록 했는데, 양측의 작전과 전선에서의 모든 전투는 중조사의 지휘를 받게 된 것이다. 북한정부는 후방동원, 훈련, 군정, 경비 등을 관장하기로 했다. 후방문제 가운데 중조사가 필요한 게 있을 경우 북한군 측에 요구 내지 건의하고, 철도수송 및 수리는 중조사가 지휘하기로 결정했다.⁴⁰⁾

중조사가 중국군사령부와 북한군 참모부를 지휘하기로 함에 따라 제3차 전역부터는 중국군이 중조사를 통해 중북 양군을 모두 일원적으로 지휘하게 됐다. 북한군은 단지 적 후방에서의 유격전 수행,

38) 楊迪, 『在志願軍司令部的歲月里—鮮爲人知的真情實況』 (북경: 解放軍出版社, 1998년), 76쪽.

39) 王焰主編, 『彭德懷年譜』, 454쪽.

40)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 『周恩來軍事文選』, 122~123쪽.

후방경비, 군사훈련, 해안방어 및 치안유지만 맡게 됐다. 북한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중국 측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김일성은 전방 전투지휘권이 대폭 축소돼 군권이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조사가 정식으로 창설됐지만 그 정확한 설립 날짜는 분명하지 않다. 자료마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이다. 洪學智는 12월 4일 중국군 지휘부가 중조사의 설립사실을 전체 각 부대에 통보했다고 했는데,⁴¹⁾ 이에 근거하면 12월 3일이거나 4일에 설립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彭德懷 전기에는 12월 7일 김일성이 대유동에 와서 彭德懷와 중조사 설립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일치를 본 이 날 정식으로 설립된 것으로 돼 있다.⁴²⁾ 나는 毛澤東이 彭德懷에게 북한군 2개 군단에 대한 작전명령을 지시하게 한 12월 6일이었거나 그 하루 전인 5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3. 쟁점 1 : 중국군의 파병은 조건이 없었던 것인가?

12월 3일 김일성-毛澤東의 북경회담에서 전격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북중 양측이 총 최소 다섯 차례 이상이나 접촉 내지 회담을 거듭하면서 신경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조사를 즉각 설립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김일성의 반대가 주된 원인이었다. 그의 반대는 자신의 군사적, 정치적 입지와 밀접히 관련돼 있었다. 예를 들면, 양군의 군사지휘권을 어떤 형식으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약정에 어떤 내용을 담는가에 따라 북한의

41)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101쪽.

42) 鄧力君·馬·洪武衛主編, 『彭德懷傳』(北京: 當代中國出版社, 1993年), 437쪽.

주권 일부가 침해될 수 있는 권리를 중국 측에 이양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합의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문제들이었다.

현재까지 공개된 각종 문헌자료들에는 중북 양군의 작전협조 문제가 10월 21~23일의 彭德懷-김일성 회동시 논의된 것으로 돼 있다. 말하자면 중국군이 북한으로 전개된 뒤에 논의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전지휘권 통합문제는 앞뒤 상황을 짚어 봤을 때 중국군 참전 전에 이미 중북 양국의 지도부 수준에서 거론됐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는 나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증과 방증 혹은 추론이다.

먼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1950년 10월 1일 스탈린이 毛澤東에게 중국의 참전을 요청하면서 군사지휘는 일원적으로 중국 측이 맡아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다.⁴³⁾ 둘째는 10월 8일 모스크바로 향발한 周恩來가 중국의 참전문제를 두고 스탈린과 벌인 협상에서 대북 군사지원 문제와 관련해 8개 항을 제기하면서 중국군이 참전 후 북한군과 연합작전을 펼칠 경우 쌍방의 군사지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시해줄기를 요청했지만 스탈린이 이 문제제기에 대해 이렇다 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⁴⁴⁾ 스탈린의 제안과 周恩來의 질의는 중국 측이 군사개입 이전에 이미 작전지휘권 단일화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

일설에 의하면, 毛澤東은 북한 측으로부터 중국군 파병요청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중국군 파병 전 먼저 사전에 북한 주둔에 필요한 중국군의 우월적 특권을 요구했다고 한다. 명분은 중국군의 “법적 지위, 권한, 즉 행정협정 및 북한군과의 연합

43) 沈志華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臺北: 中央研究所近代史研究所, 2003年), 中冊, 571쪽.

44) 『黨的文獻』, 2000年第5期, 9쪽.

작전 문제 등 세부 협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⁴⁵⁾ 이것도 周恩來가 스탈린에게 요청한 내용과 논리적 궤를 같이 하는 사례인데, 중국 측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 제1항 연합사령부 및 참모부 구성에서 장은 중국 측이 맡고, 북한 측은 부를 맡는다.
- 제2항 동 구성원은 중국 측이 과반수를 가지고, 의견이 다를 때는 중국 측의 의견에 따른다.
- 제3항 동 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로 한다.
- 제4항 북한 측은 중국군의 동의 없이 화전과 관련해 어떠한 국가와도 협정을 맺지 않는다.
- 제5항 북한 내에서 중국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으로 북한 측이 무료로 보장한다.
- 제6항 북한 내에서 중국군은 북한법률에 복종하지 않는다.
- 제7항 북한의 철도, 도로 및 항만 시설은 중국군의 관할 아래에 둔다.
- 제8항 필요할 경우 중국군은 북한주민에 대해 검색 및 체포, 취조를 할 권한을 가진다.⁴⁶⁾

중국 측이 정말로 이런 요구를 했었는지는 현재 결정적 사료가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요구는 毛澤東이 참전 전에 한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과연 그것이 참전 전 일이었는지 아니면 참전 후의 일이었는지 정확한 시점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毛澤東이 요구한 게 사실일 경우 조건은 상기 내용이었는지, 또 과연 북한 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내용으로 봐서 통상 군대파병 전에 점검하는 요구조건이라는 점은 단박에 알 수 있다. 먼저 중국 측이 이런 요구를 했었는지 여부를 추론하면, 주둔군으로든 참전군으로든, 어떤 국가에 외국군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45) 林英樹, 「內側から見た朝鮮戦争」, 民族問題研究會編, 『朝鮮戦争史: 現代史の再發掘』(東京: コリア評論社, 1967年), 122쪽.

46) 위 책, 122쪽.

전쟁경비를 비롯해 병참해결 문제와 함께 주재국 군대와와의 군사협조, 특히 양군의 상호 관계와 전쟁지휘권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논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임을 감안하면 중국이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중국이 상기 요구사항을 제시했었다면 그 시점은 언제였을까?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크게 입북 전과 입북 후 가운데 하나였을 것인데, 그 시점은 다섯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1950년 5월 15일 김일성과 박헌영이 극비리에 북경을 방문해 중국수뇌부와 행한 회담에서 毛澤東이 김일성의 전쟁 동의요청을 받아들였을 때다. 둘째는 10월 2일 김일성이 북경에 급파한 박일우로부터 파병요청을 받았을 때 그를 통해 제시했을 수 있다. 셋째는 10월 8일 毛澤東의 요청으로 북경에 급파된 박일우를 통해서다. 넷째는 중국군이 입북한 이후, 즉 대동과 대유동에서 김일성과 彭德懷가 빈번하게 만난 10월 21~23일 시점이다. 다섯째는 彭德懷가 박일우와 만나 중북 양군의 지휘권 통일문제를 논한 11월 7일이다. 이 다섯 가지 가능성 가운데 첫 번째였거나 세 번째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두 번째와 네 번째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다섯 번째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상기 가능성을 순서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경우, 이 북경회담에서 毛澤東은 미국이 군대를 보내 한반도 적화통일전쟁을 간섭할 경우 중국군을 파병해서 지원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지만 김일성은 사양했다.⁴⁷⁾ 毛澤東의 이 제의는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무조건적이었던 것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다. 김일성이 사양한 이유는 毛澤東이 파병지원에 대해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김일성과 박헌영이 노동당 정치국 요원

47) 대한민국의무부편역, 『韓國戰爭 關聯 蘇聯極秘外交文書』(서울 : 편역자 소장, 1994년), 27쪽.

들에게 알리지 않고 극비리에 북경을 방문했기 때문에 毛澤東으로부터 그러한 요구조건을 들었다고 해도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당시 이를 공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단지 김일성과 박헌영 두 사람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쟁 도발 후 한국군과 유엔군의 북진 반격으로 정권붕괴 직전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몰린 1950년 9월 하순 중국군 참전을 요청해야 할 것인지를 당 지도부에서 결정해야 했을 때는 중국 측의 요구조건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배경은 김일성과 박헌영이 남침전쟁을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동의 없이 결정한 사정과 맞물려 있다. 즉 남침전쟁은 김일성과 박헌영 등 당내 극소수 인물이 극비리에 모의해 일으킨 것이었지만, 일단 도발과 함께 즉각 북침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호도함으로써 노동당 내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전쟁을 결정한 데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엔의 신속한 개입으로 전황이 역전되고, 기대했던 스탈린마저 소련군 파병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김일성은 하는 수 없이 중국에 지원을 요청해야 했는데, 중국군 파병요청은 김일성 개인이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실제 9월 20일 전후 긴급히 소집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중국의 군사지원을 요청하자는 제의가 나온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중국군의 참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⁴⁸⁾ 김일성의 입장에서선 중국군의 파병을 막기 위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중국 측의 지나친 요구조건을 밝힐 필요가 있었을 수 있다. 이 요구조건이 앞서 열거한 8개항이 아니었을까?

둘째의 경우는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김일성은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스탈린이 소련군 병력지원을 거부하자 중국군의 파병이 절실하게 된, 촌각을 다투는 절체절명의 화급 상황에서 박일우를 북경에 보내 파병을 요청했다. 하지만 毛澤東은 소련의

48) 국사편찬위원회 편역, 『6·25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146~147쪽.

공군 지원 보장 없이 단독으로 파병을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탈린의 공군지원 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참전여부를 수차례 중공 당내 토론에 부쳤다. 따라서 파병이 당론으로 확정되기 전이었으며, 박일우의 북경체류 시간도 촉박했던 상황이라 毛澤東이 북한 측에게 참전조건을 제시하기는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의 경우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10월 8일 毛澤東은 김일성에게 전보를 보내 중국이 군대파병을 결정했음을 알리면서 박일우를 瀋陽에 보내 彭德懷, 高崗과 중국군의 북한진입 후 수행할 작전에 필요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⁴⁹⁾ 그런데 현존 자료들에 의하면, 그날 저녁 瀋陽에 도착한 박일우는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 후의 구체적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미국이 지금 한반도에 계속 병력을 증강하고 있으니 중국은 군대를 즉각 출동시켜 함흥과 신안주를 통제해 달라는 김일성의 요청을 전달했을 뿐이다. 그러나 김일성에게 파병을 결정했음을 알리는 毛澤東은 입장이 달랐는데, 이때 그가 박일우에게 파병조건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적시해주는 사료는 현재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중국 측이 공개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박일우는 즉답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중국 측과 후방지원 문제에 대해서만 초보적 수준에서 합의를 보았을 뿐이다. 입북 전에 벌써 중국 측의 요구가 김일성에게 전달된 상황이라면 김일성이 그에 관한 재거론이나 결정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군이 한반도에 진입한 이후 일률적으로 북한의 화폐를 사용하되 나중에 상환하고, 필요한 땀감과 건초는 북한 현지 지방 정부를 통해 구매하며, 시장가격에 따라 제공한다는 방침만을 정했을

49)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 『建國以來毛澤東軍事文稿』(北京: 軍事科學出版社、中央文獻出版社, 2010年), 上卷, 237쪽.

뿐이다.⁵⁰⁾ 또 소련에서 周恩來가 스탈린과 무기 장비 및 공군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즈음 중국과 북한은 이미 중국군의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까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沈志華는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쌍방은 중국군의 파병 이후 직면하게 될 지휘, 통신, 보급, 운수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선 그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¹⁾

네 번째 가능성을 검토하면 이렇다. 제2장에서 밝혔듯이 10월 21~22일 사이 김일성-彭德懷 회담시 彭德懷가 양군의 작전지휘권 통합을 요청한 것은 분명한데, 이 때 8개항을 다시 끄집어냈을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는 앞 장에서 11월 12일 毛澤東이 彭德懷에게 보낸 전보 내용 중 “북한과의 협력에 관련된 각 항목은 모두 타당한 것”이라고 한 대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두 사람이 이전부터 북한에 작전지휘권 통합과 관련해 여러 “항목”을 제시한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毛澤東의 요구조건에 관해 洪學智, 彭德懷 등의 회고록에는 모두 언급이 없다. 이는 중공지도부가 이 사실을 금기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가능성인 11월 7일은 앞서 살펴봤듯이 彭德懷로부터 작전 지휘권 통합 등의 요구가 있는 날인데, 그 요구는 최초가 아니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10월 21~22일과 11월 7일의 요구는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된다. 이 추론을 근거로 나는 중국군 파병 전에 이미 중국지도부의 군사적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지금부터 검토할 중북 간의 합의사항 중에는 북한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과연 김일성이 그런 요구를 쉬이 받아들였을까? 김일성이 선뜻 동의했다고 보기는

50) 梁鎮三,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 588쪽.

51) 위 논문, 587~588쪽.

어렵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제 중국군 파병 전 毛澤東이 요구한 조건들이 사실이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료비판을 가해볼 차례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상기 8개항의 조건들은 일부내용만 완화된 형태로 큰 틀에서 북중 간의 합의문으로 보장 받았기 때문에 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먼저 1950년 12월 초순 彭德懷와 김일성이 합의한 내용을 보자.

- 제1항 공동의 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치기 위해 중북 쌍방은 즉각 연합지휘부 설치에 동의하고, 한반도 국경 안의 모든 작전과 이에 관계되는 업무를 통일 지휘한다.
- 제2항 중북 쌍방은 彭德懷를 연합지휘부 사령관 겸 정치위원으로, 김웅을 연합지휘부 부사령관으로, 박일우를 연합지휘부 부정치위원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한다.
- 제3항 북한인민군 및 모든 유격부대와 중국인민지원군은 연합지휘부의 통일된 지휘를 받는다. 연합지휘부가 그들에게 내리는 일체의 명령은 모두 북한인민군총사령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를 경유하여 하달한다.
- 제4항 연합지휘부는 작전과 관계되는 모든 교통 수송(도로, 철도, 항구, 비행장, 유선, 무선 전화와 전보 등), 식량조달, 인적, 물적 동원 등의 업무를 지휘할 권한을 가진다. 연합지휘부의 이러한 모든 명령은 그 관할 관계를 보고 북한인민군 총사령부 혹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를 거쳐 하달한다.
- 제5항 전방지원을 위한 동원, 보충훈련 그리고 지방행정 회복 등, 북한의 후방지원업무에 속하는 모든 일은 연합지휘부가 실제 상황과 전쟁 수요에 따라 북한정부에 보고하고 건의할 수 있다.
- 제6항 작전과 관계되는 모든 신문보도는 연합지휘부가 지정한 기관이 통일하여 책임지고 편집 심사한 후 북한 신문기관으로 보내 북한인민군총사령부 명의로 통일적으로 배포한다.⁵²⁾

비교분석의 편의를 위해 위 합의문을 ‘12월합의문’이라 부르고, 군대파병 전 毛澤東이 제시했을 것이라는 내용을 ‘1차요구’라고 명명

52)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 『周恩來軍事文選』, 第4卷, 122~123쪽.

하겠다. 앞서 제시된 ‘1차요구’ 8개 항목의 조건들은 사실상 제5항, 제6항, 제8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12월합의문’에 반영돼 실효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연합사령부 및 참모부 구성에서 장은 중국 측이 맡고, 북한 측은 부를 맡는다”는 ‘1차요구’의 제1항은 ‘12월합의문’의 제1항과 제2항에 그대로 반영됐다. ‘1차요구’시에는 “연합사령부 및 참모부 구성”을 전제하고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12월합의문’에는 중조사의 구성원과 지휘경로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게 다를 뿐이다.

중조사의 “구성원은 중국 측이 과반수를 가지고, 의견이 다를 때는 중국 측의 의견에 따른다”는 ‘1차요구’의 제2항과 “동 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로 한다”는 제3항은 북한 측에서 연락조장으로 중국어 실력이 뛰어난 대좌급 장교를 선발해 중조사에 보냈듯이 실제로 그렇게 실행된 셈이다. “북한 측은 중국군의 동의 없이 화전과 관련해 어떠한 국가와도 협정을 맺지 않는다”는 ‘1차요구’의 제4항은 나중에 그대로 휴전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지켜졌다.

“북한 내에서 중국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으로 북한 측이 무료로 보장한다”는 ‘1차요구’의 제5항은 ‘12월합의문’의 제5항에 완화된 형태로 반영돼 있다. 즉 북한당국이 “중국군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어구는 중국 측이 북한 측에 중국군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보고하고 건의할 수 있다”라는 말로 대체돼 쌍방 합의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수정됐다.⁵³⁾ “북한 내에서 중국군은 북한법률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1차요구’의 제6항은 ‘12월합의문’에는 없다. 아마도 이 조항은 북한주권에 저촉되는 치외법권 문제였기 때문에 제외됐던 것으로 보인다.

53) 위 문헌, 122쪽.

또한 북한의 모든 철도, 도로 및 항만 시설을 중국군이 관할하도록 요구한 ‘1차요구’의 제7항도 ‘12월합의문’ 제4항에 “비행장, 유선, 무선 전화와 전보”까지 명기돼 관할 범위가 확장된 형태로 반영됐다.⁵⁴⁾ 단, “필요할 경우 중국군은 북한주민에 대해 검색 및 체포, 취조를 할 권한을 가진다”는 ‘1차요구’의 마지막 제8항은 ‘12월합의문’에 명기되지 않았다. 이 점 또한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배제된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측이 제8항의 요구대로 중국군의 “북한주민에 대해 검색 및 체포, 취조를 할 권한”을 허락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과제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로 볼 때 毛澤東이 사전 북한 측에 이러한 요구조건을 제시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먼저 흔히 타국의 전쟁에 참전한 국가와 파병지원을 요청한 국가들 사이에 문제시될 수 있는 사안인 ‘1차요구’의 제5·제6·제7항이 모두 당시 중국지도부에게 북한에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양해사항으로 인식됐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 측은 “북한 내에서 중국군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전쟁수행상 필요한 군수, 보급품 및 수송이라면 “북한 측이 무료로 보충”할 수도 있고, “북한의 철도, 도로 및 항만 시설”도 “중국군의 관할 아래에”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민사작전 수행시나 혹은 적이 북한주민들 속으로 잠입할 경우를 상정해 “필요할 경우 중국군은 북한주민에 대해 검색 및 체포 취조를 할 권한”도 잠정적으로는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국제법적으로 보면 이 요구들은 북한의 주권을 제한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김일성으로선 아무리 전시중이었고, 중국 측의 요구조건이 북한정권을 구원해주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해도 ‘1차

54) 위 주와 같음.

요구’ 중 제1·제2·제4·제5·제6·제7·제8항의 내용은 모두 자신의 군사대권 혹은 북한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과연 주권침해를 표상하는 毛澤東의 ‘1차요구’를 받아들였을까? 김일성은 애초부터 줄곧 이 요구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11월 15일 高崗이 김일성에게 毛澤東이 향후 김일성 중심으로 노동당의 규율을 일신하도록 김일성의 정치적 권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지만 김일성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1월 24일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다시금 보장된 스탈린의 의향이 담긴 전문을 받기 전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요컨대 스탈린의 지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다.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나자 그제서야 김일성은 중국 측의 ‘1차요구’를 약간 완화시킨 형태로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 측은 제6항에서만큼은 중국 측의 요구대로 허여하지 않았다. 또 제6항에 대해서도 “중국군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중국 측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북한 측에 “보고하고 건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해서 획득하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중국군은 보급품 중 수요량이 비교적 많았던 채소, 말 먹이 풀, 연료, 펄프, 목탄, 야채 등 부피가 큰 물건들은 중국내에 물량이 부족한데다 수송력도 절약하기 위해 북한 현지의 물자를 이용했는데, 보통 연대별로 구역을 나눠 해당 지역의 북한 정부기관과 협의해 통일적으로 구매하거나 생산해서 해결하게 했던 것이다.⁵⁵⁾

또한 식량을 차용할 경우에도 현지 북한 지방정부의 식량을 차용하고, 그것이 부족할 때에만 민간인에게서 식량을 차용한다는 원칙

55)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 『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草稿)』(北京: 編者出版, 1956年), 第2卷(戰術經驗總結—內部文件), 108쪽.

하에 차용 후에 보급품이 보충되면 차용분을 모두 갚게 만들었다.⁵⁶⁾ 이는 북한정권이 중국 측의 요구를 다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다.

전체적으로 보면 파병 전 중국지도부가 제시한 요구조건이 합의 됨에 따라 중국 측은 파병 전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반영시켰거나 관철시켰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중국 측은 군사작전과 관계되는 신문보도에 대해서도 모두 중조사가 지정한 기관이 통일적으로 책임지고 편집, 심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시 언론까지 장악했다. 이것이 나중에 『志願軍新聞』을 설립한 배경의 하나다.

만약 중국군의 파병이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북한지도부가 받아들인 결과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본고에서 이른바 중국 측의 ‘사전 제안설’을 제기한 나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게다가 앞서 제시된 다섯 가지 가능성 가운데 1950년 5월이었던, 아니면 10월 8일이었던, 그것은 모두 중국군의 파병 전이라는 사실로 귀결된다. 또 ‘사전 제안설’을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도 없지 않다. 이 연구는 중국이 “군대를 파견하기 전에 먼저 북한군의 지휘권과 북한에서의 우월적 특권을 손 안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⁵⁷⁾

‘12월합의문’ 제1항의 내용대로 중조사를 설립해 작전지휘권을 단일화 한다는 것은 그 시점까지 김일성이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서 행사해오던 군권을 중국군지휘부에 이양해주는 것을 의미했다. 더군다나 나머지 5개 항의 내용도 북한주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내 권력 장악을 둘러싼 김일성의 권력투쟁과 깊숙이 결부돼 있었다. 다음 장은 이에 관한 세세한 논구로 채워질 것이다.

56)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6·25전쟁기 중국군문서(1949~1953. 3)』 (춘천 :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0년), 제2권, 391쪽.

57) 林英樹, 「內側から見た朝鮮戦争」, 123쪽.

4. 쟁점 2 : 설립을 둘러싼 스탈린, 毛澤東, 김일성의 입장

중국군의 북한 진입 후 10월 21일의 최초 대면에서 彭德懷와 김일성은 중북 양군의 작전지휘권 통합과 중조사 설립을 거론했는가? 이 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기억’과 훗날 연구자들의 ‘해석’은 긍정과 부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즉 작전지휘권 통합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 단지 북한군과의 협조문제를 논하면서 김일성이 彭德懷에게 당분간 중국군 단독으로 전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는데, 彭德懷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 더 이상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양분된다.

중국학계의 沈志華는 柴成文的 회고와 彭德懷의 기억에 의거해 작전지휘권 통합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⁵⁸⁾ 그렇게 된 이유로 이종석은 당시 북한군이 심각한 손실을 입어 주력부대는 38도선 이남에서 북으로 철수 중이었고, 신편부대들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훈련, 정비 중이었기 때문에 미처 중국군과 북한군과의 통일적인 지휘기구 설립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종석은 또 중국군의 참전이 소련군의 공군지원 문제를 두고 중소 간에 난항을 겪다가 급히 이루어졌는데다 작전지휘권 문제를 두고 북-중-소가 협의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중국 측은 내심 처음부터 통일적인 지휘체계가 형성되길 원하기는 했지만, 일단 박일우를 북한 측의 전권대표로 중국군사령부에 파견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했다고 주장했다.⁵⁹⁾

반면, 洪學智의 회고록에는 彭德懷가 처음에 작전지휘권 단일화

58) 沈志華, 「中朝在韓戰期間的矛盾、分歧及其解決 : 亞洲冷戰中盟國內部關係研究案例之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학회 주관 한중국제학술세미나, 『중국의 전쟁 수행정책』(2001년 10월), 21쪽.

59) 이종석, 「6·25전쟁 중 중조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軍史』, 제44호(2001년), 51쪽.

문제를 거론했지만 중조사 설립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다. 10월 22일 김일성과 毛澤東이 중북 양군의 협조문제, 양군의 지휘 체계의 통일문제를 논했다고 기록돼 있다.⁶⁰⁾ 彭德懷가 김일성에게 중국수뇌부의 전략방침과 배치를 알려줌과 동시에 북한군의 현황을 물으면서 중조사를 설립해 대유동에 두기로 결정했다는 다른 주장도 있다.⁶¹⁾ 중국 측 자료에는 대부분 중국 측이 중조사를 설립하고자 제의한 것은 11월 7~8일부터였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제1장에서 세밀하게 고찰한 결과 중국군의 입북 전에 이미 북한 측에 작전지휘권 단일화의 필요성과 요구조건들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중국 측이 처음부터 김일성에게 강력하게 통일적인 지휘체계 구성을 요구한 건 아니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나는 김일성-彭德懷 두 사람 사이에 만나자마자 중북 양군의 작전지휘권 통합 내지 단일화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당시 거론된 내용 중에는 중국군에 대해 북한군이 어떻게 후방보급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중국 동북지역으로 건너가게 될 북한당국과 북한군의 거취와 훈련 등 화급을 요하는 현안들이 포함돼 있었다.⁶²⁾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작전지휘권 통합문제가 거론됐을 수 있다는 게 나의 주장이다. 물론 김일성은 두 가지 사안 모두에 호응하지 않았고, 단지 중국군만 전투에 나서주길 요청했을 뿐이다. 김일성이 그렇게 대응한 까닭은 작전지휘권 통합문제를 피해가려는 심사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싶다. 혹은 김일성이 내면적으로 중국군의 파병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점으로 보아 그는 이때 彭德懷에게 이 문제를 북중 양국의 외교적 경로를 통해 처리하자고 제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제2장에서

60)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47쪽.

61) 陳思, 「憤怒的彭德懷」, 『大地』, 2000年第19期總第115期, 12~13쪽; 胡海波編, 『雲山大碰撞: 第一次戰役戰事報告』(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7年), 67쪽.

62)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47쪽.

살펴본 대로 周恩來가 彭德懷에게 작전지휘권 통합문제를 군과 군 차원이 아니라 당 대 당,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로 접근하라고 한 것에 대한 호응일 수 있다.

彭德懷가 작전지휘권 단일화를 거론한 것은 毛澤東의 파병방침 내지 조건 가운데 하나였을 수 있다. 작전지휘권 통합 없이 수행된 중국군의 제1차 전역 시 중북 양군간의 협력 미비, 상호 약정 등의 협조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양군이 서로 오인 공격하는 사건이 빈발했다는 점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군이 북한 군과의 연합작전을 펼쳐야 할 경우 작전상 어떻게 지휘계통을 통일 하고 유지 및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다. 야전에서 전쟁지도를 총괄하는 彭德懷로선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긴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제1차 전역에서 생포한 유엔군포로 처리문제도 공동으로 긴급히 해결해야 될 협의의 안건에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폐단의 재발방지와 북한군 전투능력의 회복에 따른 전투참여의 필요성과 포로처리문제 등은 중국지도부에게 양군의 통일된 작전지휘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 사안이었다. 중국 측이 작전지휘권 단일화를 제의한 이면에는 전쟁수행의 효율성 제고, 중국군의 인명피해 최소화라는 원론적 동기가 내재돼 있을 수 있다. 그 만큼 북한지도부에 제기한 중국 측의 사전 요구가 절실하고 적실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양한 전쟁경험이 축적된 데서 비롯된 예견이었다. 제1차 전역 후 북한군을 작전운용 대상에 포함해 통일적으로 지휘할 필요성을 체감한 중국군지도부 측이 주도적으로 작전지휘권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김일성에게 의사를 타진하면서 설립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그런 배경이 존재했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건 김일성이 초기 한동안 이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은 북한군 제6사단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주둔지에서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해당 병력을 모두 철수시켜 버렸다. 그 후 북한군 제7사단이 중국군 제125사단과 마주쳤을 때도 彭德懷가 재차 북한군의 해당 사단 병력을 이동시키지 말고 연합작전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일성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⁶³⁾ 그러나 김일성은 자신이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사령부가 중국군사령부 부근에 있기 어렵다는 구실로 곧 彭德懷와 만나 작전문제를 의논하겠다고 하면서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⁶⁴⁾

그러면 김일성은 왜 작전지휘권 단일화 문제를 회피했을까? 혹은 김일성은 왜 통일적인 지휘체계 수립에 미온적이었을까? 10월 21일부터 11월 하순까지 그가 중국 측과 접촉한 기간 북한정권이 곧 붕괴될 듯한 위기상황에서도 작전지휘권의 통합을 반대한 내면에는 몇 가지 복합적 이유가 존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중국의 군사지원이 절실했음에도 내심으로는 중국세력을 배제하고 전쟁을 이끌려고 한 김일성의 이율배반적 심리를 지적할 수 있다. 김일성은 애초부터 중국이 참전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중국의 도움 없이 남침전쟁을 치르려고 했었다. 이 때문에 그는 6·25전쟁 도발 전과 전쟁 초기 毛澤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군이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기 직전인 1950년 9월 하순까지 줄곧 毛澤東의 지원의사를 외면했다. 이는 북한 측이 중국지도부에 전쟁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전황을 파악하려는 중국군사관찰단의 입북을 거부한 사실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김일성이 전쟁초기부터 적의 후방상륙을 경계해야 한다는 毛澤東의 조언을

63) 沈志華, 「中朝在韓戰期間的矛盾、分歧及其解決 : 亞洲冷戰中盟國內部關係研究案例之一」, 12쪽.

64)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67쪽.

묵살한 점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⁶⁵⁾

전쟁 전 김일성이 毛澤東의 군사지원 의사를 외면한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나는 중공과 중국인을 불신 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소련의 지원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만 때문이었다.⁶⁶⁾

김일성은 일찍이 만주에서의 항일 빨치산 시절 자신이 중국인 무장단체에 가담했던 193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중국인 유격대원들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같은 진영의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부대 소속의 한인들에 대해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에 따른 차별대우도 심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과 한인 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심지어 한국인 빨치산 대원들 중 일부는 중국인 동료의 누명과 모함으로 처형당하거나 일본인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아 고문에 처해지기도 했다. 결국 적지 않은 한인들이 이에 실망하거나 분격한 나머지 항일연군을 떠나기까지 했다.⁶⁷⁾

1930년대 중반 중공 동만주 항일유격대 내부에서 일본군 토벌대의 모략공작에 말려 ‘반민생단 투쟁’이 일어났을 때도 중국인들이 “반일유격대의 금싸라기”라고 추켜세웠던 조선인 중견 간부들이 모조리 피의 숙청을 당했는데, 이때 친일반동, 일제의 고정간첩 등의 죄명으로 살해된 수가 무려 500명에 달했다고 한다.⁶⁸⁾ 김일성은 살아남아 나중에 항일연군의 지도급 반열에 오르긴 했지만 그러한 사건들의 와중에서 직접 중국인들의 비열한 행위들을 목도한 기억이

65) 徐相文, 「關於“毛澤東預言美軍仁川登陸”的時間考」, 『中共黨史資料』, 第73輯(北京: 2000年 3月), 185쪽.

66) 沈志華, 「中朝在韓戰期間的矛盾、分歧及其解決 : 亞洲冷戰中盟國內部關係研究案例之一」, 8~9쪽.

67) Suh, Dae-Sook, *KIM IL SUNG :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32~34.

68) 李基奉, 『人間 金日成 그의 全部』(서울: 吉韓文化社, 1989년), 155~156쪽.

있던 그로서는 중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일찍부터 소련경사 정책을 추구하면서 전적으로 스탈린을 추종했던 김일성에게 스탈린은 6·25전쟁의 절대적 후원자였다. 毛澤東이 보기에 스탈린은 북한을 소련의 식민지이거나 혹은 속국으로 보고 동구권 국가들을 대하듯이 대했으며, 김일성에 대해서는 태상항으로 군림했다.⁶⁹⁾ 1950년 5월 중순 북경 방문시 毛澤東이 제시한 군사지원 의사를 김일성이 사양한 것도, 인천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이 북으로 퇴각하고 유엔군의 북진이 임박해진 동년 9월 21일의 노동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김일성이 중국군의 파병을 반대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북한지도부가 정치국 회의를 열어 중국에 파병을 요청할 것인지를 논의한 이 날, 스탈린의 개인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자하로프(Matvei V. Zakharov) 장군도 김일성에게 중국에 군사지원을 요청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⁷⁰⁾

당내 여타 박헌영, 김두봉과 같은 지도적 인물들이 중국 측에 지원을 요청하자는 제안에 즉각 찬성한 것과 달리 김일성은 중국 측에 파병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 며칠 간 고심했다. 그러다가 결국 9월 말에 가서야 소련과 중국에 지원군을 요청하게 됐는데, 9월 28일 긴급히 소집된 노동당 중앙정치국에서 소련과 중국에 군대파병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은 먼저 9월 30일 스탈린에게 긴급 지원 요청 서한을 보내놓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는 이 서한에서 북한군 자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스탈린에게 미군이 38도선을 돌파할 경우 소련군을 직접 파병해줄

69) 王力, 『王力遺稿: 王力反思錄』(香港: 北星出版社, 2001年), 下冊, 1096~1097쪽.

70) Shen Zhihua, "Sino-North Korean Conflict and its Resolution during the Korean War", i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14/15(Winter 2003-Spring 2004), p.11.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의 군대로 구성된 ‘국제의용군’을 조직해 북한을 지원해주도록 간청했다.⁷¹⁾

김일성이 중국의 군사개입을 반대한 것은 중국 보다 강자이자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스탈린을 추종하겠다는 이념적, 군사적, 외교적 이유 외에 대략 서로 맞물려 있는 두 가지 현실적 동기가 작용된 듯하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김일성이 임진왜란 시 한반도로 들어온 명나라군대 때문에 조선이 갖가지 곤란을 겪었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설령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중국군을 철수시키기가 쉽지 않고, 그로 인한 정치적, 군사적 종속과 폐해를 우려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군을 불러들이면 위기를 극복하고 승전한다고 해도 한반도적화에 대한 자신의 공이 삭감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패했을 경우는 중국 측으로부터 패전의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을 직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군권을 놓치면 김일성 자신의 권력유지가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던 정치권력문제와 맞물려 있었던 점도 그가 작전 지휘권 통합을 반대한 주요 이유였다. 김일성은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온 이상 국가주권을 의식해 내심 자신이 중북연합군을 지휘하기를 희망했으며, 적어도 북한군만이라도 계속해서 자신이 지휘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彭德懷는 북한지도부의 군사지휘 능력을 의심한 나머지 중국군 지휘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0월 1일 스탈린이 毛澤東에게 중국의 참전을 요청하면서 군사지휘는 중국 측이 맡아야 한다고 한 것은 彭德懷가 중북연합군 통합지휘부 창설을 제의하고 중북 양군의 통합지휘를 요구한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71) 김일성, 「尊敬하는 이·브·쓰딸린 同志에게」(1950년 9월 29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6·25전쟁 관련 주요 문서』, No.9.

또한 중국군의 개입은 친중적인 ‘연안파’들이 득세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그것은 바로 권력장악 문제와 직결되는 바 김일성과 그 추종자들의 당내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엘리트 집단 내 연안파의 세력 판도를 잘 알고 있었던 김일성은 이 점을 우려했을 수 있다.⁷²⁾

더군다나 연안파 내지 반김일성파는 이미 한 차례 중국을 끌어 들여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 때문에 김일성에겐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었다. 유엔군의 인천상륙 후 노동당 내 반김일성파들이 자파 인물들을 북경에 보내 중국지도부에게 중국군의 파병을 요청함과 동시에 패퇴에 대한 책임을 지워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지원해주기를 요청한 바 있다.⁷³⁾ ‘패퇴’란 김일성이 부대를 너무 늦게 인천지역에 투입한 결과 서울방어에 실패한 것을 가리켰다. 김일성 제거에 나선 반김일성파의 주모자는 박헌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존 북한내부 권력사정에 정통한 북경의 한 북한소식통에 의하면, 박헌영은 1950년 9월말 경 박일우를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지원을 받아 반김일성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을 수반으로 하는 친중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헌영의 이 계획은 毛澤東의 지원 반대와 적극 만류로 무산됐고, 박헌영은 毛澤東의 군사지원만 약속 받은 채 귀국했다고 한다. 毛澤東이 박헌영의 쿠데타 계획에 반대한 이유는 전쟁 중이라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에는 김일성 외에는 대안 인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북한소식통은 당시 毛澤東과 박헌영이 나눈 대화록이 중국외교부 檔案館(문서보존서)에 비밀해제가 되지 않은 채 1급 비밀로 보관돼 있다고 주장한 바

72) 서상문, 「미니전사(17) : 중공군 참전」, 『朝鮮日報』, 2010년 5월 17일.

73)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p.162~163.

있다.⁷⁴⁾

이것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당시 북한권력층 내부에는 반김일성 인물들이 적지 않게 존재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종석이 지적했듯이 김일성으로선 이들이 중국을 등에 업고 독자적인 세력화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⁵⁾ 김일성이 박일우를 중국군사령부에 보내 중국군과 연락 장교, 정보교환 역할만 유지하게 하고, 심지어 중북군의 두 최고 사령부가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마저 원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의구심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김일성 자신의 부대가 괴멸되다시피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중국군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작전지휘권 통합은 곧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을 중국 군지휘부에게 넘겨주게 됨을 의미했다. 더군다나 10월 들어서부터 노동당 내에서 남침실패와 패퇴에 대한 책임과 전쟁수행방식을 놓고 표출된 책임공방이 권력투쟁의 형태로 가열화 되던 상황⁷⁶⁾에서 군사지휘권을 중국 측에 내주면 그것은 곧 중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연안파에게 정치권력을 내주게 될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으로 들어간 연안파가 국가 권력을 잡도록 毛澤東이 지원하고자 했었는지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획득은 쉽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국지도부에게는 연안파가 북한권력을 장악한다면 나쁠 건 없다. 이런 大局的 견지에서 중국지도부는 먼저 김일성의 비호세력이 돼준 북한의 소련군사고문들을 제거할

74) 「박헌영, 6·25 직후 中에 ‘김일성 축출’ 제의」, 『문화일보』, 2005년 4월 26일. 익명의 이 소식통은 나중에 박헌영이 이로 인해 김일성의 격노를 사 미국의 간첩으로 몰리는 횡액을 입게 되지 않았더라면 실각하더라도 목숨은 유지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다.

75) 이종석, 「6·25전쟁 중 중조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軍史』, 第44號, 60쪽.

76) 특히 11월 7일 박헌영과 김일성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오갔다. 자세한 경위는 박명림, 『6·25전쟁의 발발과 기원』(서울 : 나남출판사, 1996년), 제1권, 280~281쪽을 참조하라.

필요가 있었다. 그들이 작전지휘권 통합과 작전방침 관철에 최대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지도부는 그들이 중국 측의 작전지휘권 통합과 지연전술을 반대하기도 하는 등 김일성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봤다. 彭德懷가 11월 11일 毛澤東의 승낙 하에 ‘3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작전지휘권 상실을 우려해 양군의 작전지휘 통합을 반대하는 김일성과 소련군사고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또 彭德懷가 소련 측 대표로 슈티코프만 참석시킨 것도 먼저 군사작전에 무조건 계속 남진공격만 주장하는 바실리에프를 작전지휘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 측에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은 뒤 11월 23일까지도 작전지휘권 통합과 중조사 설립에 묵묵부답해오던 김일성이 하루이틀 사이인 11월 24일부터 돌연 중조사 설립을 동의하게 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였을까? 자발적 의지의 변화였을까? 아니면 모종의 외압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스탈린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던 김일성이 일련의 새로운 상황에 대응해 중국 측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 결과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상황’이란 스탈린이 북한 내 소련군사고문들을 경질하면서 김일성에게도 중국군의 통합지휘권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는데, 김일성은 스탈린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실패에 대한 죄과를 추궁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그 내막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크게 스탈린의 압력과 毛澤東의 김일성에 대한 배려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구체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다.

스탈린의 압력과 관련해 먼저 彭德懷와 김일성 및 바실리에프 사이에 작전방침을 둘러싸고 자주 극명하게 표출되던 의견대립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었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전방침에 관한 견해 차이와 작전계획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상호 마찰과 충돌은 중국군 지휘관들과 소련고문들 사이의

의사소통 부정확에서 초래된 오해로 더욱 증폭되기도 했다. 소련어 통역을 맡은 毛岸英이 미 공군기의 폭격으로 사망한 뒤 적절한 통역자가 없어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일이 더욱 빈번해졌다. 언어소통 문제는 소련어가 유창했던 徐介藩이 중국군사령부의 판공실 주임 겸 통역으로 전임되고 난 후 해결됐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쟁수행방침이 달랐기 때문에 양자 간의 충돌은 불가피했으며, 그로 인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⁷⁷⁾ 예컨대 속전속결을 강조한 김일성과 바실리에프는 중국군이 제1차 전역의 승기를 몰아 휴식과 부대정비 없이 남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들은 중국군이 적을 추격하기 위해서 즉각 제2차 전역을 발동해 청천강 이남으로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방으로 몇 십 km를 퇴각해 휴식과 부대정비 후에 제2차 전역을 개시할 생각이었던 彭德懷의 작전방침과 중북연합작전에 반대한 것이다. 彭德懷는 11월 4일 이 내용을 북경에 보고했다.⁷⁸⁾ 상호의견 대립으로 인해 공산진영 지도부 내 김일성-소련고문관 측과 중국지휘부가 서로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이다.

한편, 스탈린은 무조건 남진 강행을 부르짖는 저돌적인 소련군사 고문관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불만은 소련군 사고문들이 ‘무능하다’는 비난으로 표현됐다. 스탈린에게 소련군사 고문들과 소련대사는 중국지도부의 작전방침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간주됐다. 그는 한반도 주둔 공산진영 내 군사 지휘부의 분열을 막고, 중국군으로 하여금 계속 미군에 대항케 하려면 장기전으로 가려고자 한 중국 측의 손을 들어줘야 했기 때문에 ‘무능력자’들을 경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77) 師哲, 『在歷史巨人身邊：師哲回憶錄』(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95年), 503쪽.

78) 王焰主編, 『彭德懷年譜』, 449쪽.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간의 전쟁은 불가피하고, 소련이 중심이 돼 자본주의진영에 대항해야 한다는 자신의 세계전략이 소련공산당 내에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스탈린의 생각이었다.⁷⁹⁾ 스탈린이 김일성과 소련고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한 毛澤東의 11월 13일자 전보를 받은 시점은 그런 상황이었다. 스탈린이 북한 주재 소련군사고문들에게 작전지휘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배경이 작용한 결과다. 그는 11월 6일 바실리에프와 슈티코프를 남한에서의 전쟁지도의 실패, 서울 및 평양 상실 등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체했다. 바실리에프를 대신할 인물로 라주바예프 중장을 북한주재 소련 특명전권대사, 군사고문단장, 소련대사관의 무관 등 세 가지 직책을 겸임케 해 북한에 들여보냈다.

새로 부임한 라주바예프는 11월 18일부터 대사 겸 군사고문 직무를 시작했다.⁸⁰⁾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전장의 자국 대사와 군사고문단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용단을 내려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스탈린의 경질 단행은 중국군 지휘부와 소련군사고문들 사이에 존재한 작전방침상의 견해 차이와 이로 인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내재돼 있었다.

11월 21일, 슈티코프가 스탈린의 조치로 소련 육군성의 명령을 통해 소련군사고문단장 바실리에프가 곧 소환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자 김일성은 “어찌겠습니까. 아마 나도 총사령관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은데요”라고 동석한 슈티코프와 박헌영에게 말했다.⁸¹⁾ 이

79) 姜長斌主編, 『斯大林政治評傳(1879-1953)』(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7年), 606~607쪽.

8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편,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서울: 편자출판, 2001년), 제1권, 9쪽, 19쪽.

81) 국사편찬위원회 편역, 『6·25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15쪽.

발언은 자신도 경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지한 위기의식으로 해석된다. 스탈린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와 비슷한 내용의 전문을 바실리에프에게도 보내 김일성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김일성에게는 내용 중 일부만 전달됐다. 전문내용이 온전하게 전달된 시점은 스탈린이 슈티코프에게 김일성을 중심으로 노동당 내 규율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11월 15일이었지만, 슈티코프는 이 전문(NO. 5583)을 “7일”이나 늦게 김일성에게 전했다. 뒤늦게 이 전문을 받아든 김일성은 내심 자신도 경질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문서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서 정치위원들에게 스탈린의 지시사항을 읽어줄 요량으로 내용을 옮겨 적었다. 슈티코프는 이 전문이 김일성에게 노동당 내 규율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⁸²⁾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전문내용을 종합하면, 이 시기 김일성 자신도 권좌에서 물러날 뻔했으나 스탈린의 재신임으로 구제된 셈이었다.

전문은 한 마디로 작전지휘권을 통합하라는 스탈린의 권고였다. 권고를 받자 김일성은 11월 24일 슈티코프에게 “중국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중조사 창설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그는 박일우에게 彭德懷와 연합사령부를 조직하는 문제를 논의하라고 지시했었다고 한다. 또 彭德懷가 구체적인 문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高崗과의 회의에서 중조사 창설은 중국군의 제2차 전역 후에 가능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⁸³⁾ 요컨대 중조사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彭德懷와 박일우에게 돌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일성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스탈린의 권위를 이용했으며, ‘스탈린의 전보’를 등에 업고 중국의 강요에 따르지 않고 스탈린의 중재 하에 지휘권 단일화에

82) 위 책, 217쪽.

83) 위 책, 217~218쪽.

임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다.⁸⁴⁾ 하지만 앞에서 세세하게 논구한 대로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중재를 요청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재가 된 스탈린의 압력도 毛澤東의 요청 그리고 중국을 대미 견제에 이용하려는 스탈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毛澤東의 김일성 배려와 관련해서 작전권통합을 기피하는 김일성의 우려와 불만이 무엇인지 간파한 중국지도부가 먼저 그의 우려를 덜어준 것도 김일성의 변화를 이끌어낸 요인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毛澤東의 그런 의지는 11월 15일 彭德懷, 김일성, 슈티코프가 자리를 같이 한 ‘3인위원회’ 회의석상에서 高崗의 입을 통해 전달됐다. 노동당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을 결속시켜야 한다”고 한 毛澤東의 말이 그것이다. 毛澤東이 김일성을 노동당 정치사업 강화의 주도자로 추켜세운 건 김일성의 우려를 의식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노동당 고위층 내에 남침결정과 패퇴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던 민감한 시점에 김일성에게 당내 규율과 기강확립을 주도하도록 했다는 것은 곧 그에게 당권을 재확인 해준 조치와 다를 바 없다.

실제로 김일성은 이 시기 스탈린과 毛澤東으로부터 인정받은 재신임에 힘입어 11월 20일과 21일 이틀 연속 군사회의를 열어 몇몇 사단장과 군사령관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저야 할 남침실패의 책임을 당내 정적들에게 덮어씌워 그들을 제거했다. 또 11월 24일 이전, 김일성은 노동당 정치위원회의 석상에서 중국군사령부의 북한군 부사령관 직에는 연안파를 빼고 빨치산과 동료인 김책을 앉히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슈티코프는 김책이 전선사령관으로서 남진시 북한군 3개 사단에 대한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전술상의 과오를

84) 최태현, 「조중연합사(中朝聯合司)가 ‘조선인민군’의 재편성에 미친 영향」, 『軍史』, 제76호, 204~205쪽.

범한 사실을 이유로 그가 부사령관 직위에 임명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⁸⁵⁾ 슈티코프는 박일우와 김웅 모두 중조사 부사령관으로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했고, 김일성도 부사령관으로 나서면 당과 정부의 지도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슈티코프의 조언을 접하자 김일성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해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가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져 11월 29일에 소집됐다. 회의 주제는 당규율 강화, 북경에 보낼 대표선정, 중국군사령부의 북한 측 부사령관의 확정, 북한군지휘부 재심의, 중조사 창설문제, 남한지역 적후방에서의 유격투쟁 강화 등이었다. 이 대회에서 당 지도부는 김일성의 북경방문을 승인했는데, 환언하면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시와 毛澤東이 자신을 북경으로 초청한 사실을 당 내외에 현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높이는데 활용했다. 특히 중국지도부가 김일성의 당내 규율을 주도할 기회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김일성에게 북경방문을 요청한 것은 그의 당내 권위를 인정하고 정치권력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毛澤東은 중국에 대한 김일성의 불만과 의심을 가라앉히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중국군에게도 그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두 차례의 전역에서 승리한 뒤 북한군을 앞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오만함을 보인 중국군 지휘관들을 자숙시키고 그러한 태도를 시정하라고 한 지시가 그것이다.⁸⁶⁾ 당시 북한군과 김일성은 중국군 지휘관들에 대해 불만이 작지 않았다. 그러한 반감이 바로 북한당국이 우군으로서 중국군의 군사지원 사실과 활약에 대해 아무런 선전도 하지 않은 이유였다. 중국군의 지원과 활약을 치켜 세울만 했음에도 아무런 선전을 하지 않은 것은 그 후에도

85) 국사편찬위원회 편역, 『6·25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18쪽.

86) 杜平, 『在志願軍總部』(北京: 解放軍出版社, 1989年), 154쪽.

지속된 북한당국의 일관된 특징이었다.⁸⁷⁾

毛澤東이 북한주둔 중국군 지휘부에게 중국군의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라고 한 지시가 김일성과 북한군의 반감을 얼마만큼 누그러뜨렸는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의 지시에 의거해 12월 14일 彭德懷가 중국군 정치부의 “정치훈령”을 예하 부대들에게 하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군은 북한을 애호하고, 북한주민들의 식량을 마음대로 차용하지 말고 반드시 규정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기율교육을 강화했다. 그리고 기율을 어겼을 경우 적시에 혁명기율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각 군단, 사단, 연대 당위원회별로 각기 군중기율 조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해 북한주민들과 단결하고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⁸⁸⁾

중국수뇌부로부터 지지를 약속 받음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한 김일성은 남한에서 올라온 북한군 패잔병이 3개 군단에 이르고, 어느 정도 전투력이 회복돼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12월 초 이제는 오히려 洪學智에게 애원하다시피 중국군지도부에게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시켜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⁸⁹⁾ 북한군 지휘부는 패잔병으로 남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북한군 9개 사단 9만 명 중 대부분이 북한으로 올라와 원대 복귀하기 시작한 12월 초 이전까지는 북한지역에서 전투다운 전투를 해보지 못했다. 10월 중순부터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한 결과 이 시기는 북한군 제4사단을 주축으로 재편된 제1군단과 중국군의 제2차 전역 중 남한에서 북으로 올라와 북한군 주력군에 합류한 제2군단과 제5군단을 더해 북한군은 제1선의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병력이 총 3개 군단 14개 사단 7만 5,000명을 넘게 될 즈음이었다.⁹⁰⁾ 이 전에 비해 김일성 자신이

87) Suh, Dae-Sook, *op. cit.*, p.138.

88) 王焰主編, 『彭德懷年譜』, 454~455쪽.

89)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101쪽.

90) 中共中央文獻研究室彭德懷傳記編寫組編, 『彭德懷軍事文選』(北京: 中共中央文獻

확실하게 운용할 수 있는 3개 사단 병력에 비하면 2.5배가 증가된 셈이다.

김일성의 참전요청은 전투력이 회복되고 있던 북한군의 전력이 중국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된 상황에 즉응하는 조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김일성이 중국수뇌부의 지지를 받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5. 맺는 말

본 연구로 중국수뇌부가 중국군파병 전에 이미 파병에 필요한 각종 군사적, 정치적 조건을 북한 측에 제시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사실이었을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사실 대규모 병력을 타국에 주둔시켜 전쟁을 수행하게 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파병 전에 미리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하는 건 상식에 속한다. 당시 중국지도부도 그런 상식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요구한 조건은 승전을 보장하는 불가피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북한의 주권과 김일성의 군권은 물론, 나아가 정치권력까지 적지 않게 제한한 내용이었다. 이는 주권과 군권이 침해당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김일성 개인의 정치적 몰락 가능성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거부하거나 묵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중국군 입북 후에도 毛澤東은 彭德懷를 통해 김일성에게 10월 하순에서 11월 하순에 이르는 달포 사이에 최소 5회(10월 21~22일, 11월 7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23일)나 중북 양군의 군사 작전권을 통합하자고 요구했다. 이것은 곧 파병 전에 요구한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에 다름 아니었다.

입북 초기 중국군지도부는 이 문제를 김일성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작전권통합 거부는 지속됐다. 중국 측의 사전 요구사항을 용인했을 경우 북한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었고, 자신에게도 기존에 행사해오던 군권이 박탈당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동당 내에는 남침실패에 대한 책임공방이 불거져 나온 상황에서 군권이 박탈되고 스탈린의 지지를 잃게 되면 자칫 상당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었다. 김일성에게 그것은 양날의 칼이자 양립불가의 모순이었다. 따라서 김일성으로선 애초부터 작전지휘권 통합과 이를 현실화시킬 중조사를 만들 생각이 없었고, 단지 양군이 각기 독립적인 형태로 작전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작전협조를 행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 주장은 중북 양군이 각기 참모를 파견해 통신연락, 정보교환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양군 사령부가 통합하는 형식에는 김일성이 동의하지 않은 사실에서 입증됐다. 또한 그는 彭德懷에게 중국군 단독 전투를 요청했고, 실제로 중국군은 제1~2차 전역을 단독으로 치렀다.

문제는 제1차 전역 후 제2차 전역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전쟁지도에서 나타났다. 즉 여세를 몰아 계속 남진공격을 가하자는 김일성-소련군사고문들과 부대정비와 휴식을 취한 후 남진하자는 彭德懷의 의견이 서로 대립한 것이다. 중국군이 두 차례의 전역에서 모두 승리함에 따라 미군과 한국군의 북진이 저지되고 청천강 이남으로 밀려나자 속전속결을 바랐던 김일성은 중국군이 서전의 승세를 몰아 휴식 없이 계속 남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재 소련군사고문들이 김일성의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반면 彭德懷는 김일성과 毛澤東의 강공 지시와 달리 장기전을 예상하면서 병사들의 휴식과 부대정비 후 재공격 하자는 입장에서 지연전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전쟁방침의 상이가 중국군과 김일성 및 소련군사고문들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김일성은 완고하게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전쟁을 통괄하는 彭德懷의 눈에는 그들이 실제 병사들과 보급 상태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공격만 하자는 성급하고 저돌적인 주장으로 비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그로서는 제거되지 않으면 전쟁 지도와 수행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하나의 장애물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毛澤東은 스탈린의 힘을 빌려 김일성, 슈티코프와 소련군사고문들에게 중국군과의 작전지휘권 일원화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김일성과 소련 측 인사들의 '전향'에는 얼마간의 시간차가 존재했다. 즉 슈티코프는 11월 15일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즉시 彭德懷에게 양군 작전통합사령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김일성은 그 전문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것은 곧 부정한다는 의미였다.

김일성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7일” 뒤인 11월 23일 혹은 24일 이후부터였다. 毛澤東이 高崗을 보내 김일성이 우려하는 바를 해소 해주겠다고 해도 김일성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김일성에 대한 재신임을 전제로 한 스탈린의 지지가 毛澤東의 지지 보다 더 우선적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김일성의 마음을 바꾸게 만든 최대 동인으로서 김일성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했다.

우선 스탈린은 한반도에서의 중미 대결이라는 소모전을 지속시켰다는 자신의 전략적 목적을 지속시키고자 중국 측의 장기전 전쟁방침이 옳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동시에 김일성과 소련군사고문들이 작전지휘권 통합을 찬성하도록 해주라는 毛澤東의 요청을 받아들여 남침실패와 평양 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의 소련대사와 군사고문들을 철직시켰다. 스탈린은 이 때 김일성도 함께 제거의 대상으로 고려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일성 역시 스탈린의 속내를 어느 정도 직감했을 것이지만 스탈린은 소련인들만 소환하고, 김일성은

대안 인물 부재를 이유로 재신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전지휘권의 통합을 요청한 毛澤東의 의지를 담은 스탈린의 지시는 김일성에게 바로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힘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스탈린의 지시 외에 김일성의 찬성을 이끌어낸 간접적인 요인은 또 있었다. 김일성이 군권을 중국군지휘부에 양보하면 생겨날 수 있는 상황, 즉 김일성의 권력이 박헌영이나 혹은 중국의 비호 속에 있는 연안파 등 이른바 반김일성과 세력에게 탈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毛澤東이 불식시켜 준 사실이다. 이 점은 멀리 중국군 파병 전 김일성이 두 차례나 중국 측에 대한 지원요청을 강력하게 반대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데다 중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김일성은 이러한 중국 측의 파병과 파병조건의 요구로 인해 권력 상실이 현실화될 것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으로선 당내 권력을 확실하게 보장 받기 전에 군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연안파 등 반김일성파에 밀려 유엔군과 한국군의 인천상륙에 대한 저지 실패와 38도선 이북으로의 퇴각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권좌에서 밀려나야 할 위험천만한 도박이 아닐 수 없었다. 김일성과 彭德懷 두 사람이 합의를 보지 못한 이면의 원인이 존재했었다면 그것은 바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전쟁의 패배 책임공방과 얽힌 권력투쟁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사이 중국수뇌부가 高崗을 통해 김일성에게 남침실패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당과 군내 규율 내지 기강정립을 빙자해 반김일성파를 제거할 수 있는 정치적 권위를 보장해줌으로써 그의 우려를 제거해줌과 동시에 그의 노동당 내 정치적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해준 것이다. 김일성은 자신이 권력에서 배제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전에는 북경 측의 그런 배려를

믿지 않다가 스탈린의 재신임과 지시가 있자 비로소 중국군과의 작전협조에 적극 나섰고, 그것이 중조사 설립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조사 창설시 중북지도부 간에 조율된 약정과 파병 전 중국 측의 요구조건과의 비교분석에서 밝혀졌듯이 중국은 김일성이 처한 약점을 활용해 약간의 변경을 거치긴 했지만 처음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킨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군사작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중국군이 가지고, 북한군지휘부는 후방지원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다. 한편, 우리는 휴식 후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한 彭德懷의 의사가 철회되고 남진공격이 계속된 사실과 김일성이 스탈린의 재신임과 지시를 자신의 당내 정치적 입지 유지와 정적들의 비난에 대한 반전에 교묘하게 활용한 민첩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총괄하면, 중조사는 스탈린의 압력이 매개가 돼 김일성과 毛澤東이 각기 자신의 입장과 목적에 따라 공동의 접점을 찾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일성이 북한군 지휘권을 중국군 지휘부에게 넘겨줌으로써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군사지휘권을 회복하지 못하고,⁹¹⁾ 단지 북한군 최고사령관이라는 명목상의 직위를 가지고 당내 정치권력만을 행사하는데 만족해야 했던 것도 이 시기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원고투고일: 2015.4.5, 심사수정일: 2015.5.21,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한국전쟁, 6·25전쟁, 중조연합사령부, 중국군의 한국전쟁 파병, 중북연합군

91)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 옮김, 『한국전쟁』, 203쪽.

<ABSTRACT>

Reargument of Sino-North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Establishment

Suh, Sang-mun

This research has found that it is probable that Beijing had demanded Pyeongyang to accept the military and political terms which were necessary to serve the war before sending its troops. Although the terms which Beijing suggested to Pyeongyang before dispatching troops were inevitable requirements to ensure its victory of war, the terms contained some factors that would limit military and political authority of Kim Il-sung, and eventually sovereignty of North Korea. The response of Kim Il-Sung at first was refusal. It was not surprising to see him refusing China's requirements because accepting them meant the higher possibility of political downfall of Kim Il-Sung himself and infringemen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military control.

Despite Pyeongyang's refusing to accept the terms, Mao Zedong (毛澤東) had constantly delivered his message to Pyeongyang, at least five times, to combine China and North Korea military commands through various communication routes, after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PVA) entered North Korea from late October to late November. Mao's suggestion meant the coercive pressure imposed on Kim to accept the terms. However, Kim had no intention to build an alliance between the troops. As such, Kim merely responded to Mao that the two troops will conduct operations under each command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f needed.

Because Kim constantly denied the alliance, Mao tactically used Stalin's authority to make Kim, Shtikov, a Soviet ambassador to

North Korea, and Soviet military advisers agree on the unity of command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Stalin recognized China's long-term war strategy for his strategic intention which contains a goal of continual power consumption of China and U.S. i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Stalin accepted Mao's request which was to make Kim and Soviet advisers agree on the alliance and then he summoned the ambassador and military advisers to North Korea to make them take the responsibility of the failure of North Korea's invasion to South Korea. Kim, who had not even moved by Gao Gang(高崗) sent by Mao, agreed on the alliance because of the supports and pressure from Stalin who had started to trust Kim just then. Kim had finally begun to cooperate to Mao after achieving supports from Stalin, which led to establish the Sino-North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before then, Kim had distrusted Beijing due to his fear to be deprived of his power. It means that Stalin's support was prior to that of Mao for Kim.

Meanwhile, it can be evaluated that China accomplished its original purpose by strategically using Kim's surrounding situational vulnerability, although the original terms had to go through a few modifications. In conclusion, the Sino-North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was a result of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Kim Il-sung and Mao Zedong to achieve their own respective interests.

Key word : Korean War, Sino-North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Dispatching China troops to Korean War, Sino-North Korea
Combined Forces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군 철수 의제

김 보 영*

1. 들어가는 말
2. 휴전회담 시 외국군 철수 논쟁
 - 가. 외국군 철수 제안과 쟁점
 - 나. 휴전협정 제4조 60항 정치회담 조항
3. 전후 정치회담과 외국군 철수 의제
 - 가. 1953년 판문점예비회담과 의제선정
 - 나.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의 의제와 쟁점
 - 다. 동맹조약과 정전체제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한반도에서 외국군의 철수 문제는 휴전회담에서는 물론이고 전후 정치회담의 주요 의제이자 쟁점이었다.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은 모두 정전협정 체결 이후 외국군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정전협정문에 외국군대 철수 문제는 포함되지

* 한양대학교 교수

않았다. 전시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측은 외국군 철수 문제를 정치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를 회피했다. 반대로 공산군 측은 이것이 휴전의 전제조건이자 전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군사적 휴전’만을 다루고 정치문제를 전후 과제로 넘김에 따라 외국군 철수 문제는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해야 하는 하나의 ‘의제’로 설정되어 있었다.

휴전 직후 정치회담 개최를 위한 판문점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정치회담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그 후 강대국들의 합의에 따라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이 개최되었고, 이것은 휴전협정에서 규정한 성격의 ‘정치회담’으로 수용되었다. 그에 따라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에서는 정전협정에 따른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곧 통일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때문에 제네바정치회담은 전후 정전체제의 출발점이자 한반도 통일방안을 공식적으로 다룬 처음이자 마지막 국제회의로 인식되어 왔다.

제네바정치회담에서는 다양한 통일방안이 제기되었지만,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 외국군 철수문제와 유엔의 지위 문제 등이 쟁점이 되자, 미국은 16개국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후 회담을 일방적으로 마무리하였고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다.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제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 때문에 회담을 실패로 규정하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제네바정치회담 관련 연구는 통일방안을 둘러싼 주요 당사국들의 입장과 전략에 대한 연구, 남북한 통일방안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지만, 점차 시야를 넓혀 동북아 냉전질서와의 관련성, 유엔과의 관계 등이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¹⁾ 외국군 주둔

1) 라종일, 「제네바정치회담 : 회담의 정치, 1954.4.26/6.15」, 『고향정치학회보』 1권, 1997; 권오중, 「제네바 한국평화회담(1954)의 진행, 결과 그리고 의미 : 한반도 6자 회담의 원형?」,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2005; 홍용표, 「1954년 제네바회의와

및 철수 문제는 미국의 전후 대한정책 및 동북아정책,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 이승만정부 시기 남한의 통일정책과 북진정책,²⁾ 전후 북중관계 및 중국군 철수, 중조동맹조약 등의 연구를 통해 그 성격과 의미, 평가 등이 진행되었다.³⁾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전후 한반도의 외국군 주둔은 남과 북에 의한 치명적인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제어하고, 불안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그에 따른 한미동맹구조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안보의 핵심 기재이자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로 인식된다. 전후 한반도 분단구조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는 한미동맹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미일동맹 뿐 아니라 조중동맹과 조소동맹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군사적 대립구조 속에서 분단을 유지했으며, 이는 단순히 남과 북의 대립구조가 아닌 동맹구조의 대립이라는 점 등이 연구를 통해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 모색」,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1호, 200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조정원 「제네바 회담과 북한의 평화통일론」, 『북한의 통일정책』, 을유문화사, 1989; 김보영, 「제네바정치회담과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연구」, 『국사관논총』 7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7; 이신철, 「남북정상회담의 전사 : 남북협상과 1950년대 통일논의」, 『사림』 25집, 2008; 김연철, 「1954년 제네바 회담과 동북아 냉전질서」, 『아세아연구』 제54권 1호, 2011; 홍규덕, 「UN과 제네바 회담의 의미와 교훈」, 『유엔과 한국전쟁』, 리북, 2004.

- 2) 조성훈, 「한국전쟁 후 ‘중공군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2(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년 2월; 한용섭, 「한국의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 역사적 고찰과 양립가능성에 관한 연구」, 『군사사연구총서』 제4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김일영, 「한반도의 ‘긴 평화’와 한미동맹 : 「삼위일체+1」 구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전망」,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2008년 가을(통권 제81호); 이철순 「한국전쟁 휴전 이후 주한미군 잔류정책 : 미국의 국가이익 규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Vol.8, No.1, 2005; 이성훈,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이승만정부의협상전략」, 『군사』 77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0; 정준갑,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1953~4): 냉전의교의 한계」, 『미국사연구』 15집, 2002; 김일영, 「이승만 정부에서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치 : 북진·반일정책과 국내정치경제와의 연계성」, 『국제정치논총』 39집 3호, 1999.
- 3) 박병광, 「북중동맹조약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소고 : 한미동맹조약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02년 6월호; 박영실, 「중공인민지원군과 북-중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0.

부각되었다.⁴⁾

그러나 제네바정치회담을 주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거나 국제관계의 차원에서 접근하였을 뿐, 애초에 정치회담의 주요 의제로 제시되었던 외국군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외국군 주둔 및 철수, 동맹구조를 다룬 연구들 역시 그것이 휴전회담과 정치회담의 주요 의제였다는 사실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1954년 제네바회담이 휴전협정에서 규정한 성격의 정치회담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네바정치회담의 주요 의제와 쟁점, 성격과 의미 등을 휴전회담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을 외국군 철수 의제를 중심으로 전쟁 시기 휴전회담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를 위해 첫째 휴전회담에서 다루어진 외국군 철수문제의 배경과 쟁점 및 합의사항, 둘째 1953년 판문점 예비회담과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에서 외국군 철수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 셋째 휴전회담 및 휴전 직후 양측의 철군과 잔류, 동맹조약 체결 등을 정치회담의 의제인 외국군 철수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휴전 직후 제네바정치회담을 통해 국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 중조동맹조약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잔류 등이 결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한편의 결정은 다른 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한반도 분단구조의 원형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전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주한미군 철수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며, 나아가 휴전 직후 정전체제 형성과정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4) 김일영, 「한반도의 ‘긴 평화’와 한미동맹 : ‘삼위일체+1’ 구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전망」,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2008년 가을(통권 제81호), 13쪽.

2. 휴전회담 시 외국군 철수 논쟁

가. 외국군 철수 제안과 쟁점

한국전쟁 시기 외국군 철수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소련이었다. 1950년 10월 2일 비신스키 소련 유엔대표는 즉시 정전과 유엔군 철수를 주장하는 공동결의안을 유엔정치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한국민중이 국내문제를 자신들의 손으로 해결하고 주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유엔군이 즉시 철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 유엔을 통한 일련의 휴전 노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공산측은 외국군 철수 주장을 되풀이했다.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공산군 측은 외국군 철수 문제를 의제로 내세웠다. 북한은 휴전회담 시작 전 협상기본전략을 수립하면서, ‘2개월 내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⁶⁾ 이때 중국이 마련한 휴전협상전략에도 역시 “모든 외국군대는 일정한 기한 내(예를 들어 3~4개월 안에) 철수한다”는 항목이 있었지만, 북한과는 달리 기본원칙이 아니라 부차적 문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과 중국 간에 이 문제를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공산군 측의 협상기본전략은 중국의 안대로 짜여졌다.⁷⁾ 이후 회담 과정에서 공산군 측은 ‘외국군 철수’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일종의 협상용 카드로 활용했다.

5) 서울신문, 1950년 10월 5일자, ‘비신스키 소련 유엔대표, 즉시 정전과 유엔군 철수를 주장하는 공동결의안을 유엔정치위원회에 제출’.

6) 「북한주재 소련대사 라즈바예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51. 7. 1)」, 러시아연방 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0, 3~4쪽.

7) 공산군 측 협상전략과 협상지휘계통 확립과정에 대해서는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0 참조.

공산군 측은 외국군 철수 문제를 회담 첫 단계인 의제선정 단계에서부터 들고 나왔다. 공산군 측은 외국군 철수 문제를 의제로 선정하고자 시도했지만, 유엔군 측은 이를 거부하고 나중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회피했다.⁸⁾ 미국은 외국군 철수문제는 정치문제라고 보았다. 미 합참은 유엔군사령관에게 “개성의 협상대표들은 다만 군사적 휴전문제만 토의해야 하며, 군대의 철수는 정부급에서 토의되어야 한다고 적의 대표들에게 확실히 환기시키라”고 지시했다. 7월 16일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어떤 인상도 적에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릿지웨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시했다.⁹⁾ 며칠 후인 7월 19일 미국무부는 “유엔군은 한국에 진정한 평화가 수립될 때까지 휴전 후에도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요지의 공개성명을 발표했다.¹⁰⁾ 철군론을 공개적으로 부정하여 회담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였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이 외국군 철군문제를 정치문제로 규정한 것이 ‘일부러 만든 논리적 함정’이며, 외국군 철군은 휴전을 보장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대표 남일은 한반도에서 외국군 주둔이 전쟁의 주된 원인이며 전쟁이 장기화되는 원인이므로, 이 요인을 제거하면 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외국군 철수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중국은 이 문제로 계속 논쟁하기 보다는 휴전 이후 협상의제로 삼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했다.¹¹⁾

8) 제6차 본회담, 1951. 7. 18, 『남북한관계사료집』(휴전회담회의록) 1권, 군사편찬위원회, 1994, 85~107쪽.

9) ‘합참에서 릿지웨이사령관에게 보낸 전문, 1951. 7. 16’, 전사편찬위원회 역, 『미국합동참모본부사 : 한국전쟁 하』, 1990, 33쪽.

10) 『미국합동참모본부사』, 38쪽.

11) 「마오쩌둥이 리커닝에게 1951. 7. 17」 소련군 참모본부 제2총국 제21960호 암호전보(1951년 7월 18일자);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1951. 7. 20, 소련군 참모본부 제2총국 제21439호 암호전보.

공산군 측은 7월 25일 제9차 본회담에서 “제5항 쌍방의 관계각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항목에서, 휴전 실현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쌍방이 고위급 대표회담을 소집하여 한국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군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유엔군 측은 “쌍방의 관계된 정부에 건의한다”는 모호한 표현에서 ‘건의’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언질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공산군 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휴전회담 마지막 의제인 제5의제로 채택되었다.¹²⁾

의제 채택과정에서 외국군 철군 문제를 휴전 이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제5의제에 포함시켰지만, 공산군 측은 다른 의제 협상 중에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들고 나왔다. 제3의제인 휴전감시방법과 기구협상에서도 공산군 측은 이를 외국군 철군 문제와 결부시켜 주장했다.¹³⁾ 그러나 유엔군 측은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회피했다. “외국군 철군 문제는 휴전회담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관계제국 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질 주제”라는 것이 유엔군 측의 분명한 입장이었다.¹⁴⁾

나. 휴전협정 제4조 60항 정치회담 조항

제5의제인 ‘관계제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협상은 1952년 2월 6일 시작되어 총 8차례 회담을 진행했다. 휴전회담은 본회담과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요 의제들을 협상했는데, 다른 의제들이 분과위원회를 따로 두고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한 데 비해 정치회담

12) 제10차 개성 본회담, 1951. 7. 26, 『남북한관계사료집』 1권, 152~161쪽. 휴전회담은 모두 5개 의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회의 의제 채택을 위한 제1의제, 제2의제인 군사분계선 설정, 제3의제인 휴전감시방법과 기구협상, 제4의제 포로송환협상, 제5의제인 관계제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협상, 즉 정치회담 관련 협상 등이었다.

13)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8, 118~123쪽.

14) 제32차 본회담, 1951. 12. 1,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 80~98쪽.

관련 제5의제는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담에서만 다루어졌다. 제5의제가 공산군 측 제안에 따른 것이었던 만큼 공산군 측은 주도적으로 제안을 내놓았다. 2월 6일 제5의제 회의 첫날 공산군 측은 이 의제의 목적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을 닦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방법, 절차,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전 성립 후 정치회담이 신속히 열려야 하며, 외국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공산군 측의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북한과 중국 양국 정부를 일방으로 하고 유엔의 관련국 정부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정전협정이 서명되고 발효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대표 5인씩을 파견하여 정치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내용을 협상한다.

-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군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 한국의 평화와 관련되는 기타 제문제¹⁵⁾(밑줄 강조 : 인용자)

주요 내용은 참가주체와 개최 시기, 의제 문제였다. 참가주체는 북한과 중국을 한편으로 하고 유엔의 관련국 정부를 다른 한편으로 하며, 개최시기는 정전 발효 후 3개월 이내, 의제는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의 평화와 관련되는 기타 제문제 등이었다. 교전 양측을 회담의 참가주체로 설정했지만, 한국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처음 공산군 측이 이 제안을 내놓았을 때 유엔군 측이 문제 삼은 것은 협상 의제 가운데 세 번째 항목으로 제시한 ‘한국의 평화와 관련되는 기타 제문제’였다. 유엔군 측은 이것이 중국과 북한의 유엔

15) 제36차 본회담, 1952. 2. 6, Enclosure (1) : *Draft of Principle Proposed by the Deleg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Fifth Item of the Agenda*,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 149~154쪽.

가입 및 대만문제를 연계하려는 것으로 추측하고 ‘평화와 관련된 한국내의 기타 문제’로 수정한 제안을 2월 9일 회담에서 제시했다. 다음은 유엔군 측 수정안이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지휘관들은 각국 정부와 관계 당국, 즉 일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타방 국제연합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다음 제 문제가 최고 수뇌의 정치회담 또는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 처리될 방책을 간구할 것을 건의한다.

- 한반도로부터의 외국군 철군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 평화와 관련된 한국내의 기타문제¹⁶⁾(밑줄 강조 : 인용자)

유엔군 측 제안이 공산군 측과 차이를 보인 점은, 회담 참가주체를 확대하여 북한과 중국을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유엔과 남한을 명시했다는 점이었다. 또한 유엔군 측 제안에서는 방점은 제안 말미의 ‘건의한다’는 문구에 있었다.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의 제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명확한 규정 없이, 당사자들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건의한다’는 문구를 문장 끝 부분에 삽입했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 제안이 모호하며 정치회담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킬 근거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이 한국 내에 있는 중국군은 지원군이기 때문에 정치당국의 결정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했으므로, 휴전 후 개최될 정치회담에 중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상대방을 공격했다.¹⁷⁾ 유엔군 측은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항도 토의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 관계없는 군사적 사항도

16) 제37차 본회담, 1952. 2. 9,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 155~157쪽.

17) 제38차 본회담, 1952. 2. 10,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 160~169쪽.

토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제5의제의 논점은 참가 주체와 의제 설정 문제로 귀착되었다. 공산군 측은 예상과 달리 북한과 중국만 주체로 제시하고 소련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참가시키자는 유엔군 측 제안은 묵살했다. 또한 유엔 가맹국의 전부가 전쟁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엔을 참가시키자는 제안도 반대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란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즉 현지 군사령관들이 정치당국에 ‘건의’하는데 있어 정치적 회담의 성격, 규모, 양식 등을 규정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정치적 해결을 위한 방법 및 기구는 고위당국자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이었다. 유엔군 측은 이 제안을 다만 ‘건의’ 정도로 의미를 축소하고자 했다. 결국 공산군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완화시킨 수정안을 2월 16일 제시했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쌍방 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제국 정부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각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고위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반도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밑줄 강조 : 필자).¹⁸⁾

휴전 조인 후 3개월 내에 정치회의를 개최하며, 논란이 되었던 ‘한국의 평화와 관련되는 기타 제문제’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회담 참가국을 명시하는 대신 ‘쌍방의 관계 제국 정부’로 수정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특이한 점은 유엔군 측이 제시한 문장 말미의 ‘건의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수용한 점이었다.

다음날 유엔군 측은 이 제안의 표현 중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이 한반도와 관련된 것 이외의 사항이 아니라는 점, 외국군이란 비한국군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명확히 하는 조건

18) 제41차 본회담, 1952. 2. 16,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 192~195쪽.

부로 이 제안을 수락했다.¹⁹⁾ 공산군 측 대표단은 유엔군 측이 자신들의 제안을 너무 쉽게 수락한 것에 당황했지만,²⁰⁾ 유엔군 측은 이것이 아주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유엔군 측 표현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유엔군측 협상대표인 조이 제독은 그의 회고록에서, “공산군 측 대표단은 유엔군 측이 너무 쉽게 수락한 것에 당황하여 여러 차례 휴회를 요구하였으며, 그들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앉았는데 심사숙고하는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공산군 측은 ‘건의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모르고 수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로써 공산군 측의 애초 제안에 비해 구속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공산군 측의 2월 16일자 수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휴전협정에 명문화되었다. 휴전협정문에 담긴 정치회담 관련 조항 제4조 60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60항

쌍방은 각 해당국 정부에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 (밑줄 강조 : 인용자)

다른 의제에 비해 협상과정도 짧고 쉽게 타결을 본 것은, 양측이 구체적인 사안으로 대립하기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논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타협’한 결과였다. 그만큼 휴전 이후 정치회담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고, 회담의 전망은 불투명했다. 공산군 측은 애초에 의제 선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19) 제42차 본회담, 1952. 2. 17,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 196~198쪽.

20) Joy, *How Communists Negotiate*, pp.135~136(『미국합동참모본부사』 1979, 529쪽 재인용).

외국군 철군 문제를 여기서 분명하게 다루고 싶어 했지만, 유엔군 측이 구체적 토의를 회피함으로써 협상은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결국 공산군 측이 휴전 후 논의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유엔군 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양측이 타협했지만, 협정의 구속력은 그만큼 더 약화된 셈이었다. 그러나 외국군 철수문제를 의제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휴전 이후 정치회담에서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쟁점이 될 여지는 남아 있었다.

3. 전후 정치회담과 외국군 철수 의제

가. 1953년 판문점 예비회담과 의제선정

유엔군사령부는 휴전회담의 경위와 전망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했고, 1953년 8월 17일 유엔 임시총회는 한국휴전협정을 승인했다. 8월 28일 유엔총회에서 정치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희망할 경우 소련의 정치회담 참가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²¹⁾ 중국과 북한은 정치회담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에 중국과 북한이 참가할 것과 정치회담 참가국을 확대하여 중립국을 포함하는 원탁회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²⁾ 1953년 10월 26일부터 판문점에서 정치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이 날은 휴전협정에서 합의한 정치회담 개최 시한을 하루 남겨둔 시점

21) Resolution 711(VII)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8 August 1953, "Implementation of Paragraph 60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유엔 한국문제결의집(1947~1976)』, 외무부, 1976, 175~177쪽).

22) 「정치회담에 관한 유엔총회 결정과 관련하여 외무부상의 전문, 1953. 9. 14」, 『북한대외정책기본자료집Ⅱ』, 동아일보사·안보통일문제조사연구소, 1976, 529~532쪽. 이 전문에서는 9월 13일 중국 외교부장 주은래가 유엔총회에 보낸 건의안에 전적으로 찬동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었다.

판문점 예비회담은 1953년 10월 26일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총 23회의 대표회의(Meeting of the Representatives)와 6회의 참모회의(Meeting of the Staff Advisers), 그리고 정치회담의 구성, 장소, 시기를 다룬 소위원회(Meeting of Subcommittee)가 9회 열렸다. 대표회의에는 유엔군 측을 대표하여 미국대표 아서딘(Arther H. Dean)이 참가하여, 공산군 측 대표인 기석복(북한 대표)과 황화(중국 대표)를 상대로 설전을 벌였다. 판문점 예비회담에도 한국 대표는 없었다. 소위원회는 정치회담의 구성, 장소, 시기 등 구체적 항목을 다루었다는 차이뿐, 대표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했지만, 소위원회가 마무리되고 다시 열린 1953년 11월 30일 제14차 회의에서 북측은 5개조 15개 항목의 전반적 제의를 담은 제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정치회의 참가 주체와 장소, 시일, 의제 등이었다.²³⁾

제1조 정치회의의 성원 및 장소

1. 정치회의는 정전협정 조인 쌍방간의 대등한 회의의 형식을 취한다. ...
정치회의에 참가하는 정전협정 조인 쌍방 관계국가들로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화 인민공화국 양국을 일방으로 하고 연합국군에 자기의 무장부대를 제공한 국가들, 호주, 백이의, 캐나다, 콜롬비아, 에디오피아, 불란서, 희랍, 룩셈부르크, 화란, 뉴질랜드, 비올빈, 태국, 토이기, 남아연방, 영국, 미국 및 남조선의 17개 국가들을 다른 일방으로 한다.
2. 정치회의의 모든 결정은 반드시 정전협정 조인 쌍방 관계 국가들의 일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매개 조인 국가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정치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회의는 5개의 기타 관계 중립국가들 소련,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및 미얀마를

23) 제14차 판문점 예비회담 회의록, 1953. 11. 30, 한국전쟁 자료총서 18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11~127쪽.

초청하여 회의의 성원으로로서 참가하게 한다. 단 그들은 쌍방의 어느 일방에도 속하지 않는다. 중립국가들은 쌍방간에 합의된 정치회의의 전체 의정항목의 토의에 아무 제한 없이 참가하고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쌍방간의 합의의 달성을 촉진시킨다. 중립국가들은 또한 전체회의의 종속기구에 참가한다. 그러나 정치회의와 그 종속기구의 모든 표결에 중립국가들은 참가하지 않는다.

4. 정치회의는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한다.

제2조 정치회의의 시일

5. 정치회의의 개최시일은 1953년 12월 28일로 정한다.

제3조 정치회의의 절차

6. 정치회의의 의정

ㄱ. 전쟁포로 문제

ㄴ.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하는 문제

ㄷ.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

ㄹ. 기타 관계 문제

7. 정치회의의 표결 절차 ... (이하 생략)

공산군 측 제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회의 형식과 참가주체에서 정전협정 조인 쌍방간의 대등한 회의 형식을 제시하며, 북한과 중국을 일방으로 하고, 유엔 참전 16개국 및 한국을 일방으로 회담 주체를 설정한 점, 둘째 모든 결정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매개 국가에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 셋째, ‘정치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소련,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및 미얀마 등 5개 중립국가를 회의에 참가시키되 표결은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었다. 또한 정치회담 개최 시일은 1953년 12월 28일, 장소는 인도의 뉴델리로 제안하고, 정치회담의 의제로 전쟁포로 문제, 외국군 철수 문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타 관련 문제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을 대표해 회담에 참가했던 미국은 정치회담은 교전 양측이 참가하는 회의가 되어야 하며, 전쟁포로는 회담과

무관하다며 의제 채택을 거부했다. 당시 판문점 예비회담은 포로문제와 미묘하게 얽혀 있었다. 정치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열리고 있던 당시 판문점의 다른 한편에서는 1953년 10월 15일부터 중립국포로송환위원회 관리 하에 남은 송환거부포로들을 대상으로 ‘설득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때 북한이 정치회담의 의제로 포로문제를 추가한 것은 포로협정에 따른 것이었다. 다른 의제들이 모두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상은 포로문제로 인해 일 년여를 더 끌었다. 회담의 결렬과 재개, 그 과정에서 유엔총회에서 포로문제 해법 제시 등의 과정을 거쳐 양측은 1953년 6월 8일 제146차 본회담에서 포로송환협정에 합의했다. 자원송환원칙에 따라 송환거부 포로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양측은 이들을 중립국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3개월 내에 처리하되 그 후에도 남은 포로는 정치회담으로 넘겨 30일 기한 내에 결정하도록 합의했다.²⁴⁾ 포로처리를 정치회담과 연계시킨 이러한 결정 때문에, 휴전 이후 정치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열린 판문점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은 특히 인도의 정치회담 참가를 강하게 반대했다. 중립국포로송환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한 인도는 한국정부와 이승만의 강한 반발과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1953년 11월 5일 한국정부는 인도가 유엔과 판문점에서 공산주의 노선을 추종한다고 비난하며, 정치회담 참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²⁵⁾ 1953년 12월 12일 열린 23차 판문점 예비회담에서는 공산군 측이 한국의 반공포로석방은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를 빌미로 미국측 대표 아서 딘은 일방적으로 회담 중단을 선언했다.²⁶⁾ 1953년 12월

24) 제146차 본회담, 1953. 6. 8, Enclosure(1) : *Terms of Reference for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 952~963쪽.

25) ‘Denounced Delay in Opening of Korean Political Conference’, Nov. 5, 1953, 공보국장 갈홍기 담화, 한국전쟁자료총서 19권, 국방군사연구소, 1998, 5쪽.

26) 제23차 판문점 예비회담, 1953. 12. 12(『Records of the Korean Political Conference of the U.S. State Department, 미국무부 한국정치회담문서-판문점 예비정치회담 회의

14일 북·중 대표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국 측의 일방적 회담 중단을 비판하고 회담을 계속할 것을 주장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1953년 7월 19일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측 대표 남일이 송환거부포로의 최종 처리 문제를 정치회의에 넘겨 토의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미국 측이 한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²⁷⁾ 북한은 미국이 판문점 예비회담을 결렬시킨 주요인이 포로 문제라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했다.²⁸⁾ 그러나 판문점 예비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미국은 12월 23일에는 전쟁포로에 대한 설득회도 일방적으로 마무리했다. 그 후 유엔군 측은 설득회 이후에도 남은 송환거부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했다.²⁹⁾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과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결하여야 할 포로문제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반발했지만,³⁰⁾ 미국의 일방적 처리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애초에 정치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던 포로문제가 발미가 되어 판문점 예비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정치회담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

록』, 한국전쟁사료총서 18권, 국방군사연구소, 1998, 266~298쪽); 한표옥 『이승만과 한미외교』, 중앙일보사, 1996, 180~182쪽.

27)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쌍방회담을 중단시킨데 대한 조·중측 기석복 대표와 황화 대표의 공동성명”, 한국전쟁 자료총서 19권(판문점 예비회담 관련 문서), 국방군사연구소, 1998, 156~160쪽.

28) 성명서에서 북한은 “미국이 판문점 예비회담을 지연시키는 목적은 유엔총회가 끝난 후에까지 끌어 정치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결을 받지 않은 2만여 명의 송환거부 포로를 강제로 억류하려는 것이며, 지금 유엔총회가 폐회되자마자 미국정부 대표는 하등의 근거도 없는 구실로 급급히 쌍방회담을 중단시키고 정치회의 개최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미국이 포로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판문점 예비회담을 지연시키다가 유엔총회가 끝나자 회담을 중단시킴으로써 정치회의 개최를 파탄시켰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29) 김보영, 「유엔군의 포로정책 : ‘석방’과 ‘송환’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6집, 2012, 33쪽. 일방적으로 석방 처리된 중국군 송환거부포로들은 1954년 1월 21일 대만으로 보내졌다.

3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상 남일 성명, 1953년 1월 10일”, 한국전쟁 자료총서 19권, 90~95쪽.

졌다. 미국은 판문점 예비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면서 포로문제에 대한 공산군 측 대표의 모욕적 발언을 문제 삼았다. 공산군 측은 이를 회담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지만, 협상을 재개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었다. 휴전회담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했지만, 그에 비해 전후 정치회담은 일방적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결국 실무자급의 예비회담이 결렬된 후 양측은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다.

나.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의 의제와 쟁점

판문점 예비회담이 기약 없이 결렬되자 소련과 중국, 북한은 유엔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1954년 1월 9일 중국 외교부장 저우언라이는, “유엔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책임지고 강구해야 하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가 토의된다면 북·중 양국 정부는 대표를 파견하여 이 토론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날 북한 외무상 남일도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남일의 주장은, 첫째 저우언라이의 1월 9일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유엔총회가 조선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 둘째 “국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프랑스·영국·미국·소련 및 중국의 5대강국회담을 소집하자”는 소련정부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셋째 저우언라이 성명에서 “앞으로 베를린에서 열릴 4대강국 외상회의가 긴급한 국제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중국이 참가하는 5대강국 회담을 소집하는 데로 인도되는 것이 긴장상태를 완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판문점 예비회담의 실패로 다른 방식으로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미·영·불·소 4개국 외상회의가 1954년 1월 25일 베를린에서 소집되었는데, 여기서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의 개최가 결정되었다. 4개국 외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 독립된 한국을 수립하는 것이 국제긴장 완화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의를 1954년 4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에 따라 1954년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되었고, 한국과 유엔참전 15개국(참전 16개국 중 남아공은 제외), 북한과 중국·소련 등 총 19개국이 회담에 참가했다.³¹⁾

제네바회담의 핵심의제는 한반도 통일방안이었고, 논의 과정에서 외국군 철군 문제와 유엔의 권위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해서 양측은 모두 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중국군이 먼저 철수한 조건에서 유엔 감시 하에 남북이 인구비례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공산군 측은 모든 외국군이 철수한 조건에서 남북의 대표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법을 마련하고, 중립국감시단의 감시 하에 총선거를 치르자는 입장이었다.³²⁾ 양측의 주장은 선거방법과 선거 감시문제

31)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마이크로 필름 목록 CA 0002168: 「壽府會議 韓國問題 經過抄-韓國問題討議에 관한 日誌」(1954년 5월 22일); 「壽府會議에서의 卞英泰外務長官 開會演說全文」(1954년 4월 27일); 「壽府會議本會議에서의 卞英泰 外務部長官 演說全文(I)」(1954년 5월 11일); 「壽府會議本會議에서의 卞英泰 首席代表 演說全文(II)」(1954년 5월 22일); 「제네바 政治會談에서 提出한 卞英泰 外務長官의 統一方案」(1954년 5월 22일); 「제네바 회의에 關한 유엔 16개국 共同聲明書」 참조.

32)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2호, 2009.

에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외국군 철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선거 전 철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침략군인 중국군의 우선 철수를 주장한 반면, 공산군 측은 모든 외국군대, 즉 중국군과 유엔군의 즉각적인 동시철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를 보였다. 유엔군 측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엔군 철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큰 틀에서 양측의 입장이 대별되고 상대적으로 공산군 측이 한목소리를 냈던 반면 유엔참전국 내부에는 입장 차이가 컸고 각국 대표들은 미리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을 내놓기도 했다. 영국은 당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방안 논의가 ‘현실을 넘어서는 이상’이며, 차선책으로 한반도의 계속적인 분단을 기반으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호주 외상은 한반도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남한 정부가 전체 한반도 선거에 찬성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대표 역시 남한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북한과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 정부가 양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은 총선거 이전에 중국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한국 입장을 외면하고 양군 동시철수 원칙으로 기울고 있었다. 더 나아가 필리핀 대표는, 남북대표로 ‘헌법제정회의’를 만들어 통일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자는 제의까지 내놓았다.³³⁾

특히 공산군 측이 유엔의 역할과 지위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엔의 권위 인정 여부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중국대표 저우언라이는 5월 22일 중립국감시위원단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감시를 제의하면서 한반도에서 유엔의 역할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대표 남일도 유엔은 완전히 미국의 지배하에 있으며 유엔은

33) 라종일, 「제네바정치회담: 회담의 정치, 1954. 4. 26 / 6. 15」, 『고향정치학회보』 1권, 1997, 85쪽.

교전국의 일방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유엔이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산군 측이 유엔에 대해 갖는 이러한 인식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었지만, 미국은 유엔의 권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되는 시점에 논의를 중단시켰다. 미국측 대표인 텔레스는 공산군 측의 공격이 유엔에 집중되면 미국민들에게 한국전쟁 참전 희생자들의 죽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우려했다. 결국 한국과 유엔참전국들은 6월 15일 한국문제를 유엔 총회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회담을 종결지었다.³⁴⁾

제네바 정치회담은 한국과 유엔참전 15개국(남아공 제외), 북한과 중국·소련 등 총 19개국이 참가한 다자간회의였다. 교전 양측이 대립했던 휴전회담과는 달리 참가국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도 많았으며, 유엔군 측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충돌이 표출되기도 했다. 공산 3국은 상대적으로 단일한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나 강조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외국군 철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지만,³⁵⁾ 상대적으로 중국의 관심은 유엔의 권위 인정문제에 있었거나 적어도 북한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정치회담에 임하는 자세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 여타 참전국들 각자 입장 차이가 있었다.

먼저 한국의 경우, 정치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낮았다. 1953년 4월 휴전회담이 재개되자 한국 내 휴전반대 움직임이 더욱 거세졌다. 이승만은 군사적 승리와 압록강까지의 진격을 주장했고, 1953년

34) *Geneva Conference Korea, Declaration by the Sixteen, 15 June 1954*, 『미국무부 한국정치회담문서』 (Records of the Korean Political Conference of the US State Department: 제네바정치회담 회의록), 한국전쟁자료총서 20권, 국방군사연구소, 919~921쪽.

35) 김일성 『우리 당의 조국통일정책에 대하여』 2,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65쪽.

4월 21일 한국 국회는 이승만의 북진통일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³⁶⁾ 며칠 뒤 이승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중국군이 압록강 남쪽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위임한 것을 철회하여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라도 싸울 것”이라고 통보했다.³⁷⁾ 휴전회담 한국군 대표 최덕신은 휴전 조인 전 중국군 철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해리슨 수석 대표에게 보냈다.³⁸⁾ 이후 한국정부는 일관되게 중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한편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안보를 보장받기를 원했다.

휴전을 앞두고 미국무부는 휴전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³⁹⁾ 검토 결과 정치회담에서 미국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첫째 정치회담에서는 통일방안을 남한정부 입장과 가능한 일치시키지만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남북한 동시선거도 대안으로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협상은 짧게, 통일을 위한 정치적 과정은 길고 지루한 과정을 선호해야 한다. 둘째 외국군 철수문제에서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루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는 정치적 안정이 된 후 병력 철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통일을 먼저 주장하고 병력 철수를 나중에 논의함으로써 미군을 한국에 무기한 주둔시킬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중국군의 호전성 등을 고려하면 중국군이 우선 철수해야 한다. 셋째 정치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기 보다는 완전한

36) 「李承晩, 휴전반대 단독북진 연명(1953. 4. 11), 로이타 통신기자의 서면질문에 대한 회답」, 『韓國戰亂三年誌』, 대한민국 국방부정훈부, 1954, B159쪽.

37) 클라크는 이것이 “이승만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지만, 그는 그 허세를 분명히 극단적 조치로까지 물고갈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승만을 방문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합참에 요청했고, 합참은 이를 허락했다(클라크사령관이 합참에 보낸 전문, 1953. 4. 26, FRUS 1952-1954 Vol. XV, pp. 940~943).

38) 최덕신, 『내가 겪은 판문점』, 현문출판사, 1956, 88~93쪽.

39) 1953년 4월 29일,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문서(Records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of the Department of State), 한국전쟁자료총서 13권, 국방군사연구소, 348~355쪽.

실패로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며 실패의 책임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미국은 정치회담에서 어떤 성과나 합의를 기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차라리 협상을 결렬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은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비록 제네바 정치회담을 개최하여 협상을 하였지만, 군사전략적으로는 대중국 강경책을 구사했다. 미국은 당시 소련과 중국이 제기한 평화공존론을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으로 규정하고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팽창 역지를 중요한 전략 목표로 유지했다.⁴⁰⁾ 미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네바회담에 대해 거의 기대감이 없었던 것이다. 교전 당사자였던 중국의 회담 참가조차 불편하게 여겼던 미국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 회담에서 타협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다.

1954년 제네바회담은 단지 한반도 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회의가 아니었다. 당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이미 전쟁이 끝난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인도차이나 문제였다.⁴¹⁾ 제네바회담에서 합의가 어려운 통일방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평화정착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던 이유는, 회담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경우 회담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했고 강경하게 모든

40) 회담 직전 1954년 3월에 작성된 ‘특별국가정보평가(Special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문서에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으로 “한반도에서 공산군대를 축출하고, 공산주의 침략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공습,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을 활용하며, 중국 해안을 봉쇄할 것”을 제안했다(정준갑,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1953~4): 냉전외교의 한계」, 『미국사연구』 15집, 2002, 142쪽).

41) 김연철은 제네바정치회담이 동북아 냉전질서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이 제네바 회담에 적극 참여했지만, 국내 경제복구에 집중할 필요에 따라 대외 환경이 안정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무익한 회담을 피하고’ 잠정적이라도 최종합의를 추구했다고 보았다(김연철, 「1954년 제네바 회담과 동북아 냉전질서」, 『아세아연구』 제54권 1호, 2011, 203쪽).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이 이승만과 더불어 남한에 미군을 영원히 주둔시킬 것과 만일 필요한 때에는 정전협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⁴²⁾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말 그대로 ‘주장’일 뿐, 상대방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당시 중국과 북한은 미국에 의해 국제사회 진출이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인정받고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고자 했다. 휴전회담과 관련하여 볼 때도, 정치회담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군 측이 강력하게 제기하여 합의까지 이른 사안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남한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정치회담에 참가하였고, 공세적으로 ‘평화통일론’을 제기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남한은 대외적으로는 유엔감시 하의 총선거안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승만은 공공연히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평화 공세는 남한의 북진통일론에 반하여 대외적인 선전 효과 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⁴³⁾

그러나 휴전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산군 측에서 실질적으로 회담을 주도한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북한과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지만, 외국군 철수문제에 있어 북한만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다. 외국군 철수 문제나 선거의 지역적 범위 문제는 유엔참전국 간에도 논란이 있었던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그 대신에 남한과 영국을 포함한 자유진영 모든 국가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유엔의 권위 인정 문제를 들고 나오으로써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⁴⁴⁾

42) 김일성, 『우리 당의 조국통일정책에 대하여』 2,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65쪽.

43) 조정원, 「제네바 회담과 북한의 평화 통일론」, 『북한의 통일정책』, 을유문화사, 1989, 104, 124쪽.

44) 권오중, 「제네바 한국평화회담(1954)의 진행, 결과 그리고 의미: 한반도 6자회담의 원형?」,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2005.12, 178쪽.

중국은 제네바회담을 준비하면서, 회담의 전략적 목표를 ‘미국, 영국,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문제에 대한 차이를 이용하고, 잠정적이라도 최종합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했다.⁴⁵⁾ 결국 중국의 관심은 이미 전쟁이 끝난 한반도가 아니라 인도차이나 문제에 가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정치회담에 참가한 주체들이 무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통일을 정치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측 모두 타협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회의 개최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회담이 개최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정치회담의 과정을 보면, 양측은 자기편이 확실하게 승산이 있는 제안이나 혹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분명한 제안만을 내놓았다. 일종의 ‘선전장’이었던 셈이다.⁴⁶⁾ 회담은 명목상의 개최 목적인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라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분단을 정착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정치회담은 무승부로 끝난 전쟁의 마무리 수순이었다. 그 결과 한반도 문제는 전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유엔으로 돌려졌고, 한반도에는 팽팽한 군사적 대치와 긴장관계인 분단체제가 형성되었다.

다. 동맹조약과 정전체제

휴전 이후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중국군이 잔류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 주둔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1957년까지 다른 유엔 참전국들이 순차적으로 철수를 마친 후에도

45) 김연철, 2011, 앞의 논문, 203쪽.

46) 홍용표, 「1954년 제네바회의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 모색」,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1호, 2006, 51~52쪽.

계속 남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중국군 역시 전후 병력 규모를 줄이기는 했지만, 1958년까지 북한에 잔류했다.

한미동맹은 현재의 한반도 정전체제의 한 축을 이루며,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동맹은 안보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둘 이상의 국가 간에 맺는 공식적인 군사적 연대 관계이며, 국력과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수단이자 국가 간의 상호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한국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동맹결성과 유지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았으며, 1950년대부터 1970년까지는 국방에 대한 결정권과 능력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다.⁴⁷⁾ 한미 동맹조약은 북중동맹조약과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한미 양국의 특수한 혈맹관계를 대변하는 조약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비동맹원칙을 강조하면서 여타 국가와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한 데 비해, 미국은 오늘날에도 지역 및 세계안보 차원에서 양자동맹(bilateral alliance)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⁴⁸⁾ 한미동맹이 형성되는 같은 시기 정치회담에서 외국군 철수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동맹 구조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외국군 철수 문제에 대해 미국은 전쟁 중에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1951년 7월 19일, 외국군 철수문제는 정치적인 것으로 유엔과 관련 정부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고, 진정한 평화가 이룩되고 한국인들이 공격에 대한 우려 없이 장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군은 한국에

47) 한용섭, 「한국의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 역사적 고찰과 양립가능성에 관한 연구」, 『군사사연구총서』 제4집, 200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0쪽. 이 때문에 동맹국간 자율성과 의존성의 정치문제를 초래했으며,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비용과 책임의 분담문제 초래되었다.

48) 박병광, 「북중동맹조약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소고: 한미동맹조약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02년 6월호, 33쪽.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2년 4월 앨리슨(John Alison) 미국 무부 극동담당 차관보는,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한국군이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충분한 힘을 가질 때까지 미군이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적 입장 표명과는 달리 휴전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미국은 주한미군 자체를 잔류시킬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5월 17일 제출된 한국의 안전보장정책을 최초로 공식화한 NSC 48-5에서 당면의 구체적 정책목표로서 휴전협정의 실현에 의한 전쟁의 종결, 외국군의 한국으로부터의 단계적 철수를 강조했다.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제출된 NSC 118-2에서는 휴전협정이 깨어질 경우의 보완책으로서 확대제재선언(Greater Sanctions Declaration of Joint Policy Declaration)이 더 효과적이라 보았다.⁴⁹⁾ 그러다가 휴전이 임박한 1953년 7월 2일 채택된 NSC 154-1에서 미군 잔류 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때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침략에 대한 억지수단으로 확대제재선언의 재확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미국의 정책목표에 걸맞는 유엔군의 주둔, 한국군의 전력강화를 결정했다.⁵⁰⁾

휴전 후 미군 주둔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다가 결국 2개 사단의 잔류가 결정되었다. 미군의 잔류와 규모는 군사전략적 가치와 정치 논리, 미국의 위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되었다.⁵¹⁾ 이에 따라 전쟁 시기 한 때 32만 명에 이르렀던 미군은 1954년 초부터 1955년 중반까지 한국에 육군 2개 사단과 제5공군 예하 314비행사단 등 약 6만 명을 남기고 모두 철수했다. 정전협정

49) NSC 118-2,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Courses of Action in Korea", December 21, 1951, FRUS 1951, Vol. 7, pp.1348~1387.

50) NSC 154-1, "United States Tactics Immediately Following an Armistice in Korea", July 2, 1953, FRUS 1952~1954, Part 2, pp.1341~1344.

51) 이철순 「한국전쟁 휴전 이후 주한미군 잔류정책: 미국의 국가이익 규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Vol. 8, No.1, 2005.

체결 후 1953년 10월 프랑스,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호주·필리핀, 1954년 10월 콜롬비아·에티오피아·룩셈부르크, 1955년 태국·그리스, 1956년 네덜란드·벨기에·터키, 1957년 영국이 병력을 철수했다.⁵²⁾

북한에서도 전쟁에 참가했던 중국인민지원군 19개 사단 중 일부 병력이 1954년 9월부터 1955년 10월 사이에 철수했지만 기본병력은 남아있었다. 북한은 정치회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 주둔을 비판하면서 외국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중국군도 전후에도 북한에 잔류했다. 북한은 1956년에 가서야 중국군의 완전 철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를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다.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김일성은, “조선 문제를 조선 사람들끼리 풀기 위해서는 미제침략군대와 중국인민지원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우리나라 내정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간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과 남에서 중국인민지원군과 미제침략군 및 그 추종국가 군대를 동시에, 그리고 당장 철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군 주둔이 곧 내정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남과 북의 외국군 동시 철군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후 북한과 중국의 협의에 따라 1958년 3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간에 3단계에 걸쳐 남아있던 중국군도 모두 철수했다. 이를 근거로 삼아 북한은 집중적으로 미군 철수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곧 소련·중국과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북한은 1961년 소련과 7월 6일 ‘조·소동맹조약’을 체결하였고, 닷새 뒤인 7월 11일에 중국과 ‘조·중동맹조약’을 체결했다.⁵³⁾

52)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8, 276쪽.

53) 1961년 7월 북중동맹이 성립되는 데에는 ‘중소분쟁’이라는 공산권 내부에서의 군열요인과 더불어 동서냉전이 동아시아에서 구조화되어가는 과정과도 밀접히

4. 나오는 말

정치회담은 전시 휴전회담이 군사 휴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 해결을 마련된 협상의 장이었다. 정치회담 관련 협정에 규정된 주요 의제는 두 가지로, 첫째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둘째 외국군 철수 문제였다. 회담의 내용과 전망은 참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컸지만, 그 전제는 정치회담 관련 조항이었다. 유엔군 측(미국을 비롯한 참전 15개국)과 공산군 측(중국과 소련)은 물론이고 남과 북의 회담에 임하는 입장과 전략은 회담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도 했지만, 회담에 참가한 관련 각국이 회담을 준비하며 대비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지만, 각국이 회담에 대해 가졌던 기대치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휴전회담과 마찬가지로 정치회담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는 더 적었다. 휴전회담에서 양측은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전투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했지만, 정치회담은 그러한 강제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더한층 참가주체들의 타협의지와 해결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치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일종의 ‘선전장’이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한반도 분단구조를 정착시키는 정치·외교적 퍼포먼스에 가까웠다. 명목과는 달리 정치회담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즉 통일을 지향했다기보다는 휴전이 이루어졌으나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긴장의 정도를 완화하고 이미 결정된 분단을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결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박병광, 앞의 논문, 36쪽 참조.

미국은 정치회담을 통해 외국군 철수 문제에 정치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 구조를 만들어 주한미군 주둔을 현실화했다. 이것은 휴전 직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공산군 측이 정치회담 의제로 설정하였던 외국군 철수 문제는 회담에서 논란을 벌인다 해도 이미 진행 중인 전후 동맹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미국은 전시 휴전회담장과 국제무대에서 유엔군 철수는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에 대한 논쟁 자체를 피했다. 전후 정치회담에서도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한국은 침략군인 중국군의 철수만을 요구했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 정치협상을 통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실패한 것은 예견된 결과였다. 휴전협상 과정에서 관련 각국에 대한 ‘건의’ 정도로 타협함으로써 정치회담 관련 조항의 규정력은 이미 상당히 약화되었다. 전후 정치회담은 협상을 주도하고 분단의 현상유지 정책을 확정한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문제를 국제정치 문제로 환원시켰다. 정치회담에서 외국군 철수 문제가 제대로 쟁점화 되지 못하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전후 남한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미군 주둔, 북한에서는 중국군의 잔류와 1960년대 초 북한과 중국, 북한과 소련 간의 동맹조약으로 이어졌다.

휴전회담 의제 가운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정전감시기구 관련 논의의 초점은 전쟁 재발을 막는 것에 있었다. 정치회담 관련 항목 역시 항구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같지만 지향점은 달랐다. 앞의 두 의제는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주안점이 두어졌다면, 정치회담 관련 조항은 불완전한 ‘군사정전협정’을 보완해서 한반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 즉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전후 정치회담 의제는 전쟁 이전 수준의 통일논의와

외국군 철수 문제가 중심이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양측이 합의하기 어려웠다. 회담이 진행되는 이면에서는 전후 동맹체제가 형성되고 있었다. 결국 정치회담의 개최목적인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곧 분단구조의 평화로운 관리로 이어졌다.

강대국은 한반도의 분단을 선택했고, 분단구조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다. 비록 전쟁이 재발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60여 년간 분단은 결코 평화롭게 관리되지는 않았다. 현재 ‘평화로운 분단’을 지키기 위해 남과 북은 너무나 많은 인적·물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사실 평화로운 분단이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분단을 유지하는 힘은 평화가 아니라 대립과 적대이기 때문이다. 항구적이고 평화적인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원고투고일: 2015.4.2, 심사수정일: 2015.5.19,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휴전회담, 고위급 정치회담, 제네바정치회담, 판문점예비회담, 외국군 철수, 중국군 철수, 주한미군,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북중동맹, 북소동맹, 전쟁포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The Agenda on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suggested in Geneva Political Conference held in 1954

Kim, Bo-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meaning and the background on the issue of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raised as a major political issue in Geneva Conference in 1954.

Armistice Agreement Clause 4, Article 60, which dealt with political talks, was based on consent of two sides, the UN forces and Communists, which had a conflict over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but agreed to discuss the issue after the cease-fire. According to the article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main agendas of political conferences should be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matter' and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issue of the withdrawal of foreign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was strongly raised by the communists in the Truce Talks. They claimed the issue as a necessary condition to guarantee the cease-fire, but the UN Forces regarded the issue as a political matter and avoided discussing it. Besides, the UN forces opposed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After adapted as the 5th agenda in the Armistice Agreement, the matter of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became one of the agendas in a post-war political conference. However, it became weakened by the UN's claim that the agenda about the political conference should be regarded only as much as a degree of 'sugg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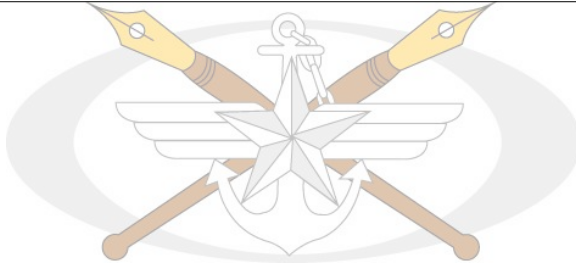
Meanwhile, a preliminary conference took place in Panmunjom directly after the cease-fire, on October 26, 1953. However, the United States suspended the preliminary conference unilaterally for an issue of prisoners, and it broke down without any consent. Later on, a political conference was held during 1954 Geneva Conference under an agreement between the great powers. A total of 19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 such as South and North Korea, China and Soviet Union including 15 partaking combatant nations of UN except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The main agenda of the conference was a measure of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re had been two controversies over the matters of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and a status of UN. The both sides all insisted the peaceful unification by election. However, they had differences on the way to hold on an election and the way to monitor it. With regard to the matter of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the UN forces contended that Chinese forces, the invading army, should withdraw first. In contrast, Communists insisted that all foreign troops should be disengaged simultaneously. Geneva Conference of 1954 ended up breaking down on account of these differences, and the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was transferred to UN.

The talks might be regarded as an attempt to settle the issues through negotiation. However, there was no room to negotiate and no legal entities of the agreement. That was the reason why a willingness to compromise and an effort to settle the problems of both sides were required. However, both sides did not show any of them, so it was foreseen to fail in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matter through an agreement. It led to not only Korea-U.S. Alliance,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and US forces stationing in South Korea, but also Chinese People's Volunteers remaining, Sino-DPRK Alliance in North Korea and DPRK-Soviet Alliance in North Korea. In conclusion,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matter', a purpose of the political conference, did not imply 'the unification' but 'peaceful governance.' of Korean peninsular.

Key word : Armistice Conference, High-level Political Conference, Geneva Conference(Korean Political Conference), Preliminary Conference in Panmunjom,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Chinese troops withdrawal,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ROK-US Alliance, Sino-DPRK Alliance, DPRK-Soviet Alliance, Prisoners of War(PW)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 국방정책의 변천 연구 : 국방목표를 중심으로

이 미 숙*

1. 머리말
2. 국방정책과 국방목표
3. 국방정책 형성기 : 국방목표 제정 이전
4. 국방정책 정립기 : 국방목표 제정(1972.12.29) 이후
5. 국방정책 전환기 : 국방목표 1차 개정(1981.11.28) 이후
6. 국방정책 개혁기 : 국방목표 2차 개정(1994.3.10) 이후
7. 맺음말

1. 머리말

국방정책의 변천 연구는 국방정책의 결정과정이나 분석 및 전망에 대한 연구에 비해 선행연구가 저조하다. 국방정책의 변천에 대한 사전 고찰 없이 국방정책의 결정과정이나 주요 국방정책을 분석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평가하여 향후 국방정책을 전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한국 국방정책의 변천에 대한 연구는 크게 ‘시기별 연구’와 ‘주제별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기별 연구’는 국방조직, 전력증강 등 국방정책의 뚜렷한 특징과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먼저 시기구분을 하고, 시기별로 추진된 국방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창군기(1945~1948)–건군기(1948~1950)–전쟁·정비기(1950~1961)–국방체제정립기(1961~1971)–자주국방기(1972~1991)–국방태세발전기(1990~현재)로 구분하고 있다.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국방군사연구소는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조직변천사』의 시기구분을 따르되, 자주국방기(1972~1989) 이후 시기로 국방태세발전기(1990~현재)를 추가했다.²⁾ 이선희는 건군기(1945~1950)–시련기(1950~1953)–체제정비기(1953~1973)–자주국방지향기(1973~1993)–자주국방성취기(1993~현재)로 구분했다.³⁾ 한용섭, 하대덕, 유윤식은 창군기(1945~1950)–한국전쟁기(1950~1961)–제3공화국(1952~1971)–제4공화국(1972~1979)–제5공화국(1980~1987)–제6공화국(1988~1997)으로 구분했다.⁴⁾ 조영갑은 국방체제정립기(1945~1961)

1)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nd.go.kr> (검색일 : 2015. 1. 22) ; 그러나 자주국방기(1972~1991)에서 자주국방기의 1991년은 1989년의 오키로 판단된다. 홈페이지 게시 이전에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조직변천사』에서는 건군기(1948.8~1950.5)–전쟁 및 정비기(1950.6~1961.4)–국방체제정립기(1961.5~1971)–자주국방기(1972~1989)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다(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 1992, 12쪽).

2)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1995, 2쪽 ; 『건군50년사』에서는 건군기(1945~1950)–전쟁 및 전후 정비기(1950~1961)–국방체제정립기(1961~1972)–자주국방기반조성기(1972~1980)–자주국방강화기(1981~1990)–국방태세발전기(1991~현재)로 구분된다(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1998, 8~12쪽).

3) 이선희, 「한국군 성장 50년의 발자취와 사회발전」, 『국방학술논총』 제10집, 국방연구원, 1996, 9~40쪽.

4) 한용섭 외, 「한국국방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정책연구보고서』 97-8,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7; 한용섭은 그 후 건군기(1945~1950.6)–한국전쟁기(1950.6~1953.7)–군사제도정비기(1953.7~1968.1)–자주국방추진기(1968.2~1993.2)–

-자주국방추진기(1961~1998)-자주국방발전기(1998~2000년대)로 구분했다.⁵⁾ 그 외 공화국⁶⁾이나 역대정부별로 구분한 경우가 많다.⁷⁾

둘째, ‘주제별 연구’는 국방조직, 전력증강, 국방개혁 등 특정한 주제에 연구초점을 두고, 변화된 과정과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복이후 전 시기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시기를 집중 분석하거나 비교하는 연구도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국방조직변천사』인데, 국방조직의 군구조·체제에 초점을 두고,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 직제령 등을 구분 근거로 삼았다. 『한미동맹60년사』⁸⁾와 『한국의 PKO 파병사』⁹⁾도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국방역사¹⁰⁾, 국방정책¹¹⁾, 주요 국방사건¹²⁾, 군사전략¹³⁾, 국방개혁¹⁴⁾, 국군포로¹⁵⁾ 등의 관점에서

국방개혁추진기(1993.2~현재)로 수정·보완했다(한용섭, 「국방역사 시기구분에 관한 연구」,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5쪽).

- 5) 조영갑, 「한국 국방정책이 역사적 변천과 특징 정립에 관한 연구」, 『군사』 제6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258~259쪽.
- 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제5공화국의 국방』, 국방부, 1987;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② 외교·통일·국방』, 1992.
- 7) 공보처, 『변화와 개혁: 김영삼정부 국정5년 자료집① 정치·외교·통일·국방』, 1997;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⑤ 통일·외교·안보』, 2008; 박영준,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평가」, 『교수논총』, 2009; 백승주, 「탈냉전 이후 역대정부 국방정책 평가」,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 외 다수
- 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2002;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8; 장삼열 외, 『한미동맹60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9) 원태제, 『한국의 PKO 파병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 1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건군사』, 『국방사 ①~⑤』, 『국방부사 ①~⑩』, 『국방편년사』,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등이 있다.
- 11) 『국방백서』;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2014; 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 2002;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2003; 백기인, 「국방정책형성의 제도화 과정(1948~1970)」, 『국방연구』 제47권 제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 1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국방군사연구소, 『대비정규전사Ⅱ(1961~1980)』, 199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대비정규전사Ⅲ(1981~2000)』, 2004; 김창규, 『국방사건사 제1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13) 박희락, 「한국 국방정책에 있어서 오인식에 관한 분석과 함의 : 전시 작전통제권

변천과정을 조명한 연구가 다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연구초점에 따라 ‘시기별 연구’와 ‘주제별 연구’로 구분되지만, 사실 한 연구에서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연구방식이 아니라 시기나 주제에 대한 각 연구자의 구분 기준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정된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국방목표’에 주목하였다.

국방정책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이므로 국방목표에 근거하여 추진될 수밖에 없다. 국방정책은 예측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¹⁶⁾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책목표가 있어야 한다. 국방목표는 국방정책을 통하여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로, 국방목표가 변하지 않는 한 국방정책은 안보환경과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즉, 국방목표는 국방정책 변천과정을 구분하는 임의적이지 않은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책의 추진 근거이자 지침이 되는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주요 국방정책을 분석한다. 국방목표는 1972년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 그 후 1981년에 1차, 1994년에 2차 개정되었다. 이에 국방정책 변천시기를 ① 국방목표 제정 이전 ② 국방목표 제정 이후 ③ 국방목표 1차 개정 이후 ④ 국방목표 2차 개정 이후 4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국방정책의 국방목표 달성여부를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각 시기별 특징을 파악한다. 이는

과 미사일방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제9권 제1호, 한국의정연구회, 2014; 이수형,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개념: 새로운 군사전략개념의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2002 외 다수

- 14) 권영근, 『한국군 국방개혁의 변화와 지속: 818계획,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을 중심으로』, 2013; 박휘락, 「국방개혁 2020과 미군변혁의 비교와 교훈: 변화방식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2; 이양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홍성표, 「한국의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 『교수논총』 제19권 제4호, 국방대학교, 2011 외 다수

- 15) 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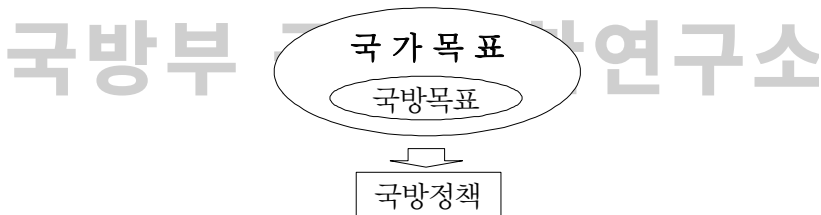
- 16) 데이비스 B. 바브로우, 『국방정책의 구성요소』,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74, 15쪽.

국방목표에 집중하여 주요 국방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으로, 한국 국방정책의 변천과정을 국방정책 수립의 본래 취지인 국방목표대로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국방정책과 국방목표

가. 개념

‘국방정책’은 최종목표인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방 분야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국방정책은 한마디로 “국방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므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목표는 최선의 정책대안 또는 수단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고, 정책집행의 지침이자 평가기준이기 때문이다. 그 개념은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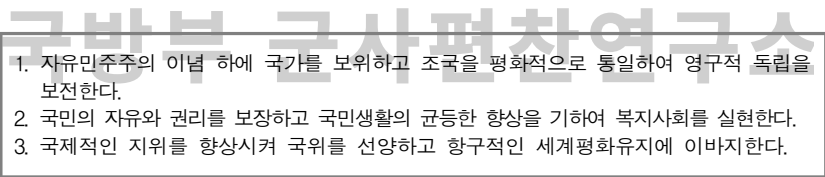
<그림 1> 국방정책과 국방목표 개념도

국방정책의 최종목표인 국가목표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국가목표는 국가이익을 위해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우리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추구해온 기본적인 가치이며, 어떤 환경 하에서도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국가목표는 1966년도 「국방부기본시책서」에 처음 제시되고 있다. 처음 제시된 국가

목표¹⁷⁾는 1970년 안보회의 사무국에서 「국가안전보장 기본정책서」가 작성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72년 2월 8일에 1차 의결되었다.¹⁸⁾ 국가목표는 1973년 2월 16일 제23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부분 개정(밑줄부분 보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한국 국가목표의 범주는 매우 넓다. ‘국가의 보위’와 ‘조국 통일’은 물론 ‘국민의 복지’ 나아가 ‘세계평화 유지’까지 포함한다. 국가목표가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국가목표의 개념은 적용되는데 무리가 없다. 국가목표는 한 나라의 국가체제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정권교체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정권이나 지도자에 따라 다소 변화를 보인다. 즉, 김대중 정부는 국가목표를 ‘국가이익’으로 표현했고, 최고의 국가이익을 독립국가로서의 생존과 주권 수호라고 규정했다.¹⁹⁾ 이명박 정부는 국가목표를 ‘국가비전’으로 표현하고,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로 설정했다.²⁰⁾

<표 1> 국가목표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에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영구적 독립을 보전한다. 2.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3.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유지에 이바지한다. |
|---|

국방목표는 우리 군이 국방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국방목표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군의 역할과 국가보위를 위한

17) ①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에 국토를 통일하고 영구적 독립을 보전한다 ②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 ③국제적 위신을 확립하여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 3가지였다.

18)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1995, 194쪽.

19) 국방부, 『국방백서 1998』, 1998, 51쪽.

20)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0, 34쪽.

군사력의 운용개념, 전·평시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밝힘으로써 국방정책방향과 군사전략목표 설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²¹⁾

국방부는 1972년 국방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도 「국방(부)기본시책」에 따른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부)기본시책」의 목표는 「1966년 국방부기본시책」에서 처음 제시되었다가, 그 후 1968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7가지의 국방목표로 명시되기도 했다.²²⁾ 그러나 그것은 국가목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된 국방목표로, 국방정책방향과 지침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정책적 판단절차에 의해 설정된 것도 아니었다. 국방부는 1972년 2월 8일 정부의 국가목표가 확정되자, 1972년 12월 29일 국방목표를 정립함으로써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명시적인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 국방부는 일관된 국방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연도별 「국방(부)기본시책」의 목표 및 방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가목표의 설정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국방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1972년 12월 29일 설정된 국방목표는 그 후 2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방목표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은 <표 2>와 같다.²³⁾

<표 2> 국방목표의 제정 및 개정 내용

최초 제정(1972. 12. 29.)	1차 개정(1981. 11. 28.)	2차 개정(1994. 3. 10.)
1. 국방력을 정비 강화하여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고 국토와 민족을 수호한다. 2. 적정군사력을 유지하고 군의 정예화를 기한다. 3.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자주국방체제를 확립한다.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21)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1995, 195쪽.

2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④: 1972~1981』, 2002, 105쪽.

2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④: 1972~1981』, 2002, 105쪽.

최초 제정된 국방목표는 이후의 국방목표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국방목표에 국방력 정비, 방위산업 육성 등 현안과제가 명시되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가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1971~1975)과 연계하여 국방목표로 가시화된 것이다.

1차 개정 국방목표의 개념은 1972년의 국방목표보다 확장된다. 이전의 국방목표에는 구체적이거나 ‘국가보위’와 ‘평화통일’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차 개정 국방목표에서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자주국방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이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동시에 이전보다 향상된 자주국방 능력을 토대로 국방역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차 개정 국방목표는 유선체제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체제 확립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상향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²⁴⁾ 2차 개정 국방목표는 탈냉전이후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1차 개정 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적의 무력침공’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가 ‘지역적인 안정과 세계평화’로 바뀌었다. 그런 한편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발전 기본개념’²⁵⁾, ‘21세기 신국방’²⁶⁾, ‘국방비전’²⁷⁾ 등과 같은 새로운 국방운영개념을

24) 한용섭 외, 「한국국방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정책연구보고서』 97-8,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7, 294쪽.

25) 국방부는 군사력 건설이나 부대구조 조정, 새로운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 미래 국방을 위한 국방태세의 정비에 10~20년이 걸리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국방의 설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상황 인식하에 ‘국방발전의 기본개념’을 수립했다(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 2002, 25~26쪽).

26) ‘21세기 신국방’은 기본적인 것은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수용하고 변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국방운영 개념으로, 모든 위협에 동시 대처하는 확고한 ‘전방위 국방태세’를 유지하여 정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미래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 정예국방 건설을 목표로 한다(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 2002, 32쪽).

27)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목표와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국방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정책기조를 선정하여 분야별 국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국방부, 『2010 국방백서』,

수립하여 보완함으로써 포괄적인 위협요소에 대비했다.

국방정책은 이러한 국가목표와 국방목표라는 상위 차원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국가안보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되었다. 국방정책은 국가목표를 뒷받침하고자 설정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정·군령 분야에서의 현실적 접근을 포함한다. 따라서 국방정책은 국방목표인 군의 역할과 국가보위를 위한 군사력의 건설 및 운용개념, 그리고 전·평시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그 방향과 전략적 목표를 구체화시킨 것이다.²⁸⁾

국방정책은 건국 후 매년 국방부장관의 ‘국방시책’을 통해 추진되어 오다가 1960년대에 와서는 정부 시책의 일환인 국방시책으로 추진되었다.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국방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은 1966년의 시책부터였지만, 정책발전의 방향과 정책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국방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은 1970년 이후였다.²⁹⁾ 1972년 12월 국방목표가 제정된 이후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는 국방정책을 국가목표와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게 되었다. 국방정책에는 군사력 건설, 군·부대구조, 인력, 교육훈련, 정신전력, 예비전력, 정보·통신, 군수, 연구개발, 방위산업, 기획관리, 군사외교, 국방재원 등이 포함되었다.³⁰⁾ 시책이 주로 1년 단위의 국방계획을 의미한다면, 정책은 이보다 계획수립의 절차가 체계화되고 그 기간도 연장된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국방정책은 이전에 단기적인 국방시책으로 추진하던 데서 일신하여 5개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한 「국방중기정책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방장기정책서」를 근간으로 종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방정책 형성과정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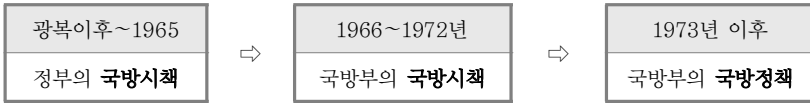
2010, 34쪽).

2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④ : 1972~1981』, 2002, 104쪽.

29)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1995, 2쪽.

3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③ : 1961~1971』, 1990, 62~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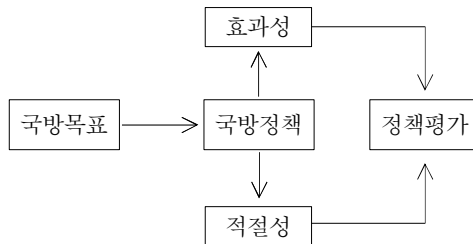
〈표 3〉 국방정책 형성과정



나. 분석틀

‘정책평가’는 정책목표가 정책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정책수단의 정책집행을 통해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른바 정책의 효과성평가이다.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하는데,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다.³¹⁾ 효과성평가는 단순히 의도했던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던 정책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문제가 완화 또는 악화되었는지 등의 정책문제의 파악과 분석도 병행한다. 효과성 평가에서는 발생한 정책효과의 크기는 정책목표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효과성)와 정책효과의 크기는 해결하고자 했던 원래의 정책문제 해결에 충분한 정도인지(적절성)를 판단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분석틀



31) 정정길, 『정책학원론』, 2002, 713쪽.

이에 따라 국방정책의 국방목표 달성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각 시기별로 추진된 주요 국방정책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 단, 자료접근성의 한계로 여기서 평가하는 국방정책은 군사력의 건설 및 유지를 위한 분야별 정책보다는 국방정책의 추진방향에 따른 분야별 정책지침과 추진실적에 한정한다. 또, 달성도도 달성수준이 아닌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수준으로 제한한다. 효과성평가는 평가되는 정책이 증단·축소·현상유지·확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준다. 평가결과는 <표 5>와 같이 분석된다. ‘축소’ 결과가 나온 경우는 국방목표 달성을 못한 것으로, 현상유지, 확대의 경우는 목표 달성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현상유지, 확대의 경우는 모두 국방목표 달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적절성과 상관없이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한 것으로 본다. 국방정책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평가할 때, 정부와 국방부가 생산한 기록물과 공식 저서나 문헌자료를 근거로 활용한다. 그 외에 국방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한 관계자들의 저서나 연구논문 등을 활용한다.

<표 5> 국방정책 평가방법

구분	효과성(-)	적절성(-)	효과성(+)	적절성(-)	효과성(+)	적절성(+)
평가결과	축소		현상유지		확대	
목표달성 여부	×		○		○	

3. 국방정책 형성기 : 국방목표 제정 이전³²⁾

국방목표 제정 이전 시기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이후부터 국방목표가 제정된 1972년 12월 28일 이전까지에 해당한다. 건국이후부터 대략 제3공화국까지 포함된다. 이 시기에는 국가수준의 국방목표가 공식적으로 제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시정방침이라는 포괄적인 방침 내에서 국방정책의 추진방향이 결정되었다.³³⁾ 건국초기 국방정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자주적인 안보역량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북한의 위협이 끊이지 않아 미국의 극동전략과 대한군사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당시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과소평가하여 한국방위에 소극적이었기에 한국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도 국방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세우지 못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지원을 호소하면서 국방부를 설치하고, 국군을 창설하여 육·해·공군을 육성하는 등 자체 방위역량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방정책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수립선포 기념사와 국회 시정연설의 맥락³⁴⁾에서 작성된 국방부장관의 국방시책(國防施策)에 따라 추진되었다. 국방시책은 정부의 안보정책과 연계된 포괄적인 것이었고, 정책결정의 주요인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기구의 군정권과 군령권을 장악한 국방부장관의 의지였다.³⁵⁾ 초대 이범석장관은 국방시책으로 ‘연합국방과 강력한

3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① : 1945~1950』, 1984, 101~132쪽.

33) 백기인, 「국방정책형성의 제도화 과정(1948~1970)」, 『국방연구』 제47권 제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99쪽.

34)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선언과 시정방침의 개념은 첫째 남북통일과 우방과의 군사적 유대강화, 둘째 미국의 극동전략과 대한군사정책에 근거한 자위력의 강화, 셋째 북한지역의 자유선거에 의한 북한수복의 실현 등 세 가지의 맥락으로 요약된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② : 1950~1961』, 1987, 54쪽).

35) 백기인, 「국방정책형성의 제도화 과정(1948~1970)」, 『국방연구』 제47권 제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99쪽.

지상군의 육성'을 표방하고 '사병제일주의'와 '사상통일'이라는 2대 지도방침(지도방침)을 기조로 삼아, 국군조직법 및 국방부 직제령 공포, 군부대의 증설과 특수부대의 창설, 호국군의 창설 등 국군의 정예화를 위한 기본적인 주요 시책을 단행했다.³⁶⁾ 2대 신성모장관은 국방시책의 기본방침으로 육·해·공군의 급속한 육성 강화책을 강구하고, 남한 각지 공산계릴라의 토벌작전을 집중 전개하여 치안을 확보하며, 군 내부에 침투한 좌익계 불순분자들을 일소, 장병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의 증설과 해외 군사교육기관에 장교 유학생을 파견하여 새로운 군사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치중했다.³⁷⁾

전쟁기간 중 국방부장관들은 유엔군총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증강하는 정책적 조치를 강구했다. 휴전 후에는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주둔과 군사력의 증강지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시기 국방정책의 핵심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받은 탓에 미국과의 유대관계 강화였고,³⁸⁾ 정책들은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식견과 역량에 의해 추진되었다.

5·16군사혁명으로 1961년부터 민정이양 기간인 1963년까지의 국방정책은 혁명과업수행 지침에 따라 기본방향³⁹⁾을 결정했다. 군사혁명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도별 「국방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목표와 지침을 제정하여 국방정책을 추진했다. 제3공화국은 국력

3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① : 1945~1950』, 1984, 150~151쪽.

3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① : 1945~1950』, 1984, 156쪽.

38) 김희상, 「21세기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국의 국방정책」, 『국방정책 연구보고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2, 91쪽.

39) 첫째, 간접침략을 분쇄한다. 둘째,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셋째, 구악과 부패를 일소하고 군기를 확립한다. 넷째, 국가자립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다섯째, 국토통일을 위한 전력을 배양한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③: 1961~1971』, 1990, 63쪽).

배양으로 대공방위의 기반을 구축한다 데 목표를 두고 연도별 국방 기본시책을 수립했다. 제3공화국이 시작된 1963년부터 1967년까지는 국가경제발전을 우선 보장한다는 정부시책과 북한도발에 따른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국방정책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국군파월에 의한 군장비현대화와 자유우방과의 군사적 결속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때 까지만해도 국방정책은 ‘자주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⁴⁰⁾ 미국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들을 유·무상 지원 받던 당시 현실로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통한 자주국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1968년부터 1971년까지의 국방정책은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북한의 무력도발과 미국의 닉슨독트린에 의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에 대비하여 추진되었다. <표 6>의 1968년도 「국방부기본시책」에서부터 ‘한·미 군사관계의 강화’ 외에도 ‘방위 역량의 강화’, ‘군수산업의 육성’ 등의 목표와 방침이 제시되고 있다. 그 결과 향토예비군 창설과 방위산업의 육성 등 자주적인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졌다.⁴¹⁾

이처럼 국방정책은 건국 후 정부의 국방시책으로 추진되었다가 1965년에 국방부가 「1966년 국방부기본시책」을 수립하면서 독자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방부기본시책」은 1971년부터 「국방기본시책」으로 명명되어 사용되었다. 연도별 「국방(부)기본시책」의 목표와 방침은 <표 6>과 같다.⁴²⁾

40) Chung-In Moon, “The Political Economy of Defense Industrialization in South Korea: Constraints, Opportunities, and Prospects”, *The Journal of East Asia Affairs*(Summer/Fall 1991), Vol. V, No. 2, pp. 437~439.

4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③ : 1961~1971』, 1990, 61쪽.

4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③ : 1961~1971』, 1990, 62~76쪽.

〈표 6〉 연도별 「국방(부)기본시책」의 목표와 방침

연도	국방(부)기본시책의 목표와 방침
1961년	국방체제의 정비 및 군장비의 현대화 촉진, 집단안보체제의 형성, 교육훈련·병무행정 및 군인사운영의 개선, 군관민의 유대강화
1962년	국군 60만 병력수준 유지, 장비의 현대화로 국방력 강화, 자유우방과의 집단방위체제 강화, 국방체제의 유대강화, 국가자립경제발전의 기여
1963년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군사적 유대강화, 현 병력의 유지와 반공체제 확립, 군기확립과 교육훈련강화, 장비의 현대화, 국토건설 지원
1964년	자유우방, 특히 미국과의 군사력 유대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강화, 군현대화에 의한 방위력의 향상과 북한보다 우월한 군사력 유지,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교육훈련 강화 및 장비의 질적 향상, 군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군장비의 효과적인 평시활용을 단행
1965년	현 병력수준의 유지, 군장비의 현대화 촉진, 교육훈련 및 정신무장 강화, 자유우방과의 군사유대 및 집단방위체제 확립, 핵 및 비핵전에 대비한 국방체제의 확립
1966년	자유우방과의 집단안전보장체제 강화하고 대월군사지원 계속, 연병력수준을 유지하고 장비현대화, 교육훈련강화, 예비군사력의 보강으로 대북우위군사력 견지, 장병급여의 개선·군 인사관리의 적정 및 민주·반공·군인정신의 함양으로 군의 기본자세 확립과 안정 유도, 군사기구 정비, 후방지원체제의 개선 등으로 국군의 자주발전책 강구
1967년	월남에 대한 군사력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지원 지속하고 우방 각국과 협력하여 공산세력의 동남아진출 강력 저지, 신장비의 도입과 부족장비의 보충에 주력하고 전시에 군사작전 태세 갖추어 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배양, 대간첩작전장비 도입 보완하고 적의 기도 봉쇄, 군사외교의 강화로 자유우방과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계속 신장하여 통합적 방위력 향상, 정훈활동 강화, 예비군 동원체제 발전, 국토건설과 대민사업 지원
1968년	군사외교 강화, 월남평정계획 적극 지원, 장비현대화의 적극 추진과 방위역량 강화, 대간첩작전장비의 도입 보완, 군 인사체제 발전, 병무행정 쇄신, 정훈활동 강화, 군수산업육정책 발전, 전후방 군사시설 확충, 국가경제발전에 적극 참여
1969년	임전태세와 군 경계태세 완벽, 장병 정신무장과 교육훈련 강화, 장비 현대화와 군사시설의 요새화, 잠재전력 배양, 군사력 증강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월남전 계속 지원, 국가개발계획 참여와 사회문화 향상
1970년	군의 전투태세 강화로 북한의 전쟁도발행위 봉쇄, 실전위주의 훈련 강화로 전 장병의 전투의욕화, 정신무장 강화와 전투태세 확립, 군수산업의 육성과 군수지원체제 정비로 전시지원태세 확립, 향토예비군 전력화로 후방지역 방위태세 강화, 병무행정 개선과 충원태세 확립, 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용, 군사외교 공고화로 집단안전 방위체제 구현, 국가개발사업 적극 참여
1971년	전국 방어지대 요새화, 전 장병의 요원화 및 정예화, 정신전력 증대, 군사과학기술과 과학전 능력 강화, 대공 심리전활동 강화, 군수공업육성과 군수지원체제 개선으로 전시지원태세 확립, 후방지역방위태세 강화, 병무행정제도와 선병분류업무 개선으로 전시동원태세 확립, 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용, 군사외교 강화와 아시아지역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구현, 국가경제개발계획사업 적극 참여
1972년	전후방 군사시설 보강, 정신무장 강화, 현대화장비 도입을 통한 전력증강과 국방기술 발전, 향토예비군 전력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국방정책은 연도별 「국방(부)기본시책」의 목표와 방침에 따라 국군조직법과 국가보안법 등 법적 체계를 갖추면서 국군병력을 60만 수준에서 유지하고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를 추진했으며, 국방부 조직과 제도, 예비군 조직, 교육체계 등을 구축하여 국방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요컨대, 기간 중에는 국방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국방시책의 추진을 통해 국방정책의 제도적 틀이 형성되어 갔다.

그러나 국방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정책이라도 매년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매년 추진되더라도 단계별 추진목표나 계획 없이 연도별 추진으로 그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가목표와 연계된 국방목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6년에 「국방부기본시책」의 계획이 수립되고, 그 후 국방목표가 1968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명시⁴³⁾되기는 했으나, 국가목표는 「1966년 국방부기본시책」이 수립되면서 처음으로 제시되고, 1970년에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목표와 연계된 국방목표는 1972년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 국가목표와 연계된 국방목표 없이 추진된 국방정책은 체계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국방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국방정책은 그 입안과정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체계화되지 않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정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목표와 연계된 국방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방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시책’이었다.

43) 국방부, 『국방백서 1968』, 1968, 6쪽, 58쪽.

4. 국방정책 정립기 : 국방목표 제정(1972.12.29) 이후

이 시기는 국방목표가 제정된 1972년 12월 29일 이후부터 국방목표가 1차 개정된 1981년 11월 28일 이전까지이다. 제4공화국(1972~1980)이 포함된다. 기간 중 국방목표는 당시의 안보현안 속에서 자주국방 기치아래 설정되었고 그 내용도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그에 따라 국방정책도 이전의 ‘시책’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체계화된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국방정책은 기본무기 국산화와 전력증강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예비군 및 정신전력 체제의 조직과 기능이 정비되면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갔다.

가. 국방목표와 주요 국방정책

1970년대 초반까지 국방부는 일관된 국방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연도별 「국방(부)기본시책」에 의거한 목표 및 방침에 따라 국방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1970년 안보회의 사무국이 「국가안전보장 기본정책서」 작성 시 ‘국가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국방목표’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는 국가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1971~1975)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1972년 12월 29일 국방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했다.⁴⁴⁾ 국방목표는 자주국방태세로의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방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군의 역할을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고 국토와 민족을 수호하는 데 두고, 적정군사력 유지를 통한 군의 정예화 달성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을 명시적인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자주국방태세의 조기 확립을 위하여 1972년부터 국방

44)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1995, 195쪽.

정책의 방향과 군사력의 건설 및 유지를 위한 분야별 정책지침을 포함하는 「국방중기정책서」를 발간했다.⁴⁵⁾ 이는 1970년대의 국방정책이 ‘시책’을 넘어 ‘정책’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방위산업 육성사업과 율곡사업은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별로 추진되었고, 한·미연합방위체제, 예비군 전력화체제, 정신교육 강화체제 등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국방기본정책목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축되었다. 국방정책이 지향해야 할 국방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됨으로써 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이다. 1973년부터 「국방기본시책」이 「국방기본정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⁴⁶⁾

〈표 7〉 연도별 국방기본정책 목표

연도	국방기본정책 목표
1973	유신이념 구현 위한 체제개혁, 정신무장, 군의 정예화, 방위산업 육성, 예비군의 전력화, 군사외교 강화
1974	방어태세 보강, 군정비 현대화, 정훈교육의 제도적인 개혁, 교육훈련 강화, 국방관리제도 개선, 병무행정 쇄신, 예비군의 전력화, 군사외교 강화
1975	국가관을 확립하고 승공정신과 군인정신을 배양, 군내 부조리 제거, 군의 과학화 및 정예화에 중점을 둔 인사관리체제 발전, 전후방 방어태세 보강, 적정규모의 정예화된 군사력을 유지, 국방비 자담체제 확립, 전 부대의 교육훈련 수준 향상, 동원예비군의 전력강화, 병무행정 쇄신, 군원중단에 따른 전·평시의 군수지원체제 보완, 간접침략에 대한 대비정규전체제 보완, 민방위태세의 적극 지원, 군사전략 및 전술교리의 발전, 방위산업의 적극 육성, 독자적인 입체적 정보수집 능력 강화, 군사시설관리의 효율화, 군사외교의 적극적인 전개와 한·미연합방위체제 공고화, 비적성국과의 군사교류 확대
1976	정신전력 강화, 방위태세 보강, 자주국방체제 확립, 국방관리 개선, 군사외교 강화
1977	정신전력 강화, 방위태세 보강, 자주국방체제 확립, 국방관리 개선
1978~79	정신전력 강화, 방위태세 보강, 자주국방태세 촉진, 국방관리 개선
1980	자위역량 강화, 정신전력 강화, 향토예비군 정예화, 민방위체제 발전, 한·미연합방위체제 공고화

45) 그러나 「국방중기정책서」는 국방정책에 관한 5개년 계획상의 방향제시만 하였을 뿐, 국가재정의 1/3을 차지하는 방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방전역에 관한 종합적이며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서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국방부, 『제5공화국의 국방』, 1987, 69쪽).

46) 국가기록원, 『국방기본시책』(BA0662446), 「73년도 국방기본정책」, 11~13쪽.

나. 국방정책 평가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1969년 닉슨독트린 등을 계기로 박정희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대북 자주방위전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방위산업을 육성해 국내 무기생산체계를 구축하면서 옹곡사업을 추진해 전력을 증강했고, 북한의 잦은 도발에 대비해 예비군을 전력화하고, 월남전 패배를 교훈삼아 정신전력을 강화함으로써 남한 단독으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했다.

주요 국방정책들을 평가한 결과, <표 8>과 같이 ‘현상유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과 전력증강은 방위산업 연구여건을 조성하여 재래식 무기체계를 자체 생산하게 되었으나, 북한위협에 대비하는 독자적인 국방력을 갖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예비군 전력화와 정신전력의 분야에서도 예비군 지휘체제와 동원체제, 정신교육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월남패망 이후 고무된 북한의 도발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표 8> 국방정책 평가결과 : 국방목표 제정(1972.12.29.) 이후

주요 국방정책 \ 정책평가	효과성	적절성	평가결과	국방목표 달성여부
방위산업의 육성	○	×	현상유지	○
전력증강	○	×	현상유지	○
예비군 전력화	○	×	현상유지	○
정신전력 강화	○	×	현상유지	○

※ 효과성은 국방정책들이 국방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판단하는 평가기준이고, 적절성은 국방정책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원래 정책문제의 해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평가기준이다. 효과성과 적절성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국방정책은 축소·현상유지·확대 3단계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방목표 달성여부는 달성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접근성의 한계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국방목표를 달성한 부분이 있으면 ‘○’로, 없으면 ‘×’로 평가한다.

첫째, 방위산업은 효과성은 있으나 적절성이 없어서 ‘현상유지’ 수준으로 추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에 필수적인 전력증강을 위해 무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기간 중에는 무기 수입을 통한 전력증강보다 방위산업을 육성해 국내 무기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방위산업 육성목표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76년까지 총포, 탄약, 통신기기, 차량 등의 기본병기를 국산화하고,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0년대 초까지 전차, 항공기, 유도탄, 함정 등 정밀무기의 국산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었다.⁴⁷⁾ 준비단계(’71~’72)를 거쳐 기본병기 기반조성단계(’73~’76)에 이르러서는 M-16 소총을 비롯하여 60/81밀리 박격포, 소화기탄, 박격포탄, 각종 유·무선 장비, 고속정 등 기본병기 개발과 생산기반이 구축되었다.⁴⁸⁾ 기본병기 기반완성단계(’77~’81)에서는 기본병기의 완전 국산화를 통한 양산은 물론 M-60 기관총, M-203 유탄발사기, 20밀리 발칸포, 곡사포와 포탄, 표준차량, 전차 개조, 구축함, 한국형 전투함, 다연장로켓 등이 양산되었다.⁴⁹⁾ 특히, 1978년에는 한국형 장거리 지대지유도탄(백곰)을 비롯한 중거리 유도탄, 다연장로켓, 대전차로켓 등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197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고, 1973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는 등 방위산업 연구여건이 조성되어 기본적인 재래식 무기체계를 국내 양산하였지만, 정밀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반은 갖추지 못했다.⁵⁰⁾ 1975년에 제정된 「방위세법」재원으로 국방비가 증가되었으나 미국의 군원 감소로 실질적인 투자액은 미비했고, 미국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47)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역사(제1권)』, 1989, 90쪽.

4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④ : 1972~1981』, 2002, 434쪽.

4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④ : 1972~1981』, 2002, 434~435쪽.

50)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정부5년』, 1992, 590쪽.

때문이다. 또 주요 선진국의 핵심기술 이전 회피 및 국내외 첨단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기술 축적 미흡으로 독자적인 고도정밀무기의 개발이 어려웠다.⁵¹⁾ 뿐만 아니라 1978년 이후부터 징수된 방위세를 점차 국방 일반투자사업에도 배분하는 식으로 변형 운용하면서 방위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⁵²⁾

둘째, 전력증강은 효과성은 있으나 적절성이 없는 ‘현상유지’ 수준으로 추진되었다. 기간 중에는 제1차 전력증강사업(울곡사업)이 1974~1981년 간 추진되었다. 전력증강사업이 착수된 1974년 당시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군의 50.8%(육군 60%, 해·공군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⁵³⁾ 그나마도 한국군은 주로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시 사용하다가 무상군원으로 제공한 M-1 소총 등 구형무기로 장비하고 있어서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AK-47 소총에 비해 그 성능이 매우 열세했다.⁵⁴⁾

이에 국방부는 전력증강 추진목표를 ‘대북 방어전력 확보’에 두고, 조기경보 및 방공능력 강화, 항공 및 해군전력 증강, 전투사단 개편 및 후방경비사단 무장화, 지상화력 및 기동력 보강, 국방연구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제1차 전력증강사업 대상기간(‘74~’81) 8년 동안 3조 1,402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국방비 대비 31.2%에 해당된다.⁵⁵⁾ 이로써 남한의 군사력은 제1차 전력증강사업이후 기본적인 재래식 무기체계를 국내 양산하는 수준에 도달했는데, 각 군의 구체적인 전력증강 추진결과는 <표 9>와 같다.⁵⁶⁾

51)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6공화국정부5년 노태우대통령공약실천』, 1993, 220쪽.

52) 김희상, 「21세기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국의 국방정책」, 『국방정책 연구보고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2, 96쪽.

53)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994, 34쪽.

54)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994, 34쪽.

5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④ : 1972~1981』, 2002, 442~443쪽.

5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④ : 1972~1981』, 2002, 443~444쪽.

〈표 9〉 제1차 전력증강사업 추진결과

구분	전력증강 내용
육군	◦ M-1소총·카빈소총·LMG 경기관총 → M-16 소총 · M-60기관총 ◦ M-47/48계열 전차 → M-48 A3/A5 개조전차와 한국형전차 ◦ 구형 155밀리 고사포 → 155밀리 개량포 ◦ 10여대의 헬기, O-1RL → UH-1H, AH-1J, 500MD 등 무장헬기
해군	◦ 구형 구축함 → 한국형 구축함 및 경비함, 각종 대·중·소형 고속정(PGM, PKM, PK) ◦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각종 대잠 감시장비의 확보 ◦ 해상 수송능력과 소해능력 향상 ◦ 해병사단 및 여단 증·참설
공군	◦ F-86 → F-5A, F-5E ◦ O-2A항공기, A-37항공기, F-4E전폭기 도입 ◦ 4개 전투비행단과 1개 전술통제비행단 창설 ◦ 레이저 유도폭탄, CBU폭탄, 매브릭(Maverick)탄, 사이드와인더(Sidewinder)·스패로(Sparrow)·공대공유도탄, 채프(Chaff)탄 확보

그러나 제1차 전력증강사업 이후에도 한국군은 북한군 전력의 54.2% 수준 밖에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⁵⁷⁾ 제1차 울곡 사업은 투자가 분산되고 무기체계선정에 착오가 일어난 데다 운영 유지비가 급증하는 등의 이유로, 8년 동안에 북한과 불과 3.4%의 격차밖에 줄이지 못했다.⁵⁸⁾ 또한, 1975년 1월 최초로 이루어진 감시원의 울곡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제1차 전력증강사업은 기밀 유지가 취약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지도가 결여되어⁵⁹⁾ 추진 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예비군 전력화정책은 효과성은 있으나 적절성이 없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분석된다. 1968년 4월 1일 창설된 향토예비군은 군경과 함께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총 전과의 60%에 달하는 작전성과를 거둬으로써 북한의 도발과 대남침투를 저지하는 후방방위의

57)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994, 37쪽.

58) 국방부, 『제5공화국의 국방』, 1987, 157쪽.

59)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한국방위산업학회, 2015, 158쪽.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⁶⁰⁾ 1970년 8월 3일 법률 제2207호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제정한 이후 예비군의 조직과 편성을 강화하고 무장하는 등 전력화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였기에 효과성이 있다고 본다.

1971년까지 예비군에 지급된 무기는 M-1 358,025정, 카빈 954,461정, 기관단총 84,939정으로 도합 1,397,425정에 달하였으나, 계획의 59% 수준에 불과하여 전투력 발휘를 위해서는 장비의 보충이 시급했다. 1975년 전력화부대의 무장기준을 설정하여 개인화기(M-1, CAR)는 1인당 1정, 공용화기(AR, LMG, M-79)는 소대장 1정을 지급하고, 통신장비는 AN/PRC-10을 중대당 2대, AN/PRC-6을 소대당 1대를 지급했다. 1979년 구·시·군 단위에 관리대와 기동대를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타격대를 편성함으로써 공용화기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무기 및 장비 지급기준도 개선했다. 1980년도에는 예비군 무장기준을 재설정하여 기동대는 81밀리 박격포 및 57밀리 무반동총까지 장비시켜 화기중대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타격대는 60밀리 박격포와 LMG(경기관총), M79 유탄발사기 등을 장비시켜 화기소대를 수준화했다.⁶¹⁾ 예비군은 지휘체제, 조직과 편성, 교육과 훈련, 동원체제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전력화되었고, 북한의 도발과 대남침투에 효율적으로 대처했다. 군특명검열단은 예비군 무기 및 탄약관리 실태에 대한 불시검열을 실시하여 예비군의 전력을 점검했다.⁶²⁾

그러나 예비군의 구조 및 관리계획의 미비로 국가잠재전력동원의 신속성과 지속성을 기할 수 없었다. 더욱이 동원사단의 작전계획과 동원관리가 미비하고 전시대비 업무규정이 적절하지 못하여 전·평시

60)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3집』, 1977, 527쪽

61)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1995, 220쪽.

62) 국가기록원, 『무기류 점검 및 손망실철(1970년 7월~1975년 6월)』(CA0238890), 「예비군 무기 및 탄약 검열 결과」, 21~23쪽.

계획 간의 연계성과 국가자원의 발굴체계가 결여되어 있었다. 예비군의 관리에 있어서는 지역예비군의 불합리한 부대편성으로 동일행정구역내에 3개 중대가 편성되어 지위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작전상의 지장을 초래했다. 또한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민간인신분으로 1일 4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있어 지휘관리 상에 소홀한 점이 많았으며 각종 부조리를 유발했다. 특히 예비군지휘관에 대한 인사관리 제도가 미흡하여 임용지휘관의 자질이 저하되었으므로 예비군의 관리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⁶³⁾ 게다가 월남공산화 이후 고무된 북한의 빈번한 남침기도를 노후 구형무기로 봉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1970년대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 횟수는 총 409건으로, 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보다도 많았고,⁶⁴⁾ 심대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박 대통령 저격사건, 남침용 땅굴사건, 판문점 도끼살인사건 등도 있었다. 1972년부터 1980년까지의 북한무장간첩 침투 및 작전결과를 보면, 북한무장간첩들이 사살·검거·자수한 경우보다 도주한 사례가 78%로 훨씬 많았다.⁶⁵⁾

넷째, 정신전력의 강화는 효과성은 있으나 적절성이 없는 ‘현상유지’로 분석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신전력의 획기적인 쇄신을 강조한⁶⁶⁾ 이후 무형의 전력분야가 유형의 군사력과 쌍벽을 이루는 전력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⁶⁷⁾ 정신교육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조됨에 따라 국방부는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1976년부터 ‘정신전력 강화’를 국방기본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국방부는 1977년부터 ‘정신교육의 날’을 시행하여 병사들의 정신

63) 국방부, 『제5공화국의 국방』, 1987, 213쪽.

64) 합참정보본부, 『북한 대남 침투 및 국지도발 사례집』, 2011, 6쪽.

65) 국방군사연구소, 『대비정규전사Ⅱ(1961~1980)』, 1998, 359~360쪽.

6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④ : 1972~1981』, 2002, 190쪽.

67) 육본 정훈감실, 『정훈50년사』, 1991, 714쪽.

교육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교육효과를 증진함으로써 공고한 단결과 정신전력 강화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특히 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군정신전력학교가 1977년 9월 5일 창설되었다. 이로써 정신전력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간부요원의 양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1979년에는 국군정신전력 교본을 발간하여 교재를 단일화했다.⁶⁸⁾

그러나 반공이념교육에 있어서 이념교육용 기본교재는 교육대상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술적 논리에만 편중하여 편찬된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공산주의 비판내용도 이론과 실재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표현되어 장병들에게 공산주의의 모순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반공이념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지도방향을 설정하는 데 혼선을 빚는 경우가 빈번했다.⁶⁹⁾ 그 외에 정신교육 지도교관의 자질과 정훈교재의 효율성, 강의위주의 주입식 교육방법 등의 문제도 제기됨으로써 본래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5. 국방정책 전환기 : 국방목표 1차 개정 (1981.11.28) 이후

이 시기는 국방목표가 1차 개정된 1981년 11월 28일 이후부터 2차 개정된 1994년 3월 10일 이전까지이다. 제5공화국(1981~1987) 및 제6공화국(1988~1997)의 노태우 정부(1988~1992)와 김영삼 정부 1년차(1993)가 포함된다. 이 시기는 이전 시기에서 체계화된 자주 국방체제를 확립하는 단계로, 국방목표를 개정하고 전환기적 안보

68)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1995, 226쪽.

6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제5공화국의 국방』, 국방부, 1987, 230~231쪽.

상황 하에서 전략적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한 국방정책의 전환기였다.

가. 국방목표와 주요 국방정책

1972년에 최초 개정된 국방목표는 1981년 11월 28일 국방부 정책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다.⁷⁰⁾ 1980년대 이르러 국방 분야의 영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한 개정이었다. 개정된 국방목표에는 국가이념과 국가이익의 보호 및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군사력의 역할(억제와 방위),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 부여, 국방정책의 목표와 목표달성 수단과의 구분이 고려요소로서 포함되었다.⁷¹⁾

개정된 국방목표는 이전의 국방목표를 대폭 수정한 것으로, 국방정책에서도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표 10>에서 보면, 국방목표의 개념이 단순화되고, 방위산업과 군사력에 대한 기술은 없지만 연도별 국방정책 기본방향과 국방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군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군사력 운용능력을 강화했다. 자주국방태세나 한미안보협력, 남북관계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표 10> 1차 개정 국방목표

최초 제정 국방목표	1차 개정 국방목표	
1. 국방력을 정비 강화하여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고 국토와 민족을 수호한다. 2. 적정군사력을 유지하고 군의 정예화를 기한다. 3.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자주국방체제를 확립한다.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군의 역할과 국가보위를 위한 군사력의 적극적인 운영개념 포함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 국가목표인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력의 역할과 군사력의 평시 운영 개념인 억제 개념 포함 - 군사력 운용의 정당성 밝힘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	- 전시와 평시의 군사적 역할과 군사력 운용의 정당성 명시 - 주변전략과 정보변화에 신속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 내포

70)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1995, 245쪽.

7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⑤ : 1982~1990』, 2012, 87쪽.

그러나 개정된 국방목표의 내용과 달리 제5공화국 초기에는 자주 국방이라는 국방목표가 퇴보한 측면이 있었다. 한미군사동맹을 적극 고려하는 국방정책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전력증강사업이 연구개발보다 미국무기를 직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국방과학연구소의 유도탄 개발팀이 해체되고, 연구개발비가 장비 구입비로 전환되는 등 자주국방의 기반인 국내 연구개발과 방위사업이 약화되었다. 하지만 아웅산 묘소 폭발·테러(1983.10)를 계기로 자주국방태세와 국방기획관리체계를 확립하면서 자주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제6공화국 기간에는 1980년대 후반 전환기적 안보상황으로 인해 포괄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즉, 탈냉전 안보상황과 달리 북한의 위협은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결구조가 지속되나 중·장기적으로 평화공존 및 군비통제가 가시화되는 안보의 2중성으로 신축적이고 전략적인 국방정책의 추진이 요구되었다. 우선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중인 현실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총체적 안보개념에 의한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여 국가보위를 확고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통일 기도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힘’에 의한 전쟁억제를 기조로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군비통제 정책을 모색해 나갔다. 그런 한편 한미동맹 관계에서도 ‘한국방위의 한국화’로 한국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목표에 걸맞게 유엔평화유지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전환기적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실인식 중심의 정신교육도 강화했다.⁷²⁾ 또한 8·18군구조 개선과 국방개혁을 통해 평화공존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국방태세를 발전시켜 나가며, 군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해 나갔다.⁷³⁾

72) 국무총리행정조정실, 『노태우대통령 지시사항 종합결산보고서』, 1993, 329쪽.

73)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정부5년』, 1992, 542쪽.

요컨대, 이 시기의 국방정책은 새로 설정된 국방목표를 토대로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와 군사력을 고려하여 <표 11>과 같이 대북 군사대비태세의 완비, 자주국방태세의 확립,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유지, 국가총력방위태세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⁷⁴⁾ 기간 중 추진해온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은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방위태세의 완비, 적정수준의 군사력 건설, 정신전력의 강화, 국방관리의 효율화, 군사협력체제 강화, 정부시책의 적극 추진 등이었다.⁷⁵⁾

<표 11> 연도별 국방정책 기본방향

연도	국방정책 기본방향
1982	국방태세의 강화, 적정수준의 군사력 건설, 예비전력의 강화, 정신전력의 강화, 국방관리의 정착화, 병무행정의 개선
1983	방위태세의 완비, 자주국방력의 제고, 예비전력의 정비 강화, 정신전력의 강화, 국방관리의 효율화
1984	방위태세의 완비, 적정수준의 군사력 건설, 예비전력의 정비 강화, 동원태세의 확립, 정신전력의 강화, 국방관리의 효율화, 군사협력체제의 강화
1985	방위태세의 완비, 적정수준의 군사력 건설, 정신전력의 강화, 국방예산개혁 추진, 예비전력의 강화, 국가시책의 선도적 수행
1986	군사대비태세의 완비, 자주국방태세의 확립,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 국가총력방위태세의 강화
1987	1~3일 작전태세 강화, 예비전력 강화, 동원태세 확립, 88서울올림픽대회 대비 군사대비태세 발전, 이념교육 및 국민정신교육 강화, 대국민 신뢰도 고양
1988	군사대비태세의 완비, 자주국방태세의 확립,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 국가총력방위태세의 강화
1989	군사대비태세의 완비, 자주국방태세의 확립,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 국가총력방위태세의 강화
1990	대북 군사대응태세 강화, 안보협력체제의 발전, 자주국방태세의 확립, 총력방위태세의 강화
1991	통합안보태세 강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 발전, 국가발전예의 능동적 기여
1992	확고한 국방태세 구축, 대내외 군사관계 발전, 중·장기 국방정책 발전,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1993	확고한 국방태세의 구축, 대내외 군사관계의 발전, 중·장기 국방정책의 발전,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7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⑤ : 1982~1990』, 2012, 88~94쪽.

75)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1995, 246~247쪽.

나. 국방정책 평가

이 시기 국방정책의 핵심은 미국과의 집단안보체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한 억제전력 확보와 지속적인 전력증강사업의 추진이었다. 특히, 제6공화국은 대내적으로 장기적인 국방태세발전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818계획을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군비통제정책과 북방외교를 적극 추진했다.

주요 국방정책을 평가한 결과, <표 12>처럼 ‘현상유지’ 단계로 분석된다. 전력증강은 국방비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818계획에 의한 군 구조 개편작업은 일대 혁신이었으나, 본래 목표와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탈냉전의 안보환경 속에서 군비통제정책과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대북 우위의 자주적 군사외교의 목표를 달성했으나, 실질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표 12> 국방정책 평가결과 : 국방목표 1차 개정(1981.11.28.) 이후

구분	효과성	적절성	평가결과	목표달성 여부
전력증강	○	×	현상유지	○
818계획	○	×	현상유지	○
군사협력	○	×	현상유지	○
군비통제정책	○	×	현상유지	○

첫째, 이 시기에 추진된 제2차 전력증강사업은 1차 전력증강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 활성화되어 ‘방위태세의 완비’와 ‘적정 군사력의 건설’이라는 국방목표에 기여하여 자주적 방위능력을 갖추는데 효과성을 거두었다. 그 결과 북한과의 전력격차를 줄였으나 억제전력 보완을 위해서는 여전히 전력정비 노력이 요구되었다.⁷⁶⁾

76)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994, 47쪽.

따라서 효과성은 있으나 적절성이 없는 ‘현상유지’ 단계로 평가된다.

제2차 율곡사업(1982~1986)은 1차 율곡사업에서 못 다한 ‘방위 전력 보완 및 전력의 질적 향상’에 추진목표를 두고,⁷⁷⁾ 지상군의 전투부대, 전차, 포병, 방공, 육군항공전력 강화와 해군의 고속정, 수중감시장비, 서해 5개 도서 보강, 공군의 전천후 전술기, 유도탄, 전자전 능력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2차 율곡사업부터는 국방부가 예산개혁 작업을 주도했고, 국방기획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동계획으로 변경 추진되었다. 제3차 율곡사업(1987~1992)은 전두환 정부에서 계획되어 초반기에 추진되다가 걸프전에 따른 정세변화와 교훈,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변경에 대비하고 북방정책 추진에 따른 긴장완화 및 남북한 군비통제 등을 고려하여 전력증강 추진방향을 전환했다. 즉, 세계 화해분위기 속에서도 국지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도정밀무기체계가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대북 방위전력보다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 고도정밀무기체계 중심의 독자적인 전력구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에 따라 무기체계의 국내생산과 토착개발 및 설계에 주력했다.⁷⁸⁾ 그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 방위전력 확보를 위해 전술 조기경보 체제 및 기존 전력을 내실화한다는 목표는⁷⁹⁾ <표 13>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⁸⁰⁾

77) 국방부,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994, 38쪽.

78) Richard A. Bitzinger,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at the Crossroad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Summer 1995), Vol. VII, No. 1., p. 236.

79)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1995, 309쪽.

80) 국방부,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994, 37~45쪽.

〈표 13〉 국방정책 전환기의 전력증강사업 추진성과

구분	실투자액 (국방비대비)	전력증강 추진결과		북한대비 전력수준
제2차 올곡사업 (1982~ 1986)	5조 3,280억원 (30.5%)	육군	19개 사단급 부대 창설, 후방지역 군단사령부 신설, 88한국형 전차, M-47/48전차 성능개량, 대전차방벽 설치, 토우(TOW) 대전차미사일 도입, 한국형 장갑차 개발, 155밀리 자주포 국내생산, 다연장로켓포 생산·전력화	60.4%
		해군	중·소형 고속정 증강, 한국형 구축함 생산·실전배치, 대잠초계기 도입, 함정 5중 개발, 기뢰탐색함 개발, 신형 상륙돌격장갑차(LVT 7A1) 도입·배치	
		공군	F-4D/E 팬텀기 추가도입, 제공호 국내생산·배치, F-16 전투기 확보, RF-4C 정찰기 도입	
제3차 올곡사업 (1987~ 1992)	13조 7,872억원 (35.8%)	육군	한국형 전차/장갑차, 공격헬기/다목적헬기, 기계화보병사단(3) 보유, 동원사단(2) 창설, 여단(1) 창설, 155밀리 자주포 생산·배치	71%
		해군	한국형구축함(KDX) 건조사업 착수, 호위함(FF)/소계함(PCC) 추가 생산·배치, 중·소형 고속정(PKM) 작전배치, 해상작전헬기(LYNX) 배치·운용	
		공군	F-16전투기 도입·작전배치, 한국형전투기사업(KFP) 착수, 휴대용 유도무기 확보·배치, 중·고고도 방공무기체계(호크/나이키) 공군으로 전환	

이 시기 전력증강을 통해 획득된 장비와 무기체계는 획기적인 향상을 보였다.⁸¹⁾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무기체계는 대부분 이 시기 올곡사업을 통해 획득한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력증강에 대한 투자도 늘어 1983년도에 28%, 84년도에 31.9%, 85년도에 33.5%, 86년도에 36%, 87년도에 38.8%로 격상시켰다.⁸²⁾ 제3차 올곡사업은 실투자비 13조 7,872억 원으로 국방비 대비 35.8%로, 종래의 제1, 2차 올곡사업 때보다 전체 액수 상으로는 4배 증액되어 국방비 대비 4~5% 이상의 투자확대의 형태로 전력증강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당시의 군사력 건설은 주로 F-5 전투기의 기술도입생산과 한국형 구축함 등의 함정 건조, 야포 및 88한국형 전차(K-1전차)와 토우(TOW)대전차 미사일,

8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⑤ : 1995~1997』, 2003, 124쪽.

82) 한용섭, 「국방역사 시기구분에 관한 연구」,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2, 22쪽.

장갑차의 개발 및 생산이라는 수준에 이르렀다.⁸³⁾ 또 일부 첨단 정밀 무기체계는 기술도입을 통해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은 방위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환기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산업계의 주도적 참여 유도에 역점을 둔 시기였다.⁸⁴⁾

그러나 꾸준히 지속된 전력증강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전력은 2차 율곡사업이 종료된 1986년 말 북한대비 60.4%의 수준에, 제3차 율곡사업이 종료된 1992년 말 북한대비 71%에 그쳐 독자적인 대북한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⁸⁵⁾ 또한 장비와 무기를 자체 생산하기보다는 해외로부터 직도입하여 자주국방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방위산업이 상당부분 축소되고, 무기의 공급을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저해했다.

뿐만 아니라 전력증강사업은 대부분 범정부적 합의 없이 국방부 내에서 단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각 군 간의 예산 경쟁, 갑작스런 긴급 소요 제안, 빈번한 소요 변경, 그리고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⁸⁶⁾ 또 과거에 율곡사업 예산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부적 사업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방위력 개선’이라는 단일 예산항에 모든 사업예산을 합한 총액으로 국회의 예산 승인을 받았다. 예산승인 후에는 국방부장관의 책임 하에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집행되었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최고위층의 독단적 예산전용이

8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⑤ : 1995~1997』, 2003, 123~124쪽.

84)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정부5년』, 1992, 596쪽.

85) 국방부,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994, 40쪽, 47쪽.

86) 국가기록원, 『김영삼정부 5년

국정종합자료(국실검토)』(1290356-99999999-1997-000004-001), 「김영삼정부 5년 국정종합자료 검토내용 제출」, 1997, 116쪽.

가능하여⁸⁷⁾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둘째, 장기국방태세발전방향 연구(818계획)는 우리의 군 구조를 합동군제의 지휘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과 국방행정의 선진화를 시도했다.⁸⁸⁾ 이런 측면에서 818계획은 정책적 효과성을 보인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각 군의 이해와 대립으로 최초의 계획이 수정되었으므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818계획은 효과성은 있으나 적절성이 없는 ‘현상유지’로 평가된다.

제2의 창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제6공화국 정부는 장기적인 안보정책의 기본과제로 ‘장기국방태세발전방향(818계획)’을 추진한 결과, 군 구조 개편을 통해 통합전력의 발휘를 극대화시켰고, 전력증강사업체제와 집행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핵심전력을 우선 건설하여 대북한 방위전력을 향상시켰다.⁸⁹⁾ 또 818계획으로 국군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방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을 개발함은 물론, 국방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게 되었다.⁹⁰⁾ 국방부는 군구조 개선으로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하고 국방부 / 각군본부를 필수정책기능위주로 감축하며, 방산 및 연구개발 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① 필수 정책 기능위주 통·폐합 및 집행기능 이관, ② 계선화 조직으로 책임과 권한 강화, ③ 율곡사업 체계의 정비, ④ 일반직 우선배정, 군인 필수직위 보직 등의 방침에 따라 개편을 단행했다.⁹¹⁾

하지만 818계획 사업단은 당초 통합군제를 계획했지만 권력 집중,

87) 위와 같음.

8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⑤ : 1995~1997』, 2003, 227쪽.

89)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6공화국정부5년 노태우대통령공약실천』, 1993, 218쪽.

90)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 1992, 14~15쪽.

91) 국가기록원, 『818본부조직개편안』(1290822-99999999-1090-000009-001), 「국방본부 조직개편」, 133쪽.

문민통제 약화, 해·공군의 반대 등에 부딪혀 최초의 정부안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된 통제형 합동군제를 전략적으로 선택했고, 그 이후 추진과정에도 정책은 표류했다. 또, 국방부는 국군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군의 상부구조를 개혁함으로써 3군의 균형발전과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하지만, 초기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어 정책의 적절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통합군제의 본래 취지와 달리 통제형 합동군제는 육군중심의 개혁안이었다.⁹²⁾ 또한, 군구조 분야에 치중한 나머지 인적쇄신 및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분야는 발전시켜야 할 여지를 많이 남겨놓았으며, 군구조도 혁신적인 자세로 개선하고자 노력한 것은 사실이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후평이다.⁹³⁾ 가령, 아무리 좋은 조직기구를 마련하더라도 그 안에서 몸을 담고 일하는 인적자원의 자질이 미흡하면 양질의 정책을 입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군사협력은 전략적이고 전향적인 군사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자주방위체제의 구축’이라는 국방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성을 거두었으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여 적절성 없는 ‘현상유지’ 수준으로 평가된다.

군사외교정책의 핵심이었던 한미관계는 1983년 제1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종전의 ‘이해상관지역’에서 ‘사활적 이해상관지역’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전면폐지하고 안보적 차원의 동반자로서 한·미 군사협력의 개념이 재정립되었다.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평가가 한·미 군사협력의 정책적 전환으로 이어진 것이다. 1984년 제1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북한의 버마폭파사건 및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군의 전력증강계획의 적극 추진과

92) 권영근, 『한국군 국방개혁의 변화와 지속 : 818계획, 국방개혁2020, 국방개혁 307을 중심으로』, 2013, 295~298쪽.

93)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정부5년』, 1992, 565쪽.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에는 국제정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미국무성이 주한미군의 감축과 방위비문제를 담은 ‘동아시아·태평양 전략 구상’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계획이 현실화되었다. 이는 한국군의 대미 의존적 방위체제가 한국의 자주적인 국방태세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 군은 전환기적 상황에서 전략적이며 전향적인 자세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개선과 한국방위의 한국화 등 자주국방의 기틀을 보다 확고하게 다져나갔다.

한미 군사협력관계가 과거 시혜자 및 보호자의 위치에서 동반자 및 협력자의 위상으로 변모되고, 1991년 정전위수석대표의 한국군 장성 임명, 1992년 연합야전사령부 해체, 지상구성군사령관에 한국군 장성 임명, JSA 경계병 100명 한국군으로 교체 등 한국군이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⁹⁴⁾ 우리 국방의 자주성이 강화되었다. 한미행정협정의 개선, 작전통제권의 단계적 인수 등 권한 측면에서의 평등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방위비 분담규모의 증가, 전시 주둔군 협정체결에 의한 군수지원 부담 증대 등 의무 측면에서의 반대급부적인 형평성도 증대되었다.⁹⁵⁾

우리 군은 미국과의 군사협력 외에 일본, 서구 등 기존의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유대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제국과 남미·아프리카 등 제3세계, 비동맹국과도 협력관계의 기반을 구축하여 군사외교의 다변화를 추구했다. 특히 국제정치 질서의 지각변동 상황에서 출범한 제6공화국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은 대부분의 공산국가와 국교를 정상화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94)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6공화국정부5년 노태우대통령공약실천』, 1993, 218쪽.

95)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정부5년』, 1992, 701쪽.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 군사협력과 한국 지지 세력의 협조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적인 테러망을 구축한 도발이었던 1983년 10월의 버마 아웅산 폭탄·테러사건과 1987년 11월의 KAL기 폭파사건 발생 시 군사협력관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넷째, 군비통제정책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실패함으로써 효과성은 있으나 적절성이 없는 ‘현상유지’ 수준으로 분석된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모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군비통제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했다. 군비통제정책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상호 군사력의 운용을 조정 및 통제하여 남북 간의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시키며, 과도한 군사력을 통제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남북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두었다.⁹⁶⁾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남북협상을 추진한 결과 1989년 9월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그것은 남북 대화 역사상 최초로 남북한 군사당국자가 포함된 당국 차원의 회담이었다.⁹⁷⁾

남북한 간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지만 1991년 12월 제5차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 한반도에서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991. 12. 10~13)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고,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1992. 2. 18~21)에서 발효되었다.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발효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현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96)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1995, 327쪽.

97) 이미숙, 「남북한 군사협상의 역사적 조망과 향후 전망」, 『한반도 군비통제』 47(2010.6),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11쪽.

전환 등 평화공존에 관한 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떠한 합의도 이행하지 않았다. 협의기구인 남북 군사분과위원회에서는 불가침문제를 제대로 토의하지도 않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로 전가시켰고, 이행기구인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개최조차 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핵 위기가 고조되어 정책목표와는 달리 군사적 긴장감이 극대화 되었다. 군비통제협상은 1992년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까지 이어졌으나, 동년 11월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92팀스피리트훈련을 빌미로 북한측이 대화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중단되고 말았다.

6. 국방정책 개혁기 : 국방목표 2차 개정 (1994.3.10) 이후

국방목표가 2차 개정된 1994년 3월은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2년차이다. 현재까지 3차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시기에는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영삼 정부까지로 시기를 한정한다. 국방목표가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김영삼 정부이후부터는 탈냉전과 민주화라는 새로운 포괄적인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목표를 현실적으로 보완한 새로운 목표 개념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기간 중에는 탈냉전이후 군사안보개념의 변화에 따라 국방목표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국방부는 문민국방시대를 맞아 인사, 국방조직, 군 기강, 방위력개선사업 등의 분야에서 국방태세의 전면적 개혁을 단행했다.

가. 국방목표와 주요 국방정책⁹⁸⁾

국방목표는 1994년 3월 10일 2차 개정되었다. 국방부는 탈냉전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유엔회원국이 되고, 중국·러시아와 수교하는 등 안보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위협의 범위 및 성격이 다양화되는 상황이 조성되자, 국방목표에 대한 제2차 개정을 단행했다. 이는 외부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통일시대를 맞이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개정된 국방목표는 주변국 위협에 대처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설정되었다.

개정된 국방목표에서는 ‘적의 무력침공’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무력침공만을 국가보위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현재의 안보개념이 군사 위주의 개념에서 정치·경제·외교·문화 등을 포함한 총체적 안보개념으로 변화함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안보대상의 범주를 확대한 것이다.⁹⁹⁾

‘적’을 ‘외부’로 수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적 개념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 국가안보를 위한 광의적 개념으로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포괄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를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수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위상과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주변국가들과의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지역의 안정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유지에 적극 참여하여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¹⁰⁰⁾

특히 국방부는 불확실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98)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1995, 301~302쪽.

99) 국방부, 『국방백서 1994~1995』, 1994, 21쪽.

100) 국방부, 『국방백서 1994~1995』, 1994, 21쪽.

위해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의 발전’을 21세기를 지향하는 국방좌표로 설정했다.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이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도발위협 및 급변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고, 미래의 불확실하고 새로운 전략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¹⁰¹⁾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의 발전은 대북 군사관계 발전, 대외 군사관계 발전, 정예 군사력 정비, 효과적 자원관리정책 발전, 4대 국방 현대화 과제¹⁰²⁾ 추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간 중에는 <표 14>와 같이 ‘확고한 국방태세 구축’, ‘대내·외 군사관계 발전’, ‘미래지향적 국방력 정비’,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국방정책이 추진되었다. ‘확고한 국방태세 구축’은 군사대비태세, 한미연합방위태세, 군의 사기 및 단결 증진에 중점을 두었고,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은 ‘국방 5대 개혁과제’를 도출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했다.

<표 14> 국방정책 개혁기의 국방정책 기본방향

연도	국방정책 기본방향
1994	완벽한 국방태세의 구축,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의 발전, 군 개혁의 지속 추진
1995	확고한 국방태세의 구축,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의 발전, 신 국군상 확립
1996	확고한 국방태세 구축, 대내외 군사관계 발전, 미래지향적 국방력 정비,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1997	확고한 국방태세 구축, 대내외 군사관계 발전, 미래지향적 국방력 정비,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101) 국방군사연구소, 『국방부사 1992~1994』, 1997, 20쪽.

102) 국방부는 21세기와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2년 7월부터 인력관리 현대화, 정보현대화, 국방과학기술 현대화를 추진해왔다. 그 후 국방정보화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5년부터 C⁴I현대화를 추가하여 추진했다(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1995, 23~24쪽).

나. 국방정책 평가

이 시기 주요 국방정책을 보면, 군사관계 면에서는 주변국을 포함한 유럽, 중남미 국가 등과 다변화된 군사교류를 확대하였고, 앙골라, 서부사하라 등 4개 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여 국제군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국방태세 측면에서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위기관리 능력과 통합군사력 운용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각종 도발에 대비한 도발양상별 대침투작전태세를 구축했다. 전력증강 분야에서는 국방정보화 통합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육·해·공군의 입체적인 통합전력을 극대화했다.

주요 국방정책을 평가한 결과는 <표 15>와 같이 ‘현상유지’ 단계로 나타났다. 방위력개선사업¹⁰³⁾은 전력증강사업 중 국방비 대비 전력투자비를 가장 많이 투자하였으나 올곡특감으로 비리가 드러나면서 충분한 목표달성이 어려웠다. 대외 군사관계 중 한미관계에서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국방체제를 ‘한국주도, 미군지원체제’로 전환하면서도 ‘한·미 군사적 대응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했다. 주변국과는 경제, 방산기술 등 다양한 군사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지원 세력화 했다. 그러나 남북간의 긴장완화에 대한 군사외교적 성과는 미흡했다. 국방개혁은 과거지향적인 사정작업에 집중되어 미래지향적인 국방목표와는 거리가 있었다. 반면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기본임무 외에 대민지원활동까지 완벽하게 수행하여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103) 김영삼 정부는 올곡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연동계획으로 전력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당시에는 3차 올곡사업(1987~1992)이어 1995년까지 ‘전력정비사업’으로 부르다가 올곡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1996년 1월부터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개칭했다(서우덕 외,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한국방위산업학회, 2015, 216쪽).

〈표 15〉 국방정책 평가결과 : 국방목표 2차 개정(1994.3.10) 이후

구분	효과성	적절성	평가결과	목표달성 여부
방위력개선사업	○	×	현상유지	○
대외 군사관계	○	×	현상유지	○
유엔평화유지활동	○	×	현상유지	○
국방개혁	○	×	현상유지	○

첫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은 자주적 방위 역량을 꾸준히 확보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1993년 감사원의 울곡감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전력증강사업의 허와 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성이 없는 ‘현상유지’로 분석되었다.

방위력개선사업은 1974년 제1차 전력증강계획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효과성이 제고되었다. 이 시기에는 ‘방위전력 향상과 미래형 전력기반 조성’이라는 목표¹⁰⁴⁾ 아래 대북한 억제 전력의 보강과 장기 국가안보 전략차원의 자주적 방위능력 확보를 위한 핵심전력이 중점적으로 확보되었다.¹⁰⁵⁾ 이를 위해 신형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에 주력했다.¹⁰⁶⁾ 국방부도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 현대화’를 국방정책 중점과제로 추진했다.¹⁰⁷⁾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국산무기를 쓴다는 원칙 수립 및 추진, 무기체계 재정비, 방위산업 육성체제 재정비 등이었다. 그 결과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위력개선사업은 이전의 전력증강계획과 비교하여 국방비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전력투자비를 증액하였고, 그때부터 지상전의 핵심 무기체계인 전차와 자주포를 양산

104) 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 2002, 39쪽.

10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1998, 428쪽.

106) 국방부, 『국방백서 1993~1994』, 1993, 92~93쪽.

107) 국가기록원, 『1992년도 과학적 국방인력관리<92년 최초보고>』 (1290847-99999999-1992-000181-001)의 「국방정책 중점과제 추진실태(1993.7.15)」, 127쪽.

하게 되었으며, 외국 기술도입을 통해 헬기나 잠수함, F-16 전투기 등 최신장비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¹⁰⁸⁾

〈표 16〉 전력증강사업의 주요 추진 성과

구분	1차 전력증강계획 (1974~1981)	2차 전력증강계획 (1982~1986)	3차 전력증강계획 / 전력정비사업 / 방위력 개선사업(1987~1996)
투자비 (국방비 대비)	3조 1,402억 원 (31.2%)	5조 3,280억 원 (30.5%)	26조 105억 원 (32.0%)
추진내용	• 노후장비 교체 • 전방지역 진지 축성 • 고속정 건조 • 항공기(F-4) 구매	• 자주포, 한국형 전차, 장갑차 개발 • 주요 전투함정 건조 • F5전투기 기술도입 생산	• 전차, 장갑차, 자주포 양산 • 헬기, 잠수함, F-16 전투기 기술도입 생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기준 대북한 전력지수는 75%¹⁰⁹⁾ 정도에 그쳤다. 또한 1993년 감사원의 울곡사업 감사결과¹¹⁰⁾에서 지적된 비리¹¹¹⁾ 및 예산 전용의 비효율성과 업무의 부적절성을 개선하는 문제가 시급했기에 전력증강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은 지연되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비리문제보다 업무 부적절에 관한 사항이 많다.¹¹²⁾ 이는 전력증강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이 더 심각한

108) 국방부, 『국방백서 1996~1997』, 1997, 135쪽.

109) 국방부, 『국방백서 1998』, 1998, 113쪽.

110) 1993년 4월말부터 7월초까지 약 70일간 국방부를 대상으로 울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기체계 및 기종 결정 등 여러 분야에서 총 118건이 지적되었다. 주요 지적사항은 부서 간 또는 관계 기관 간 협조 미흡으로 사업추진 지연, 무기체계 채택 및 기종 결정 소홀, 작전요구조건 변경 및 고가품 도입으로 예산 낭비, 고장 또는 성능 미흡 장비를 개량하지 않음, 불요불급 무기를 구매하여 사장시킴, 국산화 추진 미흡, 전력증강사업 집행방침 및 절차 부적절 등이었다(서우덕 외,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한국방위산업학회, 2015, 159~161쪽).

111) 감사원의 울곡감사결과에서 KFP사업, UH-60헬기사업, 중형수송기(CN235M)사업, 고등훈련기(HWAK)사업, CH-47D헬기사업, 공대공유도탄사업, 해상초계기(P-3C)사업, 잠수함사업, 구축함(KDX)사업 등에 대한 방산물자 소요에서 운용 배치까지 업무전반의 타당성, 적절성, 적합성, 유효성 등이 지적되었다(국가기록원, 『울곡감사관계철』(1290816-99999999-1983-000004-001)의 「감사원 감사결과 요약보고」, 179~226쪽).

112) 서우덕 외,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한국방위산업학회, 2015, 162쪽.

문제임을 의미한다.

둘째, 대외 군사관계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대외 군사 외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효과성을 보였으나 궁극적으로 남북 군사관계의 평화적 관리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적절성이 없는 ‘현상유지’ 수준으로 분석된다. 대외 군사관계 정책은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설정된 미래지향적인 국방목표를 적극적으로 구현하여 효과성을 거두었다. 국방부는 국방목표와 국가외교 시행을 위한 ‘국가외교정책 기조’의 범위 내에서 이들 두 개의 상위목표를 군사외교적으로 달성하고자 군사외교 기본방향¹¹³⁾을 설정하여 군사외교활동을 확대 추진했다.

한·미동맹관계에서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국방체제를 ‘한국주도 미군지원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도 1997년 12월 ‘한반도 전쟁이외의 사태 시 한·미의 군사적 대응지침’¹¹⁴⁾을 마련했다. 이로써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에 대비한 대비태세 및 위기관리체제를 보완했다. 1995년 제2차 SOFA 특별협정에서는 한·미간의 공동방위 분담을 단순한 비용분담 차원에서 점차 포괄적인 책임분담 방향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대미의존적인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상호보완적 안보협력관계로 발전시켰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러시아와의 군사교류 양해각서 체결, 중국과의 무관부 상호개설, 일본과의 군사교류 확대, 유럽을 비롯한 중동 및 서남아 지역과의 군사협력관계 증진 등 군사외교의 세계화와 다변화를 모색했다.

이처럼 대외 군사관계 정책은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상호보완적

113) 군사외교 기본방향은 ① 한·미 군사동맹 공고화 및 우방국과의 군사적 유대관계 강화, ② 북한의 동맹국 및 친북국가와의 군사협력관계 구축, ③ 군사교류협력 다변화로 자주국방 역량 강화 및 국가 경제외교에 기여, ④ 역내 다자 안보활동과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이다.

114) 국방부, 「한반도 전쟁이외의 사태 시 한·미의 군사적 대응지침(’97. 12. 29)」(미주정책과), 2~3쪽.

안보협력관계로 발전시켰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를 통해서도 주변국을 한반도 통일지원 세력으로 유도함으로써 대외 군사관계 정책의 효과성을 보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적 관리가 해결되지 않아 적절성은 없어 보인다. 1993년 3월 북한의 국제핵확산방지조약 탈퇴이후 조성된 핵위기 상황과 미사일 개발 위기 등에 대한 군사외교적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셋째,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 시 지원세력을 확보하여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했다.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UN을 통한 집단안보체제의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므로 국방목표를 구현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대치에는 훨씬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적절성이 없는 ‘현상유지’ 수준으로 평가한다.

한국의 평화유지군(PKF: Peace Keeping Force)은 1993년 7월에 소말리아(UNIOSOM-Ⅱ)에 건설공병부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도로공사, 관개수로공사 등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1994년 3월에 철수했다. 1994년 9월에는 서부사하라 선거지원단(MINURSO)에 의료지원단 42명을 파견하여 중앙진료소 1개와 지방진료소 3개를 운용하면서 1997년 현재 PKO사령부 및 전개한 군감시단(MOG)들에게 의료지원을 계속했다. 1995년 10월에는 앙골라(UNAVEM-Ⅲ)에 교량건설 공병부대를 파견하여 교량복구, 도로부수 등 국가재건활동에 참여하고 1996년 12월 귀국했다. 그 외에도 1994년 11월 이후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에 군 옵서버 9명을 파견했고, 1997년 3월부터 1년간은 한국군 장성이 감시단장 임무를 수행했다. 1994년 10월부터 그루지아 정전감시단에도 군 옵서버 3명을 파견했다.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은 상륙수부대와 국군의료지원단 등의 완벽한 임무 수행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상륙수부대는 지역 내 주보급로를 보수하여 현지 PKO사령부(UNOSOM II)의 보급문제를 해결하였고, 지역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발라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제너럴 다우드 관개수로를 정비하여 농경지를 경작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 외에도 지역 경찰서를 보수하고, 사랑의 학교와 기술학교를 운영하여 한국군은 소말리아인의 진정한 친구라는 의식을 가지게 했다.¹¹⁵⁾ 철수 시에는 60만 달러 상당의 장비 및 물자를 UNOSOM II 사령부와 현지 주민에게 기증하여 철수하는 다른 나라에 표본이 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 결과 UN과 UNOSOM II 사령부가 상륙수부대의 철수를 아쉬워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철수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¹¹⁶⁾ 국군의료지원단도 적극적인 진료와 신속 정확한 응급조치, 후송으로 현지사령부로부터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받았다.¹¹⁷⁾

그러나 유엔 가입 이후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은 주로 안정을 위주로 한 비전투부대의 파병이 주를 이룸에 따라 병력 규모로나 파병부대의 성격, 세계 상위권의 경제 선진국이자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는 국제적 위상과 국력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PKO 활동을 통한 국위선양과 국익증대에도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진단된다.¹¹⁸⁾

넷째, 국방개혁은 민간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국방개혁은 새롭게 개정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청산, 군의 비리와 부패 척결, 군구조 개편 등

115) 광병철, 『상륙수부대 파병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199쪽.

116) 광병철, 『상륙수부대 파병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200쪽.

117) 원태재, 『한국의 PKO 파병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174쪽.

118) 고성운, 『국제 평화유지활동의 미래구상』, 한국국방연구원, 2009, 68쪽.

포괄적인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안보환경의 변화 추세에 대비하고 자주국방태세의 조기 실현과 미래지향적인 군사력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1995년 4월에 국방조직을 개편하여 정책적 효과성을 거두었다. 그러나 추진된 개혁의 대부분이 과거 지향적인 개혁에 얽매어서 정책적 적절성을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국방개혁 정책은 ‘현상유지’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방개혁은 군내 개혁 여건을 조성하였고, 인적청산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이루었으며 대내외적으로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과 비리재발에 대한 불용의지를 확고히 나타냄으로써 군 조직과 제도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¹¹⁹⁾ 국방부는 ‘신한국 창조’라는 시대적 개혁요구에 부응하여 ‘개혁만이 군이 살 길’이라는 각오로 1993년 말 전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랑스런 신 국군상’을 확립하기 위해 국방 5대 개혁과제¹²⁰⁾를 추진했다.¹²¹⁾

우선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0월 2일 권영해 국방부장관의 특별담화문 형식을 빌려 ‘군이 정치적 중립 선언문’을 공포하고, ‘하나회’를 제거하였으며, 그 동안 외부통제 없이 진행되어 온 군사력 증강사업을 부분적으로 국회에 보고하였고, 획득심의체계 등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했다. 또 1994년 12월 1일부로 미군으로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에 따라 합참의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와 자주적 합동군사기획 등을 보강하기 위해 혼합형태의 기존 참모편성을 일반참모형태로 일원화했다.

119) 국가기록원, 『김영삼정부 5년 국정종합자료(국실검토)』 (1290356-99999999-1997-000004-001), 「김영삼정부 5년 국정종합자료 검토」, 1997, 57쪽.

120) ① 전쟁억제 및 유사시 전승보장을 위한 국방태세의 전면적 개혁 ② 21세기와 통일시대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의 개발 ③ 국방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합리성 보장 ④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개혁 ⑤ 범정부적인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적극 추진

121) 국방부, 『국방백서 1994~1995』, 1994, 29~30쪽.

전력분야는 한국형 전차 양산, 국산 잠수함·상륙함 건조, 전술기 확보 및 백두·금강사업이 이뤄졌고, 울곡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1996년 1월부터 울곡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7년 초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에 방위사업실, 합참에는 전력평가참모본부가 신설되었으며 특히 합참에는 중·장기 국방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군구조 연구발전을 위해 ‘군구조발전부’를 창설편제로 두었다.¹²²⁾

이처럼 국방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방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인적 청산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21세기 국방연구위원회’, ‘군개혁위원회’ 및 ‘국방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그 무게중심을 군 기강 쇄신에 두었다.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인 군구조 개선은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통합군제 개편안을 만들었으나, 해·공군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국방개혁은 군부통치의 발본색원, 군 권위주의의 청산, 비리와 부패 척결, 국방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합리성의 보장이라는 과거의 부작용 제거에 중점을 둔 과거 지향적 개혁이 되고 말았다.¹²³⁾ 군내 사조직 제거 등 인적 청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외 방위력사업 개선, 국방조직 개편, 국방정보화 추진, 장병복지 개선 등 군대의 미래지향적 개혁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¹²⁴⁾

122)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1997, 132쪽.

123) 한용섭, 「국방역사 시기구분에 관한 연구」,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25쪽.

124) 전상근, 「역대 한국정부의 국방개혁 비교 연구」,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2012, 31쪽.

7. 맺음말

한국 국방정책의 변천과정을 ‘국방목표’를 기준으로 시기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① 국방목표 제정 이전 시기는 국방정책 형성기, ② 국방목표 제정(1972.12.29.) 이후 시기는 국방정책 정립기, ③ 국방목표 1차 개정(1981.11.28.) 이후 시기는 국방정책 전환기, ④ 국방목표 2차 개정(1994.3.10.) 이후 시기는 국방정책 개혁기라는 특징을 보였다.

국방정책은 시기별 안보상황에 대응하면서 자주방위능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주요 국방정책 평가결과, 국방정책은 각 시기별로 ‘현상유지’ 수준에서 국방목표를 달성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정책의 대부분이 효과성은 있으나 적절성이 없는 ‘현상유지’ 수준에서 국방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정책들이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나,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 한국 국방정책이 국방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국방목표 제정 / 개정 시기 문제이다. 타이밍은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요소이다. 국방목표 설정 시기가 더 적절하다면 국방목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국방목표는 1972년 12월 29일에 최초로 공식 제정되었다. 자주국방이 절실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국방목표 설정은 더 앞당겨 질 수 있었다. 국가목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1970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국방목표를 미리 준비해두었다가 국가목표의 확정(1972. 2. 8.)에 뒤이어 바로 설정해야 했다. 그랬다면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1971~1975)’과 연계되었던 국방목표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2차 개정도 적기를 놓쳤다. 탈냉전 안보상황을 반영하고자 1991년부터 개정을 시도했는데, 3년간의 논란을 거쳐 1994년에야 개정이 이루어졌다.

탈냉전 직후인 1980년대 말 조속히 2차 개정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국방목표와 안보환경의 상관관계 문제이다. 국방목표 개념이 탈냉전 이후 변화된 안보개념을 고려하여 점차 확장되었다. 그러나 국방목표에 전환기적 안보상황의 이중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탈냉전에 따라 군비통제가 국방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유엔평화유지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과 달리 변함없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책은 불분명했다. 국방목표는 국방정책의 추진방향이자 지침이다. 국방목표에 시대별 안보환경과 정책적 요구가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국방정책의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셋째, 국방정책의 일관성 문제이다. 각 정부의 부침과 같은 정부 내에서도 정책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변하는 정책의 불안정성은 정책효과를 감소시킨다. 국방목표 최초 제정 이후 시기에 적극 추진되던 국내 방위산업이 1차 개정 이후 시기에는 축소되었다.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도 폐지하고, 국내 방산기술 육성보다는 해외 무기를 도입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국방비 감소 추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전력증강사업은 전력투자비의 편법 운용으로 목표달성이 지연되었다. ‘일관성 부재’는 계획대로 추진되던 국방정책이 국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현상유지 되거나 축소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 차기 전투기 도입을 결정한 후 도입 시까지 13년이 소요되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결정된 F-18기가 노태우 정부에서 다시 F-16기로 반복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국방기획관리 효율화의 문제이다. 아무리 시의적절한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국방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방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기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국방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과업(국방정책)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의 우선순위

결정(국방기획)이 균형을 이룰 때, 국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을 확보하여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운용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국방정책이 국방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2차 개정 국방목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안보개념이 포괄화 되고 국가이익의 개념이 확대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국방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는 국방목표를 보완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정책이 국방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목표 제정 / 개정 시기의 적절성, 국방목표와 안보환경의 상관관계, 국방정책의 일관성, 국방기획관리 효율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투고일: 2015.4.6, 심사수정일: 2015.5.20,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국방정책, 국방목표, 국방정책 형성기, 국방정책 정립기, 국방정책 전환기, 국방정책 개혁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Transformation of ROK National Defense Policy focused on National Defense Objective

Lee, Mi-sook

This article is based on 'national defense objective', analyzed the transitional process ROK national defense policies. National defense objective is to acquire one through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it is also the evaluation criteria and guidelines of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It was set up on Dec. 29th, 1972 for the national objective in 1970, it did explicit direction of policy and military strategy. In the 1980s, it had revised one with full scale for the go-it-alone defense posture (1st revision). It was amended secondly on March 10th, 1994 for the unification and the post-Cold War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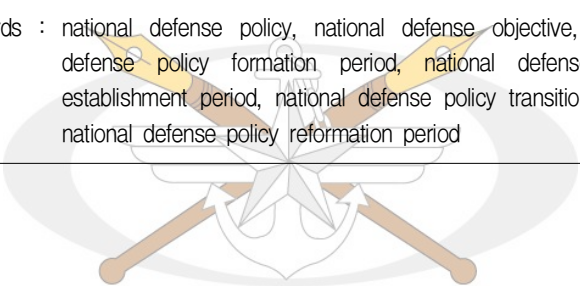
ROK national defense policy transformation processes classified national defense objective by the period are as follows :

- (1) The national defense policies foundation perio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efense objective
- (2) The national defense policies establishment period after the enactment of national defense objective (1972, 12, 29)
- (3) The national defense policies transition period after the first reformation national defense objective (1981, 11, 28)
- (4) The national defense policies reformation period after the second revision of national defense objective (1994, 3, 10)

Like this, national defense policy had been fulfilled in accordance with each period security situation and self-reliance defense capability for objective, but it contains shortfalls. That result is

based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evaluation without properness as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level. This means contributed to somewhat acquiring goal, did not fulfill policy goal. This one is insufficient active role for the favorable change inducement or environment, just against North Korea threat and security environment changing. For the sufficiently acquiring goal, the policy has to approach with properness of content and establishment / revision, consistency, correlation between objective and policy, and efficiency of national defense plan.

Key words : national defense policy, national defense objective, national defense policy formation period, national defense policy establishment period, national defense policy transition period, national defense policy reformation period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탈냉전 이행기 동유럽의 안보 및 동맹전략의 변환과정과 경로에 관한 연구

체코와 우크라이나의 사례비교*

백 준 기**

1. 서론
2. 체코의 정치엘리트 인식과 동맹변환과정: '서구적 경로'
3. 우크라이나의 정치엘리트 인식과 동맹변환과정: '서구적 경로'와
'러시아적 경로'의 갈등적 균형
4. NATO와 EU 가입의 전략적 연계성
5. 결론: 한반도 통합프로세스에의 함의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냉전의 해체에 따른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이행에 있어서 외교안보 및 군사정책 변화의 '요인과 과정'을 분석하고

* 이 논문은 2012년도 통일부 통일한국 대전략 연구 과제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것이 남북한 통합과정에 함의하는 바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내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속해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인구나 국력(과거 또는 현재) 면에서 중견국가에 속하고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또는, 동방과 서방)사이에서 중요한 위치-Z.브레진스키의 개념으로 전략적 ‘축pivot’이거나 완충지대에 해당하는-를 차지하는 등, 남북한과 전략적 유사성이 있는 두 국가(체코 및 우크라이나)를 선정하여 탈냉전 이행기의 군사안보 및 동맹 변환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두 국가 중,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냉전시기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탈냉전과정에서 ‘넌-루가(Nunn-Lugar) 협력적 위협감축프로그램(CTR)’ 등의 실행으로 약 70억불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여 핵무기를 해체 또는 포기하였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사례라는 점에서,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딜레마를 배제할 수 없는 한반도 통합과정에 정책적 함의를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교안보 및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체코와 우크라이나 이행전략은 뚜렷한 대조-서구적 경로 대 서구 및 러시아경로 사이의 균형-를 이루고 있으므로, ‘미국(서구)요인(America factor)’과 ‘러시아 요인(Russia factor)’을 중심으로 NATO 가입문제와 NATO-EU 안보연계전략 등을 분석하여 한반도 통합과정에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대외정책결정과정의 현실정치(realpolitik)적 전략 옵션으로서 세력균형 요인과 병행하여 정치 엘리트들의 ‘인식, 관념적 요인(ideational factors)’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A. 모세스(Moshes)가 지적한 것처럼, 예를 들어, 체제이행기 우크라이나의 정책결정자들은 대체로 러시아의 ‘근외(近外)정책’이 ‘제국주의적 영토회복주의(imperialist revanchism)’에 입각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역사 인식으로 인해 소련과 러시아의 안보레짐으로부터 이탈하여 NATO체제로의 편입을 선호하는 전략적 경향이 탈냉전 이행기 우크라이나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친 러시아 경로를 선호하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엘리트들은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이고 지문화적인(geocultural) 인식측면에서 러시아와의 안보 군사적 협력을 주장하였다. V. 카르발레비치(Karbalevich)가 주장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외교안보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러시아의 통합이행 전략에는 ‘슬라브 통합론’이라는 ‘범슬라브주의’류의 관념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체코의 외교안보 엘리트들 또한 체코의 역사적 경험과 지문화적 인식(유럽주의)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NATO와 EU 가입을 선택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이자 대표적 군사동맹기구인 NATO와 정치·경제적 동맹체제인 EU를 선정하였다. EU를 주요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EU의 군사안보전략이 NATO와 밀접하게 연동되어있고,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과 ‘안보방위정책(ESDP: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그리고 ‘유럽안보전략(European Security Strategy)’ 등, EU의 안보 및 군사관련 프로그램들이 가입국들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코와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들은 EU와 NATO를 자국의 안보전략에서 통합적인 체계로 사고하였으며 체제이행기에 외교안보 및 군사전략의 변환과정에서 두 기구への 가입을 동시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연구 시기는 소비에트 체제 말기이자 동유럽에서 탈냉전 이행이 시작된 1989년에서 시작하여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이 최종적으로 좌절된 2008년까지로 한정-체코의 경우, NATO에 가입한 1999년까지-하여 동맹체제 및 안보전략의 이행과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체코의 정치엘리트 인식과 동맹변환과정 : ‘서구적 경로’

가. 주요 정치 엘리트의 안보전략인식

냉전해체와 더불어 진행된 ‘소비에트체제로부터의 이행’이라는 체코의 대외전략의 구조적 변경은 근본적으로 탈냉전에 의한 세계 질서의 구조적 전환에 의한 것이다. 체코의 군사 안보 전략의 정초(定礎)적 재구성을 초래한 국내 정치적 동인은 정치 엘리트의 이념적 정향에 따른 체제 전환적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R. 폰(Rick Fawn) 등 체코 및 동유럽 연구자들은 ‘이념과 정체성’을 체코의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핵심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탈 냉전기 체코의 정치 엘리트들의 군사 안보 전략에 대한 이념적 정향은 ‘탈 사회주의, 서구적 가치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큰 흐름으로 볼 때 동일한 이념적 범주에 속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의 결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체코의 정치엘리트들의 이념적 성향은 강조점에 따라 민주주의 및 도덕주의적 정향과 신자유주의적 성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전자를 지향하는 그룹의 대표적 정치 엘리트인 바츨라프 하벨(Vaclav Havel)과 후자를 대표하는 정치엘리트인 바츨라프 클라우스(Vaclav Klaus) 간의 대외인식 비교를 통해 이념적 성향이 체코의 군사 안보 전략 전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명의 바츨라프는 모두 민주화 이행기의 체코에서 각각 대통령과 총리직을 분점하면서 국내정치 뿐 아니라 대외정치 일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체코의 대표적인 정치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하벨과 클라우스의 이념적 성향은 체코 정부로 하여금 이행기 체제

발전 전략 뿐 아니라 NATO와 EU에 대한 안보 및 지역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상이한 전략적 옵션을 결정하게 하는 주요한 동인이었다. 하벨의 이념적 성향은 과거 반 소비에트체제 운동의 경험으로부터 오랫동안 형성된 인권, 도덕, 공동선 등 민주주의적 가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벨은 외교정책과 도덕적 규범이 긴밀한 상호연계성에 입각하여야 할 뿐 아니라 후자는 전자의 인식론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르면, ‘외교정책의 정신은 도덕적 규범으로부터 생장해야하는 것’이었다.¹⁾ 그는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서 ‘체코의 (국가)이익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는 것’, 부연하면 국내정치 수준에서 뿐 아니라, 국제정치 수준에서도 주변 국가들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적 가치의 훼손에 대해 방관하지 않는 대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시민적 대외정책(civic foreign policy)’ 개념을 제시하였다. 반 소비에트 운동의 경험에서 도출된 이러한 대외정책 인식은 그에게 있어서 ‘진실과 역사적 불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라크 후세인 정부와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 정부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체코의 하벨 정부가 적극 동참한 것과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적 입장, 달라이 라마에 대한 공개적 지지 등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국제적 공동선의 발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²⁾

클라우스의 대외인식은 시장경제로의 전면적인 이행을 통한 체제 전환에 기반하고 있다. 하벨과 비교할 때 클라우스의 이념적 성향의 특성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두드러진다.

-
- 1) Vaclav Havel, *Summer Meditations on Politics, Morality and Civility in a Time of Transition*(London and Boston: Faber & Faber, 1992), p.99.
 - 2) Rick Fawn, “Reconstructing a National Identity: Ideologies in Czech Foreign Policy after the Split”,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 19, No. 3(2003), pp.205~207.

하벨이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클라우스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유용성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결정성을 중시하여,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와 국가정체성을 수립하는데 시장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클라우스는 지엘레니예치(Josef Zieleniec) 등 경제관련 전문가들을 외교 및 안보정책 결정라인에 기용하여 급진적인 경제개혁과 대외정책을 연계하는 시장중심적 대외정책을 실시하였다.³⁾ 지역주의와 지역 레짐에 대한 소극성, 글로벌 차원의 자유주의 무역질서의 확립에 대한 신념, EU와 NATO에 대한 모호한 입장 등은 그의 이러한 이념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클라우스의 이념성향에서 또 다른 중요한 구성요소는 ‘국가(민족) 정체성’-하벨의 대외인식에서도 이러한 정체성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인데, 그의 대외인식에서 체코가 지닌 ‘역사적 임무’는 주목할 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체코의 역사적 경험에서 국민들의 인식 속에 내재된 ‘국가 정체성’은 ‘체코 예외주의(Czech exceptionalism)’로 표현될 수 있으며, 유럽에서 체코의 ‘특별한 역할’을 의미한다.⁴⁾ 체코의 정치 엘리트들은 20세기 초반과 전간기(interwar period)에 체코가 중유럽 중소 국가들의 동맹을 주도하고 세력균형과 중유럽의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968년 ‘프라하의 봄’이 상징하듯이 동유럽 자유화의 선구자임을 자임한 것에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 판단에 입각하여 클라우스는 체코가 탈냉전기 동유럽의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부활에

3) Ibid., pp.208-209; Steven Saxonberg, “Vaclav Klaus: The Rise and Fall and Reemergence of a Charismatic Leader”,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13, No.2(spring 1996), pp.391~418; Jan Svejnar, *The Czech Republic and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San Diego: Academic Press, 1995), p.5.

4) Jiri Pehe, “The Disappointments of Democracy”, *Transitions*, Vol. 5, No.5(1998), p.39.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클라우스는 EU와 NATO가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가입을 위해 체코가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EU가 ‘초청’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첨언하면, 클라우스는 하벨과 같이 ‘유럽으로의 복귀’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EU와 NATO의 가입이 서유럽국가들의 허용이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대처 총리의 신자유주의를 지지했던 클라우스는 EU에 대한 회의주의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데, EU가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집단적 성향이 강하여 체코의 주권이나 정체성을 손상시킬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EU와 NATO 가입에 대한 체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정치엘리트들과 마찬가지로 체코 국민들 또한 1938년 뮌헨회담과 1968년 소련의 군사 개입 등 역사적 국면에서 강대국들과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참담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냉전 초기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소비에트 체제를 경험한 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EU와 NATO 가입에 대한 체코의 대중적 지지도는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체코의 정치 엘리트의 지지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은 ‘체코 예외주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하는 지점이다.⁵⁾

나. NATO 가입 과정과 정책결정요인

냉전 해체기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독립 국가로서의 완전한 주권유지와 유럽안보체제로의 통합이었다. 이러한

5) Fawn, “Reconstructing a National Identity: Ideologies in Czech Foreign Policy after the Split”, pp.209~210.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소련에게 주둔군 철수를 요구하여 관철(1991년 6월 철군완료)시켰고 연이어 헝가리, 폴란드 등과 함께 바르샤바조약 기구의 해체(1991년 7월)를 주도하였다. 당시 반체제 민주화를 주도했던 ‘77 헌장(Charta 77)’ 그룹-하벨 대통령, 디엔스트비에 외무장관(Jiri Dienstbier) 등의 군사 안보전략의 기본계획은 냉전체제의 군사기구를 해체하고 새로운 유럽안보의 기초를 구축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바르샤바조약기구와 NATO의 동시 해체·전환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1990년 4월, ‘제2의 헬싱키 프로세스 Helsinki II’를 제안하여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 뿐 아니라 NATO 또한 ‘탈군사 정치동맹’으로 변환하여, 개혁된 형태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기반을 둔 새로운 범 유럽안보체제를 창출해야 한다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환과 해체에 대한 NATO의 거부, 영국과 프랑스 등의 비호응 등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 주요국과 더불어 바르샤바조약 기구의 우선 해체로 선회하게 되었다.⁶⁾

하벨의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NATO가입으로 정책선회를 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하벨 정부 초기의 범 유럽안보체제 재편이라는 이상주의 노선에 서유럽이 동의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소련의 소극적인 반응 또한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범 유럽안보체제 재편에는 동의하였으나 양대 냉전 군사기구의 동시 해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외정책에서 이상주의 노선을 견지하던 고르바초프는 냉전 해체를 대외정책의

6) Michael J. Baun & Dan Marek, “Czech Foreign policy and EU Integration: European and Domestic Sources”, *Perspectives on European and Domestic Politics and Society*, Vol. 11, No. 1(2010), p. 3; Fawn, “Reconstructing a National Identity: Ideologies in Czech Foreign Policy after the Split”, p.219.

최우선 순위로 삼고 냉전 해체 후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자연스럽게 NATO 문제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바르샤바조약 기구와 NATO가 동시에 해체되지 않고 NATO가 존속하더라도 냉전이 해체되고 동서 간 협조체제가 형성되면 소련이 NATO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실제로 고르바초프는 당시에 NATO 가입 의향을 비공식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신생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던 보리스 옐친 또한 공개적으로 NATO 가입의사를 표명하였다. 2008년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정부는 1990년 소련이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를 조건 없이 동의해 주고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동시 해체를 사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은 대외정책의 최대 오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NATO와 관련하여 하벨 정부가 현실주의 노선으로 전환한 것은 전략적 차선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걸프전을 경험하면서 NATO의 군사적 효력과 미국의 막대한 군사력을 실감하였고, 유고슬라비아 사태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유럽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NATO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⁷⁾도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헬싱키 II’라는 대안적 안보체제로의 이행에서 NATO 가입이라는 ‘동맹 변환’으로 전략을 전환하게 되었다.

NATO가입과 관련하여 정치엘리트들의 ‘지문화적 인식’은 체코의 NATO가입 추진과정에서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하벨은 NATO를 ‘유럽 특유의 문화 및 정치적 가치의 구현체’로 인정하였고, 체코가 역사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코의 NATO

7) Michael J. Baun & Dan Marek, “Czech Foreign policy and EU Integration: European and Domestic Sources”, p.4.

가입을 유럽문명체계로의 자연스런 복귀로 해석하였다. 1995년, 국방장관 홀란(Vilem Holan)은 체코의 NATO 가입이 ‘안보와 국방의 실질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유럽적 가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체코의 문명적 의무라는 견해를 밝혔다.

체코 정치엘리트들이 대체로 NATO 가입을 지지하였던데 반해 대중의 지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NATO와의 교섭이 궤도에 올라 가입이 확실시 되던 1997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NATO 가입 찬성률이 39.9%에서 42.8% 수준에 머물러 국민의 절반 이상이 NATO가입에 부정적이었고, 가입 직전 해인 1998년 초에도 국민의 54% 만이 가입을 찬성하였다. 이러한 체코의 낮은 대중지지도는 1997년 말, 헝가리 국민투표에서 NATO가입 지지의사가 85%에 달하였고, 비슷한 시기 폴란드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약 80%가 가입을 지지한 점과 대조를 이룬다.⁸⁾

NATO가입에 대한 체코 국민의 낮은 지지도는 대략 두 가지 이유가 배경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나는 체코의 군사적 조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피해의식이다. 전자의 경우, 탈 소비에트 민주화과정에 기여한 바 있는 군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체코의 군사적 역량이 ‘NATO의 확대’에 부합할 만한 수준인지에 관해 국민들은 확신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는 NATO의 집단적 방위의 전제조건인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군사적 의무에 대해 체코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차원을 넘어서는 군사적 의무가 초래할 재정적 부담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이 NATO 가입과 관련된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에 더하여 역사적 경험에 의한 피해의식은

8) Fawn, “Reconsructing a National Identity: Ideologies in Czech Foreign Policy after the Split”, p.219.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정서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38년 체코의 수데텐란트를 병합하려는 히틀러의 의도가 관철된 뮌헨회담에 대해 체코 국민들은 서유럽이 동맹국인 체코를 버린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회담을 주도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회담 결과에 환호하는 영국국민들 앞에서 선언한 ‘외교적 승리’와 ‘평화’는 체코국민들에게는 ‘민족적 굴욕’이자 ‘병합’을 의미하였다. 오늘날 체코인들이 ‘뮌헨늑약(Mnichovská zrada)’으로 부르고 있는 뮌헨회담은 1968년 소련이 바르샤바조약기구 5개 회원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프라하의 봄’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과 더불어 현대 체코 역사에서 참담한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체코인들의 역사적 피해의식은 (집단)동맹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NATO에 대한 국민들의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인식과 더불어 체코의 정치엘리트들 또한 NATO에 대한 포괄적인 ‘보편적 책임성(universal responsibility)’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졌다. 1999년의 코소보 발칸전쟁에서 이러한 양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코소보전쟁에서 NATO의 군사작전에 대한 체코의 군사적 지원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엘리트도 그러했으며, 하벨 또한 NATO의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군사개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벨은 1999년 3월 초, 유고슬라비아 문제(세르비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코소보에서 다자간 평화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외무장관이던 카반(Jan Kavan)은 체코가 NATO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와 전쟁할 의사가 없으며 NATO의 군사개입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 표명하였다. 클라우스 또한 NATO의 코소보 공습을 비난하였고, 체코 하원은 유고슬라비아로 투입되는 NATO군의 체코 경유에 반대하는 투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체코의 분위기는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가

NATO의 군사행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3월 말 NATO의 군사행동이 결정되자 하벨은 코소보사태의 책임을 밀로세비치 정부에게 돌리고 NATO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더니 이어 4월에는 지상군 파견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하벨의 결정은 여전히 NATO 군사행동에 부정적이었던 카반 외무장관의 견해와 뚜렷이 대립되었다. NATO의 코소보 공습이 한창이던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NATO 창설 50주년 기념 NATO 정상회담 행사에서 카반 외무장관은 체코군은 지상군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사태 종결 이후 평화유지활동에만 기여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하벨은 종래에 부정적이었던 NATO에 대한 포괄적인 군사적 의무를 수용한 것에 대해 코소보 전쟁이 국가이익이 아니라 ‘원칙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하벨의 견해는 전쟁을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전쟁’에 대한 지적 옹호자로 인식되었지만 전쟁에 반대한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⁹⁾ 러시아와 중국은 후자에 속해 있었다.

결과적으로, 1999년 3월 12일 NATO 가입은 체코로 하여금 코소보에 대한 군사개입 문제에 직면하게 하였고 역설적으로 체코를 안보딜레마에 노출시켰다. NATO의 일원으로 코소보에 대한 군사행동을 선택할 경우 체코는 러시아나 그리스 등과 같은 친 세르비아 국가들과의 갈등에 휘말릴 것이고, 하벨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유럽사회에서 코소보 공습을 반대하는 지식인들과 NGO들-하벨의 평화주의 노선을 지지하던-에게 비판당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NATO의 군사행동에 동참을 선택하면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내적 요인이었는데, 국민 여론이 세르비아에 동정적

9) Fawn, “Reconstructing a National Identity: Ideologies in Czech Foreign Policy after the Split”, pp.220~221.

이었고, 집권당인 체코사회민주당(CSSD)내에서조차 NATO의 코소보 공습과 공동군사행동에 대해 ‘친 NATO 국제주의자들’과 ‘유럽주의자들’ 간에 분열되는 양상이 표출되었다. 사회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반적으로 NATO의 군사행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사회민주당과 정부의 고민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체코와 동시에 NATO의 일원이 된 폴란드와 헝가리가 이미 NATO의 군사행동을 지지하였고, 신규가입을 희망하던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합세한 가운데 체코가 미국의 압력을 견뎌내기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벨의 결정과 클라우스가 주도하는 시민민주당 일부 그룹(친 대서양주의)의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3. 우크라이나의 정치엘리트 인식과 동맹변환과정: ‘서구적 경로’와 ‘러시아적 경로’의 갈등적 균형

가. 주요 정치 엘리트의 안보전략인식

1991년 소련해체와 체제이행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친서구주의와 친러시아주의 노선사이에서 고심하면서 외교 안보전략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대외정책 노선 간의 경쟁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 전문가인 V. 사모흐발로프(Vsevolod Samokhvalov)¹⁰⁾는 ‘독립지향(pro-independence)’ 노선과 ‘실용주의(progmatist)’ 노선 간의 ‘시계추 운동’으로 설명하기도

10) Vsevolod Samokhvalov, “Relations in the Russia-Ukraine-EU triangle: ‘zero-sum game’ or not?”, The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Occasional Paper No 68, 2007.

한다. 각각의 노선은 우크라이나의 정치엘리트들의 대외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소비에트 체제의 해체이후 우크라이나의 체제이행과 안보군사전략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친 서구주의적 독립지향’ 노선은 소비에트 체제의 유산인 러시아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종속을 중단시키고 ‘유로-대서양’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안보문제의 해결을 지향하였다. 체제전환의 핵심적인 외교안보 정책목표가 NATO와 EU에 가입하는 것이었으므로 이행기 초반에 우크라이나의 정치 엘리트들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탈 소련 국가들(post-Soviet States)’의 재편 및 재구성 체제(CIS와 CSTO 등)에는 정책 우선순위 면에서 부정적이거나 낮은 순위를 설정하였다. 이에 비해 ‘친 러시아적 실용주의’ 노선의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번영과 성장이 정치 및 경제적 독립 토대를 확고히 하는 것에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발전 및 체제이행 전략의 주요한 요소로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1991년 이래로 우크라이나의 정치과정은 이러한 두 가지 노선경향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이 두 가지 경향 간의 ‘진자 운동’은 각각의 경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정치 엘리트들 간의 경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정치 엘리트 그룹이 두 가지 경향 사이를 전략적으로 스윙하는 복합적인 특징 또한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독립초기에 ‘친서구주의적 독립지향’ 노선을 지지하던 크라프추크(Leonid Kravchuk) 전 대통령이나 그의 후임자인 쿠치마(Leonid Kuchma) 대통령과 같은 고위 정치엘리트들이 우크라이나의 대내외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 러시아적 실용주의노선’으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사모흐발로프는 크라프추크 전 대통령을 애초에 ‘실용주의 노선’ 지지자로 분류하였지만, 대통령 재임 시 크라프추크는 EU와 NATO 가입을 대외정책의 핵심적 목표로 추진하였고, 쿠치마 또한

‘유로-대서양 체제’로의 편입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자였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정치 엘리트들이 ‘친 서구노선’과 ‘친 러시아 노선’, ‘독립지향’과 ‘실용주의’ 경향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스윙하게 된 배경에는 지정학적 요인 뿐 아니라 마치 ‘회색지대’로서의 우크라이나의 역사 및 문화적 요인¹¹⁾이 자리하고 있다.

동일한 역사문화적이고 민족적인 연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13-15세기 몽골지배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이한 역사 경로를 거쳐 왔다.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민족 및 국가적 모태인 키예프 공국이 붕괴된 이래로, 우크라이나는 14세기 중엽에는 폴란드 왕국에, 16세기에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왕국에, 17세기에는 러시아, 폴란드, 오스만 제국에, 그리고 18세기에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등에 각각 분할되었다.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자 우크라이나는 1920년 일시적으로 독립하였으나, 1922년 소비에트 연방이 결성되면서 소련에 편입되었고,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을 획득하였다.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우크라이나 병합은 러시아인들에게는 상실한 영토에 대한 ‘실지회복주의(irredentism)’의 실현이자 동족간의 통합으로 평가되지만, 19세기 중반이후 민족주의 정서가 발아한 우크라이나에게는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장기간의 분열적 역사와 장기간에 걸친(대)러시아와 우크라이나(소러시아) 민족 간 분리는 우크라이나인들로 하여금 러시아적 전통과는 이질적인 문화적 전통-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중부 유럽적 문화요소를 함유-을 형성하고 내면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19세기 유럽의 민족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족주의 경향이

11) 홍석우, “동유럽의 회색지대: 포스트소비에트시대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리고 벨라루스의 향방”, 『중소연구』, 제34권 제4호(2010/2011), 194~198쪽.

형성되었고,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였을 때 일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운동세력이 독일군을 지원하는 사태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문화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제정 러시아와 소련시기에 실시된 인구 이주정책 및 산업정책의 영향으로 탈 냉전기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은 전통적 의미의 우크라이나인들보다는 러시아인들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독립적인 국가형성(nation-state building)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공식 언어선정에 있어서도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정치적 대표성과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더불어 석탄, 철강, 에너지, 항공 공업 등이 동부지역에 집중되어있고, 서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및 경제구조는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등 친 러시아 정책을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비에트 연방의 명목상의 대체체제이던 독립국가연합(CIS)의 주요 구성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냉전해체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쟁점의 강한 영향으로 인해 친 러시아 노선이 아닌 친 서방노선을 채택하였다. A. 모세스(Moshes)¹²⁾가 지적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정책결정자들은 구소비에트 연방의 구성공화국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정책 즉, 러시아의 ‘근외정책’이 ‘제국주의적 실지회복주의(imperialist revanschism)’에 입각한 것으로 보고 우크라이나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최초의 대통령이자 소련해체결정의 주역 중 한 사람인 크라프추크(Kravchuk)는 러시아가 주도하던 독립국가연합(CIS)으로의 통합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NATO 가입과 EU로의 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한 친서구주의자였다. 당시 크라프추크가 ‘유로

12) A. Moshes, "Conflict and Co-operation in Russo-Ukrainian Relations", Coppieters, B., Zverev, A., Trenin, D(ed.), *Commonwealth and Independence in Post-Soviet Eurasia*(London: Frank Press, 1998), p.130.

-대서양' 세계로의 통합을 공개적으로 추진한 것은 대내적으로 탈 소비에트 분위기와 국가독립 초기의 민족주의적 정서 등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러시아 옐친 정부의 대외정책 노선이 친 서구주의에 입각해 있었으므로 크라프추크 정부가 유로-대서양 지향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대외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1994년, 크라프추크를 계승하여 본격적으로 체제이행을 추진한 쿠치마(Kuchma)는 친서구 외교안보노선을 강화하였다.

체제이행기 우크라이나의 대외관계의 지정 전략적 대립 축을 '친 서구주의 대 친러시아주의'로 설정할 때, 양 이념적 정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쟁점은 'NATO'와 'EU' 가입문제였으며, 결정요인은 미국요인(America factor)과 러시아 요인(Russia factor)였다. 다시 말하면 NATO와 EU가입문제에 대한 양 요인의 길항작용이 우크라이나의 외교 및 안보군사정책의 이념적 정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체제이행문제와 연동되어 과거의 동맹체제에 대한 대안동맹의 선택의 문제이자 미래 시점의 안보전략의 근간을 결정하는 문제라 할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러시아 요인의 규제력이 강해지면서 집권 엘리트들은 대외정책 노선을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쿠치마 대통령은 2000년 푸틴정부가 들어서자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2002년 12월 쿠치마는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없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인식 아래 2003년을 '러시아의 해'로 선언하면서 친 러시아적 실용주의 노선을 표명하였다. 크라프추크 전 대통령 또한 2004년 대선에서 친 러시아주의자인 빅토르 야누코비치(Victor Yanukovich)를 지지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오렌지 혁명(2004)'을 통해 집권한 유셴코(Victor Yushchenko) 정부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대외정책은 '유로-대서양 통합'노선으로 선회하였다. 친 서구

주의의 신봉자인 유센코는 대통령 취임 직후 방문한 유럽의회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을 선택했다’고 단언하였다. 그가 행한 연설에서 보여 지듯이, 유로-대서양주의자로서 유센코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적 선택’은 단지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공유하고 있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의 이러한 정체성 인식은 집권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대외정책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나. NATO 가입과정과 정책결정요인

199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가 NATO와 EU에 가입하기 위해 수립한 ‘유로-대서양’ 체제로의 통합 전략은 사회주의 체제 해체 이후 동유럽 국가 일반의 체제 이행전략과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우크라이나의 이행전략이 탈 소비에트, 친 서구주의적이라는 측면에서 폴란드와 체코의 이행전략과 유사하지만, 폴란드와 체코의 경우가 ‘유럽으로의 복귀’라는 유럽적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한 것임에 비해 우크라이나의 경우 ‘소비에트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러시아로부터의 원심력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 동기의 상이성은 우크라이나와 체코가 경험한 역사적 경로와 지정학적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체코에 비해 러시아의 지정학적 결정성이 더 강하게 작용해 왔으며, 러시아와 분리되기 어려운 역사적 경로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체코에 비해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서 ‘러시아 요인’의 규정력에 매우 강하게 노출되어 있음으로 인해 탈 소비에트 / 러시아적 정향의 유지와 수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략적 조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규정력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서구적 벡터(western vector)’를 통해

이를 상쇄하도록 하는 전략적 역선택을 강제한 측면이 있다. 이행기 우크라이나의 대외정책에서 러시아의 규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들로 는 영토문제와 군사력 승계 문제, 에너지 및 경제협력 문제 등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연합(CIS)에 속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독립적인 무장력(국군)을 창설한 국가로서, 1991년 12월에 NATO의 북대서양협력회의(NACC: North Atlantic Cooperation Council)에 가입하였다. 우크라이나가 NATO가입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무엇보다도 NATO와의 ‘동반자 관계(partnership)’의 수립이었다. 1994년 2월 8일, 우크라이나의 크라프추크 정부는 CIS국가들 중 최초로 NATO 주도의 PfP(Partnership for Peace) 프로그램에 서명하였다.¹³⁾ 우크라이나는 NATO의 PfP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하였으며 자국 영토 내에서 군사교육을 포함한 다수의 PfP훈련 프로그램을 유치하였다. 1999년 4월 NATO에 의해 승인된 우크라이나의 ‘야보리프 PfP 훈련센터(Yavoriv PfP Training Center)’는 PfP훈련을 수행하는 유일한 훈련기관이었다. 2000년에는 우크라이나 상원(Verkhovna Rada)이 ‘PfP 주둔군 지위협정(PfP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비준하였다.

1997년 7월 8일, NATO의 1차 확대-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NATO가입-의 결정이 예정된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에 참가하여 쿠치마 대통령은 NATO와 우크라이나 간에 최고위급 수준에서 상호 ‘정치적 책무’를 약속하는 ‘특수한 동반자 관계 헌장(Charter of Distinctive Partnership)’에 서명하였다. 비록 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이나 NATO 가입에 대한 확약이

13) Y. Bilinsky, *End Game in NATO's Enlargement: The Baltic States and Ukraine*(London: Praeger, 1999) p.19.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NATO 가입의 길이 열려 있다는 시각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이 현장에 따라 ‘NATO-우크라이나 위원회(NUC: NATO-Ukraine Commission)’가 결성되어 현장에 명시된 조항들을 실행하고 양자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NUC는 NATO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 간에 공동 안보관심사와 국제문제를 다루는 협력포럼을 마련하였고, ‘NATO-우크라이나 행동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례 목표 계획(Annual Target Plans)’ 등을 채택하였다. NUC는 우크라이나의 PfP참여 활동 뿐 아니라 NATO와 우크라이나 간의 ‘연례 군사 협력계획(Military Work Plan)’ 등을 검토할 뿐 아니라, 워킹그룹을 통해 안보방위 분야의 개혁, 군비, 경제안보, 과학기술 협력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 협력방안을 검토 및 모색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¹⁴⁾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을 위한 또 다른 정책수단은 NATO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었다. 우크라이나는 1995년 이래로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등 NATO의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파병정책을 실시하였다. 1995년 ‘데이튼 평화협정(Dayton Peace Agreement)’ 체결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NATO 주도의 평화유지군(IFOR)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50명의 보병대대를 보스니아에 파견하였으며, 1997년에는 400여명의 기계화 보병대대와 헬리콥터 편대를 ‘평화정착유지군(SFOR : Stabilization Force)’으로 파견하였다. 1999년 9월 1일을 기해 참여한 ‘코소보 평화유지군(KFOR: Kosovo Force)’ 활동에는 약 1,300여 명의 보병과 헬리콥터 전대가 파견되었다. 이 외에도 NATO가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의 ‘국제안보 지원군(ISAF : International Security Force)’에

14) Martin Malek, “The ‘western Vector’ of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Ukraine : Continuities and Ruptures under President Victor Yushenko (2005~2009)”,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22(2006), pp.525~526.

대해 지원하였다.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이라크에 군 장교를 파견하여 ‘비 NATO 회원국’으로서는 유일하게 ‘NATO 군사교육임무(NTM-I: NATO Training Mission-Iraq)’에 참여하였다.¹⁵⁾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문제가 본궤도에 진입한 것은 2002년 경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쿠치마 정부는 2002년 5월 23일 ‘국가안보방위회의(National Security and Defence Council)’의 명의로 발표된 ‘우크라이나의 NATO관계전략(Strategy on Ukraine's Relations with the NATO)’이라는 외교문서에서 NATO를 유럽 안보체제의 핵심적 기반이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시사하고 NATO의 확대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쿠치마 정부는 한편으로는 친러시아 노선을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유로-대서양 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 2002년 11월 21일에 프라하 회의에서 채택된 ‘NATO-우크라이나 행동계획(NATO-Ukraine Action Plan)’¹⁶⁾은 우크라이나의 안보적 우선순위가 유로-대서양 안보 레짐으로의 통합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NATO에 대한 이러한 전략개념이 2003년 6월 19일 상원에서 채택된 ‘국가안보의 기본원칙(On the Fundamentals of National Security)’ 법안에 반영되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정치, 경제, 법률적 공간과 유로-대서양 안보공간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이러한 정책구상은 2004년 6월 15일, ‘우크라이나는 NATO와 EU의 완전한 회원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쿠치마 대통령의 군사독트린으로 구체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NATO 및 EU 가입에 관한 열망과 의지를 기정사실화 하는 듯했다.

15) *Ibid.*, p. 527.

16) “NATO-Ukraine Action Plan”(November 22, 2002),
http://www.nato.int/cps/en/SID-AAB10714-03575DFE/natolive/official_texts_19547.htm(검색일 2012/11/13)

그러나 독트린 발표 한 달 후인 7월 15일, 수정된 독트린에서 쿠치마 정부는 NATO가입 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수정된 독트린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안보가 ‘유로-대서양 통합정책을 추구하고, 군사적 위협수준을 낮추고, 국가들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에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안보이익이 ‘NATO 및 EU와의 관계를 확고히 심화’시키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정된 독트린은 NATO 가입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NATO 및 EU와의 관계를 확고히 심화’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유로-대서양 통합’이라는 표현으로 NATO 및 EU 가입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국가들 간의 신뢰’ 강화를 통한 안보적 목표의 달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러시아와 CIS 국가들과의 신뢰의지를 표명하였다.¹⁷⁾

쿠치마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은 2004년 발생한 ‘오렌지 혁명’을 통해 친서구주의 노선으로 다시 전환되었다. 2004년 11월 21일, 대선인 결선투표 결과가 야누코비치의 승리로 발표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선거불복운동이 수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선거무효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민불복종으로 인해 대법원은 결선 재투표를 결정하여 12월 26일에 치러진 재투표에서 친 서구주의자인 빅토르 유셴코(Victor Yushchenko)가 당선되었다. 2005년 4월, 유셴코는 NATO와 EU 가입목표를 군사 독트린에 다시 복원시켰고 자신의 재임기간동안 이 독트린을 고수하였다. 2005년 4월 21일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Vilnius)에서 ‘NATO-우크라이나 위원회(NUC)’ 외무장관 회의가 개최되어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을 위한 ‘심층대화(Intensified Dialogue)’의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결정된데 이어, 동년 6월 27일에는 NATO 사무총장이 키예프를 방문하는 등 우크라이나-NATO 간의 관계가 진전

17) Malek, “The ‘western Vector’ of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Ukraina: Continuities and Ruptures under President Victor Yushenko(2005-2009)”, p.530.

되었다. 그러나 2006년 3월 총선에서 야누코비치가 이끄는 ‘지역당(Party of Regions)’이 승리하여 개정된 헌법(2006)에 따라 야누코비치가 다시 총리에 지명되면서 NATO가입에 대한 부정적이고 유보적인 견해가 유셴코 정부 내에서 확인되었다. 2006년 9월 야누코비치 총리는 NATO 본부를 방문하여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표명함으로써 NATO 가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2006년 11월, 라트비아의 리가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는 공동선언을 통해 ‘NATO가 우크라이나 및 그루지아와 정치, 군사, 재정, 안보문제 등을 포괄하는 심화된 대화를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유셴코 정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오렌지 혁명세력’은 여전히 NATO 가입을 강행하였다. 2007년 2월에 발표된 ‘국가 안보전략’은 NATO 가입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장비, 군사교육훈련, 군지휘 통제체계, 군사편제 등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NATO 표준에 적합하도록 개혁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008년 1월 16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절차의 진행을 촉구하는 유셴코 대통령, 티모셴코(Yulia Tymoshenko) 신임총리, 야쎈류크(Arsenii Yatsenyuk) 상원의장 명의의 서한이 NATO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었다. 2008년 NATO 정상회의에서 ‘제6차 NATO 확대(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의 가입)’가 주요 어젠다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유셴코 정부는 2008년을 NATO 가입을 위한 결정적인 시점으로 판단하였다. 서한에는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의 직전단계 절차를 의미하는 ‘멤버십 행동계획(MAP : Membership Action Plan)’의 단계에 진입할 준비가 되었으며, 4월에 예정된 부카레스트 NATO 정상회의에서 이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미국의 R. 게이츠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

으나 부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의 전도가 밝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부카레스트 회의에 참여한 NATO 회원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열정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영과 동의를 표명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MAP 단계는 허용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운데, 토르신(Aleksandr Torshin) 러시아 상원 제1부의장은 ‘NATO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에 MAP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러시아의 거부입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자평하였다.¹⁸⁾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푸틴정부의 격렬한 반발-푸틴정부는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문제를 러시아 안보의 사활적 이해관계로 파악함-에 부딪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기회는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체제 이행기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서구벡터’요인이 국내정치적 제약 및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러시아 요인’과 상쇄 또는 균형의 경향성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서구적 벡터’와 ‘러시아 벡터’ 간의 갈등적 균형이라는 ‘벡터균형외교’는 우크라이나의 대안적 외교안보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EU로부터 기대한 만큼의 자본 투자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기울어지게 한 주요 원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론 또한 NATO가입에 대한 반대가 우세하였다. 2006년 3월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NATO 가입반대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실시한 우크라이나의 여론조사에서 NATO가입에 대한 찬성의견은 16%와 20.1%에 지나지 않았다. 유센코 정부의 적극적인 NATO가입 홍보에도 불구하고

18) *Ibid.*, pp.531~532.

하고 저조한 지지율을 보인 이유는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74%)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¹⁹⁾ 이것은 일상적 사회경제생활 뿐 아니라 체감안보에 있어서 점점 미국요인보다는 러시아요인이 강하게 작동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NATO와 EU 가입의 전략적 연계성

가. 체코의 지역 및 안보 연계전략

체코의 대외 전략기조인 ‘유럽으로의 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로는 EC(EU) 가입이었다. 체코는 결과적으로 ‘EU화 전략’을 선택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정치 세력들 간의 노선분열이 표출되었다. 다자주의적 국제주의를 표방한 하벨과는 달리 시민민주당(ODS)을 이끌던 클라우스 총리는 EC 멤버십에 대해 부정적이었다.²⁰⁾ 벨벳혁명 직후인 1989년 12월에 이미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EC가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나 가입청원이 아닌 유럽국가의 일원으로서 ‘가입초청’ 받기를 원하였다.

EC 멤버십 문제에 대하여 소련 및 EC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동유럽 주요 근린국가들과 협력 틀을 구축하였다. 1991년 2월, 하벨 대통령은 폴란드, 헝가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주제로 중동유럽의 소범위 지역 레짐인 ‘비셰그라드 그룹’을 결성하였다. 벨벳혁명 직후 다자주의적

19) Pavel Korduban, “Will NATO Become Popular among Ukrainians?”, *Eurasia Daily Monitor*, Vol.5 Issue111(Jamestown Foundation)(11 June 2008).
http://www.jamestown.org/programs/edm/single/?tx_ttnews%5Btt_news%5D=33708&tx_ttnews%5BbackPid%5D=166&no_cache=1(검색일 2012/10/25).

20) Pehe, “The Choice between Europe and Provincialism”, pp.14~19.

국제주의가 주도하던 지역통합 전략은 1992년 6월 총선에서 클라우스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양자주의가 우세하게 됨에 따라 수동적이고 회의적인 접근에 의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는 체코의 ‘국가 정체성’ 유지를 우선시 하여, 체코가 EC에 가입할 경우 그 속에 용해될 것에 대해 우려하였고, ‘브뤼셀에 세금을 내기보다 체코에 세금을 내고 체코시민으로 남기’를 피력하면서, EC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더 나아가 클라우스는 EC 가입을 ‘동유럽에 대한 소비에트의 통제’에 비유하면서 ‘EC가 국가주권이나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매우 관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의 ‘EC 비관주의’에는 과거 코메콘과 소련위성체제의 불행한 경험들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는 EU나 NATO 등, 다자주의 레짐보다는 양자주의를 선호하였다.²¹⁾

1997년 12월 클라우스가 총리직을 사임하면서 체코정부의 EU 가입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1998년 들어 체코정부는 EU 가입을 지향하는 대외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체코정부의 대외정책 선회는 대외환경의 변화보다는 국내정치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클라우스가 실각하고 출범한 요제프 토솅스키(Josef Tošovský)가 이끄는 과도적 관리내각(1997년 12월~1998년 6월)이 EU 가입협상을 재개하였다. 외무장관이던 야로슬라프 세디비(Jaroslav Sedivý)는 ‘EU에 단지 접근만 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언급하면서 ‘체코 예외주의’ 대신에 구체적으로 체코정부가 ‘EU의 조건’에 부합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입법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제 문제는 이른바 ‘EU의 조건’, 즉, ‘공동체법 및 관행제도(EU규약: *Acquis Communautaire*)’과 ‘정치규약(*Acquis Politique*)’ 등을

21) J. Winkler, “From the Partition to the Elections: The First Years of Czech Foreign Policy”, *Perspectives*, Vol. 6, No.7(1996), pp.7~15; Fawn, “Reconstructing a National Identity: Ideologies in Czech Foreign Policy after the Split”, p.222.

준수하는 것이었다. 1998년 6월 총선에서 사회민주당(CSSD)이 주도하는 소수연정이 형성되자 클라우스 정부 하에서 지체되었던 EU 가입추진을 본격화하였다. 새로 출범한 밀로쉬 제만Milos Zeman 정부(1998-2002)는 다자주의 지역통합전략에 입각하여 ‘비셰그라드 그룹’을 중심으로 한 중부유럽의 지역협력을 활성화하였다.

체코는 1998년 사회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럽 내 다양한 수준의 다자협력 틀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ATO의 보스니아 활동(IFOR/SFOR), 코소보 활동(KFOR)에 참가했을 뿐 아니라, EU가 주도하는 ‘서발칸 안정화 협약(Stability Pact for the Western Balkans, 1999년)’에 참여하였고, 보스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등에서 선거감독임무를 수행하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활동에 기여하였으며, 2002년에는 보스니아에서의 ‘EU 치안임무(EUPM)’에 장교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체코는 가입이전에 EU의 안보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였다. 2000년 11월에 개최된 ‘유럽안보방위정책(ESDP: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의 제1차 ‘역량약정회의(Capabilities Commitment Conference)’와 제2차 ‘역량개선회의’(2001/11)에 참가하여 계획된 EU 신속기동군과 EU 치안유지군을 위해 각각 1,000명의 군대와 100명의 경찰병력 파견을 약속하였다. 체코는 보스니아의 EU 치안유지임무(EUPM)활동에 경찰력을 파견하여 EU의 첫 안보방위정책(ESDP)활동의 참여국이 되었다. 그러나, EU의 이러한 활동이 NATO의 위상에 상충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당시 EU의 안보방위정책(ESDP)활동에 대해 다소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외에도 체코의 사민당 정부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듯 1997년 이후 체코가 다자간 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의 교체 뿐 아니라 하벨 대통령의 대외인식과 그의 국제적 명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체코의 유럽정책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의 발발로 또 한 번의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미 언급한대로 1999년 NATO의 코소보 공습에 대해 클라우스 등 정치세력과 국내여론의 반대가 급등했던데 이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체코정부의 지지표명으로 대외정책, 특히 EU 가입정책이 걸림돌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3년 1월 30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하벨 대통령과 헝가리, 폴란드와 EU 5개국(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덴마크) 정상들이 서명한 미국에 대한 지지서한²²⁾이 게재되었다. 이 지지서한에 뒤이어 2월에는 나머지 중·동부유럽국가(CEECs)과 발칸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이 연명한 지지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서한과 지지성명은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여타의 EU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이로 인하여, 이라크 문제에 대한 EU의 공동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2월 17일 브뤼셀에서 소집된 ‘비상 EU 정상회담’에 EU가입 후보 국가들의 참석이 거부되었다. 특히, 이라크 전쟁 반대를 주도하던 프랑스와 독일은 이 국가들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미국에 대한 지지가 강화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중·동부유럽국가(CEECs)를 겨냥하여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 비난하면서 ‘EU 가입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체코와 CEECs 정부들은 2월 17일 공동 지지성명이 발표되기 전까지 판단근거로 삼을만한 이라크 문제에 대한 EU의 공통된 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결정을 변호하였다. 체코와 CEECs의 주장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단지

22) Michael J. Baun & Dan Marek, “Czech Foreign policy and EU Integration: European and Domestic Sources”, p.8.

‘반이라크 전쟁(프랑스, 독일이 주도)’과 ‘이라크 전쟁지지(미국 주도, 영국 등)’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들 주위에 개별국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을 뿐이며, 자신들이 위반한 것은 ‘EU의 공통된 입장’이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이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2월 정상회담’ 이후, 체코와 ‘CEECs’ 정부들은 EU 회원국들이 동의한 이라크 문제의 공동선언을 수용하였으나, 슈피들라(Vladimir Spidla) 총리가 이끄는 체코정부는 미국과 EU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체코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전쟁지지와 같은 공개적인 성명도 피하였다. 체코의 대외정책의 위치조정은 프랑스와 독일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내의 심각한 반대여론을 감안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대외정책 조정은 체코의 친미 정치세력이 처해있는 환경을 반영한 것이기도 한데, 지지서한에 서명할 당시 임기를 한 달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하벨은 내각과 사전상의 없이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었으로써 2월 대선에서 클라우스가 승리하자 이라크 문제에 대한 체코의 정책은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클라우스는 2003년 4월의 독일방문에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지만 미국과의 대립도 원하지 않으며, 프랑스-독일과 미국-영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프랑스-독일과 미국-영국 사이에서 균형잡힌 입장을 유지하려는 체코정부의 중도주의적 외교시도는 EU의 안보방위정책(ESDP)에 대한 전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체코정부는 2003년 4월 29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정상회담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안보방위정책(ESDP)에 관한 시도들을 ‘NATO 바깥에 EU의 군사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체코정부는 2003년 11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독립적인 EU 군사기구를 설치하려는

타협안에 대해 ‘NATO의 위상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하였다. 그러나 2004년 ‘NATO에 연계된 EU 민군계획부를 창설’하기로 한 타협안에는 동의하였다.

‘2002-2003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CFSP: Convention on the Future of Europe)’에 참가하여 체코는 CFSP의 강화안에는 찬성한 반면에, 안보방위정책(ESDP)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NATO와의 연관성 문제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다. 여타의 CEECs와 마찬가지로 체코는 NATO의 틀 외부에 독립적인 EU의 방위기구를 창설하는데 반대하였다. 대안으로 체코의 슈피들라 정부는 NATO내에서 EU 방위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2002년 12월 ‘베를린 플러스(Berlin-Plus)’ 협약에서 허용된 ‘EU안보활동에 있어서 NATO자산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마침내 2003년 4월 17일 ‘가입협정’에 서명하여 2004년 5월 체코는 정식으로 EU에 가입하게 되었다.²³⁾

나. 우크라이나의 지역 및 안보전략의 연계성

우크라이나의 EU정책은 1994년 6월 CIS국가들 중 최초로 체결되어 1998년 3월에 비준된 ‘동반자협력협정(PCA: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과 ‘EU행동계획(EU Action Plan)’이라는 법률적, 실천적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여 쿠치마 정부에 의해 공개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우크라이나는 CIS의 통합성 제고에 저항하였는데, 구소련지역에서 러시아 주도의 외교안보레짐을 거부하여 소비에트 공간내의 대안레짐으로 GUAM-1997년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으로 구성됨-을 결성한 바 있다.

23) *Ibid.*, pp.8~10.

소련체제말기인 1990년 7월 16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채택된 ‘국가주권선언’은 체제이행기 독립국가 건설, 국가발전전략과 대외 정책 수립에 있어서 ‘유럽적 선택’으로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체제이행 초기에 EC(EU)는 우크라이나의 친서구주의적 체제이행전략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유로-대서양 세계로의 통합 열망과 GUAM 등의 결성을 통한 탈 소비에트 지역협력과 지역안정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인정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정책을 지원하게 되었다.²⁴⁾

‘친 러시아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전환을 주도한 것은 쿠치마의 제2기 정부였다. 당시 EU는 뒤늦게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지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쿠치마 정부가 러시아가 주도하는 ‘공동경제지역체(Common Economic Space)’에의 참여를 선언하고 2003년 5월 22일 상원이 이를 인준하자 EU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정책의 진실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와 더불어 EU는 부정부패, 관료주의와 언론탄압의 심화 등, 쿠치마 정부의 민주주의로의 이행 전략이 실패로 판명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EU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EU에 의해 채택된 ‘유럽안보전략(European Security Strategy)’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제외되었다.

EU-우크라이나 관계를 다시 호전시킨 것은 2004년의 ‘오렌지 혁명’이었다. 오렌지 혁명은 EU-우크라이나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 출범한 유셴코 정부는 유럽통합과정에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과 조치를 시행하였다. 2005년 2월에 우크라

24)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Council Common Strategy of 11 December 1999 on Ukraine(1999/877/CFSP)”,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331(23 December 1999),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1999:331:0001:0009:EN:PDF>(검색일 2012/11/9).

이나는 EU의 ENP 파트너로 선정되었다. 2006년 8월, 우크라이나의 최고위급 정치지도자들(대통령, 총리, 의회의장, 의회진출 정당대표자들)이 서명한 ‘국가통합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National Unity)’에서 유럽통합과정으로의 참여를 목표로 한 일관된 대외정책의 수립이 강조되었다. 안보분야의 협력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주도의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치안유지활동(발칸지역 등), 그리고 군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우크라이나-EU협력의 주요 어젠다로 설정하였다. 2009년 11월, ‘EU-우크라이나 협력위원회’가 채택한 ‘협력 아젠다(Association Agendas)’에서는 외교안보분야의 협력은 지역이슈 뿐 아니라 국제이슈에의 협력, WMD 비확산과 군축, 갈등방지와 위기관리, 테러에의 공동대응 등에 대해 다자간 레짐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협력위원회’가 공동으로 협력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2008년과 2009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EU가입에 대해 찬성이 각각 47.2%, 44.7%로 반대 30.2%와 35.2%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구주의적 정향과’, ‘러시아적 정향’이 비교적 균형적-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대립적으로-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유셴코 정부가 EU 가입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오렌지 혁명’을 추동한 정치 엘리트들의 EU가입에 열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U 정책추진에 있어서 ‘친 서구주의적 정향’과 ‘친 러시아적 정향’이 경합 또는 갈등하고 있었던 이유는 EU 정책결정자들이 우크라이나의 멤버십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

25) 2006년과 2007년의 여론조사에서는 EU가입지지가 각각 47%, 54%였고, 반대는 각각 35%, 23%의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 Stephen White, Ian McAllister and Valentina Feklyunina, “Belarus, Ukraine and Russia: East or West?”,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12(3)(2010), p.354, Table 3 참조바람.

것이기도 하다. 몇 가지 측면에서, EU는 우크라이나의 정치 엘리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경제협력에 비해 군사안보분야에서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력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1991-2006년 기간 동안 EU로부터 약 24억 유로의 경제 원조를 공여 받았고, 무역규모 면에서 EU는 우크라이나의 최대의 무역 파트너였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EU-우크라이나의 협력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광범위한 교류 협력이 설정되고 EU-우크라이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한 ‘동반관계 및 협력 협정(PCA)’에도 군사와 방위에 관한 분야는 제외되어 있었다. ‘유럽안보전략(2003)’에는 우크라이나가 배제되었고, ‘EU-우크라이나 행동계획(Action Plan, 2005)’에도 ‘군사 방위협력’과 같은 ‘경성 안보(hard security)’ 분야는 제외되었다.²⁷⁾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조건과 어떠한 신뢰할 만한 집단 안보체제에도 속해 있지 않은 군사안보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안보 군사 분야에서 EU와의 협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대는 현저히 높았다. 2006년 우크라이나의 국방백서²⁸⁾에 명시되어 있듯이, EU의 ‘유럽 안보방위 정책(ESDP)’ 영역에서 EU의 군사기구와의 협력이 우선시 되었다. 이러한 EU와의 군사안보 협력은 EU 주도의

26)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Neighbourhood and Partnership Instrument, Ukraine, Country Strategy Paper(2007-2013)”, p.29~31.
http://ec.europa.eu/world/enp/pdf/country/enpi_csp_ukraine_en.pdf(검색일 2012/11/8)

27)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Revised EU-Ukraine Action Plan on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Challenges and Strategic Aims”, June 18, 2007, pp.6-10, http://ec.europa.eu/world/enp/pdf/action_plans/ukraine_enp_ap_jls-rev-en.pdf(검색일 2012/11/13)

28) Ministry of defence of Ukraine, *White Book 2006: Defence Policy of Ukraine*, http://www.mil.gov.ua/index.php?part=white_book&lang=en(검색일 2012/10/28).

평화유지활동에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칸지역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마케도니아에서의 EU 치안유지임무(Proxima),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 대한 EU 치안유지임무(EUPM)에 참여함으로써 EU 주도 평화유지활동을 지원하였다.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으로부터 유럽으로 유입되는 불법이민자들을 국경에서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등, EU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다음으로,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ENP(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또한 우크라이나의 ‘친 서구주의’ 정치 엘리트들을 실망시킬 만 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ENP를 다룬 2004년 12월의 ‘국가 보고서(Country Report)’²⁹⁾에는 군사안보 협력에 관한 항목이 제외되어 있었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의 전망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ENP가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이스라엘 등,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EU에 가입할 권한도 없는 국가들과 우크라이나를 동일한 수준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 등은 우크라이나의 안보적 좌절감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2008년 7월 17일 우크라이나 외무차관 옐리셰예프(Konstantyn Yelisieiev)는 ENP가 우크라이나에게 어떠한 부가가치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ENP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EU는 ‘ENP를 EU 확대의 대체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에게 회원국 지위를 부여(EU 확대)하지 않으면서 ENP 정책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9)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Country Report Ukraine”, May 12 2004, http://ec.europa.eu/world/enp/pdf/country/ukraine_enp_country_report_2004_en.pdf (검색일 2012/11/11).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멤버십 전망(membership perspective)’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EU 정책과 관련하여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EU 가입문제는 이행기 우크라이나의 대외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배정되어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EU 가입문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정상회의(유럽이사회 : European Commission)의 문서들이나, 심지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uncil)의 우크라이나 전략(1999)’ 문서조차도 우크라이나에게 멤버십 전망(membership perspective)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친 서구주의적 정치 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의 EU 멤버십에 대한 명확한 견해표명을 주저하는 EU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³⁰⁾

‘오렌지 혁명’의 영향으로 유럽의회는 2005년 1월 13일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정상회의, 그리고 EU 회원국들에게 우크라이나의 회원가입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유럽정상회의 의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간부들은 가까운 장래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주요 EU 회원국들 또한 우크라이나에게 EU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저하였다. EU의 이러한 유보적인 태도는 우크라이나를 여전히 러시아라는 프리즘을 통해 판단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 요인’이 EU-우크라이나 관계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0) Malek, “The ‘western Vector’ of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Ukraina: Continuities and Ruptures under President Victor Yushenko(2005-2009)”, p.523.

5. 결론 : 한반도 통합프로세스에의 함의

체코와 우크라이나의 동맹변환 및 군사안보전략(NATO와 EU가입 문제)에는 지정학적 요인과 더불어 ‘지문화적 정체성(geocultural identity)’이라는 인문학적 요인, 그리고 강대국 지배라는 역사적 경험 이 작용하였다. 냉전해체와 함께 사회주의체제로부터의 이행을 시작한 동유럽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들 중, 외교안보 및 군사분야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기존의 ‘바르샤바조약 기구’로 대표되는 소비에트 동맹 체제를 변환(alliance transformation)시키는 것과 ‘코메콘(COMECON: Communist Economic Community)이라는 소비에트 지역경제체제를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후자의 경우, 동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유럽과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코메콘을 해체하고 자연스럽게 EC(EU) 가입이라는 지역통합전략을 선택하였다. 전자의 경우, ‘동맹체제의 변환’은 대체로 세 가지 전략적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 옵션은 바르샤바조약 기구와 NATO를 전향적으로 해체 통합하여 ‘전유럽안보기구’로 재편하는 것, 두 번째는 바르샤바조약 기구를 해체하고 NATO에 가입하는 것, 세 번째 옵션은 바르샤바조약 기구를 해체하고 러시아 및 구소련지역 국가들과 새로운 안보체제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체코는 냉전해체 초기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였으나 이후 두 번째 옵션으로 동맹전략을 전환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세력에 따라 인식론적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코는 지역전략과 동맹전략에 있어서 ‘유럽으로의 복귀’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으며 여기에는 유럽에 대한 ‘지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에 비해 소련 /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체코는 NATO와 EU가입을 선택하기가 우크라이나보다 용이하였고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또한 체코를 대서양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에 자연스럽게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이행기 초기에 체코가 NATO가입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가입과정에서도 국가적 위상과 독자성을 강조한 것은 불행한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코는 신성로마제국과 합스부르크 왕가의 기나긴 지배와 속박(16세기-20세기 초)을 겪고 어렵게 독립(1918)한 경험이 있고 강대국 간의 타협에 희생(뮌헨회담)되거나 침략 또는 군사적 개입(독일과 소련)을 당한 참담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체코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국가와 민족적 자부심으로 표출되어 동유럽 중강국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적 위상을 중시하는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정착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안보전략과 동맹체제 변환문제에 있어서 체코에 비해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대 국가형성과 민족적 기원의 동일성이라는 역사적 요인을 차지하고서라도, 근대 이후 300여 년 이상 제정러시아와 소련에 영토통합되어 있었고 현재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으며 유럽과 러시아 모두에게 최전선국가에 해당하는 지정학적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선택을 한층 복잡하고 어렵게 하였다. 이로 인해 체제이행기 우크라이나는 동맹체제변환전략 수립에 있어서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특히 러시아의 전략적 규정력이 매우 강하여 우크라이나가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공간은 매우 협소하였다. 지문화적으로도 유럽주의적 전통이 주류를 이룬 체코에 비해 우크라이나는 중세 폴란드 지배 하에서 형성된 유럽적 경향과 제정러시아로의 통합이후 형성된 러시아적 경향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러시아의 슬라브통합 경향과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경향 간의 갈등이 중첩되어 우크라이나의 동맹체제 변환과정에서 자기분열적 현상이 반복되었다.

체코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이고 지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은 한반도 통합과정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접경해 있음으로 인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맹체제의 유지 또는 변환문제에서 이들 국가들로부터 전략 자율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전략적 규정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기존의 포괄적 한미 동맹이 현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중 간에 공유한 긍정 및 부정의 역사적 경험은 양국에게 전략적 구심력(전략적 협력) 뿐 아니라 원심력(전략적 갈등)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북한의 ‘중-러 전략경로’와 ‘남한의 미-일 전략경로’가 통합과정에서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써 동맹체제 재편이나 유지에 있어서 전략적 공간 활용의 자율성이 축소될 수도 있다. 특히 분단의 경험과 대립적 동맹체제를 경험한 남북한은 통합과정에서 한반도 내부의 노선분열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통일이후가 중-러와 미-일의 ‘최전선 국가’라는 점 등에서 우크라이나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체제이행기라고 할 수 있는 남북통합과정에서 성공의 주요 관건 중의 하나는 지정학적 이해 당사국들의 안보이익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내적 정치 및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문화적인 요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동유럽의 사례에서와 같이 체제이행기 한반도 통합과정에서 한반도의 지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체코와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지문화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대륙아시아인가, 아니면 아시아-태평양인가? 북한지역은 전자의 경향이 강하고 남한의 경우는 후자의 경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한 체코의 경우와 비교할 때, 남북 분단이 6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선택은

간단치가 않다. 지문화적 정체성이 동부와 서부로 분열되어 최근의 불행한 사태로 귀결된 우크라이나와 같은 최악의 경우가 한반도에서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상호 상충할 수 있는 지문화적 정체성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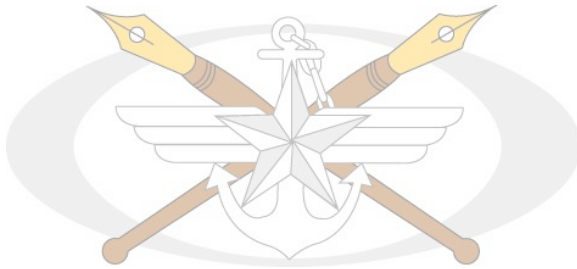
역사적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도 체코와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양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또한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겪은 후 20세기 중반에 독립하였으며, 강대국들의 담합에 희생(한일병합과 분단)되거나 침략과 군사개입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과 정치엘리트들의 정서에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동맹체제에 의존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외교안보전략에 있어서 보다 독자적인 경로와 중강국적 지위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중첩되어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유럽사례에서처럼 한반도 통합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부각되면 동맹체제에 대한 변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배제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합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에 관한 현실적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동유럽사례를 참고하여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논의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적 옵션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한미동맹체제의 유지 및 강화 방안; ② 기존의 동맹체제-북·중·러 및 한·미·일-를 해소하고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공동안보협력체제를 수립하는 방안; ③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동북아 공동안보협력체제를 수립하는 방안; ④ 한미동맹을 비군사 정치동맹으로 변환하는 방안; ⑤ ‘비동맹 중립화’ 방안 등.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국내적 정치환경과 국제적

전략조건을 현실적으로 타산하여 동원가능한 정책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때 이러한 옵션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상대적 자율성의 공간이 열릴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5.4.2, 심사수정일: 2015.5.20,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동유럽체제이행, 나토(NATO)확대, 동맹변환, 유럽안보방위정책,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 탈소비에트 국가들, NATO-우크라이나 위원회, 동반자협력협정, EU행동계획, 유럽근린정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the Path and Process of the Alliance Transformation
and Security Strategy Change in the Post-Soviet Transition
Period of East Europe :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ase of Ukraine and Czech Republic

Baek, Jun-ke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factors and process' of foreign security policy change and military strategy transformation among the East European n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post-Cold War' and to take its implications for Korean reunification process. To do that, this research has selected two countries(Czech Republic and Ukraine) among them, and analysed the two nation's transition of strategy. In view of their population and national capacity, Czech Republic and Ukraine have middle powers, and in geopolitical aspects they play strategic-pivot roles in the great powers. These two nations have similarity to South and North Korea, considering relative capacities and geopolitical conditions.

This research not only takes a realistic approach which highlights the 'Balance of Power', but also takes a constructive approach which focuses on 'the political perception and ideational factors' of political elites. EU which is a politico-economic alliance and NATO which is an European collective regime and a typical military alliance were selected as research objects.

On the background of Czech and Ukraine's alliance transformation have worked geopolitical factors, 'geocultural identity' and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rules of the great powers.

Most of East European countries have naturally chosen a transformation strategy which implicated joining NATO and EU by dissolving the Warsaw Treaty Organization and COMECON in order to integrate themselves with the Atlantic alliance system and Western Europe.

In regional policy and alliance strategy, Czech's political elites have decided to 'return to Europe.' The Czech's 'Euro-oriented geocultural identity' has exerted influences on their policy-making. In comparison to Ukraine, Czech stood relatively aloof from Russia's geopolitical influences, therefore, Czech's elites could decide to take 'the Western path' more easily than those of Ukraine. For Ukraine, in view of foreign security policy and alliance transformation policy, Russia's geopolitical influence is a main and the most critical factor of policy-making. In a geocultural aspect, unlike Czech which has a strong tradition of Europeanism, European orientation is confused with Russian orientation in Ukraine. Its cultural hybridism makes discordance with the 'Western path' and 'Russian path' in the process of making decision.

The geopolitical, geocultural, and historical experiences of Czech and Ukraine suggest not a few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reunification process. First of all, it would not be easy for us to secure strategic autonomy from political influences of China and Russia if the issue of alliance transformation will be raised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indicate that we have to hold a introspection on geopolitical identity. Like East European cases, the geocultural identity of Korea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Korean reunification. Lastly, with reference to East European cases, the five strategic options(as realistic alternatives) could be set up as below: ① Maintenance and consolidation plan of the ROK-US alliance; ② Dissolution of the existing alliance regime(ROK-US-Japan vs China-Russia-North

Korea) and establishment of the common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or East Asia; ③ Coexistence of the ROK-US alliance within a common security regime of Northeast Asia; ④ Transformation of the ROK-US alliance to the nonmilitary political alliance; ⑤ Non-alliance neutralization. The relatively autonomous space for those options would be constituted if we could rationally mobilize our strategic resources by considering domestic political condi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s in the process of Korean reunification.

Key words : NATO-enlargement, alliance transformation, transition of East Europe, ESDP(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CFSP(Convention on the Future of Europe), post-Soviet States, NUC(NATO-Ukraine Commission),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EU Action Plan, ENP(European Neighbour Policy).

『전쟁론』 1편 1장에 대한 이해와 재해석

전쟁의 무제한성(Entgrenzung)과 제한성(Begrenzung)을 중심으로

김 태 현*

1. 머리말
2. 『전쟁론』 1편 1장 이해를 위한 배경 : 집필과정과 논리구조
3. 1편 1장에 대한 해석
4. 결 론

1. 머리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만큼 논란이 많이 되었던 책도 없다.¹⁾ 전쟁론은 저자인 클라우제비츠가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이다.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저자가 사망함으로써 20여 년간의 집필 기간동안 혼재된 저자의 관점이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전쟁론은 클라우제비츠가 애초부터 ‘전체’에 대한 구상없이 집필하기 시작해서 후기에 가서야 개별 주제에 대한 논문들을 일관된 관점 하에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조교수, kimtaehyun305@yahoo.com

1) Colin S. Gray, *Modern Strategy*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85.

집대성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승화시키려 했다. 이 때문에 아롱(Raymond Aron)은 전쟁론이 마치 “마지막 결론이 누락된 범죄 소설”처럼 독자들에게 의문을 품게 만들며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²⁾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에 대한 사후 평가와 연구들은 동의, 비판, 완전한 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³⁾ 크레벨트(Martin van Creveld)와 키건(John Keegan)과 같은 학자들의 혹평이 있는가 하면, 브로디(Bernard Brodie)처럼 “전쟁론은 전쟁에 관해 가장 위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진실로 유일한 위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극찬주의자들도 있다.⁴⁾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논쟁이 거듭되면 될수록 전쟁론의 생명력은 오히려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⁵⁾

문제는 전쟁론이 인용은 많이 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 드물다는 점이다.⁶⁾ 전쟁론은 논리자체의 복잡성, 주장의 상충성과 함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전쟁론을 접하는 독자들이 시련을 겪게된다.⁷⁾ 그것은 비단 책의 서술방식뿐만 아니라 주요 분석대상이 되는 나폴레옹 전쟁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하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하여 ‘전체(Ganze)와 부분(Teile)의 통합적 고찰’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독특한 분석방법도 해석의 난해함을 증가시킨다.⁸⁾ 이 때문에 오랫동안 전쟁을 연구하는 연구

2) Raymond Aron, *Clausewitz: Den Krieg Denken* (Berlin, 1980), p.19.

3) Christoph Schwar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bei Carl von Clausewitz* (Rheinisch-Westfae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Institut fuer Politische Wissenschaft, 2003. December), p.2.

4) Bernard Brodie, “The Continuing Relevance of On War”, in Carl von Clausewitz, *On War*(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53.

5) Colin S. Gray, *Modern Strategy*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85.

6) Beatrice Heuser, *Reading Clausewitz* (London: Pimlico, 2002).

7) Jon Tetsuro Sumida, *Decoding Clausewitz: A New Approach to On War* (Kansas, 2008), p.181.

8) Carl von Clausewitz, *vom Kriege* (Ferdinand Duellmiller Verlag, 1966), p.89.

자들도 전쟁론을 자신들의 논리에 맞는 문구를 인용은 많이 해왔지만 전쟁론의 논리구조를 전체적으로 통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⁹⁾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전쟁론』을 연구하는 해외연구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작 전쟁론으로부터 전략적 통찰력을 얻고자 입문하는 한국의 국내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국내에도 이미 전쟁론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종학, 허남성의 분석논문들은 클라우제비츠가 잘 소개되지 않은 시기의 척박한 연구 환경을 극복하면서 전쟁론을 국내에 소개했던 기념비적인 연구서들이다.¹⁰⁾ 이와 더불어 박창희의 번역서는 전쟁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¹¹⁾ 이 뿐만 아니라 전쟁론에 대한 양질의 다양한 번역서들도 전쟁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¹²⁾ 또한 한반도평화와 전쟁을 사례로 이론적 접목을 시도하는 노력들도 전쟁론의 학술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¹³⁾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론 자체의 해제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쟁론의 해석에 일관된 관점을 제공하는 1편 1장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제가 절실하나 최근의 해외 연구 성과들을 반영한 연구물은 부족한 실정이다. 1편 1장은 클라우제비츠 자신이 완성했다고 자부하는 유일한 부분으로서 전쟁론 전체의 기본적인 논리구조와 관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길라잡이 역할을

9) Heuser, *Reading Clausewitz*.

10) 이종학, 『클라우제비츠와 전쟁론』 (주류성, 2004); 이종학 편저, 『전략이론이란 무엇인가?』 (충남대출판부, 2010); 이종학,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군사논평』 제409호(2011.2); 허남성,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의 3위1체론 소고”, 『군사』 제57호(2005. 12).

11) 박창희 역, 마이클 한델 저, 『클라우제비츠, 손자, 조미니』 (평단출판사, 2000).

12) 류제승, 『전쟁론』 (서울: 책세상, 1998); 김만수, 『전쟁론』 (갈무리, 2006).

13) 강진석, 『클라우제비츠와 한반도 평화와 전쟁』 (동인, 2013).

한다. 전쟁론에서 많이 인용하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 “전쟁은 카멜레온”, “경이로운 삼위일체” 등의 명제들은 1편 1장을 구성하고 있는 28개의 명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편 1장은 28개 명제가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어 해독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전쟁론의 독자들은 28개 명제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쟁론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으로서 1편 1장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하고자 한 ‘전쟁의 본질’과 관련한 논리구조들을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 성과를 비판하여 새로운 해석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에 난해하게 해석되어 왔던 관점을 쉽게 풀어 설명하여 전쟁론 입문의 독자들에게 이해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으로써 전쟁론에 내재된 이론적 쟁점과 전쟁의 본질에 대한 보다 본원적이고 심도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을 견지하였다. 첫째, 역사(history)와 이론(theory)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었다. 전쟁론은 나폴레옹전쟁을 모델로 분석한 정치군사서적으로서 전쟁론에 제시된 주요 논점들을 나폴레옹 전쟁의 주요전역들과 비교하여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테(Andreas Herberg-rothe)가 제시한 ‘세 가지 전역’과 ‘두 가지 유형의 전쟁’이라는 논점을 기반으로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전역은 예나/아우어슈테트(jena/auerstedt, 1806), 모스크바(moscow, 1812), 워털루(waterloo, 1815)로서 각각 전쟁의 무제한성(절대전쟁, absolute war)과 전쟁의 제한성(현실전쟁, real war)과 관계있다. 둘째, ‘전체(whole)’와 ‘부분(part)’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진정으로 의도했던 것은 각 명제들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고찰하는 구조적, 체계적인 이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개별명제로 부터 전쟁분석을 출발했던 클라우제비츠의 ‘부분’적인 노력이 전쟁이론이라는 ‘전체’ 노력으로 승화되어 가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가지 전역’에 대한 저자의 논점 변화가 전쟁론 전반에 혼재되어 있으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미완성으로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집필과정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1편 1장은 전쟁론 전체에 일관된 관점을 제공하는 일종의 ‘분석의 틀 (framework)’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조명한다.

논문의 구성으로서 2장은 전쟁론의 집필과정과 1편 1장의 의미를 밝히고, 3장에서는 1편 1장을 구성하는 28개의 개별명제들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특히 3장에서는 대질문인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1편 1장을 구성하고 있는 28개 개별 명제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국외연구자들의 경향과 전쟁론 본문의 대조비교를 통해 1편1장의 정신을 최대한 ‘쉬운 말’로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클라우제비츠의 독일어 원서인 vom Kriege(1966), 원서에 가까운 영어번역본인 파렛(Peter Paret)의 On War(1976), 그리고 한국어번역본인 류제승의 『전쟁론』(2002)을 교차 비교자료로 인용하였다.

2. 『전쟁론』 1편 1장 이해를 위한 배경 : 집필과정과 논리구조

가. 전쟁론의 집필 과정과 1편 1장의 의미

전쟁론은 클라우제비츠가 1810년 이후부터 1831년 죽기 전까지 집필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¹⁴⁾ 그의 사후인 1832년 아내 마리(Marie von Clausewitz)가 출판하였다. 총 8편(1편: 전쟁의 본질, 2편: 전쟁이론, 3편: 전략, 4편: 전투, 5편: 전투력, 6편: 방어, 7편: 공격, 8편: 전쟁계획)으로 구성된 전쟁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제비츠의 집필과정을 추적해야한다. 왜냐하면 전쟁론은 애초에 저자가 출간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작성되었던 ‘논문 모음집’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21년간의 집필과정에서 전쟁관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쟁론의 분석대상은 1806-1815년간 수행되었던 나폴레옹 전쟁(Napoleonic War)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집필과정은 ‘나폴레옹의 유럽 세력균형체계의 파괴시도’와 관련된다.¹⁵⁾ 주요 분석대상은 군사적 의미로서의 ‘전투’가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인간적 삶을 포괄하는 ‘전쟁전체(den ganzen Krieg)’로서의 전쟁현상이었다.¹⁶⁾ 클라우제비츠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전쟁론 논리를 형성하는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출발점으로 해서 나폴레옹이 수행했던 주요 전역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1806년 나폴레옹군-프로이센의 예나 / 아우어슈테트, 1812년 나폴레옹군-러시아군의 모스

14) Clausewitz, *On War*, p.65.

15) Uwe Hartmann, *Carl von Clausewitz: Erkenntnis, Bildung, Generalstabsausbildung* (Muenchen, 1998), p.17.

16) Lennart Souchen, *Die Hauptlineament seiner Ansicht vom Kriege, Clausewitz-Information. 3/2007*(Hamburg: Fuehrungsakademie der Bundeswehr, 2007), p.24.

크바 전역, 그리고 1815년 나폴레옹군-영국 / 프로이센군의 워털루 전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¹⁷⁾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분석에 대한 저술기간은 분석대상의 역사적 발생기간, 집필여건, 전쟁관의 변화에 따라 크게 4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저술기간(1810~1812)은 클라우제비츠가 베를린 전쟁학교 교관시절 전쟁론의 기초가 되는 초기분석 작업을 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당시 주된 분석대상은 1806년 예나 전역이었다. 2차 저술기간(1816~1818)은 모스크바(1812) 전역과 워털루(1815) 전역 직후에 코블렌츠에 근무하던 시기로서 주된 연구 관심은 앞선 두 개의 전역에 관한 것이었다. 3차 저술기간은 (1818~1827) 예나, 모스크바, 워털루 전역 등 세 개 전역에 대해 개별 주제별로 집중 분석을 하면서도 전쟁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식별하고자 노력했던 이른바 ‘이론화’ 과정을 병행했던 기간이었다. 4차 저술기간(1827~1830)은 그간의 전쟁분석을 통해 도출한 ‘전쟁이론’을 바탕으로 전쟁론 후반부를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1편1장을 완성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를 통틀어서도 클라우제비츠는 1편-6편까지에 대해서 개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결국에는 ‘하나로서 전체’를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다.

17) Andreas Herberg-Rothe, *Clausewitz und Napoleon: Jena, Moskau, Waterloo* (Hamburg: Fuehrungsakademie der Bundeswehr, Clausewitz-Information 1/2006), pp.9~17.

〈표 1〉 클라우제비츠의 연대기별 전쟁론 집필과정

연도	구분	집필과정
1806년		예나/아우어슈테트(Jena/Auerstedt) 전역
1808년		스페인 내전(Spain)
1810-1812년	1차 집필기간	Marie 출간사 - 베를린 전쟁학교 교관 - 논문집필(1812년): 전쟁론의 기초
1812년		스페인 내전 종결
1812년		모스크바(Moscow) 전역
1815년		워털루(Waterloo) 전역
1816-1818년	2차 집필기간	Marie 출간사 - 코블렌츠 근무 - 논문 작성
1816-1818년 (추정)		클라우제비츠의 메모 - 형식면에서 완성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집필과정을 설명
1818년(추정)		클라우제비츠의 메모 - 전체적인 체계와 설계없는 개별주제에 대한 집필과정을 설명함
1818-1827년	3차 집필기간	Marie 출간사 - 베를린 전쟁학교 교장 - 집중적인 집필활동 - 최근 전쟁경험을 보충
1827년		클라우제비츠의 메모: 개작 의도와 집필경과 - 1편-6편 전반적으로 개작해야 할 거친 원고에 불과함 * 필수적 기본관점으로 개작: 두 가지 유형의 전쟁, 전쟁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행하는 정치의 연속 * 8편에 주로 해당되지만, 1편도 이 기본관점에 의한 논리전개 필요 - 7편: 장별 초고는 완성되어 있으며, 앞의 기본 관점으로 편집되어야 함 - 8편: 자료연구에 불과한 상태, 7편 연구 후 8편 완성작업에 착수할 수 있음. 두 가지 유형의 전쟁에 관한 관점 적용 - 7-8편 완성 후 1-6편 개작에 착수예정
1827-1830년 봄	4차 집필기간	Marie 출간사 - 포병부대 전출로 인한 집필 중단 - 원고정리후 주제별 포장/봉인; 각 원고봉투 전면에 주제명 기재/보관
1830년(추정)		클라우제비츠의 메모: 개작 의도와 집필경과 - 6편은 단순한 시안에 불과: 원고 전체 개작, 또는 다른 방법 선택필요 - 전쟁의 주요특징은 일관성있는 산물 - 7편: 공격, 8편: 전쟁계획(정치, 인간) - 1편 1장은 전체원고중 완성했다고 간주하는 유일한 부분: 전체 내용에 대해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1831. 11. 16		사망
1832. 6. 30.		전쟁론 발간

출처: Clausewitz, On War, p.61, pp.65~57, pp.69~71.

1차 저술기간인 1810~1812년 클라우제비츠는 전쟁학교 교관 생활기간에 전쟁론의 기초가 된 작업을 시작하였다.¹⁸⁾ 이 시기는 예나 전역 이후 프로이센에 있어서 평화의 시기이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주요 분석대상은 1806년의 예나 전역과 1808년 시작된 스페인 내전(Spain Civil War)이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전쟁분석을 통해 형성된 ‘초기 클라우제비츠(early Clausewitz)’의 핵심논점은 나폴레옹군의 승리와 프로이센군의 패배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었다.¹⁹⁾ 1812년 나폴레옹군대가 러시아 모스크바 원정을 수행하면서 클라우제비츠의 집필활동도 잠시 중단되었다. 클라우제비츠는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하여 1812년의 모스크바원정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의 관점변화가 전쟁관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12년 나폴레옹군의 모스크바원정 실패에 이어 1815년 워털루 전투의 패전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집필기간(1816-1818) 클라우제비츠의 분석대상은 모스크바 전역(1812)과 워털루 전역(1815)이었다. 이 두 전쟁에 직접 참전한 후 프로이센으로 복귀한 클라우제비츠는 1816년 코블렌츠에서 다시 연구를 재개하여 앞선 4년 간의 전역을 분석하였다. “후기 클라우제비츠(later Clausewitz)”라 부를 수 있는 모스크바 전역과 워털루 전역 등 두 전쟁형태에 대한 분석의 초점은 나폴레옹군대의 전쟁 실패 요인이었다.²⁰⁾ 초기 클라우제비츠가 나폴레옹군의 승리

18) Marie von Clausewitz, “By Marie von Clausewitz to the Posthumous Edition of her Husband’s Works, including on War”, in: Carl von Clausewitz, *On War*, pp.65~57

19) Andreas Herberg-Rothe, *Das Raetsel Clausewit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im Widerstreit* (Muenchen, 2001).

20) Herberg-Rothe, *Das Raetsel Clausewit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im Widerstreit*.

요인에 주안을 두었다면 후기 클라우제비츠는 반대로 실패원인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클라우제비츠가 초기 클라우제비츠와 후기 클라우제비츠를 포괄하는 전쟁이론화를 시도하겠다는 각오를 가졌다는 점이다. 1818년 클라우제비츠의 메모에 의하면 자신이 기록한 많은 글들이 전략에 관한 주요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정제되지 않거나 거친 자료에 불과’하다고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전체로 융해시킬 수 있다’라는 각오를 드러내었다.²¹⁾ 이 시기 클라우제비츠는 자신이 적어도 개별주제에 관해서 만큼은 ‘가장 중요한 결정체만을 골라내어’ 집약해서 분석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이러한 개별주제들에 관한 논문들을 ‘체계화’해서 종합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가 진전되고 깊이 몰입됨에 따라 이론체계를 중시하게 되었고 장절 편성을 하게된 것이다. 그리고 최종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오래 전에 작성한 논문들을 다시 검토하여 여러 사실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고 최근에 작성한 논문들 속에 담긴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8절판 크기의 소책자로 엮고자 했다.”²²⁾

이 시기 까지만 해도 클라우제비츠는 1806년부터 1815년까지 장기간 수행되었던 나폴레옹 전쟁의 주요 전역들을 그때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면서 ‘단일전역’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치밀한 분석을 했다고 자평하였다.²³⁾ 이 시점 까지도 자신이 분석한 논문들은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작성된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체계와 설계를 고려하지

21) Clausewitz, *On War*, p.64.

22) Clausewitz, *On War*, p.64.

23) Azar Gat, *The Origins of Military Thought: From the Enlightenment to Clausewitz*(Clarendon Press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193~194.

않은 채 주제의 가장 중요한 논점들에 관해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절제된 문장으로 논술”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3차 저술기간(1818-1827)은 클라우제비츠가 베를린 전쟁학교 학교장을 했던 시기로 전쟁론 집필의 가장 결정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²⁵⁾ 예를 들어 “1804년의 전략”과 “1812년의 러시아원정에 관하여”, “전쟁사에 관한 130개의 전투사”와 같은 논문은 전쟁이론 구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²⁶⁾ 이 시기(1827년)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론 구성을 위한 근본적인 딜레마에 봉착했다. 그는 이미 8편(전쟁이론)을 제외하고 1-7편까지의 초안을 모두 완성한 상태였으나,²⁷⁾ 이 7개의 부분들을 하나의 일관된 관점 하에 ‘하나의 전체’로 구성하지 못한 것이다. 일관된 관점이란 “적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과 단순히 국경지대에서 몇몇 지역의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전쟁이 존재한다”는 점과, 다른 한편 “전쟁이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행하는 정치와 다를 바 없다”는 필수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이다.²⁸⁾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으로 제1편에서 제6편까지를 전반적으로 다시 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²⁹⁾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827년 시점에서 클라우제비츠는 1편-6편에 대해서 일관된 관점의 정립 없이 개별 주제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적어도 개별주제로서는

24) Clausewitz, *On War*, p.63.

25) Hartmann, *Carl von Clausewitz: Erkenntnis, Bildung, Generalstabsausbildung*, p.33. 클라우제비츠의 보직이 행정책임자였기 때문에 교수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러시아군 복무경력, 개혁 성향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교수부 업무에서 배제되는 ‘한직’이었지만 그만큼의 학문적 열정을 ‘전쟁론’ 집필에 쏟아부을 수 있었다.

26) Dietmar Schoessler, *Carl von Clausewitz*(Hamburg, 1991), p.79.

27) Clausewitz, *On war*, p.69. 7편은 초고만 작성되어 있으므로 두 가지 관점을 반영하여 편집할 필요성이 있으며, 8편은 자료연구 조사만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28) Clausewitz, *On War*, p.69.

29) Clausewitz, *On War*, p.69.

1편-6편의 완성도는 높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하나의 전체’로서 전쟁이론화할 경우 일관된 ‘관점’과 ‘분석의 틀’이 없다고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고민 끝에 자신이 도출한 두 가지 관점을 초안상태의 7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작해야 하며 앞으로 작성할 8편도 그러한 관점으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³⁰⁾

4차 저술기간(1827-1830)은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의 마지막 부분을 집필함과 동시에 전쟁론 전체 관점과 분석의 틀을 완성해나가는 시기였다. 1830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서 클라우제비츠는 미완성한 상태의 논문들을 “단지 몇몇의 개별 논문들의 모음집”에 불과하며 앞으로 이를 기초로 ‘대규모 전쟁수행 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³¹⁾ 이 당시 클라우제비츠가 야전부대로 전출되기 얼마 전의 시점을 감안하면 클라우제비츠가 자신의 논문들을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편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직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자신의 미완성 저작들이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짜여진 ‘전쟁이론’ 형태의 단행본으로 편집되지 못하고 “몇몇의 논문 모음집”으로 남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³²⁾ 여기서 그는 또 다시 제6편이 ‘전체적으로 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요한 것은 1편 1장에 대한 언급과 역할에 관한 부분이다. 1830년 메모에서 클라우제비츠는 “1편 1장은 전체 원고 중에서 완성했다고 간주하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언급하였으며, 1편 1장이 전체 내용에 대한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밝혔

30) Clausewitz, *On War*, p.70.

31) Clausewitz, *On War*, p.70. 독일어 원문에는 ‘개별 작업들의 모음(eine Sammlung von Werkstuecken)’이라고 표현한데서 알 수 있듯이 ‘전쟁론’이 아직 짜임새 있는 수준의 내용상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Clausewitz, *von Kriege*, p.79.

32) Clausewitz, *On War*, p.70.

다.³³⁾ 이것은 1810~1830년간의 개별주제에 대한 개별 논문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전쟁론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관점’과 ‘분석의 틀’을 식별했음을 의미한다. 전쟁론 전반에 걸친 ‘개작’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적어도 1편 1장을 완성함으로써 전쟁론 전체에 대한 방향성은 설정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1편 1장은 “몇몇의 논문 모음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쟁론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편 1장은 미완성된 “몇몇의 논문 모음집”을 일관된 관점으로 해석하여 일관된 전쟁이론서로 승화시켜주는 분석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 1편 1장은 클라우제비츠가 가장 나중에 작성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학술논문을 집필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퇴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서론’과 ‘분석의 틀’ 부분을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방법론과 비교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클라우제비츠는 1827년 1편-6편을 완성한 이후 이들을 일관된 관점에 기초하여 개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830년 7편-8편이 완성되자 1-8편 전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1편 1장’ 집필을 완료하였다. 그러면서 클라우제비츠는 ‘1편 1장’에 기초하여 ‘몇몇의 논문모음집’을 전쟁이론서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저자의 언급으로 보아 전쟁론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책은 1편 1장의 관점이 없었더라면 ‘몇몇의 논문 모음집’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³⁴⁾ 그러나 ‘전쟁론’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이론서가 남을 수 있는 것은 ‘논문 모음집’ 전반을 관통하는 ‘이론적’ 관점과 ‘분석틀’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편 1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33) Clausewitz, *On War*, pp.70~71.

34) Clausewitz, *On War*, pp.70~71.

나. 1편 1장의 논리구조 : ‘세 가지 전역’, ‘두 가지 유형의 전쟁과 정치우위’

그렇다면 클라우제비츠의 분석대상인 세 가지 전쟁형태와 1편 1장의 논리구조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로테에 따르면 클라우제비츠는 예나 전역(1806), 모스크바 전역(1812), 워털루 전역(1815) 등 세 가지 전쟁형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쟁론의 전체적인 초점과 관점을 정립하게 되었다.³⁵⁾ 클라우제비츠의 주관심사는 전쟁수행의 주요 대비논점으로서 “폭력의 무제한성 對 제한성”, “군사우위 對 정치우위”, “공격 우선 對 방어 우세”에 관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³⁶⁾ 구체적으로 클라우제비츠가 1편 1장의 28번째 명제로 제시한 ‘전쟁이론을 위한 결론’ 부분에서 전쟁의 이중성으로서 ‘카펠레온’적 전쟁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경이로운 삼위일체’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논리 속에 바로 ‘예나-모스크바-워털루’의 삼위일체가 투영되었다고 보는 것이다.³⁷⁾

예나 전역은 ‘초기 클라우제비츠(early Clausewitz)’의 절대전쟁 사상의 경험적 분석 모형이었다. 예나전역은 프로이센군이 프랑스군에게 참혹한 패배를 당한 사례로서 “왜 프랑스군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으며, 프로이센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핵심 질문이었다. 클라우제비츠는 나폴레옹군이 프랑스혁명이라는 거대한 자유주의적 해방정신의 ‘감정’으로 무장된 ‘국민’이 전국가적으로 동원되어 만들어진 군대였기 때문에 ‘내각의 군대’에 머물렀던 프로이센군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1806년의 예나 전역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분석에 있어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다.

35) Herberg-Rothe, *Clausewitz und Napoleon: Jena, Moskau, Waterloo*, pp.9~10.

36) 김태현,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에 대한 재인식, 『군사』 제82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82.

37) Herberg-Rothe, *Clausewitz und Napoleon: Jena, Moskau, Waterloo*, pp.9~17.

예나전역에서 자신의 조국인 프로이센이 프랑군에게 대패를 당하였는데 1793년 전투와 유사하게 프로이센군대의 패전 원인을 나폴레옹군의 근대적 전쟁수행과 프로이센군의 ‘프리드리히 대왕 시대’의 구시대 유물’과 비교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군의 우세는 나폴레옹의 군사적 천재성, 정신적 우세(‘정부’가 아니라 ‘민족국가’가 重心), 앞의 두 요소와 연계되어 있는 ‘무제한의 전쟁수행’에 기인한다고 보았다.³⁸⁾

초기 클라우제비츠가 인식했던 나폴레옹전쟁은 절대전쟁의 모습이었다. 특징적으로 “왕 對 왕 또는 군대 對 군대의 전쟁”이 아닌, “국민 對 국민의 전쟁”로 표현할 수 있다.³⁹⁾ 그는 “국민이 전쟁의 참여자가 되었다. 이전처럼 정부와 군대대신, 국가는 이제 전체가 전쟁 속으로 빨려들었다. 이것으로 전쟁수행의 힘이 가속화되었다”고 표현했다. 실제 프랑스는 1793년 징병제를 선포한 이후부터 1794년까지 약 75만 명이 무장되었는데 이 중에는 징집병, 구식군대의 직업군인, 지원병들이 포함되어 있었다.⁴⁰⁾ 노동력의 차출로 인해 농촌경제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징집제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병력을 보충하는 핵심적인 기능이었다.⁴¹⁾ 클라우제비츠는 나폴레옹군의 군사적 성공은 ‘국민동원’에 기반하였고 그 기저에는 ‘혁명적 이념’과 ‘감정’이 자리잡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이러한 거대한 전쟁수단을 등을 업고 있던 나폴레옹의 전쟁수행 방법은 적극적인 공세와 결전추구, 군사의 정치에 대한 우위, 폭력의 무제한적 발휘, 추격과 섬멸이라는 공식으로 표출되었다.⁴²⁾ 나폴레옹군은 국민 감정을 무기로 ‘폭력의 무제한적 발휘’라는 극단적인 절대전쟁을

38) Herberg-Rothe, *Das Raetschel Clausewitz*, p.29.

39) “Bekennnisschrift”, in Werner Hahlweg, ed., 1966, p.750.

40) Hugh Smith, *On Clausewitz: A Study of Military and Political Ideas*(Palgrave, 2005), p.29.

41) Smith, *On Clausewitz: A Study of Military and Political Ideas*, p.29.

42) Smith, *On Clausewitz: A Study of Military and Political Ideas*, p.29.

추구하였고 적어도 1812년 모스크바 원정이전까지의 유럽 전역에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클라우제비츠는 1806년 예나 전역에서 나폴레옹군의 군사적 성공요인은 ‘절대전쟁’의 추구에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나폴레옹은 예나전역에서 결정적 지점에서의 결전추구, 전쟁의 폭력/강도/목표의 무제한적 발휘를 전쟁 원칙으로 여기고 프로이센군을 섬멸했던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은 전투이며 주회전은 언제나 전쟁의 핵심적인 중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클라우제비츠는 적 주력의 직접적 섬멸이야말로 전쟁성공을 위한 지배적인 원칙이며 폭력의 극대화는 성공적인 전쟁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예나 전역을 분석할 당시의 초기 클라우제비츠는 ‘군사’가 외교와 이상에 초점을 둔 ‘정치’를 능가한다는 사례입증에 주안이 있었다. 이로써 초기 전쟁론 서술의 초점은 나폴레옹군대의 승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에서의 ‘국민’의 등장과 역할, 그리고 정치에 대한 군사의 우위에 있었다.⁴³⁾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원정(1812)과 워털루 전투(1815)는 클라우제비츠의 초기 군사사상에 변화를 가져온 전환점이었다. ‘후기 클라우제비츠(later Clausewitz)’라 부를 수 있는 모스크바 전역과 워털루 전역에서 나폴레옹군 실패 요인은 나폴레옹이 군사에 대한 정치의 우세, 결전회피의 군사적 의미, 군사적 수단에 내재된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았다. 초기(예나 전역)의 나폴레옹군의 승리 요인이 후기에는 반대로 실패원인이 되었다. 1812년 러시아원정에서의 주요 쟁점은 나폴레옹군대의 가용한 자원과 전략적 목표설정, 그리고 러시아군의 방어전술과 방어의 이점에 관한 것이었다. 워털루 전투 분석을 통해서 정치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43) 김태현, 앞의 책, p.84.

미쳤다. 프랑스에 대한 反프랑스동맹의 형성, 그리고 무제한 전쟁 수행의 위험성(스스로 전쟁에서 자멸할 수 있는 위험)은 전쟁수행과 전쟁의 제한에 있어 정치의 중요성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클라우제비츠의 직접적인 참전 경험(1793/1806-1815)을 통해 초기 클라우제비츠와는 상반된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⁴⁴⁾

모스크바 전역과 워털루 전역을 분석하기 시작했던 1816년 이후의 집필과정에서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적 승리가 정치의 산물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폴레옹은 1812년 모스크바 전역에서도 1806년의 예나전역과 유사한 형태의 절대전쟁을 추구했음에 불구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것은 나폴레옹군이 더 이상 전쟁초기처럼 개별국가들과 상대하는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의 연합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외교적인 변수가 전쟁을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후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은 초기와는 달리 전쟁의 본질이 군사가 아닌 정치 이익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모스크바 전역이 초기 클라우제비츠의 절대전쟁론에 대한 변화의 시발점이었다면 워털루 전역은 자신의 ‘정치의 우위’ 인식을 재확인하는 사례가 되었던 것이다.

전쟁론 전체에 대한 ‘일관된 관점’과 분석의 틀이 되는 1편 1장을 집필할 때 클라우제비츠의 근본적인 고민은 초기 클라우제비츠와 후기 클라우제비츠로 대표되는 세 가지 상반된 논점을 어떻게 하나의 관점으로 수렴해나가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 세 가지 논점이란 “전쟁 폭력·강도·목표의 극단적 발휘 對 전쟁의 정지 현상”, “군사 우위 對 정치우위”, “공격 우위 對 방어 우위”를 말하는 것이었

44) Christopher Bassford, *Clausewitz and his works*, in <http://www.clausewitz.com/CWZHOME/WZSUMM/CWORKHOL.htm> (검색일: 2015. 3. 27), p.5.

다.⁴⁵⁾ 그것은 각각 “예나 전역(1806) 對 위털루 전역(1815)”의 상반된 전쟁의 본질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대비논점으로 볼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1편 1장에서 “전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예나 전역(1806) 對 위털루 전역(1815)”의 상반된 전쟁수행 형태를 “절대전쟁 對 현실전쟁”의 대비 논점으로 이끌어 내려하였다. 여기서 폭력의 극단성이 표출되는 절대전쟁과 그 극단성이 완화되어 정지에 이르게 되는 현실전쟁이라는 전쟁의 이중적 속성을 어떻게 하나의 이론으로 융해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클라우제비츠는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전쟁은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가변적 성격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서 “감성-이성-우연”이라는 경이로운 삼위일체를 식별하였고 이를 “국민-정부-군대”의 속성과 연계하여 전쟁의 본질을 ‘카멜레온’으로 정리하였다. 클라우제비츠가 세 가지 전쟁모형을 가지고 도출한 일관된 관점으로서의 전쟁이론을 1편 1장에서 분석틀로 제시하려 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전쟁의 본질 : 1편 1장의 논리구조

논리구조	분석대상	전쟁요소의 변화	전쟁의 본질
초기 클라우제비츠	예나/아우어슈테트 (1806)	전쟁의 폭력, 목표, 강도 극단화	절대전쟁
↓	↓	↓	↓
후기 클라우제비츠	모스크바(1812) 위털루(1815)	전쟁의 폭력, 목표, 강도의 완화 전쟁의 폭력, 목표, 강도의 정지	현실전쟁
↓	↓	↓	↓
결론	세 전역의 본질	극단화-완화-정지의 동학	카멜레온과 삼위일체

45) Herberg-Rothe, *Das Raetsel Clausewitz*.

3. 1편 1장에 대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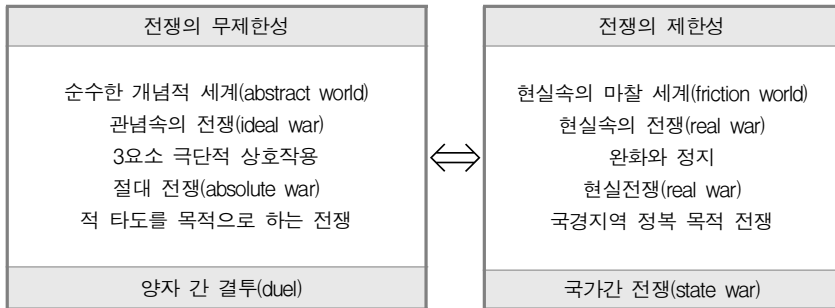
가. 1편 1장의 대질문과 해답: 전쟁의 개념으로서 ‘카멜레온(chameleon)’에 대한 접근

1편 1장은 T1-T28까지 총 28개의 소명제로 압축적으로 작성되었다.⁴⁶⁾ 클라우제비츠가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독자들에게 피곤함을 주는 이유는 자신의 논리전개의 흐름을 의미단위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28개의 명제들을 나열식으로 늘어뜨려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읽기방식으로는 1편 1장의 내용을 한눈에 간파하기 어렵다.

난해한 방식으로 서술된 28개 소명제들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클라우제비츠의 문제인식과 그에 대한 결론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우선, 클라우제비츠는 서두에 “전쟁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고 1편 1장의 마지막 부분인 28번째 명제에 전쟁의 개념을 ‘진정한 카멜레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1편 1장의 1-27번까지의 소명제들은 왜 전쟁을 카멜레온이라고 정의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들이라고 볼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초기 클라우제비츠와 후기 클라우제비츠로 대표되는 ‘개념(Begriff)과 현실(Wirklichkeit)’ 또는 ‘관념(Gedanken)과 실제(Praxis)’의 정반(正反) 요소들을 ‘양자간 결투(Zweikampf)와 현실전쟁(Krieg)’의 대비구조로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⁴⁷⁾

46) *vom Kriege*는 총 24페이지(pp.89-112), *On War*는 총 15페이지(pp.75-89), 『전쟁론』은 26페이지(pp.33-58) 분량이다.

47) Smith, *On Clausewitz: A Study of Military and Political Ideas*, p.61.



〈그림 1〉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의 대비논점

1편 1장은 ‘전쟁의 무제한성과 제한성’이라는 대비 논점에 따라 절대전쟁 → 현실전쟁 → 카멜레온적 전쟁 등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적인 논리구조로 보이는 1편 1장의 사유의 실을 따라가다 보면 혼잡하게 보이는 1편 1장의 본문 구성이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다.⁴⁸⁾ 의미단위로 볼 때 1편 1장은 크게 세 개 절(節)로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데 T1-T5는 1절로서 ‘절대전쟁’을, T6-T27는 2절로서 ‘현실전쟁’을, 그리고 T28은 3절로서 ‘카멜레온적 전쟁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절에 해당되는 T1-T5는 ‘절대전쟁’의 개념과 절대전쟁의 특성으로서 전쟁의 무제한적 작용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절인 T6-T27까지는 ‘현실전쟁’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것은 또 다시 4개 세부 의미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48) Gat, *The Origins of Military Thought: From the Enlightenment to Clausewitz*, p.176.; pp.241-248. 상반된 양 극단의 논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해 나가는 논리구조는 변증적이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변증법적 논리검증을 거쳤다고 보여진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와 헤겔(G. Hegel 1770-1831)의 직접적인 철학적 영향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나 적어도 클라우제비츠는 베를린 전쟁학교 교관 키제베테(Johann Kiesewetter)로부터 변증법적 철학에 대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클라우제비츠는 헤겔의 변증법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모순적 현실 요소들을 궁극적으로 통합시키는 ‘진테제(Synthese)’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단락은 절대전쟁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T6-T9), 두 번째 단락은 현실전쟁에서 전쟁의 폭력성이 완화되는 이유(T10-T11), 세 번째 단락은 현실전쟁에서 군사적 정지가 발생하는 원인(T12-T18),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전쟁의 제한성 원리(T19-T27)에 대한 소결론이 제시되어 있다. 3절은 전쟁의 본질(T28)로서 ‘카멜레온적’ 전쟁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1절과 2절에서 논의되었던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의 이중적 속성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표 3〉 1편 1장의 28개 소명제

T1. 서론(Einleitung) T2. 정의(Definition) T3. 폭력의 극단적 운용(Aeusserst Anwendung der Gewalt) T4. 목표는 적을 무장해제하는 것(Das Ziel ist den Feind wehrlos zu machen) T5. 힘의 극단적 발휘(Auesserte Anstrengung der Kraefte)	절대전쟁	
T6. 현실적 제한(Modifikationen in der Wirklichkeit) T7. 전쟁은 결코 고립된 행동이 아니다(Der Krieg ist nie ein isolierter Akt) T8. 전쟁은 지속시간 없이 단 한번의 타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Es besteht nicht aus einem einzigen Schlag ohne Dauer) T9. 전쟁의 결과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Der Krieg ist mit seinem Resultat nie etwas Absolutes)	3요소 (폭력, 목표, 힘)의 완화와 완화 요인	현실 전쟁
T10. 현실생활의 개연성은 개념의 극단성과 절대성을 대신한다(Die Wahrscheinlichkeiten des wirklichen Lebens treten an die Stelle des Aeusserten und Absoluten der Begriffe) T11. 이제 정치적 목적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다(Nun tritt der politische Zweck wieder hervor)		

T12. 군사적 활동의 정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Ein Stillstand im kriegerischen Akt ist dadurch noch nicht erklärt) T13. 단 한가지의 원인만이 행동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원인은 항상 어느 한편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Es gibt nur einen Grund welcher das Handeln aufhalten kann und dieser scheint immer nur auf einer Seite sein zu koennen) T14. 따라서 군사적 행동은 연속성을 가지게 되며, 이 연속성은 모든 것을 상승시킨다.(Dadurch wuerde eine Kontinuitaet in das kriegerische Handeln kommen, die alles wieder steigerte) T15. 여기서 이른바 양극성의 원리가 필요하다.(Hier wird also ein Prinzip der Polaritaet in Anspruch genommen) T16. 공격과 방어는 서로 다른 종류, 서로 다른 강도의 요소이므로 양극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Angriff und Verteidigung sind Dinge von verschiedener Art und von ungleicher Staerke, die Polaritaet kann also nicht auf sie angewendet werden.) T17. 공격에 대한 방어의 우위는 때때로 양극성의 영향을 소멸시키고 군사적 행동의 정지를 설명해준다.(Die Wirkung der Polartaet wird oft durch die Ueberlegenheit der Verteidigung ueber den Angriff vernichtet, und so erklaert sich der Stillstand des kriegerischen Aktes) T18. 군사적 행동을 정지시키는 두 번째 원인은 불완전한 상황파악에 있다.(Ein zweiter Grund liegt in der unvollkommenen Einsicht des Falles)	군사적 정지	
T19. 군사적 행동의 빈번한 정지는 전쟁이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확률계산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Der haeufige Stillstand im kriegerischen Akt entfernen den Krieg noch mehr vom Absoluten, macht ihn noch mehr zum Wahrscheinlichkeitskalkuel) T20. 전쟁을 도박으로 만들려면 우연이 필요하다. 전쟁과 우연은 불가분의 관계이다.(Es fehlt also nur noch der Zufall, um ihn zum Spiel zu machen, und dessen entbehrt er am wenigsten) T21. 전쟁은 본질적으로 주관적, 객관적으로 도박이다.(Wie durch seine objektive Natur, so wird der Krieg auch durch die subjektive zum Spiel) T22. 이러한 것은 인간의 정신과 가장 부합한다(Wie dies dem menschlichen Geiste im allgemeinen am meisten zusagt)		군사적 정지에서 파생된 전쟁의 본질
T23. 그러나 전쟁이 중대한 목적을 위한 중대한 수단이다.(전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Aber der Krieg bleibt doch immer ein ernsthaftes Mittel fuer einen ernsthaften Zweck. Naehere Bestimmungen desselben) T24.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에 불과하다(Der Krieg ist eine blosse Fortsetzung der Politik mit anderen Mitteln) T25. 전쟁의 다양한 유형(Verschiedenartigkeit der Kriege) T26. 모든 전쟁은 정치적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Sie koennen alle als politische Handlungen betrachtet werden.) T27. 전쟁사에 대한 이해와 전쟁이론의 기초와 관련하여 이상의 관점이 낳은 결과(Folgen dieser Ansicht fuer das Verstaendnis der Kriegsgeschichte und fuer die Grundlagen der Theorie)	소결론	
T28. 이론을 위한 결론(Resultat fuer die Theorie)	전쟁의 이종성과 삼위일체	

나. ‘관념 실험실(Gedankenexperiment)’로서 절대전쟁 : 전쟁의 무제한성

T1. 서론(Einleitung)

T2. 정의(Definition)

‘T2. 정의’는 전쟁의 본질을 논하기 위해 “관념상의 실험실”을 상정하여 전쟁개념의 정의를 시도하는 1편 1장의 출발점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절대적 양상을 상위에 놓고 하나의 보편적 기준으로 활용”하려는 이론적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전쟁의 절대적 양상이 되는 ‘양자 간 결투’를 ‘기본 척도’로 설정하였다.⁴⁹⁾ 클라우제비츠에게 있어 개인 수준의 양자 간 결투는 이론을 위한 극단적인 참고점이었다. 그리고 개인 수준의 결투를 국가수준의 전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쟁의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대규모로 확장시킨 양자 간의 결투’에 불과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적을 강요하는 폭력 행동”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클라우제비츠가 개인 간의 결투를 전쟁과 동일시하면서 정의한 최초의 시도이다.

“전쟁은 확대된 양자 간 결투에 불과하다. 양자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우리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적을 강요하는 폭력행동이다. ...폭력, 즉 물리적 폭력은 전쟁의 수단이고,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전쟁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적을 무장해제의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이것은 이론상 전쟁의 고유목표이다. 이 목표는 전쟁의 목적을 대신하고 전쟁자체에 속하지 않는 전쟁의 목적을 배제한다.”⁵⁰⁾

49) 류제승, 앞의 책, p.371.

50) Clausewitz, *Vom Kriege*, pp.89-90.

여기서 말하는 양자 간 결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결투는 적의 타도라는 목적, 물리적 폭력이라는 수단, 적을 무장해제시키려는 목표의 관계로 수행된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결투는 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표-목적-수단의 관계가 하나의 단독 행위자가 아닌 적어도 둘 이상의 행위자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때 목표-목적-수단으로 특징되어 지는 아군의 행동 양상은 적의 목표-목적-수단에 의해 결정되어진다.⁵¹⁾ 따라서 단일 행위자의 고립된 행동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행동은 대응을 유발하게 된다. 적의 목표-목적-수단관계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두 행위자는 ‘적의 타도’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전쟁의 무제한성(Entgrenzung des Krieges)’의 위험이 발생한다.⁵²⁾ 이러한 전쟁의 무제한성을 클라우제비츠는 세 가지 ‘극단적 상호작용(Wechselwirkung zum aeußersten)’이라고 표현하였다.

T3. 폭력의 극단적 운용(Aeußerst Anwendung der Gewalt)

T4. 목표는 적을 무장해제하는 것(Das Ziel ist den Feind wehrlos zu machen)

T5. 힘의 극단적 발휘(Außerdem Anstrengung der Kräfte)

T3-T5는 절대전쟁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극단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극단적인 상호 작용이 전쟁의 무제한성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양자 간 결투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극단적 상호작용은 ‘폭력’의 극단적 운용이다.(T5)⁵³⁾ 양자 간 결투에서 한 번의 결투로 승부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 한 번의 결투는 ‘의지’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강요 당하는 결전이 되기 때문에 결투에 임하는 쌍방 모두 가장 무자비한 폭력을 투사할

51) Schwar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bei Carl von Clausewitz*, p.13.

52) Schwar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bei Carl von Clausewitz*, p.13.

53) Clausewitz, *On War*, pp.75-77.

것이라는 생각이 이면에 작용하고 있다. 만약 제2의 결투가 있다면 결전을 연기할 수 있을 것이며 폭력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단 한 번의 결투로 승부가 날 경우 결투에 참가한 양자 모두 가장 극단적인 폭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투사함으로써 상대방의 무장해제를 시도한다. 가장 무자비한 잔혹한 폭력을 동원하는 한 일방이 결투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결투하는 양자에게 그대로 작용될 경우 폭력의 강도는 무한으로 증폭될 것이며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상호작용은 ‘적의 무장해제라는 목표’의 극단적 발휘이다.(T6)⁵⁴⁾ 양자 간 결투에서 1회의 결투로 모든 승리가 종결지어질 경우 양자 모두 “내가 적을 타도하지 못하면 적이 나를 타도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내가 적에게 나의 법칙과 의지를 극단적으로 강요”하는 원칙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적은 ‘타도’라는 목표를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거나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나의 ‘타도’ 목표를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나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공산이 크다. 이러한 계산은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될 것이며 이로써 ‘적의 타도’라는 결투의 고유 목표는 극단적으로 고조되는 것이다.

세 번째 상호작용으로서 결투에 임하는 양자 모두 자신의 ‘노력(강도)’을 극단적으로 투사할 것이다.⁵⁵⁾(T7) 여기서 ‘힘’은 현존 수단의 규모와 의지의 강도를 복합적으로 배합한 것으로 수단 규모는 측정가능하나 의지의 규모는 계량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양자 간 결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적과 아군은 서로 상대방보다 자신의

54) Clausewitz, *On War*, pp.75-77.

55) Clausewitz, *On War*, pp.75-77. 영어본에서는 ‘strength’(강도)로 번역되어 있으며, 류제승의 번역본은 ‘힘’으로, 독일어 원본은 ‘Anstrengung’(노력, 열의)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는 ‘힘’이라는 번역용어보다는, 영어본의 ‘강도’ 또는 ‘노력’이 문맥상 더 적합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노력크기를 배가하려고 할 것이며 이에 비례하여 적도 아군보다 우월한 노력을 투사하려는 ‘무한전쟁’을 반복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투사하는 노력의 크기만큼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이러한 무한전쟁의 동학 속에서 힘과 노력은 극단적으로 발산될 것이다.

이렇듯 전쟁의 폭력(force), 목표(object), 노력(strength)이 극단적으로 발휘되어 전쟁의 무제한화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쟁을 절대전쟁(absolute war) 또는 관념속의 전쟁(ideal war)이라고 규정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절대전쟁의 모습을 1806년 예나 전역에서 나폴레옹군의 전쟁수행 형태에서 추론하였으며 이러한 형태의 전쟁을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관념속의 전쟁’의 모습과 대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념속의 전쟁이 과연 현실전쟁의 모습과는 얼마나 일치하는 것인가? 용어가 이미 말해주듯이 관념속의 전쟁 또는 절대전쟁은 현실 속에는 그 자체의 형태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클라우제비츠는 절대전쟁은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론에서 무엇인가 배우려는 사람은 전쟁의 절대적 양상을 염두에 두으로써 이 양상을 모든 희망과 공포를 계측하는 기본 척도로서 삼는데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한다.⁵⁶⁾ 클라우제비츠는 절대전쟁이 단지 “관념의 실험실”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전쟁 형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가 절대전쟁의 모습을 제시한 것은 절대전쟁이 이론 구성을 위한 극단적인 참고점으로서 현실에서는 달성되지 않으며 단지 이론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폭력과 목표, 그리고 강도가 무한대로 고조되는 절대전쟁은 현실에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절대전쟁의 ‘경향’을 띤 전쟁은 존재할 것이다.

56) 류제승, 앞의 책, p.371.

클라우제비츠가 생각한 양자 간 결투는 말 그대로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다. 절대전쟁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 현실전쟁의 제한성

1) 양자 간 결투의 속성이 현실세계에서 국가전쟁과 동일시 될 수 없는 이유

그렇다면 왜 현실세계에서는 양자 간 결투와 같이 극단적·무제한적 형태의 절대전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T6-T27은 절대전쟁이 현실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전쟁의 완화와 정지, 즉 ‘전쟁의 제한성’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T6(현실적 제한)은 절대전쟁의 속성을 띤 양자 간 결투가 현실세계에서는 실제로 그 폭력성, 목표의 극단성, 강도의 극단성이 제한되고 완화된다는 점을 알리는 부분이다. 이것은 앞선 절대전쟁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현실전쟁으로 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1812년 모스크바 전역과 1815년 워털루 전역에서 나폴레옹군의 전쟁수행 실패 사례를 분석한 중간 결론으로 볼 수 있다.

T6. *현실적 제한(Modifikationen in der Wirklichkeit)*

T7. *전쟁은 결코 고립된 행동이 아니다(Der Krieg ist nie ein isolierter Akt)*

T8. *전쟁은 지속시간 없이 단 한번의 타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Es besteht nicht aus einem einzigen Schlag ohne Dauer)*

T9. *전쟁의 결과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Der Krieg ist mit seinem Resultat nie etwas Absolutes)*

T7-T9은 절대전쟁으로서 전쟁의 무제한성이 현실세계에서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전쟁 개전의 비고립성이다.⁵⁷⁾(T7) 현실전쟁은 양자 간 결투와는 달리 전쟁 발발

57) Clausewitz, *On War*, pp.78-80.

이전의 정치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쟁과 정치의 지속적인 관계성으로 인해 개전시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므로 결정적인 시점과 장소에 모든 가용한 폭력을 최대한의 강도와 의지로 집중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전쟁은 절대 돌연히 또는 우연히 기습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인간이라는 주체에 내재된 ‘불완전성’으로 인해 결코 전쟁의 절대성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절대적인 폭력의 집중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현실전쟁은 단일결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소규모, 동시적 결전의 결과로 결판이 난다.(T8)⁵⁸⁾ 또한 모든 전투력과 자산을 동시에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국 군사력의 동시통합 운용이 극히 제한된다. 양자 간 결투와는 달리 현실전쟁은 시공간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을 동시적으로 조직하거나 광범위한 국토에서 순식간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전쟁수행에서 동맹국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동맹국들의 전쟁개입은 일정기간의 눈치 보기와 관망이후에 이루어지므로 동일 시점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모든 전투력의 동시 집중은 전쟁의 본질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셋째, 전쟁종결 후 전쟁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성이다.⁵⁹⁾(T9) 전쟁에서 한 일방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현실전쟁에서는 그러한 패배의 결과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력이 완화된다는 의미이다. 즉 전쟁에 패배한 국가에게 회생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결과가 절대적 영향을 가지지 못하며 단지 잠정적 해악으로 간주될 뿐 언제나 구제책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경험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은 연합국에게 패배하였

58) Clausewitz, *On War*, pp.78-80.

59) Clausewitz, *On War*, pp.78-80.

으나 결과적으로 독일과 일본은 국제질서(냉전)의 변화에 힘입어 연합국의 동맹국으로서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또 다시 전면에 나서는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현실적인 이유, 즉 전쟁개전의 비고립성, 단일결전의 제한적 영향력, 전쟁결과의 상대성으로 인해 전쟁의 강도는 절대성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2) 전쟁의 무제한성이 완화되는 이유 : 개연성과 정치

T10. *현실생활의 개연성은 개념의 극단성과 절대성을 대신한다*(Die Wahrscheinlichkeiten des wirklichen Lebens treten an die Stelle des Aeusserten und Absoluten der Begriffe)

T11. *이제 정치적 목적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다*(Nun tritt der politische Zweck wieder hervor)

T10-T11은 현실전쟁에서 전쟁의 극단적 상호작용이 완화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무제한성이 이론으로서 관념의 세계에서만 머물고 반대로 현실세계에서는 ‘제한’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T10-T11) 첫째, 현실세계의 우연과 개연성 때문에 극단성과 절대성이 사라진다.⁶⁰⁾ (T10)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우연의 법칙으로 인해 교전하는 양자는 극단적인 전투력 사용을 회피하게 된다. 왜냐하면 교전하는 쌍방 모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자신의 자원을 보존하고 닥칠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교전자는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의 노력의 한계를 설정하고 미래 노력을 ‘예비’로 보존하려 할 것이다. 이렇듯 전쟁에서의 ‘마찰(friction)’이 전쟁의 극단적 경향을 ‘제한’하는 동학에 대해서는 1편 7장 ‘마찰’편에서 상술되어 있다.⁶¹⁾

60) Clausewitz, *On War*, p.80.

61) Clausewitz, *On War*, p.119.

둘째, 정치적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이다.(T11) 전쟁의 안개와 불확실성이외에도 정치적 목적이 전쟁을 본질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전쟁의 강도는 완화된 다. 만약 적에게 요구하는 희생이 적다면 적의 저항노력도 낮아질 것이며, 우리의 노력이 적다면 적의 노력도 적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전쟁폭력의 제한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 그 자체가 척도가 될 수 없으며 국민대중의 영향력이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전쟁의 폭발력은 국민대중간의 긴장과 적대 수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무제한화 과정에서 정치를 ‘근원적인 힘’이라고 보는 관점은 어디까지나 정치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만 정치가 전쟁 폭력에 제어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한정하였다. 다시 말해 정치와 국민간의 상호관계는 ‘정치가 단지 특정한 정도까지만 국민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듯 정치의 목적이 효력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국민의 감정이 정치를 후면으로 퇴출시키게 되며,⁶²⁾ 이러한 경우 전쟁은 또다시 절대적·무제한적 전쟁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치는 전쟁의 목적을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에 적절한 목표를 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비로소 전쟁 폭력의 극단적 발휘에 ‘제어적(regulative)’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⁶³⁾

62) Schwar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bei Carl von Clausewitz*, p.15.

63) Schwar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bei Carl von Clausewitz*, p.15.

3) 군사적 정지의 발생 원인 : 공격에 대한 방어 우위, 전쟁의 불확실성⁶⁴⁾

- T12. 군사적 활동의 정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Ein Stillstand im kriegerischen Akt ist dadurch noch nicht erklärt)
- T13. 단 한가지의 원인만이 행동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원인은 항상 어느 한편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Es gibt nur einen Grund welcher das Handeln aufhalten kann und dieser scheint immer nur auf einer Seite sein zu koennen)
- T14. 따라서 군사적 행동은 연속성을 가지게 되며 이 연속성은 모든 것을 상 승시킨다.(Dadurch wuerde eine Kontinuitaet in das kriegerische Handeln kommen, die alles wieder steigerte)
- T15. 여기서 이른바 양극성의 원리가 필요하다.(Hier wird also ein Prinzip der Polaritaet in Anspruch genommen)
- T16. 공격과 방어는 서로 다른 종류, 서로 다른 강도의 요소이므로 양극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Angriff und Verteidigung sind Dinge von verschiedener Art und von ungleicher Staerke, die Polaritaet kann also nicht auf sie angewendet werden.)
- T17. 공격에 대한 방어의 우위는 때때로 양극성의 영향을 소멸시키고 군사적 행동의 정지를 설명해준다.(Die Wirkung der Polartaet wird oft durch die Ueberlegenheit der Verteidigung ueber den Angriff vernichtet, und so erklart sich der Stillstand des kriegerischen Aktes)
- T18. 군사적 행동을 정지시키는 두 번째 원인은 불완전한 상황파악에 있다.(Ein zweiter Grund liegt in der unvollkommenen Einsicht des Falles)

T12-T18은 전쟁의 극단적 성향이 현실전쟁에서 ‘완화’된 후, ‘정지’에 이르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현실전쟁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절대전쟁의 무제한성이 현실세계에서 ‘제한’되는 경로를 설명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순차적으로 T10-T11에서 전쟁의 ‘완화’를 설명한 후 마침내 전쟁의

64) ‘군사적 정지’라는 개념은 류제승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독일어로는 ‘Stillstand im kriegerischen Akt’로서 직역하자면 ‘전쟁 행위에서의 정지상태’를 의미한다. 전쟁론에서 언급된 ‘정지상태(Stillstand)’는 분석수준이 전쟁 전략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재 미군 군사교리에서 사용하는 ‘작전적 정지(operational pause)’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여기서는 전쟁의 무제한성이 완화-정지에 이르는 경로와 논리를 설명하는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정지상태’의 속성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무제한성이 ‘정지’에 이르는 경로를 설명한다.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군사적 정지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⁶⁵⁾(T17-T18) 그것은 공격에 대한 방어에 우위(T17), 그리고 상황파악의 불완전성(T18)이다. T13-T16은 이 두 가지 요인이 작동하는 논리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군사적 정지는 “행동에 보다 유리한 시기를 기다리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⁶⁶⁾(T13) 상호 의도파악이 이루어진다면 약한 측은 상대적으로 강한 측이 준비를 마치기 전에, 반대로 강한 측은 약한 측이 더 강해지기 전에 예방공격(preventive) 또는 선제공격(preemptive)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예견된다면 양자는 끊임없이 다시 충돌할 것이다. 따라서, 더 강한 동기를 가진 편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투력 가진 경우를 균형으로 정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군사적 정지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전쟁은 양자의 이익이 제로섬(zero sum game)적 ‘양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쟁에서는 본질적으로 군사행동은 지속적인 상승작용의 본성을 가진다.⁶⁷⁾(T14-T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정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현실전쟁은 공격과 방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어와 공격이 서로 다른 종류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 ‘양극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T16)⁶⁸⁾ “공격에 대한 방어에 우위”는 이러한 양극성을 허물고 현실세계에서의 수정적 작용으로서 군사적 정지를 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다.(T17) 방어가 공격보다 강하다면 현재는 유리하나 방어의 이점을 배제하고 싸우기에 약한 측으로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유리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군사적 정지가 발생한다. 즉

65) Clausewitz, *On War*, p.84.

66) Clausewitz, *On War*, p.84.

67) Clausewitz, *On War*, pp.82-83.

68) Clausewitz, *On War*, p.84.

행동의 동기가 낮으면 공격과 방어의 강도차이로 인해 중화가 되며 이것이 곧 군사적 정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군사적 정지의 두 번째 요인은 불완전한 상황파악에 기인한다. 인간의 본성상 적에 대해 일반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함으로 인해 완화작용이 이루어진다(T18) 이 설명은 ‘마찰(friction)’의 전쟁에 대한 제한적 작용을 군사적 차원에서 다시 재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4) 현실전쟁에 대한 소결론: 우연과 정치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

- T19. 군사적 행동의 빈번한 정지는 전쟁이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확률 계산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Der haeufige Stillstand im kriegischen Akt entfernen den Krieg noch mehr vom Absoluten, macht ihn noch mehr zum Wahrscheinlichkeitskalkuel)
- T20. 전쟁을 도발로 만들려면 우연이 필요하다. 전쟁과 우연은 불가분의 관계이다.(Es felht also nur noch der Zufall, um ihn zum Spiel zu machen, und dessen entbehrt er am wenigsten)
- T21. 전쟁은 본질적으로 주관적, 객관적으로 도발이다.(Wie durch seine objektive Natur, so wird der Krieg auch durch die subjektive zum Spiel)
- T22. 이러한 것은 인간의 정신과 가장 부합한다(Wie dies dem menschlichen Geiste im allgemeinen am meisten zusagt)
- T23. 그러나 전쟁이 중대한 목적을 위한 중대한 수단이다.(전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Aber der Krieg bleibt doch immer ein ernsthaftes Mittel fuer einen ernsthaften Zweck. Naehere Bestimmungen desselben)
- T24.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에 불과하다(Der Krieg ist eine blosse Fortsetzung der Politik mit anderen Mitteln)
- T25. 전쟁의 다양한 유형(Verschiedenartigkeit der Kriege)
- T26. 모든 전쟁은 정치적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Sie koennen alle als politische Handlungen betrachtet werden.)
- T27. 전쟁사에 대한 이해와 전쟁이론의 기초와 관련하여 이상의 관점이 낳은 결과(Folgen dieser Ansicht fuer das Verstaendnis der Kriegsgeschichte und fuer die Grundlagen der Theorie)

T19-T20은 관념으로서 존재하는 전쟁의 무제한성이 현실세계에서 완화되고 정지에 이르는 경로와 이유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결론 부분이다. T19-T22는 현실전쟁의 본질을 ‘우연’이라는 전쟁

고유의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T23-T27은 ‘정치’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

T19-T22은 현실전쟁이 절대적 폭력성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를 ‘마찰’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자체의 속성을 ‘확률계산’, ‘도박’, ‘우연’, ‘인간의 정신’과 동일시하면서 관념전쟁이 현실전쟁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설명하였다. 1편 7장 ‘마찰(friction)’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클라우제비츠는 모든 전쟁에서 발생하는 마찰이야말로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라고 역설하였다.⁶⁹⁾ 이 때문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간단하나 간단한 것이 어렵다. 이 어려움이 누적되고 마찰을 유발하면 전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유발 한다”라고 강조하였다.⁷⁰⁾ 또한 ‘마찰은 종이위의 전쟁(war on the paper)’으로부터 현실전쟁(real war)을 가르는 유일한 개념’이라고 한 것은,⁷¹⁾ 폭력의 극단적 작용을 ‘마찰’이라는 요소가 제한을 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하겠다.

T23-T27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명제와 ‘현실 전쟁’의 관계성을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다. 여기서 현실전쟁을 대표하는 정치적 영향은 전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고찰이 특정한 인물과 상황에 기초한 일종의 확률계산과정이라면 원천적인 동기인 정치적 목적은 이 계산 과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적에게 요구하는 희생이 적을수록, 우리에게 저항하는 적의 노력도 적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⁷²⁾

69) Clausewitz, *On War*, p.119.

70) Clausewitz, *On War*, p.119.

71) Clausewitz, *On War*, p.119.

72) Clausewitz, *vom Kriege*, p.98.

그러나 우리는 ‘전쟁’과 ‘정치’의 기능적 관계성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발언을 주목해야한다.

“전쟁은 정치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정치적 도구이고 정치적 교류의 연속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적 교류의 실행이다. 다만 전쟁이 지닌 고유특성들은 전쟁수단의 고유한 본성과 연관되어 있을 뿐이다. …전쟁의 동기가 크고 강하며 그것이 교전국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쟁이전의 긴장이 폭력적일수록, 전쟁은 그 자체의 추상적 형상에 더욱 가까워진다. …정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유형의 전쟁이 있는 반면, 정치가 확연하게 전면에 나타나는 유형의 전쟁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전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양자 모두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⁷³⁾

클라우제비츠의 이러한 발언은 이전과는 상반된 주장인데,⁷⁴⁾ 이것은 독일어 ‘Politik’이라는 개념 속에 내재된 두 가지 의미인 ‘정치(politics)’와 ‘정책(policy)’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스포드(Christopher Bassford)가 지적했듯이 전쟁은 ‘정치’와 ‘정책’의 또 다른 표현이다. 여기서 정치는 분쟁세력의 상호작용이지 어느 일방의 ‘정책’ 집행이 아니다.⁷⁵⁾ 정치는 한 국가 또는 사회의 의지 및 의사형성과 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책은 구체적인 영역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외교정책, 안보정책, 국방정책과 같은 실질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해당된다.⁷⁶⁾ 전쟁 목적의 결정과정에서 정치엘리트들 이외에도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 국민적 정서가 적대감과 적대의도 등과 같은 ‘맹목적 본능(blinder Naturtrieb)’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전쟁의 목적은 정책보다는 ‘정치’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 국가의

73) Clausewitz, *vom Kriege*, pp.107-109.

74) Herberg-Rothe, *Das Raetschel Clausewitz*, p.168.

75) Christopher Bassford, *Clausewitz and his works*, in <http://www.clausewitz.com/>, p.17.

76) Helmut Koenig, *Orientierung Politikwissenschaft: Was Sie kann und was sie will*(Hamburg, 1999), p.55.

이해표명은 모든 영역의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한 사회의 여론이 ‘감정’적이거나 긴장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전쟁의 정치적 목적 전환을 유발하게 되고 전쟁의 ‘제한’에서 이탈하여 ‘무제한’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적의 타도’라는 목표가 전쟁 수행에서 지배적인 원칙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⁷⁷⁾ 이 때문에 클라우제비츠는 정치목적이 전체적인 입법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전쟁수단이 때로는 정치에 순응해야 하지만 전쟁 수단으로 인해 정치적 목적이 변화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⁷⁸⁾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자신의 근원적인 정치적 성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의 명제와 상충되는 것 처럼 보이는 이 주장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진정한 의도는 정치의 국민 의지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치의 목적을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에 적절한 목표를 부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어적’인 기능을 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는데 주안이 있다.⁷⁹⁾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전쟁이 지닌 고유특성들은 전쟁수단의 고유한 본성과 연관되어 있을 뿐 전쟁의 목적은 정치의도에 의해 규정되며, 정치수단으로서 전쟁은 생각할 수 있어도 목적 없는 수단은 생각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유형을 ‘정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유형의 전쟁’과 ‘정치가 확연하게 전면에 나타나는 유형의 전쟁’으로 대별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모든 전쟁은 정치적 행동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⁸⁰⁾

77) Uwe Hartmann, *Carl von Clausewitz and the Making of Modern Strategy* (Potsdam, 2002), p.39.

78) Clausewitz, *On War*, pp.87-88

79) Schwar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bei Carl von Clausewitz*, p.15.

80) Clausewitz, *On War*, pp.87-88

라. ‘카멜레온’으로서의 전쟁개념과 ‘경이로운 삼위일체’

T28. 이론을 위한 결론(*Resultat fuer die Theorie*)

전쟁론 전체에 대한 분석의 틀로서 1편 1장에 일관된 관점을 담고자할 때 클라우제비츠의 근본적인 고민은 초기 클라우제비츠와 후기 클라우제비츠로 대표되는 세 가지 상반된 논점을 어떻게 하나의 관점으로 수렴해나가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 세 가지 논점이란 “전쟁수행의 폭력·강도·목표의 극단적 발휘 對 전쟁수행간 군사적 정지”, “군사우위 對 정치우위”, “공격 우위 對 방어 우위”를 말하는 것이었다.⁸¹⁾ 그것은 각각 “예나 전역(1806) 對 워털루 전역(1815)”의 상반된 전쟁의 본질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대비논점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서두에서 “전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예나 전역(1806) 對 워털루 전역(1815)”의 대비 논점을 “절대전쟁 對 현실전쟁”과 비교하였다. 여기서 폭력의 극단성이 표출되는 절대전쟁과 폭력의 완화와 정지가 이루어지는 현실전쟁의 두 가지 유형의 전쟁을 구분하면서 이러한 전쟁의 이중적 속성을 어떻게 하나의 이론으로 집대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방안을 클라우제비츠는 ‘이론을 위한 결론(T.28)’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전쟁은 카멜레온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전쟁은 상황마다 그 본질을 약간씩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은 경이로운 삼위일체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그 전쟁을 지배하는 성향과 관련된 전체 현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전쟁은 그 구성요소인 적대감과 적대의도에서 연원된 원초적 폭력성을 갖는다. 이 폭력성은 맹목적인 본능과

81) Herberg-Rothe, *Das Raetsel Clausewit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im Widerstreit*.

같다. 둘째, 전쟁은 전쟁을 자유로운 정신 활동으로 만드는 확률과 우연의 게임이다. 셋째, 전쟁은 정치적 도구로서 정치에 종속된 본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쟁은 순수한 이성의 영역에도 귀속되어 있다. 전쟁의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첫 번째 측면은 국민, 두 번째 측면은 야전사령관과 군대, 세 번째 측면은 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다. 전쟁에서 타 올라야 할 열정은 국민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 용기와 재능의 확률과 우연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범위는 야전사령관과 군대의 고유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은 정부의 독자적인 몫이다.”⁸²⁾

이 처럼 전쟁에 내재된 전쟁의 이중적 경향 때문에 전쟁에 대한 단일한 정의가 클라우제비츠에게 어려운 과제였음을 암시한다. 그는 1편-8편까지의 전쟁분석을 통해 초기 클라우제비츠와 후기 클라우제비츠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화가 필요했다. 전쟁의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이라는 상반된 속성을 하나의 분석틀로 설명해야 하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개별 상황마다 본질을 약간씩 변화시키는 ‘카멜레온’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카멜레온적 속성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클라우제비츠는 ‘경이로운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였고, 여기에는 ‘적대감정과 의도(감성)-자유로운 정신활동-이성’이라는 요소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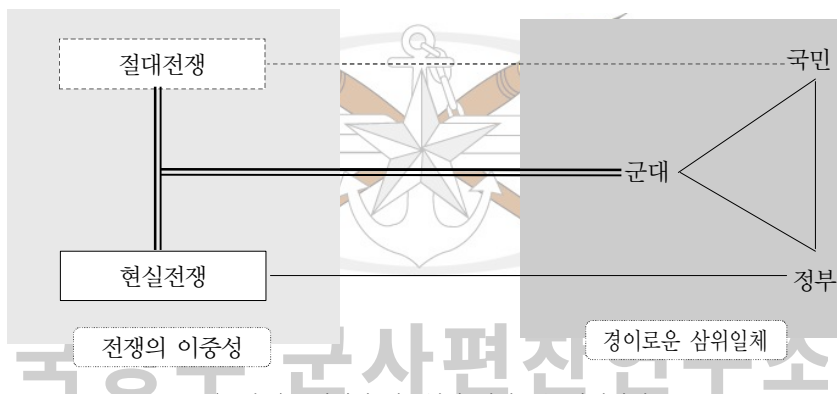
〈표 4〉 경이로운 삼위일체와 전쟁의 경향성

삼위일체의 요소	전쟁의 경향성	행위자
적대감정 / 적대의도(감성)	원초적 폭력성	국민
자유로운 정신활동	우연/개연성	군대/지휘관
이성	정치적 수단	정부

출처 : Yoriko Rach, “Clausewitz Revisited”, in Lennart Louchen, ed., Konflikte und Strategien II, Clausewitz-Information. 2/2010(Hamburg : Fuehrungsakademie der Bundeswehr, 2010), p.17.

82) 류제승, 앞의 책, p.58.; Clausewitz, *vom Kriege*, pp.110~111.

여기서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조합에 따라 전쟁은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이라는 양측사이에서 유동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며, 정확한 위치는 모든 각각의 전쟁목적에 미치는 영향요소의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⁸³⁾ 따라서, 클라우제비츠는 관념전쟁과 현실전쟁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전쟁은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러한 가변적 성격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서 “감성-이성-우연”이라는 경이로운 삼위일체를 식별하였고 이를 “국민-정부-군대”의 속성과 연계하여 전쟁의 본질을 ‘카멜레온’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전쟁의 이중성과 경이로운 삼위일체

4. 결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세상에 빛을 본지 올해로 183년이 지났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전쟁론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83) Hartmann, *Carl von Clausewitz and the Making of Modern Strategy*, p.36.

회자되었다. 특히 전쟁론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해석상의 많은 오해를 받아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세기 초 독일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전략논쟁’이었다. 델브뤽(Hans Delbreuck)과 독일군 참모부와의 전략논쟁에서 독일군 수뇌부는 클라우제비츠를 ‘섬멸전쟁’의 선구자로 인식한 반면 델브뤽은 클라우제비츠의 두 가지 전쟁전략을 섬멸전략(Niederwerfungstrategie)과 소모전략(Ermattungstrategie)으로 소개하면서도 클라우제비츠를 섬멸전략의 창시자로 보지 않았다.⁸⁴⁾ 최근 키건(John Keegan)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이 20세기의 ‘총력전(totaler Krieg)’의 시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⁸⁵⁾

최근에도 전쟁의 본질과 전략과의 관계에 대해서 유사한 논쟁을 노정하고 있다. 순수 군사주의자(militarist), 정치적 현실주의자(political realism)의 정치와 군사 우위논쟁이 그것이다.⁸⁶⁾ 순수 군사주의자들의 관점은 전쟁이 비록 정치적 목적 때문에 개시된다 하더라도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은 ‘정치적 목표’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순전히 군사적 고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전쟁을 ‘정책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쟁수행은 순전히 정치적 통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⁷⁾ 순수군사주의자들은 정치우위의 원칙이 전쟁에서 경험적으로 항상 도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현대에 와서도 핵전쟁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사례에서 정치의 연속으로서 전쟁의 관점은 유효하고 그 본질적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84) Sven Lange, *Hans Delbruck und der Strategiestreit: Kriegfuehrung und Kriegsgeschichte in der Kontroverse 1879-1914* (Freiburg im Breisgau, 1995).

85) John Keegan, *Die Kultur des Krieges* (Reinbek, 1997).

86) Julian Lider, *Military Theory: Concept, Structure, Problems*(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83), p.60.

87) Lider, *Military Theory: Concept, Structure, Problems*, p.64.

여기서 우리는 왜 전쟁론의 1편 1장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비단 역사적으로 진행 중인 클라우제비츠에 관한 논쟁을 이해하고 전쟁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쟁의 본질에 대한 보다 본원적이고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서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전쟁론은 전쟁과 전략에 대한 변함없는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전쟁론이 단순한 전승의 비결을 캐내는 ‘교범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전쟁의 무제한성과 제한성’의 동학을 고찰한 전쟁이론으로 승화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클라우제비츠가 20여 년간의 전쟁 연구를 총화하면서 던진 전쟁 분석에 대한 궁극적인 연구대상은 ‘전쟁의 강도’, 즉 ‘전쟁의 무제한성과 제한성’의 논리에 관한 것이었다. 전쟁은 왜 극단적으로 고조 → 완화 → 정지의 과정을 거치며 그 요인은 무엇인가?가 핵심 질문이었다. 그리고 두 개 유형의 상반된 속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나가는 과정은 ‘관념’과 ‘현실’이라는 상반된 영역의 가치를 결부시키며 ‘양자 간 결투’라는 개인적 수준의 전쟁개념을 ‘국가 간 전쟁’으로 확대하고, ‘관념전쟁’과 ‘현실전쟁’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밝혀내는 방법론을 택하였다.

이러한 고민을 집대성한 1편 1장은 나폴레옹 전쟁의 성공과 실패 동학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면서 ‘전쟁의 무제한성과 제한성’을 관점으로 개념화한 이론적 고찰이다. 1편 1장은 예나 / 아우어슈테트(1806), 모스크바(1812), 워털루(1815) 등 세 전역 사례를 전쟁분석의 주요 모티브로 하여 전쟁론 전체에 대한 전쟁의 본질적 요소를 고찰하였다. 이 중에서 예나 / 아우어슈테트 전역이 절대전쟁의 특성을 도출하는데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면 모스크바원정과 워털루 전투의 실패는 현실전쟁의 특성을 도출하는데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되었다. 예나 전역을 초기 클라우제비츠라고 한다면 모스크바 /

위털루 전역은 후기 클라우제비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유형의 전쟁형태를 하나의 이론으로 수렴하기 위한 결정적 고민이 ‘경이로운 삼위일체’에 녹아나 있다. 1편 1장에서 클라우제비츠는 28개의 소명제를 조합하여 ‘카멜레온’이라고 규정한 전쟁의 이중성과 이성-감성-우연의 삼위일체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 규명함으로써, 핵심논점이었던 ‘전쟁의 무제한성’과 ‘제한성’의 동학을 입증하였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절대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절대전쟁의 모습을 제시한 것은 절대전쟁이 극단적인 참고점으로서 현실에서는 달성되지 않으며 단지 이론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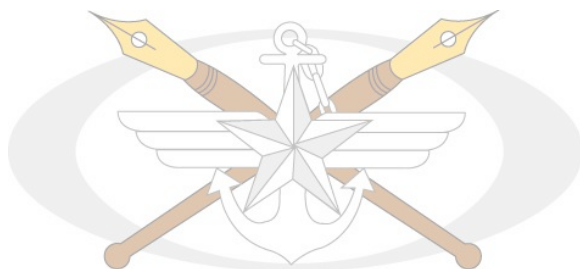
한편 ‘전쟁의 무제한성과 제한성’의 동학은 전략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예나, 모스크바, 위털루 전역 등 세 개의 전쟁 형태가 모든 것을 말해주듯이 전쟁과 전략문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집필의 근본적인 동기는 “왜 나폴레옹은 전쟁에 성공하고 실패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에 있었다. 전략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쟁의 본질에 대한 본원적 고찰이 필요했던 것뿐이다. 이 때문에 클라우제비츠도 전쟁론 구성에서 1편은 전쟁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중은 전략문제와 전쟁계획에 대한 논의에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못했지만 클라우제비츠는 자신의 유일하게 완성했다고 말한 1편 1장의 ‘전쟁의 무제한성과 제한성’의 역학이 전략문제와 어떤 연계를 가지는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전쟁론에 대한 후속 연구는 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전쟁과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말대로 “선입견 없이 진리와 신념을 갈망하는 독자”의 심정으로 “불완전한 형태의 사유의 모음집”인 1편-6편을 해독함으로써 전쟁이론을 추구하고 “개별 금속입자들 대신에

하나의 전체를 잡지 않는 순금속으로 주조하듯이 완전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전쟁론 연구자들의 과업이 되어야 한다. 그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편 1장이다. 우리가 1편 1장을 정확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고투고일: 2015.4.1, 심사수정일: 2015.5.20,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전쟁론 1편 1장, 전쟁의 제한성과 무제한성, 나폴레옹 전쟁, 예나 / 모스크바 / 워털루 전역, 절대전쟁, 현실전쟁, 경이로운 삼위일체, 이성, 우연, 감성, 카멜레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How to understand Book I. Chapter 1 of On War(written by Carl von Clausewitz)? : ‘Escalation(Entgrenzung)’ and ‘De-escalation(Begrenzung)’ of the war

Kim, Tae-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logical structure of ‘nature of war’ in the Book I, Chapter 1 of On War written by Carl von Clausewitz, as an introduction for beginners who are going to study On War. This article does not try to take a critical approach about the previous literature, but try to give a contribution to help readers to understand this great book just more clearly and easily. As a result this article is trying to provide a profound basis for interpretation about the ‘nature of war’ on a deeper and reliable basis.

This study follows two different approaches. First, this article was built on a interaction between a empirical ‘history’ and a conceptual ‘theory’. On war is a classic literature about political science and military art and science whose main empirical case was about conducting of Napoleonic Wars in the 19th century. Accordingly, we need to analyze three main campaigns in the Napoleonic Wars in order to answer key questions raised in this book. In this background, I will introduce ‘three campaigns’ and ‘two different types of war’ conceptualized by the German scholar Andreas Herberg-rothe. Three campaigns include Jena/Auerstedt (1806), Moscow(1812), Waterloo(1815) and two types of war are consisted of a ‘absolute war(Entgrenzung der Gewalt)’ and ‘real war(Begrenzung der Gewalt)’.

Second, this article needs a closer look at a new architecture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hole’ and ‘the part’ of On War which was proposed by Carl von Clausewitz himself. The author intended to provide a simple and systematic logic about the nature of war. He does not want to bring readers a confusion by letting various pieces of elements belonged to war untouched or unorganized one. This means, Clausewitz’s efforts to analyze the campaigns from part to part needed to be integrated into a single work or a ‘one final product’ under the framework with ‘one perspective’ or ‘one single point of view’. The different perspective and changing character on three campaigns are kinds like a confused mixture, because this was published as a unfinished literature after Clausewitz died. Therefore, we have to study the whole publication process during twenty years. Finally, this study comes to a conclusion that Book I Chapter 1 of is a framework for the following whole part of On War.

The main theme Clausewitz raised during twenty years was the dynamics of escalation and de-escalation of war(‘entgrenzung’ and ‘begrenzung’). Clausewitz intended to clarify why war comes to an escalation → mitigation → de-escalation → suspension.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book to illuminate the cause of this question was the dialectical approach using the opposite concept of ‘ideal world and real world’, ‘duel and state war’, ‘absolute war and real war’.

Book I Chapter 1 of On War is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whole book which provides a consistent perspective on the success and failure of Napoleon’s conduct of war in the empirical cases. Jena/Auerstedt(1806) campaign was a empirical prototype for a absolute war, but Napoleon’s failure in Moscow(1812) and Waterloo(1815) campaigns motivated Clausewitz to turn his early thought on nature of war to the real war paradigm. ‘Absolute war-paradigm’ of the Jena(1806) is ‘early Clausewitz’ and ‘real war-paradigm’ of the moscow/waterloo(1812/1815) is ‘later

Clausewitz'. Clausewitz tried to integrate this different and opposite nature of two types of war into a single war theory based on a 'wondrous trinity of war'. Clausewitz tried to clarify the dynamics of escalation and de-escalation of the war, and the relationship 'wondrous trinity'(primordial violence – chance and probability – reason alone) and 'dual nature of war(chameleon)'. According to Clausewitz, it does not exist a absolute war in the real world. The reason why Clausewitz provide a absolute war in the book was just to show a reference point for setting a theory, which never takes place in the reality.

Lastly, this article implies that the nature of war(book I. chapter 1 of on war) is closely associated with a matter of military strategy. As explained clearly in the empirical cases of Jena, Moscow and Waterloo, 'war and strategy' cannot be separated. The most cause/motive of Clausewitz was "why Napoleon won or lost the war?". Clausewitz dealt with the nature of war in the first chapter of his book just to answer his main question in the later part. Clausewitz' main interest was actually focused on a 'strategy' and 'war planning' in the following parts of his book. This is the reason why we have to read Book I Chapter 1 of On War carefully before we start to study 'strategy'.

Key words : Book I Chapter 1 of *On War*, Escalation and De-escalation of War, Napoleonic War, Jena/ Moscow/ Waterloo, Absolute War, Real War, Wondrous Trinity, primordial violence, chance and probability, reason alone, Chameleon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와 大對盧

윤 성 환*

1. 머리말
2. 고구려 후기 ‘大人’의 研究史的 검토
3.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와 대대로
 - 가. 고구려 후기 대인의 史料的 특징
 - 나. 고구려 후기 대인의 실체 : 관등으로서의 대대로
4. 大人會議와 대대로
5.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고구려 후기의 官制에서 最高官은 大對盧였다. 대대로는 제1위의 官等이자 국사를 총괄하는 3년 임기의 官職으로서 귀족 간 力學에 의해 선임되었던 것으로 전한다.¹⁾ 이러한 대대로의 독특한 양상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지만, 대대로 자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에는 영세하기 그지없는 사료적 조건도 작용

* 성균관대학교 학사

1) 『翰苑』蕃夷部 高麗; 『舊唐書』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莫離支의 실체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구려 후기 정치사를 이해하려 할 때 대대로에 대한 충분한 규명 작업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대대로는 그 자체 고구려 후기 정치제도 운영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점은 대대로의 선임 방법 및 대대로가 관등과 관직의 복합적 성격을 지닌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확보하려면 우선 대대로에 도전, 취임할 수 있었던 존재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翰苑』 高麗記에는 제1위의 대대로에서 제5위의 裨衣頭大兄(=位頭大兄)에 이르는 상위 다섯 관등에 해당하는 관인들이 이 인재를 뽑아 관작을 수여했다는 내용이 전한다. 이를 중시할 경우 대대로 역시 상위 5관등을 보유한 官人이 취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정은 당시 관등(관위)제의 속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에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었던 관등으로 제2위의 太대兄을 지목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막리지가 제2위인 태대형의 異稱이었음을 논증한 다음, 각종 문헌기록과 금석문에서 대대로와 막리지가 혼동되어 나타나는 점에 주목해 막리지와 대대로가 상호 ‘昇降 관계’에 있었다고 해석하였다.²⁾ 이에 반해 막리지를 중리태대형에 비정한 연구에서는, 관등제의 속성에 유의할 때 대대로와 태대형 사이에 昇降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었던 존재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된 상태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상의 견해는 막리지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⁴⁾ 제기된 탓에 대대로 자체에 역점을

2) 임기환, 「6~7세기 정치 세력의 동향과 귀족연립체제」,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287~298쪽.

3) 이문기, 「高句麗 莫離支의 官制的 性格과 機能」, 『백산학보』 55, 2000, 71쪽.

두고 살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막리지(혹은 태대형)와 대대로의 관계’ 차원의 범주에서 접근한 한계를 지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구려 후기 대대로에 도전·취임할 수 있었던 존재는 좀 더 방법을 달리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현전자료상 대대로와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대인’이 주목된다. 비록 단 한 건의 사례이지만, 淵蓋蘇文의 부친인 淵太祚는 “東部大人 大對盧”를 역임했다고 전하는 바, 이에서 대인과 대대로 간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상 ‘대인’이 고구려 후기 독점적 권력을 누렸던 연개소문 일가와 관련해 한정적으로만 출현하는 점 역시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고구려 후기 대인의 실체와 더불어 대인과 대대로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대대로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얻어 보려 한다. 우선 고구려 후기 대인의 실체를 확인해나가는 일환으로서, 대인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2. 고구려 후기 ‘大人’의 研究史的 검토

그동안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는, 642년 정변 이전 연개소문의 지위와 관련해 주로 논의되었던바, 그것은 대개 두 갈래로 진행

- 4) 한편, 현재 북한학계는 高麗記의 대대로 관련 기록을 複数の 대대로끼리 싸워 취임했다는 의미로 수용하여 이를 기록상의 모순으로 규정하고—국정을 총괄했던 대대로는 1인일 수밖에 없었으므로—중국인들이 고구려 귀족들의 限時的 권력투쟁을 恒久的인 것으로 오해하여 남긴 기록으로 보고 있다(『조선단대사』 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49쪽). 이는 북한학계가 강력한 왕권체제를 先進의 체제로 인식하고, 고구려 국가체제를 봉건적 중앙집권체제로 前提한 데서(손영중, 『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55~57쪽) 비롯한 주장이지만, 한편으로 고려기의 해당 기록이 지닌 모호성을 반증하는 측면도 있다.

되었다. 우선 대인의 실체를 고구려 초기 ‘大加’에 대한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유력 귀족가문의 세력기반 및 사회적 지위(신분)와 연관해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경우 대인은 유력귀족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던 칭호나 신분으로 비정된다.⁵⁾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 연개소문이 부친으로부터 대인을 承襲하려 하자 여타 귀족들이 반대했던 사실을⁶⁾ 이해하기 어려운 난점이 따른다. 이는 대인이 일정한 공적 역할과 위상을 지녔거나 혹은 그것을 보장했기에 나타난 ‘정치적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대인의 語義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고구려 후기의 대인은 귀족세력 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만큼 첨예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대인의 성격이 단순히 ‘사회적 지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와 달리 그것의 정치적 위상과 “동부대인”의 용례에서 드러나는 ‘部’와 ‘대인’의 연관성에 유의하는 시각도 있었다. 이 경우 대인을 ‘부의 대표자’로 이해하거나⁷⁾ 부를 관장하던 특정 관직, 즉 ‘褥薩’에 비정하였다.⁸⁾ 이 중 대인이 부의 대표자라는 전자의 견해는, 이 시기 부의 성격을 고려할 때 따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고구려 후기의 5부는 王都의 행정구역으로 이해되고 있는바⁹⁾ 그렇다면 대인이 부의 무엇을 대표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그런 타인지 이 견해에서는 고구려 후기에 이르러 귀족세력이 부를

5) 전미희, 「淵蓋蘇文의 執權과 그 政權의 性格」,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1994, 270쪽;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하, 을유문화사, 1996, 477쪽; 전순옥, 「淵蓋蘇文 執權期の 莫離支體制 研究」, 『백산학보』 46, 1996, 65쪽.

6)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有蓋蘇文者, … 父爲東部大人對盧虜, 蓋蘇文當嗣, 國人惡之, 不得立, 頓首謝衆, 請攝職, 有不可, 雖廢無悔, 衆哀之, 遂嗣位.”

7) 정원주, 「榮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고구려발해연구』 40, 2011, 31~32쪽.

8) 노태돈, 「귀족연립정권과 연개소문의 정변」,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이문기, 「7세기 高句麗의 軍事編制와 運用」, 『고구려연구』 27, 2007.

9) 김현숙, 「6~7세기의 영역 지배 방식」,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5; 최희수,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의 구조와 의미」, 『고구려발해연구』 32, 2008.

단위로 새롭게 결집함으로써 5부가 다시 정치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추론을 전제하고 있다.¹⁰⁾ 그러나 「泉男生墓誌銘」, 「高慈墓誌銘」 등 각종 금석문 자료와 정변 전 연개소문의 행적 관련 자료가 말해주듯 6~7세기 고구려 귀족들은 가문단위로 분화되어 있었고, 그러한 개별 가문의 경제적 기반(食邑)과 정치적 성장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원』에서 “5부는 모두 貴人之族”이라 기록한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이 시기 귀족들의 존재양태(=“族”)를 잘 보여준다. 심지어 귀족가문 一族 내에서도 정치권력 혹은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연개소문이 642년 쿠데타 과정에서 자신의 일족을 죽인 사실은 이를 말해준다.¹¹⁾ 이처럼 이 시기 고구려 귀족의 존재양태는 혈연집단을 의미하는 ‘族’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었고¹²⁾ 5부는 그러한 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을 뿐, 그 자체 각 귀족가문 간의 연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인을 육살에 비정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의 성격(=왕도의 행정구역)에 유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서는 연개소문이 부친으로부터 東部大人을 ‘攝職’한 사실을 중요시 여겨 대인을 관직으로 보는 방향을 잡은 다음, 이 시기 부의 기본성격을 고려해 동부대인을 ‘동부를 관장하는 長’의 의미로 풀이하였다. 그런 뒤 부를 관장하던 관직인 육살에 대인을 비정하였다. 육살은 일명 軍主라고 불린 것이 중국 측 자료에 전하며, 이에 5부 육살은 각각 개별 부의 병력을 통솔한 것이 인정되므로, 연개소문이 정변 당시 部兵을 동원한 정황을 고려해볼 때 그렇게 비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 정원주, 앞의 논문, 2011.

11) 『日本書紀』卷24 皇極紀 元年 2月.

12) 여호규, 「3세기 고구려의 사회변동과 통치체제의 변화」, 『역사와 현실』 15, 1995, 167쪽.

이러한 접근은 일견 합리적인 접근방향이라 생각되지만, 대인을 관직인 육살에 비정하더라도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무엇보다 고구려 후기의 父職 承襲은 ‘관직’이 아닌 ‘관등’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점을¹³⁾ 고려할 때 그러하다. 실로 관등제의 본질적 속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왜냐면 당시 특정 귀족(가문)의 위상은 관직이 아닌 관등이 담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견해에서는 『新唐書』 高麗傳에 전하는 연태조의 최종 지위인 “東部大人 大對盧”를 「천남생묘지명」에 근거해 “동부대인 막리지”로 수정하여 추정하면서도, 정작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정변 이전 연개소문의 지위는 동부대인 = 동부육살에 비정하였다.¹⁴⁾ 왜냐면 현전하는 국내의 기록에 정변 이전 연개소문의 지위는 모두 동부대인(혹은 서부대인)으로만 나타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볼 경우 정변 이전의 연개소문은 특정 관등을 보유하지 않은 채 동부육살이라는 관직만을 역임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의 귀족들이 관등을 보유하지 않은 채 정계에서 활약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인을 육살과 같은 특정 관직에 비정하는 견해 역시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3) 여호규, 「일원적 관등제의 정비와 그 구조」,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411~413쪽. 다만, 최근 알려진 「高欽德墓誌銘」에는 고흠덕의 증조인 高瑗이 ‘建安州都督’, 즉 建安城 육살을 역임하였으며, 그것을 고흠덕의 조부인 高懷가 세습하였다고 전한다. 이 기록을 액면 그대로 취신할 경우 고구려 후기 부직 승습의 형태로서 관직을 세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같은 州級의 성이었던 책성의 도독을 역임한 高量의 관등이 위두대형이었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고원, 고희의 관등 역시 위두대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고희는 고원의 관등인 위두대형을 승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묘지명에서 관등은 기재하지 않은 채 건안주도독의 세습을 특기한 것은, 고랑-高質 부자 사이에서 확인되듯 당시 동일한 관등(위두대형)을 세습하더라도 관직은 달리하는 경우(고랑 : 책성도독/고질 : 대장군)가 좀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14) 노태돈, 앞의 책, 1999, 467~471쪽.

이상에서 고구려 후기 ‘대인’을 둘러싼 각종 견해들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대인’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는 크게 볼 때 두 갈래였다. 하나는, 그것을 고구려 초기 ‘大加’에 대한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유력 귀족가문의 세력기반 및 사회적 지위와 연관해 보는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공적(정치적) 위상과 이 시기 部の 성격(행정구역)에 주목해 특정 관직에 비정하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두 시각 모두 일정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禰薩說 역시 검토 결과 그대로 따를 수만은 없었다. 그렇다면 고구려 후기 ‘대인’의 성격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혹 양자의 시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실체에 접근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

3.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와 대대로

가. 고구려 후기 대인의 史料的 특징

고구려 후기 대인의 사료적 특징을 검토해보기에 앞서 대인의 用例를 살펴보자. 먼저 역대 중국 측 자료에서 찾아지는 대인의 용례는 워낙 많아 特定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체로 12가지의 의미로 정리되는 바, ① 지위가 높은 자나 王, 公, 貴族을 지칭하는 말, ② 관료사회에서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습관적 칭호, ③ 王者라는 말과 같은 말, ④ 궁궐 近侍에 대한 존칭, ⑤ 世家 豪族을 가리키는 말, ⑥ 덕행이 고상하고 뜻이 높고 깊은 사람, ⑦ 늙은이에 대한 경칭, ⑧ 부모, 叔伯 등 연장자에 대한 존칭, ⑨ 또래 중 나이나 이력이 약간 더 많은 사람에게 연락할 때 쓰는 말, ⑩ 成人을 가리키는

말, ① 체격이 큰 사람, ② 고대 북방부족 수령의 칭호 등이었다.¹⁵⁾ 이 중 고구려 후기 대인과 관련해 검토대상이 될 만한 용례로는 ①, ④, ⑤번을 선택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日本書紀』 내에서 확인되는 大人の 의미를 정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대체로 ① 높은 사람, ② 지역 수장, ③ 훌륭한 사람, ④ 太子 정도의 반열에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 ⑤ 존귀한 자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고 한다.¹⁶⁾ 대체로 『일본서기』에서는 대인을 身分과 관련해 사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편, 한국고대사에서 그 용례를 찾아보면, 고구려의 경우 『三國志』東夷傳에서 ‘涓奴部の 適統大人’과¹⁷⁾ ‘東沃沮 大人’이¹⁸⁾ 확인된다. 모두 고구려 초기의 상황과 관련되는 데, 전자의 경우 과거 소노부 출신 왕의 혈통을 받은 자가 왕의 宗族만이 칭할 수 있는 古雛加를 칭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서 이때의 ‘적통대인’은 바로 그러한 존재를 중국인 나름대로 표현하기 위해 채택한 용어일 뿐, 고구려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니다. 고구려에서는 그러한 존재를 ‘古雛加’라 불렀던 것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 고구려 초기의 동옥저 지배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존 동옥저의 ‘지배자’ 또는 ‘首長’을 가리킨다. 즉, 고구려는 ‘대인’으로 표기된 동옥저의 수장을 使者로 삼아 동옥저를 통치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이때의 ‘대인’ 역시 고구려나 동옥저에서 수장을 가리켜 사용한 용어라기보다 기록자인 중국인이 선택한 용어라 볼 수 있다. 이로 보면 고구려 초기에는 ‘대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 다만, 6세기 초반의 신라에서 ‘대인’이라는 존재가 확인된다. 524년 건립된 「蔚珍鳳坪新羅碑」에

15) 이상은 ‘漢典’(<http://www.zdic.net>)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16) 백승옥, 앞의 논문, 2006, 293~295쪽.

17) “王之宗族，其大加皆稱古雛加。涓奴部本國主，今雖不爲王，適統大人，得稱古雛加，亦得立宗廟，祠靈星·社稷”(『三國志』卷30 魏書 第30 東夷 高句麗)

18) “國小，迫于大國之間，遂臣屬句麗。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使相主領”(『三國志』卷30 魏書 第30 東夷 東沃沮)

등장하는 “𐏃(또는 處)事大人”이 그것이다. 이때의 “𐏃(또는 處)事大人”은 일반적으로 관직이 미분화되고 관부가 설치되지 않은 시기의 산물로서 실무 집행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⁹⁾ 따라서 7세기 고구려의 ‘대인’과 그 성격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7세기 고구려의 경우 官府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나 관직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²⁰⁾ 단지 그것이 현전기록에 많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다.

이처럼 韓中日 고대 자료에 나타나는 대인의 용례와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고구려 후기 대인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7세기에 확인되는 고구려 後期の 대인은, 그 시기의 특징적 상황과 결부시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하며²¹⁾ 실제로도 7세기 고구려의 ‘대인’은 지극히 특징적, 한정적으로 자료상에 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인’은 이 시기에만, 그리고 연태조·연개소문이라는 인물과 관련해서만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대인의 실체 파악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로 설정해도 좋을 것이다. 이에 전술한 대인 자체가 지닌 사전적 의미를 염두에 두며 고구려 후기 대인의 사료적 특징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다만 대인의 사료적 특징은 자료상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연태조의 최종 지위 및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와도 긴밀히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수반하게 될 것이다. 우선 대인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의 기록들이 전부다. 내용상 부분적인 중복이 있지만 원문을 모두 제시해

19) 주보돈, 「중양통치조직」, 『한국사』 7 신라·가야,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3, 172~173쪽; 윤진석,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새로운 해석과 신라부체제-울진 봉평리 신라비·포항 냉수리 신라비와의 비교검토-」, 『신라 최고의 금석문 포항 중성리비와 냉수리비』, 주류성, 2012, 92~97쪽.

20) 「高麗記」를 인용하고 있는 『翰苑』蕃夷部 高麗 條에 7세기 고구려 관직의 일부가 확인된다.

21)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 즉 “대인의 성격은 그것이 쓰여진 시기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파악”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노태돈, 앞의 책, 1999, 469~470쪽).

보겠다.

① 西部大人蓋蘇文，攝職有犯，諸大臣與建武議欲誅之。事洩，蘇文乃悉召部兵，云將校閱，并盛陳酒饌於城南，諸大臣皆來臨視，蘇文勒兵盡殺之，死者百餘人。焚倉庫，因馳入王宮，殺建武，立建武弟大陽子藏爲王。自立爲莫離支，猶中國兵部尙書兼中書令職也。自是專國政。(『舊唐書』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② 有蓋蘇文者，或號蓋金，姓泉氏，自云生水中以惑衆。性忍暴。父爲東部大人，大對盧死，蓋蘇文當嗣，國人惡之，不得立，頓首謝衆，請攝職，有不可，雖廢無悔，衆哀之，遂嗣位。殘凶不道，諸大臣與建武議誅之，蓋蘇文覺，悉召諸部，紿云大閱兵，列饌具請大臣臨視，賓至盡殺之，凡百餘人，馳入宮殺建武，殘其尸投諸溝。更立建武弟之子藏爲王，自爲莫離支，專國，猶唐兵部尙書兼中書令職云。(『新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③ 營州都督張儉奏，高麗東部大人泉蓋蘇文，弑其王武。蓋蘇文凶暴多不法，其王及大臣議誅之。蓋蘇文密知之，悉集部兵若校閱者，并盛陳酒饌於城南，召諸大臣共臨視，勒兵盡殺之，死者百餘人。因馳入宮，手弑其王，斷爲數段，棄溝中，立王弟子藏爲王，自爲莫離支，其官如中國吏部兼兵部尙書也。(『資治通鑑』卷196 唐紀12 太宗 貞觀 16年 11月 丁巳)

④ 王命西部大人蓋蘇文，監長城之役。(『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25年 春正月)

이상의 네 자료에서 고구려 후기 대인과 관련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을 정리해보자. 첫째, 대인은 최소한 어떤 ‘공식적인(=정치적인) 지위’였다. 이 점은 자료③과 ④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642년(영류왕 25) 정월, 영류왕의 王命에서 연개소문을 ‘서부대인’이라 명기한 것은 이 시기 그의 지위가 서부대인이었음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변 직후인 642년 11월, 唐의 영주도독 장검 역시 당 조정에 올리는 보고서에서 연개소문을 가리켜 ‘동부대인’이라 적시하였다. ‘서부’와 ‘동부’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정변 이전

연개소문은 ‘대인’이었고 그것은 당시 고구려 조정과 당에서 인정한 그의 ‘공식적 지위’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관등이나 관직 혹은 최소한 고구려 조정에 出仕한 인물의 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관등과 관직 중 어느 것이 대인에 해당되는지가 불확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료①과 ②에서 “攝職”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해 논지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²²⁾ 하지만 이는 제3자인 중국인들이 고구려에서 전개된 해당 현상을 두고 그와 같이 표현한 것임에 유의하자. 예컨대 중국인들은 자료①, ②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관등과 관직의 성격이 복합된 막리지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막리지의 관직적 측면에만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²³⁾ 그들은 자신들에게 존재하는 현상을 기준으로 ‘고구려만의 현상’을 이해하려 함으로써 그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고구려 후기의 대인이 이와 같은 ‘공식적 지위’였다면, 앞에서 찾아 본 대인의 일반적 용례 중 중국 측 자료에서 확인되는 ① 지위가 높은 자나 王, 公, 貴族을 지칭하는 말, ④궁궐 近侍에 대한 존칭, ⑤世家 豪族을 가리키는 말 등이 7세기 고구려의 ‘대인’에 해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다. 왜냐면 ①, ④, ⑤번은 어떤 사람의 공식적 지위를 특정하게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된 사례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혹 이 중 ④번 ‘궁궐 근시에 대한 존칭’에 주목해 대인을 당시 고구려의 近侍職 가운데 하나였던 막리지에 비정할

22) 기왕에 대인을 육살에 비정한 견해에서 그러한 면을 보였다. 즉 자료상의 “섭직”에 근거해 대인을 부를 관장하는 ‘관직’으로 이해하고 육살에 비정했던 것이다(노태돈, 앞의 책, 1999, 468~469쪽).

23) 아울러 당의 “병부상서 겸 중서령”을 막리지의 본래적 기능과 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문기, 앞의 논문, 2000, 85~86쪽)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료①, ②에서 전하는 막리지의 위상은 연개소문이 정변 후 막리지에 취임하여 국정을 전단한 현실을 唐人들이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일 뿐, 그것을 막리지의 본래적 위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확대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도 있겠으나, 어떤 인물의 공식적 지위를 명기해야 하는 王命文書(자료④)나 외국에 대한 정세보고서(자료③)에서 그것에 해당하는 ‘존칭’을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상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연개소문은 자료①, ②, ③에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듯 정변 ‘이후’ 스스로 막리지가 되었다.²⁴⁾

둘째, 대인은 ‘部’를 冠稱하고 있다. 고구려 내부의 왕명문서에서도 그렇게 쓰였고, 당에서도 그렇게 썼다. 물론 당시의 부는 전술한 대로 귀족가문의 존재양태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와 ‘대인’의 관련성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5~6세기에 걸쳐있는 각종 금석문 자료와 『일본서기』 등에 기록되어 있듯 당시 고구려 官人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部를 官等 앞에 관칭하였고²⁵⁾ 부와 관련된 관직에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某部の 官職名’으로 썼기 때문이다.²⁶⁾ 이를 고려할 때 대인의 ‘부’ 관칭은, 대인이 ‘관등’이었거나 아니면 ‘(부와 관련된) 관직’이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우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대인을 당시 부를 관장하던 관직인 육살에 비정할 경우 대인과 관련된 현전자료의 조건-예컨대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관등 문제-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는 대인이 최소한 관직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대인은 그 자체 관등이었을까. 아니면 관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이는 뒤에서 대인의 윤곽이 드러난 다음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4) 이와 관련해 고구려 승려 道顯이 기록한 『日本世記』에서 연개소문을 가리켜 “內臣 蓋金”이라 표기한 점 역시 주목된다(『日本書紀』卷26 齊明紀 6年 7月). 즉 도현은 정변 이후 국왕 근시직인 막리지에 취임한 연개소문의 지위를 가리켜 ‘내신’이라 표기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고구려인들이 국왕 근시직을 ‘내신’ 등으로 불렀을 뿐, ‘대인’으로 표기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25) 이와 관련한 사례들은 임기환, 앞의 책, 2004, 58~59쪽에 정리되어 있다.

26) 예컨대 중국 측 자료에서 확인되는 북부육살 고연수·남부육살 고혜진이 그러한 사례이다. 따라서 대인을 관직에 비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와 관련된 관직’으로 비정해야 한다.

셋째, 대인의 관등·관직 여부와는 별도로 대인의 역할 혹은 권한과 관련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볼 수 있다. 하나는 대인이 열병식을 빙자해 ‘部兵’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대인이 국왕으로부터 천리장성 監役의 사명을 받고 있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그동안 대인을 동부육살에 비정하는 유력한 근거의 하나이기도 했으며, 당시 연개소문의 군사권 장악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기도 하였다.²⁷⁾ 이는 대인이 부를 관청하고 있는 것과 연개소문의 부병 동원 사실을 연결시켜 본 시각이다. 그러나 전술한대로 대인은 부와 관련된 관직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部兵’이야말로 이 시기 고구려 중앙군의 일반적 존재양태였다는 점이다. 당시 고구려 중앙군의 編制 실태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부병’이 중앙군의 대종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²⁸⁾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연개소문이 정변 당시 ‘부병(=중앙군)’을 동원한 사실만으로 그 이전 그가 ‘特定 部の 부병’을 관장하는 직책에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종래에는 당시 중앙군의 존재양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연개소문이 정변에 필요한 무력으로 ‘부병’을 동원한 사실에만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강조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연개소문이 부병을 동원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당시의 제반정황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²⁹⁾

27) 이는 「천남생묘지명」, 「천현성묘지명」 등에서 연자유-연태조-연개소문으로 이어지는 연씨 일가가 兵權을 장악한 것처럼 기록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이들 묘지명의 서술구조와 관련해 뒤에서 살펴보겠다.

28) 『三國史記』 卷45 列傳 第5 溫達, “高句麗常以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 祭天及山川神. 至其日王出獵, 羣臣及五部兵士皆從, 於是溫達以所養之馬隨行.” 이와 관련해 중앙군의 평상시 존재양태는 ‘5부병’이었으며 비상시 出戰양태는 『한원』 고려기에 전하는 무관조직으로 보는 견해(이문기, 앞의 논문, 2007, 174쪽)도 있다.

29) 사료상에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결심한 뒤 私的으로 部兵을 소집해 도성 남쪽에서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부병은 분명 公兵이므로 이 열병식의 정체는, 세부적인 의견에 있어선 연구자 간의 차이가 있지만, 公的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노태돈, 앞의 책, 1999, 471~474쪽; 임기환, 앞의 책,

한편, 연개소문이 영류왕으로부터 千里長城 監役의 임무를 부여 받고 있는 사실 역시 대인의 권한·직능과 관련해 고려해볼 만한 대상이다. 하지만 그것이 대인의 고유한 관장 업무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만일 그러했다면 영류왕이 ‘특별히’ 서부대인 연개소문에게 장성 감역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혹 이때의 부를 이른바 ‘全國 5部’로 풀이하여³⁰⁾ 서부를 요동지역에 비정한 다음, 당시 서부 전선에서 축성되고 있던 장성 감역 임무를 ‘서부대인 연개소문’이 부여받았다고 추론해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천리장성 축성은 이 시기에만 진행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631년 이래 장장 16년에 걸친 大役事였으며 對唐戰爭 이후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만일 연개소문이 ‘전국 5부’의 하나인 서부를

2004, 294쪽 ; 이도학, 앞의 논문, 2006, 36쪽). 이는 고구려 후기 ‘宮門’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도성의 외곽 공간체계를 염두에 둘 때도 그러하다(여호규, 「고구려 도성의 외곽공간과 왕권의 위상」, 『한국고대사연구』 71, 2013, 84~85쪽). 다만 열병식에 동원된 부병 전체가 大臣들과 영류왕을 죽인 정변의 기본 동력이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아마 그 기본 동력은 연씨 가문의 私兵과 연개소문과 사적으로 연결된 일부 부병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된다. 왜냐면 연개소문이 개척한 열병식이 公的인 사유에서 개척된 것이라면, 열병식에 동원된 부병 역시 연개소문의 의지나 명령만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열병식은 642년 정월 영류왕이 王命으로 연개소문에게 장성 감역을 명한 사실(자료④)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열병식장에 1백 명이 넘는 대신들이 운집했던 것도 그것이 왕명과 결부된 열병식이었던 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삼국시대 열병식의 속성이 국왕의 군사통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점으로(김영하,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볼 때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열병식 사실만으로 정변 이전 연개소문이 부병 전체를 장악,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642년 전후 고구려 政局의 동향 및 당시의 제반 정황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 글을 토대로 한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 30) 주지하다시피 고구려 후기 ‘전국 5부’의 存否 여부는 현재 논란이 있다. 다만 전국 5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연개소문이 역임한 ‘서(동)부대인’의 ‘부’는, 전국 5부 중의 하나로 볼 수 없을 듯하다. 단적으로 연개소문이 영류왕으로부터 천리장성 감역을 명령받고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왜냐면 이는 당시 연개소문이 지방이 아닌 중앙정계에서 활약하고 있었음을 반증해주기 때문이다.

관장하는 대인이었다면, 영류왕이 곧이 그에게 장성 감역 명령을 내릴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리장성 감역과 같은 外方의 축성 감역이 대인의 고유한 소관 업무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처럼 현전자료상 대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직무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기록의 부실로 돌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실제의 반영일 수도 있다.³¹⁾ 다시 말해 대인은 그 자체 고유한 직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인은 “國人”으로 표기된 누군가들의 승인을 통해 임명, 유지될 수 있었다. 자료②에서 그러한 모습의 편린이 엿보이는데, 연개소문이 부친으로부터 승계하려는 지위와 관련해선 현재 논란이 많지만, 정변 이전 그의 지위가 ‘서(동)부대인’이었음은 명확한 것 같다. 특히 정변 9개월 전인 642년 1월의 시점에서 그는 ‘서부대인’이었고(자료④) 정변 무렵인 같은 해 10월에도 그 점은 동일하였다(자료③). 여기서 자료②가 전하는 상황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정변이 일어난 642년 10월이나 연개소문이 서부대인으로 재임 중이던 642년 1월부터 그리 먼 시기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가 귀족들에게 嗣位하고자 호소했던 대상은 대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자료②는 당시 연개소문이 ‘대인’으로 승인받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며, 대인이 “國人”으로 표기된 이들의 합의와 승인을 거쳐 임명되는 지위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합의 과정의 실체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섯째, 대인이 제1위의 관등이자 국사를 총괄한 최고의 관직인 대대로와 연관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대인’의 가장 중요한

31) 다만, 대인이 이처럼 왕명에 따라 실무를 집행하고 있는 모습은 6세기 초반 봉평비에서 확인되는 신라의 대인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 하지만 관직이 미분화된 상태였던 6세기 초반 신라의 상황이 7세기 고구려의 상황과 동일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영류왕의 이 조처는 종래의 해석대로 연개소문 일가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사료적 특징으로서 자료②에서 연태조의 지위를 “동부대인 대대로”로 표기한 점이 그것이다. 이미 2장에서 지적했듯 동부대인을 특정 관직에 비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동부대인을 관등에 비정해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대인과 連稱되고 있는 대대로 역시 관등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에 대인을 ‘신분’ 내지 ‘사회적 지위’로 볼 여지도 있다. 실제 2장에서 언급했듯 기왕의 연구에서 대인을 유력 귀족가문의 세력기반과 연관된 사회적 지위로 보는 시각들이 있어왔다. 또한 전술한대로 중국·일본에서 쓰인 대인의 용례를 보면 신분과 관련된 사례들이 많다. 대인이 당시 고구려 최대의 귀족가문이었던 연개소문 일가와 관련해서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고구려 후기 대인의 성격을 ‘사회적(또는 신분적) 지위’로만 규정하기도 어렵다. 전술한 것처럼 그것은 때로 단독으로 공식문서에 쓰인 ‘공식적(정치적) 지위’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인은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 사이에서 복합적 성격을 지녔을 가능성도 제기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동부대인 대대로”와 관련해 자료상에서 엿보이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바로 연태조의 최종 지위와 그것을 승계했다고 전하는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에 대한 기록이 일정하지 않은 점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대인과 대대로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자료상에 나타나는 연태조의 최종 지위는 각 시대별 자료마다 “막리지”,³²⁾ “대대로”,³³⁾ “동부대인 대대로”³⁴⁾ 등으로 엇갈려서

32) 「泉男生墓誌銘」: “曾祖子遊, 祖太祚, 竝任莫離支, 父蓋金, 任太太對盧, 乃祖乃父, 良治良弓, 竝執兵鈴, 咸專國柄.”

「泉獻誠墓誌銘」: “曾祖大祚, 本國任莫離之, 捉兵馬, 氣壓三韓, 聲雄五部. 祖蓋金, 本國任太太對盧, 捉兵馬, 父承子襲, 秉權耀寵.”

33) 「泉男産墓誌銘」: “乃高乃曾, 繼中裏之顯位, 惟祖(연태조-필자)惟禰(연개소문-필자), 傳對盧之大名…”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이한 점은, 연태조의 최종 지위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승계했다는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는 위의 인용 자료들에서 한결같이 ‘서(동)부대인’으로만 나타나는 점이다. 그렇다면 연개소문은 연태조로부터 ‘대인’만을 이어받았던 것일까. 그리고 연태조의 최종 지위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종래에는 대개 어느 한 쪽만을 取信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자료상에 엇갈리게 나타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을 근거 없는 기록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 자체가 당시의 현실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우선 명백한 것부터 하나씩 짚어가 보자.

막리지와 대대로는 분명 구분되는 官이었다. 따라서 연태조가 이를 동시에 역임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일 그가 대대로를 역임했다면, 그것은 막리지를 역임한 이후 관등이 한 단계 승진한 결과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직계 자손의 묘지명에서 당연히 그의 최종 官을 대대로로 기술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천남생묘지명」과 「천헌성묘지명」에선 그것을 막리지로만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대대로를 지낸 것으로 전하는 「천남산묘지명」과 자료②(『신당서』)는 오류인 것일까.

흔히 「천남산묘지명」의 경우 천남생·헌성의 묘지명보다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도 그런 면이 보인다. 예컨대 고구려 말기 관등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周書』를 참조해 그것을 13等으로 기술했거나³⁵⁾ 先祖의 이력을 기록한 부분의 경우 對句를 맞추기 위해 내용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있다.³⁶⁾ 하지만 「천남산묘지명」이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도 확실히

34)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三國史記』 卷49 列傳 第9 蓋蘇文.

35) 임기환, 앞의 책, 2004, 217쪽.

36) 노태돈, 앞의 책, 1999, 468쪽의 註 77).

있다. 예컨대 남산의 고조와 증조가 “中裏의 顯位”를 이었다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 구절은 현대의 연구자들이 막리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주었다.³⁷⁾ 그런 만큼 「천남산묘지명」에서 연태조와 연개소문이 대대로를 역임한 것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부정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실제 연개소문은 (太)大對廬를 지냈음이 사실로 확인되며³⁸⁾ 또한 자료②에서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대대로로 기록하고 있는 점 역시 간과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럼 자료②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실 『신당서』 고려전의 경우 고구려 官制에 대한 소개 기록이 오류투성이인 점에서 드러나듯 일부 결함을 지니고 있어 사료적 가치에 문제가 있다.³⁹⁾ 하지만 정변 이전 연개소문의 지위가 ‘동(서)부대인’이 확실했고 연개소문이 부친으로부터 嗣位에 성공한 만큼, 연태조의 지위를 ‘동부대인 대대로’로 전하고 있는 자료②의 기록 역시 소홀히 여길 수는 없다. 이 기록은 분명 일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최소한 연태조가 죽기 직전 동부대인의 지위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아울러 자료②에선 자료①(『구당서』)과 달리 연개소문을 ‘동부대인’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資治通鑑考異』에 따르면, 자료③(『자치통감』)에서 연개소문을 ‘동부대인’으로 기록한 것은 唐代的 實錄 자료에 의거한 것이었음이 확인된다.⁴⁰⁾ 이는 역시 ‘동부대인’으로 기술한 자료②가 唐 실록 자료에 근거해 서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37)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73~75쪽.

38) 이와 관련해 연개소문의 태대로 轉任 시점을 661년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문기, 「高句麗 滅亡期 政治運營의 變化와 滅亡의 內因」, 『한국고대사연구』 50, 2008, 64~66쪽).

39) 일반적으로 『신당서』는 당 후반기의 사료 부족과 변잡한 서술을 보완하는 데 성과가 있었지만 원사료를 풍부하게 전한 『구당서』를 지나치게 삭제하고 화려한 문장에 치중한 탓에 고증은 소홀했다는 평가를 듣는다(김종복,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009, 83~84쪽).

40) 『資治通鑑考異』 卷10 唐紀2 太宗 16年 11月. “高麗東部大人泉蓋蘇文：舊傳云，西部大人。今從實錄。”

한다. 아울러 자료②는 시기적으로 볼 때 연태조의 죽음과 연개소문의 등장이라는 특정 시기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분명하게 떠오르는 사실은, 연태조가 막리지와 동부대인을 역임한 점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연태조가 최후 시점에서 역임했음이 분명하다. 연개소문이 부친으로부터 동부대인을 승계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왜 「천남생묘지명」에서는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막리지만 기록했을까. 그런 반면 「천남산묘지명」과 자료②에서는 왜 그것을 대대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⁴¹⁾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대인이 곧 막리지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만일 막리지가 대인이었다면, 연개소문의 직위는 정변을 일으킨 뒤에도 그 이전에 이어 ‘대인’이라 불렸을 것이고, 외국에도 그렇게 알려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인=막리지였을 경우 당시 중국인들도 그 존재만 알았을 뿐, 실체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막리지가⁴²⁾ 642년 정변 이후 것처럼 중국 史書에 특필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연태조가 최후에 동부대인을 역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만큼 연태조의 최종 지위가 “막리지”와 “대대로”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대인’과 ‘대대로’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⁴³⁾ 자료②의 “동부대인 대대로”라는 連稱 표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제 대인과 대대로 사이에 존재하는 이 ‘모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는 곧 대인의 실체와 직결되는 것이다. 절을 달리해 계속 살펴본다.

41) 그 이유는 후술할 것이다.

42) 이는 『한원』 所引 「고려기」에서 막하하라지(=막리지)를 태대형의 ‘異稱’으로 기록한 점과 『구·신당서』 등에서 막리지의 ‘관등으로서의 측면’(=중리태대형)은 배제한 채 ‘관직으로서의 측면’(병부상서 겸 중서령)만 기록한 점에서 드러난다.

43) 연태조의 최종 지위는 뒷 절에서 확정할 것이다.

나. 고구려 후기 대인의 실체 : 관등으로서의 대대로

이상에서 고구려 후기 대인의 실체를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록상에 나타나는 대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7세기 고구려의 ‘대인’은 대체로 5가지의 특징을 지니며 자료상에 출현하고 있었던바, 이는 곧 대인의 실체 확정에 요구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먼저 대인은 ‘공식적인(=정치적인) 지위’였다. 또한 대인은 ‘(部와 관련된) 관직’은 아니었다. 현전기록상 대인이 수행한 구체적 직무가 드러나지 않는 점 역시 대인이 관직은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인이 관직이 아니었다면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최소한 특정 관등에 해당되거나 혹은 그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동시에 대인은 당시 귀족가문의 세력기반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요소도 일부 지녔다. 아울러 대인은 기록상에 “國人”으로 표기된 이들의 합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대인의 실체와 관련해 보다 중요한 실마리는 연태조의 최종 지위에 대한 검토에서 얻을 수 있었다. 대인이 대대로와 모종의 연관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인의 실체는 이상의 특징적 조건을 전부 만족시킬 수 있을 때 대인의 실체는 비로소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서술의 편의상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구려 후기 대인은 대대로에 도전·취임할 수 있는 지위를 가리켰다. 이와 같이 비정해야만 위에서 나열한 대인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우선 자료상에 엇갈리게 나타나는 연태조의 최종 지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전술한대로 현전자료상 연태조의 최종 지위로서 확실한 것은 ‘막리지’와 ‘동부대인’이었다. 특히 그의 직제 자손들은 그것을 ‘막리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단, 「천남산묘지명」은 예외). 그럼에도 일부 자료에서 대대로가 동부대인과 연관성을 지니며 연태조의 최종 지위로 기록된 점은 대인이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담보한 지위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연태조의 최종 직위가 ‘막리지’로도 나타나고 ‘동부대인 대대로’로도 나타났던 점은 대인이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었던 당시의 사정이 투영된 결과였던 것이다.

또한 대인이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지위로 인정받았고, 그런 한편 귀족가문의 세력기반에서 비롯한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측면을 지녔던 점 역시 이로써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당시 대대로에 도전·취임할 수 있었던 귀족가문의 세력기반은 여타 귀족가문의 그것과 월등한 격차를 자랑했을 것이며, 그런 탓에 대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귀족가문은 극소수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현전자료상 ‘대인’이 연개소문 일가와 관련된 자료에서만 확인되고, 중국 사서에서 마치 그것이 세습적인 것처럼 묘사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대대로에 도전, 취임할 수 있었던 ‘대인’이 “국인”으로 표현된 다른 귀족들의 합의를 거쳐 승인받는 과정 역시 각종 중국 측 자료에 전하는 대대로 선임 과정 관련 기록을 통해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때의 “국인”은 여타의 다른 ‘대인들’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複數의 대인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大人과 大對盧가 승인 및 선임되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를 ‘大人會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앞서 미루어두었던 ‘大人’과 ‘官等’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보자. 이와 관련해선 두 가지의 상정을 해볼 수 있다. 하나는, 대인이 그 자체 특정 관등이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대인이 당시의 관등체계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공식적 지위였을 가능성이다. 다만, 이 시기 관등제의 속성을 고려할 때 대인이 비록 그 자체 관등은 아니었더라도 특정 관등에 도달한 자만이 대인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등체계와 일정한 연관성 없이

‘독자적 지위’로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인이 이미 제 1위의 관등인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공인받은 지위였다는 점에서도 그 점은 드러나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강대한 세력기반을 갖춘 극소수의 유력 귀족가문이 대인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음은 전술한대로다. 그래서 대인은 고구려 초기의 大加처럼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면이 있었다. 다만 古代社會에선 관등제가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관등체계 속에서 ‘대인’의 위상을 탐색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선 다시 淵氏 가문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때 우선 주목할 점은 직계 자손인 「천남생·천현성묘지명」에서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막리지로 기록한 점이다. 이를 따를 경우 집안에서 선택받은 귀족가문의 子弟가 아버지의 최종 관등을 승계하는 것이 관례였던 당시의 상황을⁴⁴⁾ 고려할 때 연개소문 역시 정변 이전에 이미 막리지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대인은 막리지의 ‘異稱’이었거나 혹은 막리지, 즉 중리태대형의 관등을 확보한 자가 大對盧 취임의 자격으로서 대인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셈이 된다. 그런데 대인이 막리지의 이칭이었다면, 현전자료상 ‘부의 대인’과 막리지가 구별되어 쓰이고 있는 점을⁴⁵⁾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사서에는 정변 이전 ‘동(서)부대인’이었던 연개소문이 정변 이후 스스로 막리지가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를 대인=막리지임을 몰랐던 중국인들의 誤記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 국내 전승 자료에서도(자료④) 연개소문의 정변 전 지위를 ‘서부대인’으로 쓰고 있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막리지라는 본래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인이라는 이칭만을 특별히 고집할 이유가 있었을까. 또한 연개소문 정변 이전 중국인들이 막리지의 ‘존재’

44) 여호규, 앞의 책, 2014, 411~415쪽.

45) 이 점은 이미 武田幸男이 지적한 바 있다(武田幸男, 「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 『朝鮮學報』 86, 1978, 27쪽).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⁴⁶⁾ 그럼에도 중국인들이 정변 이전 그의 지위를 ‘대인’으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대인을 막리지의 이칭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이제 유력하게 떠오르는 가능성은 막리지가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대인의 지위를 획득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대인은 관등 그 자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막리지라는 특정 관등에 오른 자만이 보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지위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지위로서의 위상’을 동시에 지니게 되는 셈이다. 즉, 앞서 도출한 사료상에 나타나는 대인의 조건에 부합하게 된다. 또 당시 막리지는 유력 귀족가문의 대표자가 보유하는 관등이었고⁴⁷⁾ 막리지와 같은 중리계 관등은 최종적으로 父職을 승습할 자제에게만 수여하던 특권적인 관등이었다는 견해를⁴⁸⁾ 염두에 둘 때 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막리지가 대대로에 도전, 취임할 수 있었다는 종래의 연구 성과⁴⁹⁾ 역시 이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다만 막리지(중리태대형)만이 대인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外廷의 태대형 역시 대인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중리계 관등이 기존의 (兄系)관등에 대응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점을⁵⁰⁾ 고려하면, 태대형 역시 대인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複數制의 官이었던 모든 막리지에게 자동적으로 대인의 지위가 주어졌는지의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모든 태대형과 막리지에게 대인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주어졌다면 사실상 대인은 막리지 혹은

46) 「高麗記」에서 전하는 태대형의 이칭인 막하하라지가 막리지를 가리킨다는 것은 武田幸男의 지적 이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7) 임기환, 앞의 책, 2004, 298쪽.

48) 여호규, 앞의 책, 2014, 414~416쪽.

49) 임기환, 앞의 책, 2004.

50) 이문기,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대구사학』 71, 2003, 123쪽.

태대형의 이칭과 다름없게 된다는 점에서, 관등이 막리지나 태대형에 도달했을지라도 자동적으로 대인이 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대인이 여러 태대형이나 막리지 중 일부에게 대대로에 도전, 취임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로서 주어졌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이 경우 태대형과 막리지 중 대인의 지위를 보유한 자는 대대로를 한 차례 역임한 뒤 관등상으로는 다시 막리지로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⁵¹⁾

그런데 이 가능성을 확정하기만은 어려운 점들이 있다. 먼저 기존의 비판처럼 제1위인 대대로와 제2위인 태대형 사이에 昇降 관계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관등체계의 속성상 정치적 탄압이나 처벌의 경우가 아니면 관등의 강등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⁵²⁾ 물론 대대로를 역임한 자가 그것으로써 관료생활을 마무리했다면, 혹은 대대로에 한 번 취임한 뒤 물러난 자는 대대로에 재도전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당시에 존재했다면 이러한 비판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대로는, 비록 稱職者는 年限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3년의 임기직이었으며 최소한 終身職은 아니었다. 그런 만큼 대대로를 한 번 역임한 자가 그것만으로 관료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대대로의 임기와 관련해 예외규정이 있었던 것도 이런 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대인이 공식적으로 ‘部’를 관칭하고 있는 점이다. 전술한대로 당시의 일반적 관례로는 官等名 앞에 부를 관칭한 경우와, 부와 관련된 관직명 앞에 부를 관칭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대인은 분명 부와 관련된 관직은 아니었다. 그리고 대인이 특정 관등이 아니었다면 공식적으로 부를 관칭한 이유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된다. 물론 이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겠지만⁵³⁾

51) 이 같은 상정은 이미 임기환, 앞의 책, 2004, 287~298쪽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52)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71쪽.

53) 우선 대인이 그 자체 관등은 아니었지만, 관등과 같은 공식적 지위 앞에 부를 관

이러한 가능성들은 이 시기의 관례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어서 현재로선 단정하기가 힘들다.

세 번째는 『신당서』 고려전에서 연태조의 지위를 “동부대인 대대로”로 기록한 점이다. 이는 물론 대인이 대대로에 도전,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지위였던 탓에 『신당서』의 찬자가 그와 같이 기록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막리지와 대인 사이에도 일정한 관련성이 있었다면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신당서』 천남생전과 「천남생묘지명」의 전거자료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⁵⁴⁾ 그런 만큼 『신당서』의 찬자 역시 연태조의 최종 지위가 막리지였다는 「천남생묘지명」의 전승을 몰랐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신당서』의 찬자가 직계 자손의 전승과 달리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동부대인 대대로”로 명시한 점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특히 전술한 것처럼 『신당서』의 연개소문 정변 관련 기록은 唐代 실록 자료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류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네 번째는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를 막리지로 확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가 막리지가 아니었다면, 막리지나 대대형 중 일부가 대대로에 도전, 취임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대인의 지위를 보유했다고 보는 시각은 성립조차 될 수 없다. 앞서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막리지나 대대로 중 어느 하나로 확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를 여기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개소문이 정변 이전 막리지나 대대로에 재임

칭하는 일반적 관례에 따라 부를 관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대인이 부를 직접 관장하는 관직은 아니었지만, 部の 어떤 요소와 일정한 관련성을 맺고 있었던 탓이었을 수도 있다. 그밖에 대인이 複數로 존재하는 지위였던 탓에 각 대인을 구분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부를 관칭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54) 이성제,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出自기록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149~152쪽.

했는지의 여부는⁵⁵⁾ 현전하는 중국 측 자료와 금석문 자료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다른 제3의 자료를 확보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서기』의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642년 2월) 정미일에 … (고구려) 사신이 물건을 바친 뒤 말하기를 “지난해 6월 (왕의) 동생 왕자가 죽었습니다. 가을 9월 대신 이리가수미가 대왕을 시해하고 아울러 이리거세사 등 180여 인을 죽였습니다. 이어 동생 왕자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자신과 성이 같은 도수류금류를 대신으로 삼았습니다”라고 하였다.⁵⁶⁾

이 기사는 紀年상 일정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개소문 정변 전후 고구려 내부 상황을 전해주는 기록으로 평가받는다.⁵⁷⁾ 이에서 전하는 고구려 使人의 傳言에 따르면, 연개소문(=伊梨柯須彌)의 정변 이전 지위는 “대신”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변을 일으킨 뒤 자신과 同姓인 도수류금류를 역시 대신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 점은 이때의 “대신”이 일반명사가 아닌 특정 직위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주는바⁵⁸⁾ 현재 연개소문이 도수류

55) 642년 정변 이전 연개소문의 직위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대대로 보는 견해 : 이성시, 「高句麗泉蓋蘇文의政變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1, 1993; 김영하, 「영육으로 얼룩진 비범한 고구려인의 초상 연개소문」, 『내일을 여는 역사』 3, 2000; 이도학, 「高句麗의 內紛과 內戰」, 『고구려연구』 24, 2006.
- 막리지로 보는 견해: 임기환, 앞의 책, 2004.
- 대인으로 보는 견해: 전미희, 앞의 논문, 1994; 노태돈, 앞의 책, 1999; 이문기, 앞의 논문, 2008; 김진한, 「榮留王代 高句麗의 對唐關係와 西北方情勢」, 『정신문화연구』 117, 2009.

56) 『日本書紀』 卷24 皇極紀 元年 2月. “丁未 … (高麗-필자)使人貢獻既訖而諮云 去年六月 弟王子薨 秋九月 大臣伊梨柯須彌弑大王 并殺伊梨渠世斯等百八十餘人 仍以弟王子兒爲王 以己同姓都須流金流爲大臣”

57) 『聖德太子傳曆』 卷下 皇極天皇 元年에도 이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전한다 (박성봉, 「日本書紀 高句麗 關係 記事의 整理」, 『백산학보』 70, 2004, 208쪽 참조).

58) 북한학계에서는 이때의 “대신”을 고위급 관료들에 대한 범칭으로 보고 있으나

금류에게 수여한 “대신”의 정체는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여 ‘대대로’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⁵⁹⁾ 그렇다면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 역시 대대로에 비정할 수밖에 없다. 그 역시 “대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연개소문이 정변 이전 ‘대인’이었고 대인이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는 지위였던 탓에 고구려 사인이 것처럼 말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일본서기』에서 연개소문의 죽음을 전하며 “高麗大臣蓋金 終於其國”라고 기술하고 있는바⁶⁰⁾ 여기서도 연개소문의 직위는 “대신”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연개소문의 최종 직위는 太對盧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만⁶¹⁾ 이때의 대신 역시 대대로에 비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일본서기』의 논리대로라면, 연개소문은 정변 이전 대대로였으나 정변 직후 도수류금류에게 대대로를 수여했으며 죽을 무렵 다시 (태)대대로에 취임했던 셈이 된다. 이러한 양상은 연태조와 연개소문이 대대로를 지낸 것처럼 묘사한 「천남산묘지명」 및 연태조의 최종 지위인 “동부대인 대대로”를 연개소문이 승계했다는 『신당서』 고려전의 기록과 일면 부합하는 면을 보인다.⁶²⁾

(『조선단대사』 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67쪽) 문맥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59) 노태돈, 앞의 책, 1999, 475쪽; 임기환, 앞의 책, 2004, 304쪽; 이도학, 앞의 논문, 2006, 34쪽; 이문기, 앞의 논문, 2008, 72쪽.

60) 『日本書紀』 卷27 天智紀 3年(664年) 10月.

61) 「천남생·천현성묘지명」 및 노태돈, 위의 책, 1999, 480~481쪽; 이문기, 앞의 논문, 2008, 83쪽 참조.

62) 그럼에도 연개소문이 정변 이전 대대로를 역임했다고 선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까닭은 「천남생·현성묘지명」에서 연태조의 최종 직위를 막리지로 기록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한편, 정변 전 제1위의 대대로였던 연개소문이 정변 이후 제2위인 ‘막리지’가 되었다고 본다면 이는 관등체계의 운영상 어색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노태돈, 위의 책, 1999, 468쪽). 다만 이때가 ‘쿠데타’ 직후라는 非常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연개소문이 정변 이전에는 대대로를 역임하였으나 정변 이후 크게 혼란스러워진 국내 정국을[『聖德太子傳曆』 卷下 皇極天皇元年, “大臣入霞(=연개소문)弑大王并伊梨渠世斯等 … 緣斯國內大亂也”]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서 막리지에 취임했을 가능성도 있다(이 역시 이도학, 앞의 논문, 2006; 이문기, 앞

그렇다면 이상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종래의 이해와 달리 제1위의 관등인 대대로의 정원을 複數로 상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현전기록상 대대로는 6세기 중엽 이후 고구려에서 제1위의 관등이자 국사를 총괄한 관직이었으며, 3년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자연히 대대로는 1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대로처럼 관등과 관직이 복합된 官이었던 막리지 역시 複數制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그와 같은 고구려 관제의 특징을 중국인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물론 국사를 총괄하는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는 1인이었겠지만—‘관등으로서의 대대로’는 복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비슷한 시기 백제·신라 역시 제1위의 관등인 佐平과 角干(伊伐渰)의 정원이 복수였던 점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⁶³⁾ 이와 관련해 대대로에 대한 다음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자.

높은 관으로는 대대로가 있으며 (중략) 무릇 13등급이 있어 내외의 일을 나누어 맡는다. 그 중 대대로는 (세력의) 강약으로써 서로 싸워 빼앗아서 스스로 그것이 되며 왕의 임명을 거치지 않는다.(『周書』卷49 列傳 第41 異域 上 高麗)

高麗記에 이르기를, 그 나라가 설치한 관에는 9등급이 있다. 첫째는 吐擗이다. 1품에 비견되며 옛 이름은 大對盧이다. 國事を 총괄한다. 3년마다 한번 씩 교체하는데 만약 직무에 알맞은 자라면 年限에 구속되지 않는다. 교체하는

의 논문, 2008에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중국 측 사서에서 연개소문이 정변 이후 “스스로 막리지가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63) 백제의 경우 처음에는 좌평의 정원이 1명이었지만, 한성시대에 이미 좌평 자체가 상·중·하로 分化되어 정원이 5명인 5좌평제로 운영되었고, 위덕왕대에는 좌평의 명칭이 각각의 소관 업무에 근거한 것으로 바뀌어 이른바 6좌평제가 운영되었다. 다만 좌평 중에서도 상좌평과 내신좌평이 수석 좌평의 기능을 수행하였는데(노중국, 「중앙통치조직」, 『한국사』 6 백제,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3, 168~177쪽) 이점은 신라와 약간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날에 혹 서로 복종하지 않으면 모두 병사를 정돈하여 공격하고 승자가 그것이 된다.(『翰苑』 蕃夷部 高麗)

위의 두 기록을 비교해보면, 『주서』에서는 대대로의 ‘관등으로서의 측면’만 기록하고 있을 뿐, 관직으로서의 역할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 반면 『한원』 高麗記에서는 대대로가 제1위의 관등이자 국사를 총괄하는 관직으로서 3년 임기제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대체로 『주서』는 6세기 중후반, 『한원』 고려기는 7세기 중엽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된다. 양자 간에 보이는 내용상의 차이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고구려 자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인들이 각기 입수한 정보의 충실성의 차이에 의해 비롯된 것인지의 여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⁶⁴⁾

이들 기록이 전해주듯 ‘서로 싸워 승자가 차지하는 대대로’가 1인이었음은 분명하다. 다만 양자 모두 대대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싸운 뒤 승자가 대대로에 취임한다고 전하면서도 정작 “서로”의 정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얼핏 읽으면 현재 북한학계의 이해방식처럼 대대로끼리 대대로 자리를 놓고 싸운 것으로 오인할 여지도 있다.⁶⁵⁾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더욱이

64) 비록 『주서』에서 대대로의 관등으로서의 측면만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지만, 그 서술맥락상 대대로가 최고의 관직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쟁투의 대상이 되었을리 없으므로 대대로가 관직의 측면도 지녔음을 아울러 짐작 해볼 수 있다. 즉 대대로의 관등과 관직이 복합된 측면은 『주서』 단계에서도 동일했던 것이다. 다만 『주서』의 찬자는 관등과 관직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는 “凡十三等 分掌内外事焉”이라는 기술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주서』와 『한원』의 대대로 관련 기록에서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양 찬자가 입수한 정보의 충실성 및 고구려 官制에 대한 理解度에 따른 차이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3년 임기의 원칙 등은 고구려 자체 내의 변화였을 가능성이 있다.

65) 손영종, 앞의 책, 1997, 55쪽; 『조선단대사』 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49쪽. 다만 현재 북한 학계는 이 점이 “대대로가 나라 일을 다 맡아본다는 말 자체와 모순되는 말”이라 하여 『주서』와 『한원』의 대대로 관련 기록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

『한원』 高麗記의 경우 저자가 직접 고구려에 방문하여 얻은 정보여서 『주서』의 동일 대상에 대한 기록보다 훨씬 구체성을 지녔음에도 여전히 그 점만큼은 적시하지 않고 있어 의문이 깊어진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볼 점은 고려기에서 대대로의 새로운 명칭으로 ‘吐撻’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즉 641년의 시점에서 대대로는 토졸의 옛 이름(舊名)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미심쩍은 점은 대대로의 명칭이 7세기 어느 때에 토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이나 신라 측, 그리고 고구려 유민의 묘지명에서 “토졸”이 아닌 “대대로”만이 지속적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다. 예컨대 641년 고구려를 방문한 진대덕은 귀국한 뒤 당 태종에게 “대대로”를 만났다고 보고하였다.⁶⁶⁾ 또 『삼국사기』 金庾信傳에서는 642년 金春秋의 평양방문 사실을 전하면서 이때 김춘추가 “太對盧 盖金”을 만났다고 하였다.⁶⁷⁾ 한편 「천남생·현성묘지명」 및 「천남산 묘지명」에서도 연개소문의 최종 직위를 “태대대로” 혹은 “대대로”(=“對盧의 大名”)⁶⁸⁾로 기록하였다. 이처럼 고구려 최말기 및 그 이후까지 ‘대대로’가 그대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대대로를 토졸의 舊名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종래에도 고려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관등의 異稱에 오류가 개입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⁶⁸⁾ 이 역시 주의해야 할 측면이 아닌가 한다. 이에 더해 대대로의 명칭이 토졸로 바뀌었을 뚜렷한 이유를 상상하기 어렵다. 『주서』 단계에 비해 641년의 시점에서 대대로의 기본 성격이 근본적

66)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大德還奏, 帝悅. 大德又言, 聞高昌滅, 其大對盧三至館, 有加禮焉.”

67) 『三國史記』 卷41 列傳 第1 金庾信. 물론 642년 시점에서 연개소문의 직위는 ‘막리지’였다. 따라서 이는 연개소문의 최종 직위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삼국사기』 김유신전이 김유신의 玄孫 金長淸이 편찬한 그의 行錄 10권을 저본 자료로 삼은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68)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81~83쪽. 물론 “舊名”이 곧 “이칭”은 아니므로 이러한 지적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른 자료와의 비교 검토 결과 高麗記의 기술과 판이한 양상이 확인된다면 의심이 필요성은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으로 바뀐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토졸이라는 명칭 자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토졸의 ‘졸’은 고구려 官等名の 語尾에 흔히 보이는 ‘절’이나 ‘졸’과 통하는 말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周書』·『隋書』 고려전의 ‘烏拙’, 『한원』 고려기의 鬱折, 過節, 不節 등이 그것이다.⁶⁹⁾ 그렇다면 토졸은 앞서 상정한 ‘관등으로서의 대대로’를 의미하고, 이를 漢文式으로 표기할 때 ‘대인’이라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자연 대대로는 제1위의 관등인 토졸만이 취임할 수 있던 최고의 관직으로 자리매김 된다. 아마 종전까지는 대대로가 ‘複數로 존재하는 제1위의 관등’과 ‘1인으로 존재하는 최고 관직’을 함께 가리켰으나 이때에 이르러 양자 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관등명으로는 ‘토졸’이라 새로 부르고, 首相에 해당하는 최고 관직은 여전히 ‘대대로’라 불렀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진대덕은 대대로가 토졸의 옛 이름이라는 피상적인 기록만 남겼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唐使 진대덕이 만난 “대대로”와 신라측 기록 및 「천남생·현성묘지명」에서 연개소문의 직위로서 기록된 “태대대로”는, 모두 ‘토졸(관등으로서의 대대로)’이 아닌 ‘최고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인을 ‘관등으로서의 대대로=토졸’에 비정할 때 앞서 제기한, 태대형이나 막리지 중 일부가 대인의 지위를 특권적으로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내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다. 즉, 막리지와 대대로 간의 승강 관계에 대한 의문, 대인이 공식적으로 ‘부’를 관칭하며 단독으로 출현하고 있는 점, 『신당서』 고려전과 「천남산묘지명」에서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동부대인) 대대로”로 전한 점,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가 대대로였음을 암시하는 기록이 『일본

69) 여기서 ‘오졸’은 고려기의 ‘울절’과 동일 관등으로, ‘과절’과 ‘부절’은 관직명으로 보는 견해(임기환, 앞의 책, 2004, 208~208:220쪽)가 있다.

서기』에 전해지게 된 이유 등이 해명될 여지가 마련되는 것이다. 우선 막리지와 대대로 간의 승강 관계에 대한 의문은, 최고 관직으로서 대대로를 역임한 뒤에도 여전히 관등상으로는 대대로(=토졸, 대인)를 유지했을 것이므로 그것을 ‘승강 관계’로 볼 필요가 사라진다. 그리고 대인이 부를 관칭한 점 역시 그것이 관등이었기 때문이므로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어 연태조의 최종 지위 및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를 대대로로 전하고 있는 기록이 남게 된 이유 역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즉 연태조는 죽기 전 최소한 관등상으로는 대인에 도달하였던 것이고, 연개소문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 그러한 부친의 관등(대인=토졸=관등으로서의 대대로)을 승습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태대형·막리지와 대대로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마 태대형·막리지에서 곧바로 ‘최고관직으로서의 대대로’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선은 ‘관등으로서의 대대로’, 즉 ‘대인(=토졸)’로 관등의 승급을 거쳐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다음, ‘대인’ 간의 혐의나 역학관계에 의해 대대로 취임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물론 대인 관등의 획득 역시 여타 대인들의 승인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⁷⁰⁾ 그런 점에서 대대로는 ‘1관직 복수관등제’가 아닌 ‘1관직 1관등제’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당시 고구려에선 1관직 복수관등제가 일반적이었지만, 「고려기」에서 1관직 1관등제가 일부 존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점으로 볼 때⁷¹⁾ 이러한 상정이 무리는 아니라 판단된다.⁷²⁾ 오히려 이점은

70)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4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71) “又有拔古鄒大加, 掌賓客, 比鴻臚卿, 以大夫使(=太大使者: 필자)爲之”(『翰苑』蕃夷部 高麗). 한편, 拔古鄒大加가 동일한 「高麗記」를 저본자료로 활용한 『통전』에서는 狀古雛加로 표기되어 있다(『通典』卷186 邊防2 東夷 下高句麗). 「고려기」의 사료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武田幸男, 앞의 논문, 1978, 4~11쪽;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80~82쪽; 임기환, 앞의 책, 2004, 208~209쪽) 狀古雛加가 옳은 표기라 생각된다.

72) 주지하다시피 백제의 경우 ‘1관직 1관등제’가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다만

소수의 유력 귀족가문이 대대로를 독점할 수 있는 특권적 장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이런 관점을 견지할 때 연태조의 직계 자손인 「천남생·현성묘지명」에서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막리지로 기록한 것은 다음과 같은 풀이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우선 주목할 점은 고구려 유민 묘지명에서 막리지를 執權職으로 묘사하고 있는 경향이다.⁷³⁾ 「천남생묘지명」에서는 막리지를 지낸 할아버지 太祚와 태대대로를 지낸 아버지 蓋金이 “家業을 이어 나란히 兵權을 쥐고 모두 國權을 오로지하였다”라고 기술하였고, 「천현성묘지명」에서는 본국에서 막리지를 지낸 증조 태조와 태대대로를 지낸 개금이 병권을 장악하고 父子가 서로 이어가며 권력을 잡은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서술에서는 막리지와 대대로 사이에 아무런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⁷⁴⁾ 묘지명의 찬자가 양자 간의 차이를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애써 무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고구려에서 연개소문 가문이 지녔던 위상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서술임은 확실하다. 따라서 그러한 의도를 지녔던 묘지명의 찬자에게 막리지와 대대로가 별개의 관등이라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

최근 백제에서 1관직 복수관 등제가 일부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김영심, 「6~7세기 삼국의 관료제 운영과 신분제」, 『한국고대사연구』 54, 2009, 116~117쪽). 그렇다면 고구려와 백제에선 1관직 복수관등제와 1관직 1관등제가 혼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선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73) 이런 경향은 「高質墓誌銘」과 「高慈墓誌銘」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고질·고자묘지명」에서는 각기 祖 혹은 曾祖였던 高式이 ‘2品 막리지’를 지냈다고 서술하여 막리지가 관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한 「高質·高慈墓誌銘」조차도 고식이 역임한 막리지를 두고 각각 “獨知國政 及兵馬事”, “獨知國政位極樞要 職典機權 邦國是均 尊顯莫二”라고 하여 ‘집권적 관직’으로서의 성격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 74) 이처럼 이들 묘지명에서의 막리지에 대한 묘사는 대대로에 버금갈 정도이다. 그러나 이는 연개소문 정변 이후 투영된 ‘막리지像’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묘지명 특유의 과장법일 수도 있다. 더욱이 따라서 막리지의 본래적 위상은 ‘內朝의 領袖’에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⁷⁵⁾ 즉 묘지명의 찬자는 관등을 통해 드러날 위상보다 兵權 및 國權 장악과 같은 ‘所任’의 서술을 통해 드러날 연개소문 가문의 위상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연한 官僚制에 익숙하여 관등제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唐人들에게 고구려 말기 연개소문 가문의 위상을 환기시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唐代 묘지명의 ‘公的 기록물’로서의 성격을⁷⁶⁾ 고려한다면 이러한 상정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천남생묘지명」에서 남생의 최종 지위를 太莫離支로 기록하고(「천현성묘지명」에서는 太太莫離支) 이를 軍國을 총괄하는 재상(“阿衡元首”), 즉 執權의 관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태막리지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막리지 연태조’가 ‘태대대로 연개소문’과 별 차이 없는 권력을 누렸다는 식의 기술을 통해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즉, ‘서술구조’라는 면에서 볼 때 연태조가 역임한 ‘막리지’가, 고구려 말기 최고 집권자로 널리 알려진 연개소문이 재임했던 태대대로와 거의 동일한 소임과 위상을 누렸다고 강조하는 것은, ‘태막리지’를 지낸 천남생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아울러 이 효과는 천남생의 對唐 귀부가 고구려 멸망에 일조한 효과를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동시에 천남생이 당에서 누렸던 혜택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것이었다. 비록 당에 투항해 고구려 멸망의 결정적 계기를 이끌어냈지만 늘 이국의 주류사회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던 異族 출신 遺民의 처지로서는⁷⁷⁾ 이러한 서술을 통해

75) 이런 서술기법 때문에 현대의 연구자들은 한때 막리지와 대대로를 동일시하기도 했던 것이다.

76) 천남생이나 고자 가문처럼 당에 투항했던 고구려 유민들의 묘지명에서는, 본국에서 지냈던 先代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투항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켰다고 한다. 이는 묘지명 자체가 당 조정에 제출했던 ‘公的 기록물’인 行狀을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이국땅에 살던 유민들의 보편적 생존 전략이기도 하였다(이성제, 앞의 논문, 2014).

77) 이성제, 위의 논문, 2014, 146쪽. 이점은 모반 혐의로 억울하게 죽었던 천현성의

자신이 唐 주류사회의 일원에 당당히 편입되고 싶고,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욕망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⁷⁸⁾

이 점은 연태조가 대대로를 지낸 것처럼 기술한 「천남산묘지명」과의 대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남산의 경우 고구려에서의 官歷을 보면 남생과는 다른 코스를 밟고 있다.⁷⁹⁾ 아마 이는 그가 3남으로서 연개소문의 적통 후계자로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⁸⁰⁾ 또한 그가 30세에 太대莫離支가 된 것은 남생의 반역사건 이후 급작스럽게 스스로 취임한 결과였다. 단지 그는 형인 男建과 달리 평양성 함락 직전 보장왕과 함께 당에 투항하였고, 그 덕분에 고구려 멸망 이후 처벌은 간신히 면할 수 있었다. 즉, 남산은 남생에 비해 당 측에 대하여 고구려 멸망과 관련해 자신의 역할을 과시할만한 공로는 별로 없었고 ‘태대막리지’에 올라 최고 집권자의 위상을 누린 것 역시 멸망 직전이었어서 단기간에 그쳤다.⁸¹⁾ 이런 탓에 그는 남생에 비해 당으로부터 크게 혜택을 받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⁸²⁾ 이런 사정은 남생과 달리 애초 그에게 唐 주류사회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78) 그런 점에서 종래에는 남생과 현성의 묘지명을 읽을 때 ‘직계 자손’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최고 집권자로서 당에 투항해 고구려 멸망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79) 남생의 경우 중리직을 통한 승진을 꾸준히 이어나가 최종적으로 태막리지에 이르렀던 반면, 남산은 21세에 中裏大活을 역임하였지만, 23세에는 일반 관등인 위두대형으로 옮겨 차이를 보인다.

80) 여호규, 앞의 책, 2014, 416~417쪽.

81) 기록상으로도 남생의 반역사건 이후 고구려의 집권자로 전면에 나서 주도적인 활약을 했던 존재는 男建으로 나타난다(『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 第10 寶藏王 25~27年). 다만 남건은 평양성 함락 당시 끝까지 당군에 맞섰고, 이 때문에 고구려 멸망 직후 유배되었다.

82) 물론 그는 다른 고구려 유민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안락한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남생은 당으로부터 고구려 멸망 직전 食田 2천 戶를 수여받았고 668년에는 卞國公으로 進封되어 식읍 3천 호를 받았던 반면 남산의 경우 식읍을 받았다는 기록이 묘지명에 없다. 당으로부터 받은 관작의 등급 역시 남생에 비해 낮았다. 이처럼 남생과 남산에 대한 당의 대우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이 점은 이미 김현숙, 「中國 所在 高句麗 遺民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23, 2001,

편입을 향한 욕망의 동기가 뚜렷이 주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실제로도 그의 묘지명을 읽어보면, 남생의 그것과 비교해볼 때 적잖은 차이점이 발견되어 흥미롭다.

무엇보다 그의 묘지명에는 연개소문 가문이 고구려에서 누렸던 ‘독자적 위상’에 대해 그다지 강조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천남생묘지명」에서는 ‘泉’에 기원을 둔 집안의 族祖傳承을 애써 적고, 그 집안이 증조 대부터 국권을 專斷한 ‘화려한 가문’이었으며 남생이 그것을 승계했음을 자랑스럽게 적고 있지만, 「천남산묘지명」에서는 그 자신 朱蒙이 건국한 고구려의 후예임을 적은 뒤 官爵 역시 ‘本國王’, 즉 고구려왕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어 집안의 위상에 대한 서술은 “乃高乃曾 繼中裏之顯位 惟祖惟禰 傳對盧之大名 君斧囊象賢 金冊餘慶”의 단 한 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막리지를 직접 표기하지 않은 대신 그것을 “증리의 현위”로 표현해 제3자가 읽을 경우 그 정체를 짐작조차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아마 “막리지”의 직접 표기 자체를 꺼렸던 것 같다. 또 그 자신이 30세에 고국에서 태대막리지가 된 사실을 기술하고 있지만, 곧바로 뒤이어 고구려 멸망 사실을 적고 있어서 그것이 그의 일생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 사실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⁸³⁾ 이는 「천남생묘지명」에서 ‘집권적 관직’으로서 막리지의 위상을 강조하고 남생 자신이 태막리지가 되어 군국의 원수가 되었다고 기술한 것과는 현저히 다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천남산묘지명」에서의 막리지에 대한 이 같은 서술태도는, 아마 남생의 일생에서 태대막리지 역임이 갖는 의미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唐軍이 그간의 적대국이었던 고구려를 병탄하던 시점에서 태대막리지

75쪽에서 간략히 지적된 바 있다.

83) 「泉男産墓誌銘」, “卅爲太夫莫離支. 官以地遷, 寵非王署. 折風擣羽, 榮絕句驢之鄉, 骨籍施金, 寵殊玄菟之域.”

라는 최고 지위에 있었다고 서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역시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묘지명에서 막리지에 대한 언급 자체를 되도록 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아울러 그런 그로서는 할아버지 연태조의 최종 지위 역시 막리지보다 대대로로 기록하는 것을 선호했을 것이다.

결국 「천남생묘지명」에서는 남생이 역임한 태막리지의 위상을 강조하여 그의 對唐 투항이 지닌 의미를 唐人들에게 환기시키려는 의도에서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막리지로 기록하고 그것의 위상을 대대로와 유사했던 것처럼 기술한 반면, 「천남산묘지명」에서는 정 반대로 당군의 고구려 병탄 당시 태대막리지였던 남산의 과거 이력을 부각시키지 않고자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대대로로 기술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천남산묘지명」에서 막리지를 “중리의 현위”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생과 남산은 자신의 일생과 당에서의 현실적 필요에 맞추어 막리지의 위상과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선택적으로 전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과거에 존재했던 동일한 사실’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취사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태조는 막리지와 대대로를 모두 역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천남생묘지명」에서 연태조가 막리지를 역임하면서 대대로와 다름없는 권한과 지위를 누리며 국권을 장악한 것으로 묘사한 점에 유의할 때 연태조는 ‘관직으로서의 대대로’까지 역임했다고 생각된다.⁸⁴⁾ 이로써 『신당서』 고려전의 “동부대인 대대로”라는 표기가 이해될 것이다. 즉 이는 대인(=토졸) 관등을 소지하고 대대로라는 최고관직을 역임했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그리고 연태조의 사후 아들 연개소문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 당연히 부친의 관등, 즉

84) 상식적으로도 연태조가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를 지내지 못했다면 여타 대인들이 그토록 연개소문의 대인 승습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대인(=토졸)을 승습하려 했으나⁸⁵⁾ 연씨 일가의 독주를 경계한 여타 귀족가문 및 국왕의 견제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예외적인 사태였고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연개소문의 불만이 누적, 폭발한 결과 642년 10월 그의 주도 하에 대규모의 유혈 쿠데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이는 대인회의의 기능과 관련해 후술).

아울러 연태조의 최종 지위 및 연개소문의 정변 전 지위의 眞相이 이러한 것이었다면, 대대로를 ‘관등(=토졸, 대인)’과 ‘最高 관직’으로 구분하고, ‘관등으로서의 대대로’를 複數로 풀이한 앞의 이해는 또 하나의 근거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연태조의 최종 지위 및 그것을 계승한 연개소문의 정변 전 지위를 고려할 때도 ‘대인’의 실체는, ‘관등으로서의 대대로(=토졸)’에 비정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는 ‘관등으로서의 대대로’, 즉 ‘토졸’에 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7세기 고구려 官制에서 대대로는 제1위의 관등이자 국사를 총괄하는 관직이었지만, 관등으로서의 대대로는 복수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을 7세기 중엽부터 ‘토졸’ 혹은 ‘대인’이라 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인으로 재임하며 국사를 총괄하던 대대로직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최고 관직인 대대로는 제1위의 관등인 대인(=토졸)을 보유한 자들만이 도전,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인’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던 것일까. 앞서 미루어두었던, 연개소문이 “國人”들로부터 대인 지위의 嗣位를 승인받던 협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계속해보자.

85) 국사를 총괄한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는 3년 임기제에 종신직은 아니었던 만큼 세습직은 아니었을 것이다.

4. 大人會議와 대대로

고구려 후기 귀족회의체의 존재는 다음 기록에서 그 편린이 드러난다.

高麗記에 이르기를, 그 나라가 설치한 관에는 9등급이 있다. 첫째는 吐撻이다. 1품에 비견되며 옛 이름은 大對盧이다. 國事를 총괄한다. 3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데 만약 직무에 알맞은 자라면 年限에 구속되지 않는다. 교체하는 날에 혹 서로 복종하지 않으면 모두 병사를 정돈하여 공격하고 승자가 그것이 된다. 그 왕은 단지 궁을 닫고 스스로 지키며 제어할 수 없다. 그 다음은 太太兄이다. 2품에 비견되며 일명 莫何何羅支이다. 그 다음은 鬱折이다. 종2품에 비견되며 中軍將로 主簿이다. 그 다음은 大夫使者이다. 정3품에 비견되며 또한 이름하여 謁者라고도 한다. 다음은 皂衣頭大兄이다. 종3품에 비견되며 일명 中裏皂衣頭大兄이다. (중략) 이상의 5官이 기밀을 관장하고 정사를 모의하며 병사를 징발하고 인재를 뽑아 관작을 수여한다. (『翰苑』 蕃夷部 高麗)

이에 따르면 고구려 후기에는 조의두대형(=위두대형) 이상의 ‘上位 5官等’을 보유한 귀족들이 政事를 의논한 회의체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용문의 “以前五官 掌機密 謀政事 徵發兵 選授官爵” 구절이 이를 말해준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서는 연구자 간의 이견이 있는데, 이를 ‘五官會議’로 규정하는 견해가⁸⁶⁾ 있는 반면 기존의 귀족회의체인 對盧會議가 변질되어 보다 특권화된 몇몇 對盧 중심으로 운영된 회의체였다고⁸⁷⁾ 풀이하기도 한다. 그런 한편 대대로와 莫離支의 관계에 주목해 양자가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귀족회의체를 구성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⁸⁸⁾

86) 이문기, 앞의 논문, 2003, 54~55쪽.

87) 윤성용, 「高句麗 貴族會議의 成立過程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11, 1997, 361~362쪽.

88) 임기환, 앞의 책, 2004, 298쪽. 단, 이 견해는 막리지=대대형으로 보는 입장을 전

그런데 위의 기록에서 유의할 점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른바 ‘오관회의’와 달리 대대로 선임을 위한 회의체가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서로 복종하지 않으면(或不相祗服)”이라는 구절은 이를 강력히 시사한다. 이밖에 3년 임기를 채운 대대로의 연임 여부 역시 협의 과정을 거쳤을 것임은 물론이다. 이는 대대로의 선임이나 연임을 결정하는 별개의 회의체가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⁸⁹⁾ 그럼에도 기왕의 연구들 예선 ‘대대로의 선 / 연임을 결정하는 귀족회의’와 ‘오관회의’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⁹⁰⁾ 아마 위의 기록에서 대대로를 선임하는 이 회의체의 실체와 그 구성원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탓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고구려 후기 대대로직에 도전, 취임할 수 있던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대인’이었던 점이 확인된 이상, 이 회의체의 구성원을 複數의 ‘대인’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대대로 선임과 연임을 결정하던 이 회의체를 ‘대인회의’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인회의의 존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 가운데 고구려 중·후기의 귀족회의체로서 ‘對盧會議’를 상정한 견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3세기 무렵 桂婁部の 大加로서 나부의 장인 沛者에 대응되던 ‘대로’는, 이 시기 국왕중심 체제의 정비에 따라 ‘大加’에서 ‘귀족’으로 전신한 지배층 가운데 귀족회의에

제하고 있다.

- 89) 물론 이 회의체를 이른바 ‘오관회의’와 일치시켜 볼 수도 있다. 특히 오관회의에서 “사람을 뽑아 관작을 수여했다”는 내용에만 주목한다면 그러하다. 그러나 이 글의 1장에서 언급했듯 당시 관등제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대로 선임과 연임의 결정은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 일부 특권적 귀족만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 90) 예컨대 太대兄을 대대로를 차지하기 위해 정쟁을 벌였던 유력한 후보로 설명하면서도, 상위 5개 관등을 소지한 귀족들이 참여하던 귀족회의체에서 대대로를 선임했을 것이라는 서술이 있었다(임기환, 「중앙통치조직」, 『한국사』 5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3, 166~167쪽).

참여하여 국가중대사를 논의·결정할 수 있는 중앙귀족에 대한 凡稱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이어 이전 시기 那部體制 하의 ‘諸加會議’을 대체하여 중앙귀족(=대소) 중심의 ‘대소회의’가 늦어도 3세기 후반에는 성립했는데, 대소회의의 기능은 제가회의와 거의 다를 바 없었으나 국왕권은 여전히 ‘族長的 성격’을 유지하며 중앙정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던 대소를 견제·통솔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대소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高麗記에 전하는 이른바 ‘5관회의’는 대소 중심 회의가 변질된 결과로서 그것은 보다 특권화된 몇몇 대소만이 회의체를 독점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 하였다.⁹¹⁾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대소’를 중앙귀족의 범칭으로 본 점이다. 기실 大對盧는 ‘대소’를 전제한 (표현이므로⁹²⁾ 대소들의 회의에서 대대소 선임을 결정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신라의 ‘大等’이 고위귀족에 대한 범칭으로서 大等會議의 구성원이었고, 대등회의의 의장이 上大等이었다는 일부 견해들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러하다.⁹³⁾ 그렇다면 과연 대소의 실체는 중앙귀족에 대한 범칭이었고, 그것이 고구려 후기에 이르러 보다 특권화된 고위귀족을 지칭하는 의미로 변화한 것일까. 현전자료상 3세기까지 관등이었던 對盧의 이후 모습은 『삼국사기』에서 간략되는바, 475년 고구려 군대를 이끌고 백제 漢城을 공략했던 “대소” 齊于, 再曾桀婁, 古爾萬年⁹⁴⁾ 및 645년 唐의 고구려 침공에 맞서 遼東으로 급파된 15만 고구려·靺鞨 연합군 지휘부의 일원으로서 작전 계책을 건의한

91) 윤성용, 앞의 논문, 1997, 349~362쪽.

92) 노태돈, 앞의 책, 1999, 444쪽.

93) 윤성용, 위의 논문, 1997, 351쪽; 노태돈, 위의 책, 1999, 445~447쪽. 이러한 이해는 ‘대등’의 어원이 ‘대소’에 있다는 견해(末松保和, 앞의 책, 1954, 322~323쪽)를 통해 더욱 보강될 수도 있다.

94)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第3 蓋鹵王 21年. “至是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爾萬年等帥兵, 來攻北城, 七日而拔之…”

“대로” 고정익의 존재가 그것이다.⁹⁵⁾

여기서 475년 당시 대로의 성격을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재증걸루와 고이만년까지 대로였는지 여부 역시 확실치 않다. 선행연구에선 이 시기의 대로가 관등이나 관직이 아니었으므로 신라의 ‘대등’으로부터 유추해 볼 때 중앙귀족의 범칭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현재로선 대로가 관등이나 관직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기록 역시 부재한 만큼, 반드시 그렇게 비정할 수는 없다. 그런 한편 뒷날의 대대로를 고려하여 이때의 대로를 관등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지만⁹⁶⁾ 현재로선 쉽게 단정할 형편이 못된다.⁹⁷⁾

대로의 성격이 좀 더 분명히 확인되는 사례는 7세기에 해당하는 “대로 고정익”의 경우이다. 이때의 대로는 명백히 관등은 아니다. 『주서』, 『구당서』, 『한원』 등 이 시기 고구려 관등제를 소개하고 있는 자료에서 대로를 관등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隋書』 高麗傳에서 대로를 6세기 고구려의 관등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대대로의 오기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7세기 대로의 실체는 관직이었을 가능성과 유력귀족의

95)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 第9 寶臧王 4年. “時, 對盧高正義, 年老習事, 謂延壽曰, ‘秦王內芟羣雄, 外服戎狄, 獨立爲帝, 此命世之才. 今舉海內之衆而來, 不可敵也. 爲吾計者, 莫若頓兵不戰, 曠日持久, 分遣奇兵, 斷其糧道. 糧食既盡, 求戰不得, 欲歸無路, 乃可勝.’ 延壽不從.”

96) 임기환, 앞의 책, 2004, 230~233쪽; 여호규, 앞의 책, 2014, 402쪽.

97) 다만 『삼국사기』에 따르면, 대로 제우와 함께 고구려의 장수로서 한성공격전에 참전한 재증걸루와 고이만년은 본래 백제인이었는데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한 자들이었다고 한다(『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第3 蓋鹵王 21年). 당시 재증걸루와 고이만년 역시 제우와 함께 ‘대로’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만일 이들까지 대로로 볼 수 있다면(노태돈, 앞의 책, 1999, 445쪽), 이 시기의 대로는 관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우선 재증걸루와 고이만년은 본래 백제에서 유력귀족이었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점은 재증걸루가 한성 함락 이후 개로왕을 사로잡아 예를 취한 뒤 죽인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그들은 백제에서 유력귀족으로 활동하다가 모종의 이유로 인해 고구려로 ‘정치적 망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구려에서는 유력한 망명객이자 향후 개시할 對백제 공격전의 이용물로서 가치가 있는 이들에게 관직보다 관등을 수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廣開土王代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덕흥리벽화고분의 墨書銘에 기록되어 있듯 고구려는 幽州刺史 鎮과 같은 중국계 망명인에게 자국의 관등을 수여한 바 있다.

칭호였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선 대로 고정이가 “年老習事”한 존재였다고 하였다. 이에서 “年老”라는 점에 주목해 그를 大對盧 임기를 마치고 정계의 元老로 활약하던 인물로 보는 견해도⁹⁸⁾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시해야 할 부분은 ‘경험이 많았다’는 뜻의 “習事”가 아닌가 한다. “연로” 역시 결국 “습사”에 포함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정이가 上官인 褥薩 고연수에게 작전계략을 건의하고 있고, 또 실제 그가 제시한 전술의 방향이 옳았던 사실로 볼 때 그는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단련되어 군사경험이 풍부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렇다면 그가 역임하고 있던 ‘대로’는 武官職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과 더불어, 동행한 지휘관인 고연수·고혜진이 위두대형으로서 ‘육살’을 역임하고 있었던 만큼, 고정이가 역임한 ‘대로’ 역시 관등이 아니었다면 (무)관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⁹⁹⁾

이처럼 3세기 이후 대로의 변화상을 전하는 현전기록들은 공교롭게도 대로가 군사지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⁰⁰⁾ 비록 신라의 대등과 고구려의 대로 사이에 음운상의 유사성이 발견되더라도 자료상의 이런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현전자료만으로는 대로를 중앙귀족의 범칭으로 해석하여 대로회의를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설사 대로가 중앙귀족의 범칭이었고, 대로회의가 존재했더라도 그것은 5세기의 상황이었을 뿐, 7세기 단계에서는 그러한 상정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록상 7세기의 대로는 무관직의 성격에 가깝고, 이 시기 귀족회의의 존재

98)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72쪽. 이러한 ‘대로 고정’의 모습은 장수왕대 한성공격 당시 보이는 대로의 활약상과 비교해볼 때 그 위상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임기환, 앞의 책, 2004, 231쪽)도 있다.

99) 7세기대의 대로를 관직으로 보는 견해는 임기환, 위의 책, 2004, 231쪽에서 제기된 바 있다. 아마 적어도 5세기 무렵까지 관등이었던 대로는, 그 이후 어느 시기에나 대로에서 분화된 대대로가 최고위 관등으로 설정되면서 무관직으로서의 성격만 잔존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100) 여호규, 앞의 논문, 1995, 168쪽.

양태 역시 高麗記에서 전하듯 ‘오관회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5관을 통칭해 대로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경우 ‘대로 고정’이 상위 5관등 중 끝자락에 해당하는 위두대형을 보유한 고연수·고혜진에 비해 위상이 낮게 나타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7세기 고구려의 귀족회의체는 대대로 선임을 결정하던 ‘대인회의’와 주요 귀족들이 모여 정사를 의논하던 ‘오관회의’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고대 귀족회의의 기능을 크게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과 귀족 간 정치적 역학을 조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당시 고구려에선 양자의 분리가 특징인 셈이었다.¹⁰¹⁾ 그렇다면 대인회의는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그 존재 의의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대인회의는 오관회의와 그 기능 면에서 확연히 구별되는바, 오관회의는 상위 5관등 그룹의 귀족들이 기밀 관장, 병사 징발, 관작 수여 등 주요 ‘國事’를 의논하던 회의체로서 대대로가 議長이었던 반면, 대인회의는 몇몇 대인들이 협의하여 대대로를 선임, 연임하던 회의체였다. 대인회의에서는 대대로를 둘러싼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대인들이 私兵이나 자신과 사적으로 연결된 公兵을 동원해 무력투쟁을 벌였던 것으로 볼 때 그것은 각 귀족가문의 세력기반과 역학관계가 전적으로 작용하던 회의체였다. 그런 만큼 대인회의는 의장이 존재하지 않은 채 구성원 전원의 합의제로 운영되었을 수 있다. 또한 그런 탓에 국왕 역시 대인회의의 과정과 결정에는 공식적,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것 같다.

101) 이 같은 현상은 기본적으로 귀족 간 역학을 조율할 상위의 권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다시 말해 국왕이 大人社會에 관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작용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6세기 중반 귀족세력 간의 극한적 권력투쟁과 그로 인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던 고구려 집권층이 귀족 간 역학에 따른 권력투쟁의 분출구를 제도 내로 흡수함으로써 그것이 지닌 파괴적 확장력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을 추구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즉, 국정운영을 귀족 간 역관계의 진전 양상으로부터 분리해냄으로써 국정운영에 미치는 그것의 파장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대대로는 국사를 총괄하는 ‘首相’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지만 ‘大人社會의 대표자’라는 위상 역시 함께 지닐 수 있었다. 아울러 대인회의에서는 대대로의 선임 및 연임뿐만 아니라 ‘대인’ 승습에 대한 추진 여부 역시 합의,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친의 ‘동(서)부대인’ 지위를 승계하려 했으나 다른 대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각 대인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연개소문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¹⁰²⁾

물론 淵蓋蘇文 일가 및 高慈·高質·高欽德 등 귀족출신 고구려 유민들의 묘지명에서 엿볼 수 있다시피 당시 귀족가문이 관등을 세습해나가는 것은 사실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던 만큼, 대인 승습에 대한 대인회의의 승인 기능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추진 절차에 불과했을 것이다. 연개소문이 대인을 ‘當嗣’해야 했다는 기록에서도 이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다만 연개소문의 경우 그의 집안의 위세를 경계한 국왕과 다른 대인들에 의해 그것을 추진받지 못하는 이례적 사태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 그럼에도 결국 연개소문이 부친의 대인을 승습한 사실은 연개소문이 직면한 사태가 예외적이었을 뿐, 대인회의에서의 대인 승습에 관한 추진이 형식적이고도 事後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재차 웅변해준다.

다만 다른 관등의 승습과 달리 대인의 승습이 대인회의에서의 형식적 추진이나마 거쳐야 했던 까닭은 역시 당시 관등체제와 귀족사회 내부에서 지니는 대인의 독보적 위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102) 『新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有蓋蘇文者, … 父爲東部大人對盧死, 蓋蘇文當嗣, 國人惡之, 不得立, 頓首謝衆, 請攝職, 有不可, 雖廢無悔, 衆哀之, 遂嗣位. 殘凶不道, 諸大臣與建武, 議誅之…” 이와 관련해 『三國史記』卷49 列傳 第9 蓋蘇文의 찬자가 『구·신당서』 고려전의 “諸大臣與建武 議(欲)誅之”라는 구절을 “諸大人與王 密議欲誅”로 바꾸어 기술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大臣”을 “大人”으로 換字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삼국사기』 찬자들이 『구·신당서』 고려전의 “대신”을 “대인”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삼국사기』 찬자들이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여 이 같은 기술을 한 것은 아닌 듯하다.

대대로는 그 자체 임기직으로서 세습직은 아니었으나 대인회의라는 장치에 의해 몇몇 소수 귀족가문의 독점물이 된 셈이다. 그리고 이 점이 국정운영을 위한 오관회의와 별개로 대인회의가 존재한 근본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의 논증과정을 통해 도출된 핵심적인 결론을 정리해보자. 주지하다시피 고구려 후기 대대로는 제1위의 관등이자 국사를 총괄하는 首相직으로서 관등과 관직이 복합된 성격의 官이었다. 단, 종래의 이해와 달리 ‘관등으로서의 대대로’는 複數로 존재하였고, 그것을 7세기 중반 무렵부터 ‘관직으로서의 대대로’와 구별하기 위해 大人, 吐捩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는 이들 대인들이 도전해 취임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대인들의 합의체인 大人會議를 통해 선임 및 연임되었다. 이를 통해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는 ‘대인사회의 대표자’라는 위상 역시 동시에 지닐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연태조는 죽기 전 관등으로서의 대대로(=대인, 토줄)와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를 모두 지냈으며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는 서(동)부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정변 이후 제2위의 관등이자 內朝를 이끌었던 中裏近侍職인 莫離支를 택한 것은 의도된 정치적 행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구려 후기의 귀족회의체는 크게 대인회의와 五官會議가 존재하였다. 전자가 유력 귀족(가문) 간의 정치적 역학을 조율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후자는 그야말로 상위 5관등을 보유한 귀족들이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결정을 논의하는 회의체였다. 이러한 귀족회의체의 이원적 운영은 귀족 간 권력투쟁의 분출구를 제도 내로 흡수함으로써 그것이 지닌 파괴적 영향력이 국정운영에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었다. 또한 국왕은 대인회의에 직접적,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바, 이는 이 시기 국왕이 귀족 간 역학을 자의대로 조정하는 상위 권력으로서 역할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실제 귀족가문의父子 간 대인의 承襲은 비록 대인회의의 추인을 거쳐야 했으나 사실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으며, 淵蓋蘇文의 경우 대인 승습 과정에서 그의 가문의 독주를 견제했던 국왕 및 여타 대인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태였을 뿐, 실제 그는 결국 부친의 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만 이러한 대인회의의 존재를 통해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는 그 자체 세습직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강대한 귀족가문 인사만이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대인회의는 특권적 장치이기도 하였다.

다만 이 글은 고구려 中期와 後期の 官制 및 귀족회의의 실상을 상호 비교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데 소홀하였다. 이 점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끝으로, 고구려 후기 정치사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선 보다 기초적인 규명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여전하다는 점을 덧붙여 두고 싶다. 이 글이 그러한 논의의 활성화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원고투고일: 2015.4.3, 심사수정일: 2015.5.18,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대대로, 대인, 토족, 대인회의, 연개소문

<ABSTRACT>

The Real Nature of the ‘daein(大人)’ and the
‘daedaero(大對盧)’ in late Gogury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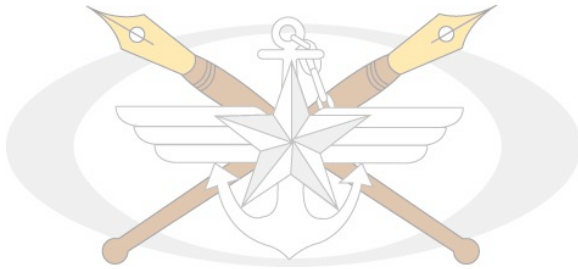
Yoon, Sung-hwan

As we have seen, the daedaero(大對盧) in late Goguryeo was the highest position of an official rank and government office. However, unlike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the daedaero was multiple as official rank. It was told the daein(大人) or tojol(吐摔) to distinguish with a government office daedaero in the middle of the 7th century. Also, numerous daein's could take office in as government office daedaero. It was elected through the meeting of daein's(大人會議). The meeting of daein's was composed of the daein's, discussed the election and re-election of a daedaero. This conference, which is run by council system of all members, certified the daedaero as representatives of daein society. This fact indicates that Yeon Taejo(淵太祚), the father of Yeon Kaesomoon(淵蓋蘇文), was served as official rank the daedaero(=daein, tojol) and as government office daedaero. Yeon Kaesomoon inherited the daein from his father.

Nobilities' counsel system in late Goguryeo operated the meeting of daein's and the council of five offices(五官會議) as conference system. The meeting of daein's tuned political dynamics inter nobilities. While the council of five offices(五官會議) was to administrate state affairs, Dual operation of the conference system of nobilities was to prevent possibility that power struggle of nobilities spread over affairs of state. Also, king could not intervene the meeting of daein's. king do not carry out as higher power in that case. And the existence of the meeting of daein's make some

nobilities monopolizing the positions as government office daedaero. Therefore, the meeting of daein's was also in a sense privileged authority.

Key words : daedaero(大對盧), Daein(大人), Tojol(吐掙), the meeting of daein's(大人會議), Yeon Kaesomoon(淵蓋蘇文)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려 대몽전쟁기 海島 관련 전투에 대한 재검토

槽島의 위치 비정과 牙州海島 出陸 전투의 勝敗

윤 경 진*

1. 머리말
2. 槽島의 위치와 全羅道 방면의 전황
 - 가. 西海道 비정 근거 비판
 - 나. 全羅道 방면의 전황과 槽島 방어 전투
3. 牙州海島 出陸 전투의 승패와 성격
 - 가. 牙州海島 出陸 전투의 승패
 - 나. 몽고군의 忠州 공격과 牙州海島
4.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고려는 몽고와 40년에 걸친 전쟁을 치르면서 전술적으로 몽고군에 맞서기 위해 山城 및 海島 入保策을 구사하였다. 산성 입보는 고려초기 거란과 전쟁을 치르면서 사용하던 전통적인 전술이었던 반면, 해도 입보는 몽고 침입 때 처음으로 활용되었다. 이것은 유목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사회에 기반한 몽고군이 현실적으로 선박을 이용한 전술을 구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이용한 것이었다.¹⁾

몽고와 1차 전쟁을 치른 후 고려 정부는 江華遷都를 단행하고 내륙의 군현들도 산성과 해도에 입보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청천강 이북의 北界 州鎭들이 해도에 입보하였고, 이후 대동강 이북 주진으로 확대되었다.²⁾ 전쟁 후반기에는 양계 외에 南道 군현들의 해도 입보도 이루어졌다.³⁾

산성 입보가 현지에서 그대로 방어전을 치르는 방식이라면, 해도 입보는 현지를 떠나 멀리 떨어진 해도로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전술 운용의 차이를 수반하였다. 해도 입보의 주된 목적은 군사력을 보존하는 데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出陸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다. 자연 산성 입보에 비해 즉각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나 더 장기적인 항전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거점의 직접 방어보다 진로 차단과 같은 선제적 대응의 속성을 띠고 있었다.

그간 대몽전쟁기 해도 입보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그 내용이 정리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남아 있다. 우선 일부 해도 입보 및 그와 연계된 전투에 대해 연구자간의 이견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槽島의 위치와 牙州海島 관련 전투의 勝敗 문제이다. 조도 전투는 고종 42년(1255) 12월 몽고군이 처음으로 남도 지역의 해도를 공격한 것으로, 해도 입보 및 연계 전투를

1) 고려 대몽전쟁기 해도입보책 전반에 대한 고찰로는 다음이 있다.

尹龍燦, 「고려의 海島入保策과 몽고의 戰略變化: 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 『歷史教育』 32, 1982; 姜在光, 「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 『軍史』 66, 2008; 姜鳳龍, 「몽골의 침략과 고려 무인정권 및 삼별초의 ‘島嶼海洋戰略’: 그 동아시아적 의의」, 『東洋史學研究』 115, 2011; 姜在光, 「對蒙戰爭期 서·남해안 州縣民의 海島入保抗戰과 海上交通路」, 『지역과역사』 30, 2012; 강재광, 「1255-1256년 槽島·牙州海島 대상지 비정과 海戰의 影響」, 『軍史』 93, 2014.

2) 北界 州鎭의 해도 입보 양상과 이후 연혁 변화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려후기 北界 州鎭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 참조.

3) 南道 지역의 해도 입보는 주로 界首官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윤경진, 「고려 대몽전쟁기 南道지역의 海島 入保와 界首官」, 『軍史』 89, 2013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그런데 조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西海道 소속으로 보는 견해⁴⁾와 全羅道 소속으로 보는 견해⁵⁾가 나뉘어 있다. 조도는 다른 자료에서 이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섬으로 비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서해도와 전라도로 달리 보는 것은 단순히 비정의 차이에 그치지 않으며, 해도와 관련된 전황에 대한 이해 차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⁶⁾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아주해도 관련 전투는 고종 43년(1256) 4월 이곳에 있던 고려군이 몽고군을 공격했다가 역습을 당한 전투이다. 아주해도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그 지역 범위가 특정되어 있어 연구자 사이의 이견 또한 아산만 일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승패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문맥상 고려군의 패전으로 해석⁷⁾되는 이 전투에 대해 일부 연구자는 한쪽이 몰살당한 전투에서 고려 지휘관의 생존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들어 고려의 승전으로 이해하고 있다.⁸⁾ 특정 전투에 대해 승패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이 판단은 당시 전투의 성격이나 영향에 대한 이해에도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

4) 강재광, 앞의 논문, 2008, 42쪽 ; 강재왕, 앞의 논문, 2014, 45-47쪽. 강재광은 조도를 椒島에 비정하였다.

5) 尹龍燦, 앞의 논문, 1982, 71쪽 ; 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55쪽. 필자는 위 논문에서 조도를 현재의 智島로 비정한 바 있다.

6) 강재광은 조도를 서해도 지역에 비정하면서 이 전투의 승리로 몽고군의 후방에 대한 역습을 가능케 했고, 한편으로 몽고 수군의 江都 침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이해하였다(강재광, 앞의 논문, 2014, 58쪽). 조도를 전라도에 비정하면 이러한 해석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7) 윤용혁, 앞의 논문, 1982, 79쪽 ; 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47쪽.

8) 윤용혁, 「대몽항쟁기 지방민의 피란 입보 사례 : 아산만 연안 지역의 경우」,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77쪽 ; 강재광, 앞의 논문, 2008, 54쪽.

9) 강재광은 아주해도 관련 전투를 고려의 승전으로 해석하면서 그 의의를 天安府

이와 더불어 해도 입보에 연계된 전투의 성격이나 해당 전투와 전체 전황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두 해도와 관련된 전투를 ‘海戰’으로 지칭하고 있다.¹⁰⁾ 통상 해전이라 하면 두 군대가 바다에서 전함을 타고 전투를 벌이는 것이 중심인데, 두 전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조도 전투는 몽고군이 배를 건조하여 섬을 공격한 것인데, 이 경우 배는 운송용이지 전투용이 아니다. 몽고군의 선박 이용은 섬으로 들어가는 수단일 뿐이고, 해상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몽고군으로서는 섬에 상륙하는 것을 도모한 것이고 고려군은 이를 막는 것이므로 일종의 ‘상륙전’인 셈이다.¹¹⁾

그리고 아주해도 관련 전투는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입보한 고려군이 배를 타고 나와 육지에 상륙한 후 전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곧 해상이 아니라 육지에서 전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출륙’ 전투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섬과 배가 매개된다는 것만으로 해전으로 보는 것은 당시 몽고군의 전술적 능력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도 맞지 않거니와 당시 전황을 실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장애가 된다.

또한 해당 전투를 전후해 이루어진 다른 전투와의 연계성에 대한 맥락적 이해도 새롭게 도모할 필요가 있다. 조도 전투의 경우 뒤이어 몽고군의 해도 공격에 맞서는 고려의 움직임이 있었다. 따라서 조도

가 입보한 仙藏島의 방어, 공세적 토벌전, 아산만 일대의 조운로 보호 등을 들었다(강재광, 앞의 논문, 2014, 59쪽). 그러나 패전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해석은 모두 무의미해진다.

10) 강재광은 두 전투를 ‘海戰’으로 이해하면서 아주해도의 경우에도 해상 전투로 서술하고 있다(강재광, 앞의 논문, 2014, 52쪽).

11) 押海島 전투는 몽고군이 배를 타고 공격하고, 고려가 大艦에 포를 싣고 이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海戰의 요소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당시 고려군은 함포를 이용하여 배의 접근을 막았고, 몽고군은 배의 손상을 우려하여 우회 공격을 도모하다가 여의치 않자 공격을 포기하였다. 몽고군의 전술은 선상에서 압해도나 고려군의 전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륙을 도모하는 차원이었고, 압해인 또한 몽고군의 상륙을 막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압해도 전투 또한 해전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전개된 조도 전투의 경우도 같은 양상이었을 것이다.

전투와 고려의 대응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무관할 수 없다. 당시 고려 정부는 전라도 방면으로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것은 조도의 위치를 비정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되며, 당시 몽고군 本陣의 위치 파악과도 연결된다.¹²⁾

그리고 아주해도 관련 전투는 몽고군의 忠州 공격과 하나의 기사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전투의 승패를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동시에 당시 전투가 가지는 의미를 가늠하는 준거가 된다. 이 점에서 아주해도 관련 전투는 충주 전투와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제기된 조도의 위치 비정과 아주해도 관련 전투의 승패 판단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그 연장에서 그와 연관된 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대몽전쟁사 이해에 일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조도의 위치 비정 및 그와 연관된 전황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조도를 서해도에 비정하는 견해에 대해 서해도 전황에 대한 이해를 매개로 검증 비판하고, 이어 조도 전투에 이어지는 전황을 통해 이곳이 전라도에 비정되어야 함을 확인할 것이다.

2장에서는 아주해도 관련 전투의 승패를 판단하고 그와 연계된 전황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아주해도 관련 전투가 고려군의 패전임을 문맥과 기사 구성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승전으로 보는 주요 논거에 대해 반박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투가 충주 방어와 관련된 것임에 주목하고, 관련된 전황을 통해 당시 전쟁의 구조적 일면을 조명해 볼 것이다.

12) 윤용혁은 몽고군의 해도 공격이 강화 연안에서의 시위와 연계된 것으로 각개 부대의 개별적 전투가 아님을 지적하였다(윤용혁, 앞의 논문, 1982, 76-77쪽). 곧 해도 공격은 몽고군 지휘관이 이끄는 本陣의 작전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강재광도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해 조도와 아주해도의 위치를 비정하고 있으나(강재광, 앞의 논문, 2014), 본진과 관련된 전황에 대한 이해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2. 槽島의 위치와 全羅道 방면의 전황

가. 西海道 비정 근거 비판

고려가 강화천도에 이어 해도 입보를 통해 몽고군에 장기전으로 맞서자 몽고군도 도서 공격을 모색하였다. 고종 40년(1253) 몽고屯所에서 永寧공이 崔沆에게 보낸 書狀에는 “몽고의 精兵이 水內와 山城을 나누어 공격하려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¹³⁾ 이것은 당시 몽고군이 해도 공격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¹⁴⁾

그 첫 사례가 고종 42년(1255) 12월의 槽島 공격이었다.¹⁵⁾

몽고군이 배를 만들어 槽島를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¹⁶⁾

몽고군의 조도 공격은 전투 상황에 대한 서술이 없이 결과만 간략히 적고 있고, 조도가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그 위치와 전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조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서해도 인근의 椒島로 비정하는 견해¹⁷⁾와 전라도 연안의 현 智島로 비정하는 견해¹⁸⁾가 있다. 이와 같이 비정 지역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조도 전투와 연계된 당시 전황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13)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附 崔沆 “今也窟等十七大王太子 各領兵馬 抄蒙古漢兒女兒高麗人 屯田南北界 以蒙古精兵 分攻水內山城”

14) 윤용혁, 앞의 논문, 1982, 71쪽.

15) 앞서 고종 41년 2월 몽고군이 북계의 葛島를 침구한 일이 있었다(『高麗史』 권24, 고종 41년 2월 己未 “北界兵馬使報 蒙古兵船七艘 侵葛島 虜三十戶”). 이것이 기록상 해도 침공의 첫 사례이지만, 당시는 몽고군이 철군하던 중이었다. 몽고군은 고종 40년 12월 철군을 시작하였고, 고려는 고종 41년 정월 京城의 戒嚴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갈도 침구는 군사 작전의 일환이 아니라 철군 중이던 일부 몽고군의 노략질을 위한 공격으로 판단된다.

16) 『高麗史』 권24, 고종 42년 12월 壬辰 “蒙兵造船 攻槽島 不克”

17) 강재광, 앞의 논문, 2008, 42쪽.

18) 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53쪽.

때문이다.

조도를 초도로 비정하는 견해는 초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것으로, 명칭의 유사성도 비정의 한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논자 스스로 인정하듯이 자료상 ‘槽島’라고 명시된 것을 초도로 비정하는 것과 조도 전투 이후 대몽전쟁기를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椒島’가 등장하는 것을 난점으로 지적하였다.¹⁹⁾ 그럼에도 조도가 전라도 해안의 도서일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을 내리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豊川都護府 관할에 椒島가 席島와 함께 등장한다. 석도는 防護別監이 파견된 것에서 입보 해도로 활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논자는 이에 연동하여 초도가 전략 해도로 운용되었고 이 점에서 조도와 같은 섬일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사』에 등장하는 전략 요충으로서 초도의 기능에 대해서는 충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

『고려사』에 보이는 椒島의 용례를 보면, 문종대에는 서해도가 아닌 東界에 속한 초도가 등장한다.²⁰⁾ 이곳은 고려의 船軍이 순행하며 관리하는 곳이었으며, 해적 소탕을 위해 고려의 船兵들이 주둔하다 출격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서해도 소속 초도는 원종대 이후 비로소 등장하는데, 초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시하는 논거로 채용된 용례는 다음과 같다.

- ① 北界 別抄 都領郎將 李陽著가 군대를 이끌고 椒島로 옮기려 하니 휘하가 속여 말하기를, “육지에 내려 사냥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이양저와 京兵을 죽이고 배를 타고 도주하였다.²¹⁾

19) 강재광, 앞의 논문, 2014, 47쪽.

20) 『高麗史』 권8, 문종 22년 6월 庚申; 『高麗史』 권8, 문종 22년 7월 丁酉

21) 『高麗史』 권25, 원종 즉위년 7월 庚午 “北界別抄都領郎將李陽著 率兵 將移于椒島 麾下給曰 請下陸而畋 遂殺陽著及京兵 浮海而逃”

② 이에 앞서 林衍이 왕이 황제에게 上奏하여 군대를 청해 돌아올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막고자 指諭 智甫대로 하여금 夜別抄를 이끌고 黃州에 주둔하고 神義軍은 椒島에 주둔하며 대비하도록 하였다.²²⁾

위의 두 기사는 각각 원종 즉위년(1259)과 원종 원년(1260)의 기사이다. 여기서 초도는 몽고와 강화 교섭이 타결된 후 이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대몽전쟁기에 입보처로 이용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인근에는 입보가 이루어졌던 석도가 있었음에도 초도를 택한 것은 강화 교섭 후 입보 해도에서 출륙이 이루어지면서 몽고군의 영향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남도의 경우 大部島(大府島)에서 이러한 상황을 찾을 수 있다.

窄梁을 防戍하던 몽고군이 大部島에 들어가 주민을 침탈하므로 주민이 매우 원망하였다. 대부도 사람들이 崇謙 등이 봉기한 것을 듣고 마침내 몽고인 6명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水州副使 安悅이 군대를 이끌고 토벌하여 평정하니 안열의 품질을 5품으로 올려주었다.²³⁾

위의 기사는 원종 12년(1271)의 것으로, 窄梁은 강화도를 연결하는 길목에 해당하는 요충이다. 고려 정부의 出陸還都에 따라 몽고군이 이곳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도까지 내려가 침탈을 자행했는데, 대부도는 고종 말엽 이곳에 입보해 있던 別抄가 출륙하여 몽고군과 전투를 벌인 일이 있었다.²⁴⁾ 여기서 과거 입보가 이루어진 해도를 몽고군이 장악하는 상황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22)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先是 林衍慮王奏帝請兵還 欲拒之 令指諭智甫大 率夜別抄 屯黃州 神義軍屯椒島 以備之”

23) 『高麗史』 권27, 원종 12년 2월 辛丑 “窄梁防戍蒙古兵 入大部島 侵奪居民 民甚怨之 大部人 聞崇謙等起 遂殺蒙古六人以叛 水州副使安悅 率兵討平之 進悅秩五品”

24)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庚辰 “大府島別抄 夜出仁州境蘇來山下 擊走蒙兵百餘人”

입보한 주민과 군대가 계속 남아 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몽고군에 저항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접수하지 않은 섬을 이용해야 했다. 三別抄는 원격하여 몽고군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珍島를 선택했지만, 개경 주변의 경우에는 앞서 입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섬 중에서 조건이 양호한 섬을 활용했을 것이다. 서해도 豊州 연안에서도 입보처로 활용된 席島에 몽고군이 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이들이 저항 거점으로 선택한 초도는 오히려 이전에 입보처로 활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설사 초도가 입보 해도로 활용되어 고려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곳을 조도로 비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도 공격은 고종 42년(1255)의 일로, 서해도 초도 용례가 나타나는 원종 즉위년(1259)과 불과 4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거의 같은 시점의 기사에 같은 섬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논자는 초도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며 서해도 지역의 섬임에는 틀림없다고 조정하였다.²⁵⁾

그러나 조도를 서해도의 도서로 비정하는 것은 여전히 무리가 있다. 이번에는 당시 전황을 통해 조도가 서해도 연안의 도서일 수 없음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몽고군이 서해도 서부 연안 도서를 공격하는 방식은 지리적 조건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서경 방면을 거점으로 해로를 타고 내려오거나 반대로 해주 방면을 거점으로 올라가 공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해도 서부 연안으로 진출하여 해도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조도 공격 당시까지 몽고군의 전황과는 거리가 있다.

25) 강재광, 앞의 논문, 2014, 47쪽.

먼저 西京과 관련된 전황을 보자. 대동강 하구를 거쳐 서해도 연안으로 진출하려면 서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선박의 확보와 군대 주둔 등에서 거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종 20년(1233) 畢賢甫와 洪福源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정부는 이를 진압하면서 주민을 모두 해도로 소개시켰고, 이로 인해 서경은 폐허가 되었다. 이후 몽고군이 남진할 때 항상 서경을 경유했지만, 기반 시설이 없던 서경은 거점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서경이 몽고군의 거점으로 활용된 것은 고종 46년(1259)의 일이다.

李凝이 西京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王萬戶가 이르기를, ‘너희 나라 왕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가. 어찌 尹椿과 松山의 말을 듣고 나와 항복하지 않는가. 항복하면 추호도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왕만호는 10領의 군대를 이끌고 西京 古城을 고쳐 쌓고, 또 전함을 건조하고 屯田을 개간하여 오래 머무를 계획을 삼고 있었다.²⁶⁾

위의 기사에서 몽고군 지휘관 王萬戶는 서경에 오래 머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성을 수축하고 둔전도 마련하였다. 특히 왕만호는 이곳에서 전함을 건조할 계획도 세웠는데, 이는 이를 기반으로 서해안의 해도를 공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고종 46년(1259)에 이르러 비로소 이러한 계획이 나온 것은 그동안 서경이 몽고군의 거점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를 거점으로 전함을 동원해 해도를 공격하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海州 방면을 보자. 해주와 鹽州 연안을 확보하면 이곳을 통해 배를 타고 나와 서해도 서부 해도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

26) 『高麗史』 권24, 고종 46년 2월 庚子 “李凝 還自西京曰 王萬戶云 汝國王 不愛百姓耶 何聽尹椿松山之言 不出降乎 降則秋毫不犯 時 王萬戶率軍十領 修築西京古城 又造戰艦開屯田 爲久留計”

이러한 상황은 고종 44년(1257)에 비로소 나타난다. 이 해 9월 車羅大가 이끄는 몽고 본진은 염주로 물러나 주둔하였다.²⁷⁾ 이것은 당시 몽고군이 이곳에 미리 거점을 확보해 두었다는 것을 시사한다.²⁸⁾ 이 때를 전후하여 몽고군은 神威島와 昌麟島를 공격했는데, 이는 몽고군이 염주에 거점을 마련하고 이곳이나 인근 해주를 통해 해도 공격에 나선 것을 보여준다.²⁹⁾

하지만 조도 공격이 있던 고종 42년(1255) 당시 몽고군이 이 방면에 주둔하며 거점으로 활용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차라대의 본진은 9월에 西京에 도달하였고, 候騎는 金郊驛에 다다랐다.³⁰⁾ 금교역은 江陰縣에 있으며 개성 북부 외곽에 해당한다. 그리고 10월에 몽고군의 선봉군으로 파악되는 군대³¹⁾가 忠州 大院嶺까지 진출하였다.³²⁾ 불과 18일만에 충주까지 내려간 것이다.

당시 몽고군의 진격 속도는 상당히 빨랐다. 고려의 북계 주진은 모두 해도에 입보한 상태였고, 서해도 경유지의 주요 군현들도 이전에 몽고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고종 18년(1231)에는 平州가 도륙을 당했고,³³⁾ 고종 22년(1235)에는 洞州가 攻破되었다.³⁴⁾ 그리고 고종 30년(1243)에는 서해도 椴山城이 함락되었

27)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9월 戊午 “金軾馳報車羅大收兵 退屯塩州 又督還南下甫波大軍馬”

28) 鹽州는 강화도를 마주보는 서해도 연안에 위치하며, 고종 34년 阿母侃이 이곳에 주둔한 적이 있어(『高麗史』 권23, 고종 34년 7월 “蒙古元帥阿母侃 領兵來屯塩州”), 염주가 江都를 압박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에는 해도 공격과 관련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29) 당시 전황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할 것이다.

30) 『高麗史』 권24, 고종 42년 9월 丁未 “崔璘與蒙古使六人來 留客使于昇天館 先入奏云 車羅大永寧公 領大兵到西京 候騎已至金郊”

31) 尹龍燦,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114-115쪽.

32) 『高麗史』 권24, 고종 42년 10월 乙丑 “蒙兵踰大院嶺 忠州出精銳 擊殺千餘人”

33)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11월 甲辰 “蒙兵以平州囚其持牒者 欲先滅之 庚戌夜未明 突入城中 殺州官 屠其城 盡燒人戶 雞犬一空”

34) 『高麗史』 권23, 고종 22년 10월 辛丑 “蒙兵攻破洞州城”

다.³⁵⁾ 이로 보아 당시 차라대군은 북계는 물론 서해도 방면에서도 큰 저지를 받지 않았고, 개경 방면까지 빠르게 진주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⁶⁾

조도 공격은 12월 30일에 있었다. 몽고군의 서경 도착 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이 시점까지 차라대의 본진이 서해도 방면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황상 불합리하다. 고종 43년(1256) 4월에 차라대 본진이 潭陽까지 내려간 것을 보면, 당시 몽고군은 개경을 지나 계속 남진하는 전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조도 전투 이후 전라도 방면에서 전투가 전개된 것을 보면, 차라대의 본진은 이른 시기에 전라도까지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내륙을 통해 서해도 연안으로 진출하여 해도 공격에 나섰을 가능성을 짚어보자. 서해도는 고려의 도읍인 개경과 서경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여기서 岳嶺(慈悲嶺)을 경유하는 길, 곧 黃州와 鳳州, 洞州를 연결하는 경로가 간선로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내륙 쪽으로 遂安과 俠溪를 경유하는 지름길이 있었으나 험로였다.³⁷⁾

35)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8월 戊午 “蒙古兵陷西海道椽山城” 양산성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데, 윤용혁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이는 安岳郡 楊山城에 비정하되,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하였다(윤용혁, 앞의 책, 1991, 276쪽). 그러나 양산성 전투가 있기 6일 전에 金郊驛에서 전투가 벌어졌고(『高麗史』 권24, 고종 40년 8월 癸丑), 15일 뒤 東州山城이 함락된 것(『高麗史』 권24, 고종 40년 8월 癸酉)을 보면, 양산성은 牛峯 인근 지역일 것으로 추정된다.

36) 강재광은 차라대군의 남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본진의 전라도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강재광, 앞의 논문, 2014, 44쪽), 당시 몽고군의 전황이 모두 자료에 반영된 것은 아니므로 南下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차라대군이 당시 서해도에 머물렀음을 뒷받침하는 어떤 기록도 없다. 실상 이 시기에 전투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몽고군이 특별한 저항을 받지 않고 남진하였음을 반영한다. 특히 서해도의 장기 체류는 후술하듯이 조도 전투 후 한 달 안에 이루어진 고려군의 南下를 설명할 수 없다.

37) 윤경진, 「고려 태조대 鎭 설치에 대한 재검토 : 禮山鎭・神光鎭을 중심으로」,

서경을 통과한 몽고군은 곧바로 개경으로 진주하면서 이 경로를 따라 내려갔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의 성들을 공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平州와 洞州, 椴山城의 전투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몽고군이 서부 연안 방면으로 진출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조도 공격 이전에는 고종 23년(1236) 몽고군이 信州와 安州까지 진주한 것이 유일한 사례인데,³⁸⁾ 몽고군은 이를 전 黃州에 들어선 뒤³⁹⁾ 서남쪽에 위치한 신주와 안주까지 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몽고군 주력 부대가 아니라 先鋒으로 나타나며, 신주와 안주 방면에 이른 것일 뿐 실제 이 방면에서 전투를 벌인 것은 아니다.

당시 주력 부대는 8월에 청천강 남부에 위치한 价州에 이르러 고려군과 전투를 벌였다.⁴⁰⁾ 주력 부대가 현 평안남도 북부 일대에 머무는 동안,⁴¹⁾ 선봉군은 충청도의 溫水郡을 거쳐 車峴까지 남하하였다.⁴²⁾ 이들 중 일부는 全州와 古阜 경계까지 내려갔다.⁴³⁾ 곧 당시 전황에서 서해도 서부 방면에서의 전투는 상정되지 않는다.

몽고군의 서해도 서부 지역 공격은 원종 때 비로소 나타난다.

西京의 몽고군이 靑松과 安岳, 豐州, 海州에 난입하여 人物을 노략질하여 가버렸다.⁴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韓國史學報』 40, 2010.

38)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6월 庚子 “(蒙兵)至信安二州”

39)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6월 戊戌 “蒙兵先鋒入黃州”

40)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7월 辛酉 “蒙兵至价州 京別抄校尉希景 价州中郎將明俊等 伏兵夾擊 殺傷頗多 取鞍馬弓矢衣服等物”

41)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8월 丁酉 “蒙兵陷慈州 副使崔景侯 判官金之佇 殷州副使金景禧等 皆被害”

42)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8월 丁未 “蒙兵百餘人 自溫水郡南下 趣車懸峴”

43)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10월 甲午 “全羅道指揮使上將軍田甫龜報 蒙兵至全州 古阜之境”

44) 『高麗史』 권25, 원종 즉위년 7월 己巳 “西京蒙兵 闌入靑松安岳豐海州 驅掠人物而去”

위의 기사는 원종 즉위년(1259) 7월의 것으로, 서경의 몽고군은 전술한 王萬戶의 군대를 가리킨다. 그는 동년 정월부터 서경에 주둔한 것이 확인되며,⁴⁵⁾ 전술한 것처럼 서경에 장기 주둔을 도모하고 있었다. 서경을 통과해 내려갔던 이전과 달리 이곳을 거점으로 삼음으로써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서해도 서부 연안 지역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몽고군의 전황으로 볼 때 조도 공격이 있었던 고종 42년(1255) 말 당시 몽고군이 서해도 방면에 주둔하면서 이 지역을 공략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것은 조도가 서해도 방면의 해도가 아니라는 이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조도는 전라도 방면의 해도로 판단되는데,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全羅道 방면의 전황과 槽島 방어 전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도는 당시 몽고의 전쟁 양상에 비추어 서해도 연안의 섬으로 보기 어렵다. 이번에는 조도를 전라도 연안의 섬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에 대해 당시 전황과 연계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조도를 전라도 연안의 섬으로 보는 일차적인 근거는 조도 공격 이후 이어지는 양국의 전쟁 상황이다. 고종 43년(1256) 고려는 몽고군의 해도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였다.

왕이 몽고 군사가 諸島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將軍 李廣과 宋君斐를 보내 舟師 300명을 거느리고 南下하여 방어하게 하였다.⁴⁶⁾

45) 『高麗史』 권24, 고종 46년 정월 丁卯 “遣刑部侍郎李凝 如西京王萬戶 沙居只屯所”

46)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정월 丁巳 “王聞蒙古兵 謀攻諸島 遣將軍李廣宋君斐

위의 기사는 정월 丁巳일(25일)의 기록이다. 조도 공격이 있었던 壬辰일은 12월 30일이다. 곧 위의 조치는 조도 공격이 있는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정도의 시차는 전례가 없던 해도 공격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고 그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그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방어를 위해 파견된 이광 등이 해로를 통해 靈光에 이르기까지 32일이 걸린 점도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한편 이광 등이 영광 방면으로 내려와 몽고군과 대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李廣과 宋君斐가 靈光으로 달려가 分道하여 공격하기로 약속했는데, 몽고군이 알고 대비를 갖추니 이광은 도로 섬에 들어가고[還入島] 송군비는 笠巖山城에 입보하였다.⁴⁷⁾

위의 기사에 따르면 이광과 송군비는 영광으로 내려와 군대를 나누어 몽고군을 치려고 했으나 몽고군이 이를 알고 대비하자 이광은 도로 섬으로 들어가고 송군비는 笠巖山城에 입보하였다.

이 때 이광이 “還入島”라고 한 것은 앞서 이들이 어느 섬에 들어갔다가 육지로 나온 것이고, 이 섬의 명칭이 이미 앞 기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영광으로 내려왔으므로 이 섬은 영광 관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섬이 전년 말에 몽고군이 공격한 槽島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곧 조도는 영광 관할의 섬으로 이곳이 공격을 받아 고려 정부가 舟師를 파견한 것이다. 이들은 섬에 도착한 후 본토로 상륙하여 군대를 나누어 몽고군을 공격하려 했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일부는 섬으로 돌아오고 일부는 입암산성으로 들어간 것이다.

領舟師三百 南下禦之”

47)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3월 己未 “李廣宋君斐 趣靈光 約分道擊之 蒙兵知而有備 廣還入島 君斐保笠巖山城”

영광 연안에는 많은 섬이 있어 조도가 어느 곳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해안에서 멀지 않고 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곳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군현이 설치된 곳이면 그 명칭이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조도는 따로 군현이 설치되지 않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현 智島이다.

다음에 해도 공격과 몽고군 본진과의 연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를 이용한 도서 공격은 몽고군이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전술이었다. 따라서 선봉군이나 별동대가 이러한 전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었다. 곧 해도 공격은 몽고 주력군의 차원에서 구사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지역은 지휘관 屯所와 지역적으로 일치할 것이다.

고종 43년(1256) 정월 몽고군의 해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파견된 이광과 송군비 등은 영광으로 내려갔는데, 고려 정부는 그와 동시에 大將軍 愼執平을 차라대의 둔소로 보내 화의를 도모하였다.⁴⁸⁾ 당시 차라대의 둔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 정부는 4월에 다시 신집평을 차라대 둔소로 보냈는데,⁴⁹⁾ 5월 신집평은 羅州에서 돌아와 상황을 보고하였다.⁵⁰⁾ 이를 통해 차라대가 나주 인근에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집평이 나주를 경유한 것은 해로를 통해 오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년 7월 기사에 차라대가 海陽縣의 無等山에 주둔하면서 남쪽 지역을 공격하도록 한 기사가 확인된다.⁵¹⁾

차라대가 押海島를 공격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일로 생각된다.

48)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3월 丁巳 “遣大將軍愼執平等于車羅大屯所”

49)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乙亥 “復遣愼執平于車羅大屯所 寄書云 大兵回來 惟命是從”

50)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5월 壬寅 “愼執平 自羅州還言(후략)”

51)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7월 “是月 車羅大屯海陽無等山頂 遣兵一千南掠”

車羅大가 일찍이 舟師 70척을 거느리고 깃발을 성대히 벌여놓고 押海를 공격하려는데, 저와 한 官人으로 하여금 別船을 타고 전투를 독려하게 하였습니다. 압해 사람들이 大艦에 두 砲를 설치하고 기다리니 양측 군대가 대치만 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차라대가 해안을 바라보며 우리를 불러 말하기를 “우리 배가 포격을 받으면 분명 부서져서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고 다시 배를 옮겨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압해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며 포를 갖추니 몽고인이 마침내 水攻할 도구들을 철수하였습니다.⁵²⁾

위의 기사는 몽고군의 포로로 있던 尹椿이 崔沆에게 해도 입보의 강점을 설명하는 중에 押海島 전투⁵³⁾를 사례로 든 것이다. 이 기사는 『高麗史節要』에 고종 43년(1256) 6월의 일로 나오고 있어⁵⁴⁾ 차라대가 해양현에 주둔하고 있을 때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전투는 차라대가 직접 지휘하고 있어 당시 해도 공격이 본진의 작전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주목을 끄는 것은 당시 동원된 배의 규모가 70척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몽고군이 대대적으로 선박을 건조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조도 공격 때 “造船”을 명시한 것과 연결된다. 당시 몽고군은 대규모의 선박 건조를 통해 전라도 연안의 입보 해도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초 몽고군이 선박 건조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당시 전황은 이들이 선박의 대량 건조가 가능한 지역을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邊山이다. 고려와 몽고의 전쟁이 마무리된 후 몽고는 일본 원정을 준비하며 고려로

52)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韓洪甫 “車羅大 嘗將舟師七十艘 盛陳旗幟 欲攻押海 使吾與一官人 乘別船督戰 押海人 置二砲於大艦待之 兩軍相持未戰 車羅大臨岸望之 召吾等曰 我船受砲 必糜碎不可當也 更令移船攻之 押海人 隨處備砲 故蒙古人 遂罷水攻之具”

53) 압해도 전투는 기사 내용으로 볼 때 양군이 대치만 했을 뿐 실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 전투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표현에 따라 ‘압해도 전투’로 부르기로 한다.

54) 『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3년 6월

하여금 많은 선박을 건조하게 하였다. 원종 15년(1274)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금년 정월 3일에 엮드려 大船 300척을 건조하라는 朝旨를 받아 바로 조치를 행하여 樞密院副使 許珙을 全州道 邊山에, 左僕射 洪祿迥을 羅州道 天冠山에 보내 재목을 준비하였고, 또 侍中 金方慶을 都督使로 삼았으며 管下의 員將들도 역시 모두 정밀하게 선발했습니다.⁵⁵⁾

위의 기사는 고려가 大將軍 羅裕를 보내 元 中書省에 올린 글로, 황제의 명에 따라 고려가 선박을 건조하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고려는 全州道 邊山과 羅州道 天冠山에서 자재를 공급하고 있었다. 이곳이 선박 건조에 가장 적합한 자재를 생산하는 곳이었던 것이다.

선박 자재의 공급 기지로서 변산의 유용성은 李奎報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2월에 朝勅을 받들어 邊山에서 벌목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변산은 나라의 材府로서 宮室을 수리하고 영건하느라 벌목하지 않는 해가 없는데 아름답기 나무와 높이 솟은 나무가 항상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벌목 일을 항상 감독하므로 나를 斫木使라 불렀다.⁵⁶⁾

위의 기록은 庚申年, 곧 신종 3년(1200)에 全州의 司錄兼掌書記로 있던 이규보가 朝勅에 따라 변산에서 벌목한 일을 전하고 있다.

변산이 재목 공급지로 주목되는 이유는 다량의 좋은 재목을 산출하는 동시에 바다에 인접해 있어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55) 『高麗史』 권27, 원종 15년 6월 辛酉 “今年正月三日 伏蒙朝旨 打造大船三百艘 卽行措置 遣樞密院副使許珙於全州道邊山 左僕射洪祿迥於羅州道天冠山 備材 又以侍中金方慶 爲都督使 管下員將 亦皆精練”

56) 『東國李相國集』 前集 권23, 南行月日記 “十二月 奉朝勅 課伐木邊山 邊山者 國之材府 修營宮室 靡歲不採 然蔽牛之大 干霄之幹 常不竭矣 以其常督伐木 故呼予曰斫木使”

좋은 재목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부문으로 건물 영건과 함께 선박 건조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으므로 인근에서 선박 건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몽고군이 전라도로 내려온 후 선박 건조가 가능해진 것은 바로 이 지역을 점령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조도 공격 당시 몽고군의 현황과 부합한다. 이렇게 확보된 배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이 바로 조도였던 것이며, 이후 선박을 다수 확보하게 되자 압해도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도모했던 것이다.

몽고군 본진과 해도 공격의 연계성은 고종 44년(1257) 재침 때 서해도 도서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데서도 확인된다. 당시 몽고군의 도서 공격은 두 차례 확인된다.

- ① 몽고군이 神威島를 함락하니 孟州守 胡壽가 해를 입었다.⁵⁷⁾
- ② 西海道按察使가 보고하기를, “몽고군 6척이 昌麟島를 침구하니 瓮津縣令 李壽松이 別抄를 이끌고 격퇴하였습니다”라고 하므로 이수송에게 7품을 더해 주었다.⁵⁸⁾

위에서 신위도는 그 위치를 알 수 없으며 맹주가 입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창린도는 웅진현 서쪽에 있는 섬으로 『고려사』 지리지 연혁에 따르면 安北大都護府가 입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 기사를 통해 웅진현도 함께 입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현황을 보면, 甫波大가 이끄는 몽고 선봉군은 6월에 개경을 지나⁵⁹⁾ 남경을 거쳐⁶⁰⁾ 稷山에 이르렀고, 고려는 侍御史 金軾을

57)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7월 壬寅 “蒙兵陷神威島 孟州守胡壽被害”

58)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9월 己巳 “西海道按察使報 蒙兵六船 侵昌麟島 瓮津縣令李壽松 率別抄擊却之 加壽松七品”

59)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6월 戊子 “蒙古候兵 入開京 遣將作監李凝 犒之”

60)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6월 癸巳 “蒙兵至南京 遣李凝 請退兵 甫波大云 去留在車羅大處分”

둔소로 보냈다.⁶¹⁾ 김식이 돌아와 보고하는 기사에 따르면 차라대는 안북부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⁶²⁾

하지만 여기에는 상황 파악에 혼선이 있어 보인다. 김식이 둔소에 도착하기 전날 몽고군은 이미 西京에 이르렀다.⁶³⁾ 그리고 김식이 도착하고 4일 뒤 차라대의 사자가 昇天館에 도착하였다.⁶⁴⁾ 김식이 차라대 둔소에서 돌아와 보고한 것은 이로부터 26일이 지난 뒤이다.

김식의 보고가 있는 이튿날 정부는 다시 永安公 僖를 차라대에게 보냈다. 이 때 차라대는 太子의 入朝를 요구하며 태자가 도착하면 鳳州로 물러나 주둔하겠다고 약속하였다.⁶⁵⁾ 이에 고려는 29일 뒤 다시 김식을 차라대 둔소로 보내 그 뜻을 살피도록 하였다.⁶⁶⁾ 몽고군의 신위도 공격은 바로 이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9월에 김식은 차라대가 군대를 거두어 염주로 물러나 주둔하였다는 것과 남하한 보파대의 軍馬를 돌리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⁶⁷⁾ 그리고 11일 뒤에 창린도 공격이 있었다.

결국 김식은 차라대 본진이 안북부에 있을 때 출발했으나 그 사이 차라대는 서경을 거쳐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퇴각하며 처음 주둔한 곳이 염주로 되어 있으므로 당시

61)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6월 乙未 “蒙兵至稷山 遣侍御史金軾 詣屯所 請客使三人來”

62)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7월 壬申 “金軾自車羅大屯所安北府還云 車羅大曰 王若親來 我卽回兵 又令王子入朝 永無後患”

63)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6월 辛亥 “西北面兵馬使報 蒙古軍至西京”

64)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7월 丙辰 “車羅大使佐十八人 到昇天館”

65)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7월 癸酉 “永安公僖 自車羅大屯所還云 車羅大問曰 何爲來 對曰 大人召還南下軍兵 且禁侵蹂禾穀 國王喜甚 遣臣奉一觴 車羅大曰 太子到日 當退屯鳳州”

66)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7월 壬寅 “復遣金軾 賫酒果銀幣纈皮等物 如車羅大屯所 餞之 以觀其意”

67)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9월 戊午 “金軾馳報車羅大收兵 退屯塩州 又督還南下浦波大軍馬”

차라대는 적어도 개경이나 강화도 연안까지 내려왔을 것이다.

이 시기에 몽고군이 해도를 공격한 것은 강화도의 고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2년 전부터 선박을 건조하고 해도 공격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고종 44년(1257)에는 서해도 해도 공격까지 가능했던 것이다. 이곳에 대한 공격은 서해도 서부 지역을 지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염주 방면에서 올라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몽고군의 서해도 해도 공격은 앞서 전라도 연안 해도 공격의 경험과 당시 확보된 선박 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몽고군은 강도 정부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었고, 이것이 결국 강화 교섭의 타결로 이어지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도 공격을 포함하여 고종 42년(1255)에서 이듬해까지 이루어진 몽고군의 해도 공격은 전라도 연안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서해도 연안 도서는 고종 44년(1257)에 비로소 공격을 도모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조도는 입보가 가능한 규모와 연안에서 멀지 않은 위치 등의 조건을 감안하면 현 智島에 비정할 수 있다.

3. 牙州海島 出陸 전투의 승패와 성격

가. 牙州海島 出陸 전투의 승패

대몽전쟁기 해도 관련 전투 중에서 牙州海島 관련 전투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투와 관련하여 牙州海島가 어디인가 하는 비정 문제와 더불어 勝敗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전후 전투와의 연계성과 전투의 형태 및 성격 등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 볼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전투 승패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어 이를 승전으로 보는 견해의 주요 논지를

비판함과 아울러 전투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아주해도 관련 전투에 대한 기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忠州道巡問使韓就 在牙州海島 以船九艘 欲擊蒙兵 蒙兵逆擊 盡殺之⁶⁸⁾

위의 기사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패전론)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아주해도에 있으면서 배 9척으로 몽고군을 치려고 했으나 몽고군이 되받아쳐 모두 죽었다.⁶⁹⁾
② (승전론)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아주해도에 있으면서 배 9척으로 몽고병을 치고자 하였는데, 몽고병이 되받아쳐 오히려 (한취 휘하 고려군이) 그들을 모두 죽였다.⁷⁰⁾

아주해도와 관련된 전투를 패전으로 보는 경우에도 문맥상 해석은 ①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逆擊”과 “盡殺之”의 주어가 바뀌기 때문에 승전론의 해석은 대단히 어색하게 된다. 그럼에도 승전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취의 생존을 비롯한 당시 전황과 관련된 이해가 깔려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일단 한문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정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하지만 문법적 요소를 뛰어 넘어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어가 생략되었다고 추정되는 경우, 문법적인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위의 경우도 일차적으로 문법적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68)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庚寅

69) 윤용혁, 앞의 논문, 1982, 79쪽 ; 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46쪽.

70) 윤용혁, 2000 대몽항쟁기 지방민의 피란 입보 사례 : 아산만 연안 지역의 경우,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77쪽; 강재광, 앞의 논문, 2008, 54쪽; 강재광, 앞의 논문, 2014, 48쪽.

윤용혁은 처음에는 고려군의 패전으로 해석하였으나 입장을 바꾸어 승전으로 고쳐 이해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欲’이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고자 했다는 의도 내지 목적을 나타낸다. 이 때 뒤에 나오는 내용은 대개 둘 중 하나가 된다. 하나는 순접 관계로 “A를 하기 위해서 B를 했다”고 해석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欲’의 수식을 받는 부분에 대해 그 뒤에 나오는 행동이 의미상 선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欲A, B”의 구문이라 할 때, A를 위해서 B를 하는 것이므로 “실현된 A”는 B의 결과가 되어 시간적으로 뒤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접 관계로 “-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형태의 구문이다. 이 경우 ‘欲’의 수식을 받는 부분보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의미상 뒤가 된다. 곧 “欲A, B”에서 A는 실현되지 않았고 대신 B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상 B가 뒤가 되는 것이다.

위에 인용된 구문을 대입하면 A는 고려군이 몽고군을 공격하려고 한 것이고, B는 몽고가 역습하면서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구문은 B가 시간적으로 뒤가 되므로 문법 관계는 역접의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A로 표현된 목적은 실현되지 않고 그와 다른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법적 관계를 고려하면 이 전투는 고려의 공격 의도에 반하는 결과, 곧 고려군이 몰살당하는 ‘패전’이 되는 것이다.

이 전투가 패전이라는 것은 문법적인 해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위의 인용문이 해당 기사 의 本文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 인용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아주해도에 있으면서 배 9척으로 몽고군을 치려고 했으나 몽고군이 되받아쳐 모두 죽였다. ② 몽고군이 忠州로 들어가 州城을 도륙하고 또 山城을 공격하니 官吏와 老弱이 저항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月嶽神祠에 올랐는데, 홀연히 운무가 끼고 비바람과 우박이 함께 일어났다.

몽고군이 신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지 않고 물러갔다.⁷¹⁾

위의 기사는 고종 43년(1256) 4월 庚寅일의 것으로, 내용은 둘로 나뉜다. ①은 전술한 아주해도 관련 전투이고, ②는 몽고군의 충주성 공격에 대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하나의 전황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아주해도 관련 전투를 고려군의 승전으로 본다면 몽고군이 몰살당한 것인데, 바로 이어 몽고군이 충주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한 날짜에 하나로 정리된 기사에 나오는 몽고군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볼 수는 없다. 전황이 여러 곳에서 전개되었고 이것이 취합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 아주해도 관련 전투와 충주성 전투가 서로 별개라고 볼 만한 관련 전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서로 다른 전황을 한 기사로 이어서 정리하는 것도 무리가 느껴진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 몽고군은 건재한 것이고, 몰살당한 것은 고려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승전론은 위 기사를 둘로 나누고 후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자만으로 상황을 이해한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⁷²⁾

여기서 추가로 지적할 점은 아주해도 관련 전투 또한 ‘해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섬과 배가 등장하여 ‘해전’ 내지 도서 관련 전투로 보고, 충주성 공격은 산성 관련 전투로 봄으로써 연구자들이 초기

71)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庚寅, “忠州道巡問使韓就 在牙州海島 以船九艘 欲擊蒙兵 蒙兵逆擊 盡殺之 蒙兵入忠州 屠州城 又攻山城 官吏老弱 恐不能拒 登月嶽神祠 忽雲霧 風雨雨雹俱作 蒙兵以爲神助 不攻而退”

72) 『高麗史』와 달리 『高麗史節要』에는 이들이 별개 기사로 나뉘어 있어 이러한 오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高麗史節要』의 기사도 대부도별초의 출륙 전투와 아주해도 출륙 전투, 그리고 몽고군의 충주 함락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어 하나의 연속된 정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단계에서 양자를 분리했던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당시 전투는 고려군이 선박을 타고 섬에서 육지로 나와 몽고군과 전투를 벌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도 공격 이후 몽고군이 선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승선한 상태에서 고려와 전투를 벌였다고 볼 수는 없다. 몽고군에게 선박은 섬에 상륙하기 위한 이동 수단일 뿐이며, 당시 몽고군의 전술적 상황에서 ‘해상’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압해도 전투의 경우도 몽고군은 상륙을 도모했을 뿐 선상에서 어떤 공격 행위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아주해도 관련 전투에서 몽고군이 배를 타고 나와 고려군의 상륙 이전에 전투를 벌였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고려군이 해도에 입보해 있다가 유사시에 출륙하여 전투를 벌인 예로는 아주해도 관련 전투보다 조금 앞서 이루어진 大府島別抄의 전투 사례를 찾을 수 있다.

大府島別抄가 밤에 仁州 지경의 蘇來山 아래로 나와 몽고군 100여 인을 공격하여 쫓아버렸다.⁷³⁾

위의 기사는 해도에 입보한 상황에서 고려군이 수행한 전투 형태를 잘 보여준다. 대부도에 있던 별초는 밤에 인주 지경의 소래산⁷⁴⁾ 아래로 나와 몽고군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는 상륙하여 육지에서 이루어진 기습 공격이다. 10일 뒤에 발생한 아주해도 관련 전투도 이와 동일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주해도 관련 전투 또한 고려군이 배를 타고 나와 상륙한 뒤 몽고군을 공격하려다가 역습을

73)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庚辰 “大府島別抄 夜出仁州境蘇來山下 擊走蒙兵百餘人”

74)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소래산은 仁川都護府(仁州)의 鎭山으로 府 동쪽 24리에 있다.

당한 것이다. 전술한 槽島 전투에서 정부가 파견한 李廣 등이 일단 섬에 들어갔다가 출륙하여 몽고군과 전투를 벌이려 한 것도 같은 양상이다.

이번에는 승전론의 주요 논지와 연관하여 전투의 성격에 대해 짚어보기로 하자. 아주해도 출륙 전투가 고려의 승전으로 오인된 주 이유는 지휘관으로 파악되는 韓就가 이 전투 이후에도 생존했기 때문이다. 韓就는 원종 4년(1263) 大司成으로 몽고에 사신으로 간 사실이 확인된다.⁷⁵⁾ 고려군이 몰살되었다면 한취도 죽었을 것이므로, 그가 살아 있다는 것은 곧 고려가 승전했다는 논지인 것이다. 더불어 최소한 그가 패전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징계 기사가 나와야 한다는 점도 덧붙었다.⁷⁶⁾

그러나 당시 한취가 군대를 인솔하여 전투를 지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일단 한취가 군대를 인솔했다면 문법적으로 “以船九艘”에서 ‘以’가 아니라 ‘率’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⁷⁷⁾ 또한 전투에서 지휘관이 군대를 이끌고 싸우다 전사한 경우, 그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⁷⁸⁾ 따라서 위 구문으로 한취의 생사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하거나와 이를 근거로 승전을 논할 수는 없다.

또한 한취에 대해 “牙州海島에 있으면서[在]”라고 명시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가 주어로 설정된 구문에서 그 소재지를 명시한 것은 그가 군대를 이끌고 나와 전투한 것이 아니라는 것, 곧 해도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군대만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75) 『高麗史』 권25 원종 4년 10월 壬戌 “遣大司成韓就 如蒙古賀正 兼謝賜羊”

76) 강재광, 앞의 논문, 2014, 49쪽.

77) 다음은 그러한 문법적 구성의 예이다.

『高麗史』 권7, 문종 4년 정월 己丑 “上年十月 海賊 奪鎮溟兵船二艘而去 兵馬錄事文揚烈 卽率兵船 與元興都部署判官宋齊罕 追至賊穴 焚蕩廬舍 斬賊二十級而還 其功可賞”

78) 다음은 그러한 구문의 예이다.

『高麗史』 권1, 태조 11년 정월 乙亥 “元尹金相 正朝直良等 將往救康州 經草八城 爲城主興宗所敗 金相死之”

직접 군대를 끌고 나왔다면 대부도별초의 경우처럼 ‘出’이 명시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巡問使의 기능 및 한취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군이 승전한 것으로 보는 이유가 순문사 한취가 생존했다는 점이고, 이는 한취가 실제 군대를 지휘해 전투를 수행했다는 기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⁷⁹⁾ 과연 당시 순문사가 군대의 전투 지휘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그와는 다른 차원의 기능을 담당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취가 전투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한취의 생사를 두고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무의미해진다. “아주해도에 있다”는 표현에서 이미 그가 전투를 지휘한 것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지만, 순문사의 직제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아주해도 출륙 전투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고려 후기 순문사의 첫 사례는 고종 14년(1227) 金希碑가 全羅道 巡問使에 임용된 것이다.⁸⁰⁾ 그러나 임용 사실만 나올 뿐 활동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기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그가 참소로 崔怡에게 화를 입을 때 羅州에 있었던 것으로 나와 전라도 지역을 순행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순문사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어 고종 30년(1243) 巡問使 파견 기사가 보인다.

79) 吳宗祿은 고려말 都巡問使의 연원으로서 고종대 순문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임시적 사행이지만 해도 입보를 지휘하는 등 군사적 기능을 띤 것으로 보았고, 한취에 대해서도 전투를 지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吳宗祿, 「高麗末의 都巡問使 : 下三道의 都巡問使를 中心으로」, 『震檀學報』 62, 1986, 305쪽). 하지만 고려말 도순문사의 군사적 기능을 전제로 초기의 순문사에 대해 동일한 기능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제도의 일반적 양상을 고려할 때, 순문사 또한 상황 변화에 따라 기능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80)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希碑

諡道에 巡問使를 보냈다. 閔曦를 慶尙州道에, 孫襲卿을 全羅州道에, 宋國瞻을 忠淸州道에 보냈다.⁸¹⁾

위의 경우도 순문사의 기능이나 활동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파견 지역은 안찰사 관할 지역과 일치한다.

당시 안찰사는 道 단위의 감찰관으로 확립되어 연 2회 상시적으로 운용되었다.⁸²⁾ 이에 대해 巡問使는 필요에 따라 파견되는 別命使臣(別銜)의 하나로서 그 기능 또한 파견 목적과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당초 道 단위로 설정되는 제반 업무는 안찰사가 수행하는 것이지만, 자연 재해나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 혹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별명사신을 보내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경우 별명사신은 특정한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안찰사와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원리는 명종 때 파견된 察訪使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찰사는 의종대에 이르면 5道按察使로 확립되었다.⁸³⁾ 이후 7道按察使로 운영되기도 하고⁸⁴⁾ 이름도 提察使, 按廉使 등으로 바뀌었지만, 그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고려말 都觀察黜陟使로 개편될

81) 『高麗史』 권23, 고종 30년 2월 戊辰, “遣諸道巡問使 閔曦于慶尙州道 孫襲卿于全羅州道 宋國瞻于忠淸州道”

82) 按察使의 직제와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河炫綱, 「高麗 地方制度의 一研究(上·下) : 道制를 中心으로」, 『史學研究』 13·14, 1962(『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邊太燮, 「高麗按察使考」, 『歷史學報』 40, 1968(『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7); 金潤坤, 「麗代 按察使制度의 成立」, 『嶠南史學』 1, 1985; 박종진, 「고려시기 안찰사의 기능과 위상」, 『東方學志』 122, 2003; 윤경진, 「고려 按察使의 연원과 ‘五道按察使’의 성립」, 『韓國文化』 61, 2013②; 윤경진, 「고려시대 按察使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 : 군사 및 사법 기능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65, 2014.

83) 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②.

84)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外職 勸農使 “明宗三年 七道按察使[慶尙州道 晉陝州道 全羅州道 忠淸州道 楊廣州道 西海道 春州道] 五道監倉使[北界雲中道 興化道 東界溟州道 朔方道 沿海道] 皆兼勸農使”

때까지⁸⁵⁾ 유지되었다.

그런데 명종 8년(1178) 안찰사와 별도로 찰방사가 파견되어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고 관리와 奉使者의 黜陟을 행하도록 하였다.⁸⁶⁾ 이러한 활동은 안찰사의 고유 업무와 중복된다. 곧 기존 안찰사만으로 효과적인 감찰이 어렵다고 보고 찰방사를 추가로 파견하여 감찰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기존의 안찰사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되었다.⁸⁷⁾

이렇게 보면 순문사는 안찰사와 별도로 파견된 별명사신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이 명종 때의 찰방사와 맥이 닿는다. 고종 40년(1253) 순문사 파견 기사에서 그러한 기능적 관계를 읽을 수 있다.

北界兵馬使가 “몽고군이 이미 鴨綠江을 건넜습니다”라고 보고하니, 바로 5道按察 및 3道巡問使에게 移牒하여 주민을 다그쳐 산성과 해도에 입보하도록 하였다.⁸⁸⁾

위 기사에는 안찰사와 순문사에 부여된 임무가 나타난다. 이들은 정부의 통첩을 받아 주민들을 산성과 해도에 입보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때 안찰사나 순문사가 직접 주민을 인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수령에게 통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을 것이다.

이러한 운영원리는 宋國瞻이 慶尙州道巡問使로 활동한 사례를

85)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外職 按廉使, “辛昌八月 以按廉秩卑 改爲都觀察黜陟使 以兩府大臣爲之 賜教書斧鉞 以遣之”

86) 『高麗史』 권19, 명종 8년 정월 丁巳 “分遣察訪使 (중략) 問民疾苦 黜陟官吏及奉使者 限十年以前 追論殿最 凡被劾者 八百餘員 孝著以考覈不精 免”

87) 김아네스는 정기적으로 파견된 按察使가 지방행정 업무로 인해 감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부정기적으로 察訪使를 보내 감찰 기능을 보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김아네스, 「高麗時代의 察訪使」, 『韓國史研究』 82, 1993, 10-11쪽).

88)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7월 甲申 “北界兵馬使報 蒙兵渡鴨綠江 卽移牒五道按察及三道巡問使 督領居民 入保山城海島”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⁸⁹⁾

① 刑部尙書로 나가 慶尙道巡問使가 되었는데, 崔怡에게 글을 보내 崔沆의 일을 논하니 崔怡가 그렇다고 여겼으나 다시 崔沆이 참소하여 國瞻을 東京副留守로 좌천시켰다.⁹⁰⁾

② (庾碩이) 뒤에 安東都護副使가 되었다. 이 때 巡問使 宋國瞻이 유석에게 공문을 보내 산성을 수축하도록 하고, 또 공문을 보내 判官 申著와 함께 의논하도록 하였다. 신저는 평소에 貪汚하여 유석이 함께 일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는데, 공문으로 온 일은 모두 신저에게 맡기고 날마다 儒士와 더불어 시를 읊을 따름이었다.⁹¹⁾

위의 두 기사를 통해 송국침이 崔怡 집권기에 慶尙州道巡問使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②에는 그가 산성 수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나타나 있다. 그 형태를 보면,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수령에게 공문을 보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안찰사의 일반적인 업무 형태와 동일하며, 산성 및 해도 입보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한취가 아주해도에 있으면서 군대를 보내 몽고군을 공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순찰관이었던 한취는 아주해도에 상주한 것이 아니라 순행 중에 아주해도에 와서 머물렀으며, 이곳에서 군대 징발 및 파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산성 수축처럼 정부의 통첩에 따른 것이며, 수령이나 실무진에 지시가 전달되는 형태였을 것이다.

89) 이외에 다음 두 사례가 더 보이지만, 구체적인 업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高麗史』 권102, 列傳15 李純孝 “高宗朝 累官至全羅道巡問使”;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希碑 “明年 出爲全羅道巡問使”

90) 『高麗史』 권102, 列傳15 宋國瞻 “由刑部尙書 出爲慶尙道巡問使 寄書於怡 論沆事 怡然之 復以沆之譖 貶國瞻東京副留守”

91) 『高麗史』 권121, 列傳34 良吏 庾碩 “後爲安東都護副使 時巡問使宋國瞻 移牒於碩 令修山城 又牒與判官申著同議 著素貪汚 碩恥與共事 所牒事皆委著 日與儒士嘯咏而已”

순찰관으로서 한취의 업무 수행은 다음 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金周鼎이) 음서로 富城尉가 되었다. 이 때 몽고군이 크게 이르러 나라가 놀라고 소요하였는데, 김주정이 조치를 사리에 맞게 하니 위엄과 은혜가 모두 두드러져 한 지역이 칭송하였다. 巡問使 韓就가 그를 천거하여 權知都兵馬錄事가 되었다.⁹²⁾

위에서 金周鼎은 몽고의 침입 당시 富城縣尉로 재임하면서 민심 안정에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에 순문사 한취가 그를 정부에 천거하여 權知兵馬錄事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주정이 부성현위로 재임하던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별명사신인 순문사의 재임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취가 순문사로 재임한 것이 확인되는 고종 43년(1256) 즈음이 될 것이다. 곧 아주해도의 출륙 전투와 관련된 업무와 김주정 천거는 같은 시기 한취의 순문사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지방 관리에 대한 褒貶은 안찰사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데, 순문사가 동일한 기능을 행한 것은 순찰관들이 대체로 순행 기간 중 백성의 생활상과 관리들의 근무 상황을 살펴보게 되는 것과 관련된다. 한취가 순문사로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관내를 순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직임으로서 수행한 아주해도 출륙 전투에 대해서도 순찰관으로서의 역할과 연계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안찰사의 기능에 준하여 접근할 수 있다. 안찰사의 군사 관련 기능에 대해서는 군사 지휘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지만,⁹³⁾ 근래의 검토에 따르면 안찰사의 군사적 기능은

92)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周鼎 “以蔭 調富城尉 時蒙兵大至 國家驚擾 周鼎措置得宜 威惠並著 一方稱之 巡問使韓就薦之 權知都兵馬錄事”

93) 박종진, 앞의 논문, 2003.

군대를 징발하는 調兵과 이들을 인솔하여 전투 지역의 지휘관에게 넘겨주는 引兵에 주안점이 있었으며, 돌발 상황이 아닌 한 실제 전투를 지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⁹⁴⁾ 안찰사와 순문사가 주민의 해도 입보를 주도한 것도 인적 동원이라는 점에서 군사 운용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순문사 한취의 활동도 이와 같은 맥락을 띠고 있다. 군사의 출동은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출동 후 전개되는 일련의 전투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수행되겠지만, 주력 부대가 특정 지점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군사 지휘체계를 통해 시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취는 순문사로서 해도 입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입보 도서의 군대에 대해 정부의 출동 명령을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경상주도순문사 송국침이 산성 수축과 관련하여 안동의 부사에게 통첩한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 과정에서 순문사 한취는 군대 상황을 점검하고 부대를 차출하여 파병하는 단계까지 담당한 것이며, 출동 후 부대의 인솔과 전투는 해당 지휘관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명에 따라 출병을 시달하고 그에 대한 업무를 순문사가 지휘했기 때문에 아주해도 출륙 전투 기사에 한취가 출병 주체로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주 해도에 있으면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실제 군대를 이끌고 출륙하여 전투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려군의 몰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의 명에 따라 출병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패전의 책임을 질 이유도 없는 것이다.

94) 윤경진, 앞의 논문, 2014.

나. 몽고군의 忠州 공격과 牙州海島

앞에서는 아주해도 출륙 전투가 고려군의 패전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번에는 이 전투가 당시 전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단서는 군대를 파견한 주체로 나오는 한취의 직함이 忠州道巡問使라는 점과 고려군을 섬멸한 몽고군이 곧바로 忠州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곧 아주해도 출륙 전투는 충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전투는 대몽전쟁기 충주의 전황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⁹⁵⁾

먼저 한취의 직함에 대해 짚어 보자. 충주도순문사 韓就의 실제 직함은 忠淸州道巡問使일 가능성이 높다.⁹⁶⁾ 그가 천거한 金周鼎은 富城縣의 尉였고, 부성현은 界首官 淸州 관할에 속한다. 그가 忠州道라는 범위만 관할했다면, 부성현은 그 관할 밖이 된다. 부성현까지 관할에 넣고 있었다면 그는 충주도와 청주도를 아울러 담당한 것이며, 이 경우 정식 직함은 충청주도순문사가 된다.

그렇다면 그의 직함이 충주도순문사로 기재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주해도 출륙 전투에 이어 충주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된다. 전술한 것처럼 아주해도에서 출륙한 고려군을 몰살한

95) 충주의 전황에 대해서는 윤용혁의 연구에서 각 전투별로 그 내용이 개괄된 바 있다(윤용혁, 앞의 책, 1991). 또한 필자도 牙州海島와 관련하여 忠州의 전황을 언급하였으나(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계수관 단위의 海島 入保를 논하는 차원이었다. 본고에서는 당시 전황이 아주해도 출륙 전투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96) 윤용혁, 앞의 책, 2000, 87쪽 ; 강재광, 앞의 논문, 2014, 49쪽.
윤용혁은 忠州道가 충청도를 가리킨다고 본 것으로 직함 자체에 대해 지적한 것은 아니다. 필자는 앞서 韓就가 界首官 충주를 단위로 파견된 巡問使로 이해하였으나(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47쪽) 한취의 본래 직함은 忠淸州道巡問使로 고쳐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그의 아주해도 출륙 전투 관련 업무는 계수관 충주와 국한된다고 보는 것은 동일하다.

몽고군은 충주 공략에 나섰다. 이것은 당초 몽고군이 충주를 공격 목표로 진군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고려군은 몽고군의 충주 진격을 막기 위해 출륙한 것이다.

충주와 아산만 지역은 신라 이래로 중요 교통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경주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해로로 나아갈 때 가장 가까운 경로는 鷄立嶺을 넘어 충주를 거쳐 아산만 방면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아산만에 인접한 唐項城은 對唐 교통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고,⁹⁷⁾ 흥덕왕 때에는 이곳에 唐城鎮을 설치하기도 하였다.⁹⁸⁾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에 비추어 당초 충주 관할 군대가 아주해도에 입보해 있었으며, 충주 방면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몽고군이 실제 충주 공략에 나서자 입보해 있던 군대가 나와 이를 막으려다가 역습을 당했던 것이다. 한취가 충청주도순문사가 아니라 충주도순문사로 나오는 것은 바로 그가 충주 관할 군대의 發兵을 담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충주도는 충청주도의 범위에서 계수관 충주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운영체계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사 운용이었다. 고려에서 지방군 운영체계는 외관을 매개로 설정된 軍事道를 단위로 정책이 설정되었지만, 실제 작전에 동원되는 군사는 계수관을 단위로 편성되었다.⁹⁹⁾

충청주도순문사 한취는 순행 업무에서는 충청주도를 포괄했지만, 군사 운용에 대한 업무에서는 충주도와 청주도가 구분되었기 때문에 충주도 관련 업무에서는 직함이 충주도순문사로 나타나게 된

97) 신라 헌덕왕 때 唐에 사신으로 파견된 金昕은 唐恩浦를 경유하였다(『譯註韓國古代金石文』Ⅲ, 聖住寺朗慧和尚碑 “泊長慶初 朝正王子昕 艤舟唐恩浦 請寓載許焉”). 당은포는 唐恩縣(唐城縣)의 포구로서 아산만으로 나아가는 통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98) 『三國史記』권10, 新羅本紀10 興德王 4년 2월 “以唐恩郡爲唐城鎮 以沙湊極正往守之”

99) 윤경진, 앞의 논문, 2004, 35-41쪽.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다음 두 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① 全羅抄軍別監 洪溥가 급히 보고하기를, “全州의 軍馬가 작년 12월 26일에 서둘러 출발했으나 5일을 행군한 뒤 전주로 돌아와 난을 일으켜 長吏를 죽이거나 내쫓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羅界軍도 출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¹⁰⁰⁾

② 금년 정월 3일에 엮으려 大船 300척을 건조하라는 朝旨를 받아 바로 조치를 행하여 樞密院副使 許珙을 全州道 邊山에, 左僕射 洪祿適을 羅州道 天冠山에 보내 재물을 준비하였습니다.¹⁰¹⁾

①은 고종 4년(1217) 기사로서 全州에서 군인들이 일으킨 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契丹遺種의 침입으로 이를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차출한 것인데, 전주의 軍馬가 출발한 지 5일 후 전주로 돌아와 난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羅界軍도 출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내용은 全羅抄軍別監이 보고하고 있다. 그의 직함에서 그가 전라도에서 군대를 징발하기 위해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징발된 군대는 全州와 羅州에서 각각 출발하게 되었는데, 羅界軍은 계수관 나주 관할의 군대를 가리킨다. 난을 일으킨 全州軍馬는 바로 계수관 전주 관할 군대로서 羅界軍에 상응하여 ‘全界軍’으로 지칭할 수 있다.

여기서 抄軍을 담당한 別監은 전라도를 대상으로 파견되었지만, 실제 군대 징발 업무는 계수관 전주와 나주로 나뉘어 수행된 것이다. 이 경우 계수관 전주 관할만 대상으로 하면 全州道, 나주 관할만 대상으로 하면 羅州道가 설정되고, 각각의 업무를 준거로 보면

100) 『高麗史』 권22, 고종 4년 정월 庚寅 “全羅抄軍別監洪溥 馳報 全州軍馬 年前十二月二十六日 催發 行五日 而還州作亂 殺逐長吏 因留住 由是 羅界軍亦不發”

101) 『高麗史』 권27, 원종 15년 6월 辛酉 “今年正月三日 伏蒙朝旨 打造大船三百艘 卽行措置 遣樞密院副使許珙於全州道邊山 左僕射洪祿適於羅州道天冠山 備材”

그의 직함이 전주도와 나주도로 이원화될 수 있다.

②는 2장에서 인용한 기사로, 원종 15년(1274) 몽고 황제의 명령으로 선박 건조를 위해 재목을 벌채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때 벌목처는 전주도의 변산과 나주도의 천관산이었다. 변산은 扶寧縣에 있으며 부령현은 古阜郡 屬縣이었다가 監務가 설치된 곳이다. 전주도라고 하는 것은 곧 계수관 전주 관할을 나타낸다. 천관산은 長興府에 있으며, 나주도 역시 계수관 나주 관할을 나타낸다.

이들이 각각 그 소속을 전라도가 아니라 전주도와 나주도라고 구분하여 밝힌 것은 계수관 전주 및 나주 관할의 군대를 동원하여 벌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全州의 司錄兼掌書記로 재임한 李奎報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규보는 신종 3년(1200) 정부의 명으로 변산에서 재목을 벌채하였다. 당시 그가 지은 시를 보면 벌목에 동원한 군대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8천여 보의 거리를 내왕하고 / 來往八千餘步地
46주의 군사를 지휘했네 / 指麾四十六州軍¹⁰²⁾

위에서 46州軍은 전주 관할 군현이 모두 46개인 것에 조용한다.¹⁰³⁾ 곧 이규보는 계수관 전주 관할의 군대를 동원해 재목을 벌채한 것인데, 이것은 원종 15년(1274) 기사에 보이는 전주도에 상응한다.

이처럼 고려의 지방 군사 운용은 계수관 단위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계수관 단위의 道가 설정되었다. 아주해도 입보 역시 이와 같은 구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당시 남도 지역의 해도 입보는

102) 『東國李相國集』 권9, 正月十九日 復到扶寧郡有作

103) 金皓東, 「高麗 武臣政權時代 地方統治의 一斷面 : 李奎報의 全州牧 ‘司錄兼掌書記’의 活動을 중심으로」, 『嶠南史學』37, 1987, 94-96쪽; 具山祐,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研究』, 해안, 2003, 192쪽.

모든 주민이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력 부대를 중심으로 입보하여 군사력을 보존하면서 유사시에 출륙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이 군대는 기본적으로 계수관 단위로 편정되었다. 따라서 입보한 군대가 출륙하여 전투를 벌일 때에도 계수관 단위의 운영 체계가 작동했을 것이다.

충청주도순문사 한취는 아주해도에 들어가 군대를 차출하여 전투에 투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것은 고종 4년(1217) 전라도에서 군대 징발 업무를 수행한 抄軍別監의 기능과 상통한다. 이 때 군대 징발이 전주와 나주로 나뉘어 이루어진 것처럼 아주해도에서의 군대 운용도 충주 관할 군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한취의 직함도 충주도순문사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해도에 입보한 군대의 움직임은 충주의 전황과 밀접히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몽전쟁기 충주의 전황을 통해 그러한 의미를 짚어보기로 한다. 충주는 개경에서 남하하여 경상도 방면으로 넘어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몽고군이 가장 집요하게 공략한 곳이었고, 남도 지역에서 가장 잦은 전투 기록이 나타난다.

고종 18년(1231) 12월 1차 침입 당시 몽고군이 廣州와 忠州, 淸州로 향하며 지나는 곳이 모두 전멸했다는 기사¹⁰⁴⁾를 통해 충주 방면으로도 공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충주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전황은 열전 기사에 보이는데, 관리와 양반은 도망하고 奴軍과 雜類만 남아 성을 지켰다.¹⁰⁵⁾ 忠州 奴軍은 도주했다 돌아온 관리들의 횡포에 맞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난은 世家에서 고종 19년

104)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12월 丁巳 “蒙兵向廣忠淸州 所過無不殘滅”

105) 『高麗史』 권103, 列傳16 李子晟 “初 忠州副使于宗柱 每簿書間 與判官庾洪翼有隙 聞蒙古兵將至 議城守 有異同 宗柱領兩班別抄 洪翼領奴軍雜類別抄 相猜忌 及蒙古兵至 宗柱洪翼與兩班等 皆棄城走 唯奴軍雜類 合力擊逐之”

(1232) 정월의 일로 확인된다.¹⁰⁶⁾ 이를 통해 몽고군의 충주성 공격이 前年 말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⁷⁾

몽고군의 충주 공격은 고종 말엽에 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몽고군이 전국적으로 공격을 가하던 시기였다. 자연 충주가 중요한 공격 대상이 되었다. 고종 40년(1253) 9월에는 忠州倉正 崔守가 金堂峽에 매복했다가 蒙兵이 이르자 공격하여 전과를 올렸다.¹⁰⁸⁾ 당시 몽고군은 也窟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충주를 포위 공격하고 있었다.¹⁰⁹⁾ 그런데 야굴은 이곳에서 병을 얻었고 곧바로 철군함으로써¹¹⁰⁾ 충주는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¹¹¹⁾

당시 전황에 대해 『高麗史節要』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충주가 몽고군이 포위를 풀었다고 보고하였다. 당시 충주가 포위당한 것이 무릇 70여 일이었는데, 군량이 거의 소진되었다. 防護別監 郎將 金允侯가 士衆을 달래고 독려하기를, “만약 힘을 다한다면 貴賤을 가리지 않고 官爵을 줄 것이다”라고 하며 官奴의 장부를 불태워 믿음을 보였다. 또 포획한 牛馬를 나누어주니 사람들이 모두 죽기로 싸웠다. 몽고군의 기세가 조금 꺾이고 마침내 다시 남하하지 못하였다.¹¹²⁾

106) 『高麗史』 권23, 고종 19년 정월 丙申 “忠州官奴 作亂 率樞 會崔瑀第 議發兵 州之判官庾洪翼 請遣使撫諭 卽以注書朴文秀 前奉御金公鼎 假屬內侍 爲安撫別監 以遣之”

107) 이 당시 방어전이 이루어졌던 충주는 州城으로 파악된다(윤용혁, 앞의 책, 1991, 249쪽).

108)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9월 乙酉 “忠州倉正崔守 設伏金堂峽 候蒙兵至 急擊殺十五級 奪其兵仗 與所虜男女二百餘人 以功 除陳正”

109)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10월 “是月 也窟等圍攻忠州 前少卿鄭壽 率二子 自京山府來降”

110)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11월 “也窟在忠州 得病 卜者曰 久留則難返 也窟留阿母侃洪福源 守之 率精騎一千 北還”

111)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12월 壬戌 “忠州馳報 蒙兵解圍”

112) 『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0년 12월 “忠州報 蒙兵解圍 時被圍凡七十餘日 兵食幾盡 防護別監郎將金允侯 諭厲士衆曰 若能效力 無貴賤悉除官爵 焚官奴簿籍 以示信 又分給所獲牛馬 人皆效死 蒙兵稍挫 遂不復南”

위의 기사에서 충주가 70여 일에 걸친 포위 공격을 막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전 기사에 따르면 당시 김윤후는 忠州山城防護別監에 임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¹¹³⁾ 전투는 山城이 아니라 州城에서 벌어졌다.¹¹⁴⁾ 위의 기사에서 官奴의 장부를 불태웠다는 것에서 州城에서 공방전이 벌어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¹¹⁵⁾

고종 41년(1254) 차라대가 이끄는 몽고군은 충주산성을 공격하였다.¹¹⁶⁾ 그러나 갑자기 비바람이 이는 틈을 타 충주에서 精銳를 보내 공격하였고, 몽고군은 포위를 풀고 그대로 남하하였다.¹¹⁷⁾ 고종 42년(1255)에는 몽고군이 大院嶺을 넘자 충주에서 정예를 보내 공격하여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¹¹⁸⁾

이처럼 몽고군이 계속해서 충주를 공격한 것은 그만큼 이곳이 전략적 가치가 높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충주 역시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했다. 특히 고종 40년(1253) 70일간의 포위 공격과 고종 41년(1254)의 공격을 막아낸 충주가 고종 43년(1256)에는 쉽게 함락된 것은 충주 방어 전력의 변화를 짐작케 한다. 바로 이 시기에 충주 군사력 일부가 아주해도로 입보함으로써 충주성의 방어력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¹¹⁹⁾

113)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允侯 “後爲忠州山城防護別監 蒙古兵來圍州城 凡七十餘日”

114) 윤용혁은 이 전투를 ‘충주산성 전투’라는 題下에 서술하였으나(윤용혁, 앞의 책, 1991, 284-288쪽), 당시 城內의 상황을 볼 때 州城이 포위된 것으로 판단된다.

115) 이것은 1차 전쟁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양반들은 山城으로 피했고 州城은 奴軍과 雜類가 방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州城-山城의 이원적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논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116) 윤용혁은 이 충주산성을 德周山城에 비정하였다(윤용혁, 앞의 책, 1991, 308쪽).

117) 『高麗史』 권24, 고종 41년 9월 癸丑 “車羅大攻忠州山城 風雨暴作 城中人抽精銳 奮擊之 敵解圍 遂南下”

118) 『高麗史』 권24, 고종 42년 10월 乙丑 “蒙兵踰大院嶺 忠州出精銳 擊殺千餘人”

119) 이것은 宋君斐가 입보한 長城의 笠巖山城에 대해 장정은 모두 투항하고 노약자만 남아 있었다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모두 주력 부대의 해도 입보로 방어력이 약화된 상황을 반영한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56쪽).

고려가 전력 분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도 입보를 선택한 것은 이전 방식으로 충주성을 계속 방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70일간의 포위 때 김윤후의 독려로 몽고군의 예봉을 꺾는 데 성공했지만, 당시에 이미 식량이 고갈되었다. 이후에도 계속 몽고군을 막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이에 일부 전력을 해도에 입보시킨 것이다.¹²⁰⁾

당시 해도 입보는 모든 전력이 해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성과 해도에 나누어 들어가 전략적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종 43년(1256) 초 전라도 방면으로 내려간 군대가 일부는 섬(槽島)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笠巖山城에 입보한 것도 이러한 전략 방안을 반영한다. 이 때 성에 입보한 군사는 성을 지키는 것이 주 임무였다면, 해도에 입보한 군사는 출륙하여 몽고군을 공격하여 진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고종 43년(1256)의 아주해도 출륙 전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군은 의도와 다르게 몽고군의 역습으로 전멸하였고, 이들의 진격을 저지할 방어선이 뚫리면서 충주성도 바로 공략을 당한 것이다.

당시 충주는 이전에 주력 부대의 포위 공격까지 막았던 것과 달리 곧바로 州城이 도륙을 당했고, 山城까지 공격을 당하자 官吏와 老弱은 月嶽神祠까지 올라가 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충주성에도 군사력이 있었겠지만, 이전에 비해 크게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성이 바로 함락되었던 것이다.

결국 아주해도 출륙 전투는 산성과 해도의 이원적 입보책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출륙 전투가 효과를 거두면 本城의 방어도 훨씬

120) 남도의 입보 명령은 고종 40년에 시달되었지만, 실제 충주 입보는 야굴의 포위 공격을 경험한 이후로 추정된다. 淸州의 해도 입보는 이보다 늦은 고종 43년 8월에 비로소 이루어졌다(『高麗史』 권24, 고종 43년 8월 庚辰 “遣將軍宋吉儒徙淸州民于海島”).

용이해지지만, 출륙 전투에 실패하면 본성 방어도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앞서 大府島別抄의 출륙 전투 또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아주해도 출륙 전투가 있기 10일 전에 대부도의 별초가 인주 소래산 아래로 나와 몽고군을 습격하여 전과를 거두었다. 이 작전 또한 몽고군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어 몽고군이 더 남하하자 이번에는 아주해도의 군대를 대규모로 동원하여 적극적인 공격에 나섰다가 역습을 당했던 것이다. 당시 출격은 대부도별초의 전과를 다시 노린 것이었지만, 몽고군 또한 그러한 공격에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역습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군대가 주둔하며 출륙 전투를 수행한 大府島와 牙州 海島는 같은 섬일 가능성이 높다.¹²¹⁾ 아주해도가 어디인지 그 자체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해도 입보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면 대부도 외의 다른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다.

해도 입보는 바다를 매개로 몽고군의 공격을 차단함과 동시에 고려군이 출륙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안에 인접하고 해로를 통한 교통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섬은 군대와 주민의 출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입보가 곤란하다. 또한 입보는 조건이 좋은 곳에 다수의 군현이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야 입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와 작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결국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입보가 이루어지는 해도는 연안의 큰 섬을 위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¹²²⁾

121) 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51-52쪽.

122) 아주해도에 대해 윤용혁은 仙甘島(윤용혁, 앞의 책, 1991, 115쪽), 혹은 仙藏島(윤용혁, 앞의 논문, 2000, 85쪽)로 보았다. 이 중 후자는 『고려사』 지리지 天安府 연혁에서 천안부 주민이 몽고군을 피해 선장도에 들어갔다는 기사에

이러한 조건은 대몽전쟁 초기에 北界 州鎮의 입보를 통해 확인되지만,¹²³⁾ 남도의 경우도 그 원리는 다르지 않다. 충주 관할의 군대가 입보하고 9척의 배로 동원되는 군대가 머물러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섬일 것이다. 그리고 출륙을 통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곳이라면 응당 연안에 인접할 것이다. 아산만 일대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섬은 대부도 외에는 찾기 어렵다. 결국 아주해도는 대부도에 비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각각의 기사에서 대부도와 아주해도로 서로 다르게 지칭된 이유는 무엇일까. 실상 입보와 출륙 과정에서 해도의 명칭을 직접 언급하거나 막연히 ‘섬[島]’으로만 나타내지 않고 ‘牙州海島’로 지칭한 것 자체가 예외적이다. 이는 해당 섬을 인식하는 데 있어 아주가 하나의 준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군대의 출륙 형태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대부도는 당성현(남양도호부)에 바로 인접해 있다. 별초는 이곳으로 바로 나와 북상하여 인주 소래산에서 몽고군을 기습하였다. 따라서 군대 이동에서 선박을 이용한 이동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출륙한 해도의 명칭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아주해도 출륙 전투는 9척의 배를 통해 군대를 보낸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군대가 배를 통해 이동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주해도’라는 명칭을

의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략적인 입보가 아니라 특정 주민의 피난 성격을 띠고 있고, 천안부는 청주 관할로서 충주의 입보와는 구분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 한편 강재광은 기존의 비정을 비판하면서 입화도·육도·풍도 중 어느 섬이었으며, 그 중 입화도가 유력하다고 보았다(강재광, 앞의 논문, 2014, 54-56쪽).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비정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추정을 넘기 어렵다. 더구나 입화도는 실제 입보가 확인되는 대부도나 압해도에 비해 현격히 작은 규모이고 해안과의 거리도 멀어 실제 군사력이 입보하여 작전을 수행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남도 지역의 입보 해도 비정은 전략적 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입보 사례와 비교하여 유사한 조건을 갖추었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123) 윤경진, 「고려후기 北界 州鎮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

고려하면 이 군대는 대부도에서 남하하여 현 아산만으로 들어와 아주 연안에 상륙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이들이 해도에서 아주를 경유해 나왔기 때문에 그 출발지를 아주해도로 칭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이 출륙하여 몽고군과 전투를 벌인 곳은 명확치 않다. 다만 당시 몽고군의 진로를 보면, 인주 방면에서 전투를 치른 뒤 남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충주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예상 진로는 안성과 음성을 거쳐 충주로 이어지는 경로로 생각할 수 있다. 고려군이 배를 통해 아주로 상륙한 것은 바로 몽고군이 남하하는 데 대응하여 그 배후를 공격하여 진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비추어 전투 지점은 안성 인근이 될 것이다.

끝으로 지적할 점은 아주해도 출륙 전투 이후 몽고군의 진로 변동이 감지된다는 점이다. 고종 45년(1258) 다시 한번 충주 방면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이 달에 忠州別抄가 朴達峴에 매복하고 있다가 몽고군을 습격하여 사로잡고 있던 人物과 牛馬, 兵仗을 빼앗았다.¹²⁴⁾

위의 전투는 이전의 전투와 다소 맥락이 다르게 파악된다. 통상적인 충주 공격 경로는 안성과 음성을 거쳐 충주로 올라오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위에서 전투를 벌인 박달현은 忠州와 堤州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여기서 전투를 벌였다는 것은 몽고군이 제주 방면에서 충주로 내려오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곧 몽고군의 충주 공격 경로가 바뀐 것이다.¹²⁵⁾

124) 『高麗史』 권24, 고종 45년 10월 “是月 忠州別抄 設伏朴達峴 狙擊蒙兵 奪所擄人物牛馬兵仗”

125) 당시 몽고군 본진은 窄梁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高麗史』 권24, 고종 45년 9월 庚午 “蒙兵自窄梁 來屯甲串江外 籠絡山野”), 충주 방면으로 내려온 것은 선봉군으로 추정된다.

왜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주해도 출륙 전투의 영향이 아닐까 한다. 전투 당시 몽고군은 고려군의 진주를 알았기 때문에 역공을 통해 이들을 몰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면에서 해도에 입보한 군사력이 언제든지 배후를 공격할 수 있음을 경험한 이상, 다시 이 경로를 이용해 충주로 진주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原州와 堤州를 거쳐 충주로 내려오는 형태로 진로를 바꾼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주해도는 대부도에 비정되며, 출륙 전투는 몽고군의 충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을 알 수 있다. 고려는 충주가 몽고의 집중적인 포위 공격을 받게 되자 일부 군사력을 해도에 입보케 하여 산성과 해도를 병용하는 전략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고종 43년(1256)의 출륙 전투는 몽고군이 미리 알고 역습함으로써 고려군이 몰살되었고, 충주도 몽고군의 공격으로 함락되었다. 그러나 해도 쪽의 공격 위협이 확인되자 몽고군은 제주 방면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공격 진로를 수정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맺음말

이상에서는 고려 대몽전쟁기 海島 관련 전투에 대해 槽島의 위치 비정과 牙州海島 出陸 전투의 勝敗 판단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각각에 연계된 전황을 검토함으로써 대몽전쟁의 구체적인 일면도 조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槽島의 위치에 대해서는 서해도 소속으로 보는 견해와 전라도 소속으로 보는 견해가 나뉘어 있으며, 각각 椒島와 현 智島에 비정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전황에 비추어 서해도에 비정하는 견해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우선 초도가 입보처로 활용되는 것은 원종대로서 강화 교섭에 따라 몽고군이 기존의 입보 해도를 접수한 것에 대응하여 이에 반발한 일부 세력이 새로 입보처를 마련한 것이었다. 따라서 원종대 이전에 초도가 입보 해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또한 불과 4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槽島와 椒島로 명칭이 다르게 나오는 것도 불합리하다.

초도 이외의 서해도 도서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몽고군이 서해도 서부 연안 도서를 공격하려면 西京이나 海州 방면에서 해로를 이용하거나 내륙으로 서부 연안까지 진출해야 했다. 그런데 서경은 고종 20년(1233) 畢賢甫 등의 반란으로 폐허가 되었고, 고종 46년(1259) 王萬戶가 주둔하며 古城을 수축하고 屯田을 두면서 비로소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당시 왕만호가 전함 건조에 나선 것은 이를 발판으로 서해안 도서 공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해주 방면은 고종 44년(1257) 강화 교섭의 진척에 따라 몽고군이 鹽州로 물러나 주둔하면서 비로소 전략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이 시기에 神威島와 昌麟島 공격이 있었다. 몽고군은 黃州와 鳳州, 洞州를 경유하는 崑嶺路를 통해 남진하였고, 전쟁 초기에 信州와 安州에 선봉군이 진출한 것 외에 연안까지 나아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몽고군의 연안 진출은 고종 46년(1259) 왕만호의 서경 주둔에 수반되어 비로소 나타난다. 이러한 전황을 볼 때 조도는 서해도에 비정하기 어렵다.

반면 조도 공격 이후의 전황은 이곳이 전라도 연안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고려는 조도 전투가 있는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몽고군이 선박을 건조해 해도를 공격하려 한다는 보고에 따라 舟師를

파견하였다. 보고와 대책 마련에 걸리는 시간과 파견된 군사가 남하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이 조치가 조도 공격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남하하여 靈光 방면으로 갔으나 몽고군이 대비하자 일부는 섬(槽島)으로 돌아오고 일부는 笠巖山城에 입보하였다. 이에 비추어 조도는 영광 인근의 섬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시 전황은 몽고군 본진의 위치와도 연관된다. 고종 43년(1256) 중반 차라대의 본진은 전라도 남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고, 당시 70척의 배를 마련하여 押海島를 공격했으나 실패하였다. 당시 이들이 이러한 규모의 선박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재목을 공급하는 邊山 지역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변산은 李奎報의 글에 보이듯이 고려의 재목 조달처였고, 원종 15년(1274) 몽고의 요구로 일본 원정에 필요한 배를 건조할 때 天冠山과 함께 재목 공급처로 언급된 곳이다. 몽고군은 전라도 방면으로 진출하여 변산 지역을 장악하고 선박을 건조하면서 조도와 압해도를 연이어 공격한 것이다.

몽고군의 서해도 도서 공격은 고종 44년(1257) 개경 인근까지 내려왔던 본진이 강화 교섭에 따라 염주로 물러나 주둔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몽고는 신위도를 공격해 함락하였고, 이어 창린도를 공격했다가 패퇴하였다. 당시 몽고군의 해도 공격은 앞서 있었던 전라도 도서 공격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으로, 강화도의 고려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牙州海島 관련 전투는 그 승패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문법적 맥락은 고려군의 패전으로 보아야 한다. ‘欲’은 의도를 나타내므로 그 뒤에는 이를 위해 취한 행동이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가 오게 되는데, 아주해도 관련 전투는 후자에 해당한다. 고려군의 공격 의도와 다른 결과, 곧 패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전투에 이어 동일 기사에 몽고군의 충주 공격과 함락 내용이 이어진다. 한 기사에 보이는 몽고군이 서도 다른 부류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몽고군은 건재한 것이고, 따라서 고려군이 몰살된 것이어야 한다. 기존 승전론은 『고려사절요』에 이 기사가 둘로 분리된 것으로 인해 별개의 상황으로 보고, 전자를 해도 관련 전투 내지 해전으로, 후자를 산성 입보 전투로 나누어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아주해도 관련 전투는 몽고군이 배를 타고 와서 전투를 벌일 여지가 없다고 보면, 앞서 있었던 대부도별초의 출륙 전투와 마찬가지로 상륙전으로 이해해야 한다.

패전으로 읽히는 문맥에도 불구하고 승전론을 주장하는 주된 논거는 지휘관으로 판단되는 韓就가 전투 후에도 생존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忠州道巡問使 한취는 관내를 순행하던 중 정부의 명에 따라 아주해도에 들어가 군대를 차출하여 전투에 보내는 發兵 업무를 본 것이지, 직접 전투를 지휘한 것이 아니다.

당시 순문사는 按察使와 유사한 別命使臣으로서 정부의 통첩을 받아 수령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한취 역시 富城縣尉를 천거한 기사를 통해 순찰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취에 대해 “아주해도에 있으면서”라는 설명을 붙인 것은 그가 군대와 함께 출륙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그는 전사할 이유도, 패전의 책임을 질 이유도 없었다.

한편 한취의 본래 직함은 그가 청주 관할인 부성현위의 천거를 행한 것에서 忠淸州道巡問使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가 전투 기사에 충주도순문사로 나오는 것은 그의 업무가 계수관 충주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고려에서 지방군은 계수관 단위로 편성되어 작전을 수행했으며, 이에 맞추어 각 계수관 단위로 道가 설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서 남도의 해도 입보는 대개 계수관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군사력을 보존하고 유사시에 출륙하여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이것은 산성 입보와 병행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아주해도에는 충주 관할의 군대가 입보해 있었으며, 충주를 공격하는 몽고군을 저지하기 위해 출륙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다. 한취는 이러한 충주 관할 군대를 대상으로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충주도순문사로 나오게 된 것이다.

실제 아주해도 전투는 충주 방어와 연계되어 있었다. 몽고군은 경상도로 넘어가는 요충인 충주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였다. 고종 40년(1253)에는 몽고군이 충주성을 70여 일 동안 포위 공격하기도 하였다. 충주는 여러 차례 몽고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포위 당시 성내의 식량이 고갈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던 데서 드러나듯이 산성 중심의 방어를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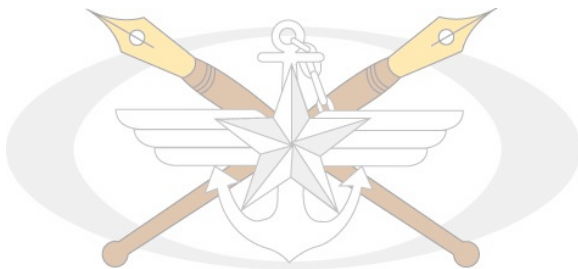
이에 고려는 군대 일부를 해도에 입보시켜 이원화된 방어 전략을 도모하였다. 산성이 거점을 지키는 방어에 초점이 있다면 해도 입보는 출격하여 적의 진로를 차단하는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전술이었다. 그러나 전투력이 나뉘면서 산성의 방어력이 약화되는 위험이 있었다. 아주해도 출륙 전투는 몽고군의 충주 진주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것이 실패하면서 충주는 州城과 山城이 연이어 함락되는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해도에서의 출륙 공격을 의식한 몽고군은 이후 충주 전투에서는 堤州 방면에서 공격하는 전술 변화를 보였다.

아주해도는 해도 입보가 연안 지역의 규모가 큰 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대부도에 비정된다. 아주해도 출륙 전투에 앞서 대부도별초가 仁州 방면으로 출륙하여 전투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아주해도 출륙 전투와 같은 맥락을 띠고 있다. 이 때 대부도가 아니라 아주해도로 기재된 것은 이들이 배를 타고 아산만으로 내려와 아주에 상륙한 뒤 전투에 나섰기 때문이다.

[원고투고일: 2015.3.31, 심사수정일: 2015.5.19,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槽島, 西海道, 全羅道, 牙州海島, 大府島, 忠州, 韓就, 巡問使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Reexamination of Battles that involved islands(located in the middle of the sea) during the War against the Mongol Invasion forces : Determining the location of the Jo island(槽島), and examining the results of Goryeo troops' amphibious operation which broke out when Goryeo troops returned to the land from A-ju island(牙州海島出陸戰鬪)

Yoon, Kyeong-jin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he battles that took place over the sea or in coastline areas, between the defending Goryeo forces and the invading Mongol troops, during the early 13th century. The issue became a rather sensitive topic recently, and a renewed perspective of that issue is required.

Previously, “Jodo(槽島)” was believed to have been an island in the vicinity of the Seohae province(西海道), but at that time, Seohae-do was only upon the route that led to the Gaegyeong(開京) capital of Goryeo, and there is no indication that an assault upon the islands was launched from this location. Instead, right after the Jodo battle, in response to the Mongol troops ‘overall offensive targeting islands in the sea, the Goryeo government dispatched troops to the Jeolla-do(全羅道). Considering such move, and the whereabouts of the Mongol main battal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assume that Jodo was located in a position near that province, which was certainly better equipped and prepared, in terms of supporting the government’s defense efforts that would have most definitely included ship building.

The so-called “A-ju island(牙州海島)” battle was not a battle that

took place upon the sea, as it was fought by Goryeo troops which returned (from the island) to the land. And considering other references in key records, which depicted the Mongol troops' continuing offensive against the Chungju(忠州) area, it would be hard to describe the outcome of this battle as a victory for the Goryeo troops. The island in question seems to have been the Daebu-do(大府島), where a rather large military forces composed of Chungju soldiers was stationed. Han Chwi(韓就), the Sunmun-Sa(Provincial Magistrate in the region : 巡問使) of Chungju-do(忠州道), was not a military commander but a civilian official who received an order from the government to secure necessary number of troops for upcoming missions. Shortly after that, Goryeo troops tried to prevent Mongol forces from attacking Chungju, but failed, and as a result Chungju fell.

Key words : Jodo(槽島), Seohae-do(西海道), Jeolla-do(全羅道), A-ju island (牙州海島), Daebu-do(大府島), Chungju(忠州), Han Chwi(韓就), Sunmun-sa(Provincial Magistrate in the region : 巡問使)

세종대 파저강(婆猪江) 재정벌(再征伐)과 대외정벌 정책*

이 규 철**

1. 머리말
2. 파저강 재정벌의 준비와 단행
3. 북방 개척과 대외정벌
4.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세종의 재위기는 조선의 대외정벌 정책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였다. 조선은 건국 이래 북방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태조와 태종은 명(明)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압록강과 두만강 북변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 본고는 박사학위논문 『조선초기의 對外征伐과 對明意識』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

이러한 조선의 대외정책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정벌(征伐)’이었다.

세종은 파저강(婆猪江) 정벌에서 큰 성과를 올렸음에도 이만주(李滿住) 세력에 대한 재정벌(再征伐)을 계획하고 있었다. 1차 토벌 때는 이만주 세력에 대한 출병에 찬성했던 신료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무리 없이 정벌을 추진해서 시행할 수 있었다. 반면 재정벌을 추진할 때에는 대부분의 신료들이 세종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파저강 일대에 대한 재정벌을 단행했다. 이는 1차 정벌 때의 성과를 통해 세종의 국정 주도권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파저강 재정벌의 최우선 목표는 이만주의 포착이었다. 당시 조선이 이만주 포착을 정벌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건주위 여진 세력에서 구심점이 되었던 존재를 제거해 조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압록강 일대의 여진 세력에 대한 명과의 주도권 다툼이었다. 조선은 사실상 자신이 영향력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파저강 일대에 이만주 세력이 명의 승인을 명분으로 이주했던 상황을 좌시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더욱이 이만주 세력은 조선보다는 명과의 관계를 보다 중시했다. 따라서 조선은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을 통해 압록강 일대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세종대 파저강 재정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두 명의 연구자가 의미 있는 연구성과를 남겼다. 우선 강성문은 재정벌의 원인을 이만주가 조선과 명의 관계를 이간하고 변경 지역의 계속된 침입 침입을 주도했음에도 책임을 홀라온 올적함에 돌렸던 태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은 압록강 유역 여진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파저강 야인들을 지원해 양측의 세력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 재정벌의 목표가 이만주의 포착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당시 조선군이 이만주의 포착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재정벌이 실패로 평가될 수 있었지만 세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벌군의 공훈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¹⁾

노영구는 재정벌에 대한 기존 연구의 관심이 적었던 원인을 1차 정벌에 비해 적은 성과만을 얻어 완승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정벌의 원인으로서는 그 역시 이만주 세력의 침입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조선의 정벌이 사실상 실패했던 원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우선 1차 정벌 때와는 달리 6진 개척에 따른 여진족의 이합집산 현상으로 압록강 중·상류 지역과 두만강 하류 지역의 방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2차 정벌에서는 군사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전과는 달리 정벌의 준비와 시행에 대해 조정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세종이 일부 신하들과 이를 추진했던 점도 군사 행동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원인으로 지적했다.²⁾

두 연구자 모두 기존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세종대의 파저강 재정벌을 주목해서 출병의 과정과 결과 등을 설명하고자 한 점은 조선초기의 전쟁과 대외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재정벌의 과정에 대한 기본적 내용들은 충분히 밝혀졌다. 특히 명과 건주위 이만주 세력의 관계와 조선의 압록강 일대 여진 세력에 대한 영향력 문제에 주목하고자 했던 부분은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정벌 자체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다 보니 조선의 의도와

1) 姜性文, 1986 「世宗朝 婆猪野人の 征伐研究」, 『陸士論文集』 30, 165~166쪽, 168~169쪽, 173쪽, 175쪽 참조.

2) 노영구, 2008 「세종의 전쟁수행과 리더십」, 『오늘의 동양사상』 19, 예문동양사상연구원, 141쪽, 152~153쪽 참조.

당시 국제관계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논증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미흡하게 느껴진다. 특히 정벌의 원인을 이만주 세력의 침입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만 파악했던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당시 세종은 첫 번째 파저강 정벌을 시행한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지역에 대한 출병을 결정했다. 이는 단순히 외부 세력의 침입에 대한 대응이라기 보다는 조선의 대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벌을 상시적으로 준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세종대 단행되었던 파저강 재정벌을 둘러싼 조선 조정의 논의와 실행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종대 시행되었던 파저강 재정벌의 원인과 조선 조정의 의도 등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의 대외정벌 정책이 북방 정책 속에서 갖는 의미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5세기의 조선이 대외정벌의 실패가 가져올 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여진 지역에 대해 출병했던 원인 등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파저강 재정벌의 준비와 단행

세종은 1차 파저강 정벌에서 큰 성과를 올렸음에도 이만주 세력에 대한 재정벌을 계획하고 있었다. 파저강 재정벌은 언뜻 보기에 건주위 야인의 침입 때문에 촉발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우선 건주위(建州衛) 야인들의 침입에 대한 기록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세종 17년(1435) 1월 평안도감사는 오랑합(吾良哈) 야인 2,700여 명이 여연성(閔延城)을 공격해 왔지만 격퇴했다고 보고했다.³⁾

3) 『世宗實錄』 권67, 世宗 17년 1월 18일 경인

그런데 5개월 후 귀화한 파저강 야인이 이만주와 홀라온 올적합(忽刺溫 兀狄哈)이 여연을 침략해 남자 두 명을 살해하고 남녀 7명, 말 6필, 소 5마리를 사로잡아 갔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세종은 즉시 도절제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는데, 이 정보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여연 지역의 장수들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⁴⁾

7월에는 평안도감사가 야인 20여 명이 강을 건너와 소훈두(小薰豆) 지역에서 조선군과 교전 중이라는 소식을 보고했다. 이에 세종은 정승들에게 황제의 조치에 따라 야인들을 침벌하지 않고 무효했는데 봄부터 계속 침범을 하니 이러한 사정을 자세하게 적어서 황제에게 보고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동시에 야인에 대한 처치를 일일이 황제에 주청한다면 이것이 전례로 남게 될 상황을 우려하며 신하들의 의견을 구했다. 대신들은 야인들이 변경을 침범했던 사유만 갖추어 주청하자는 의견을 냈다.⁵⁾

7월 25일에는 야인 20여 명이 다시 여연을 침략해 조선군 3명이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다.⁶⁾ 결국 조선에서는 9월에 동지중추원사 이사검(李思儉)을 정조사로 파견하면서 야인들의 변경 침입 문제를 함께 주문하도록 했다.⁷⁾ 다음 해 2월 이사검은 황제의 칙서를 받아서 귀환했다. 정통제는 칙서에서 야인들이 다시 침범할 경우 그들의 근거지를 섬멸해서 변방 백성을 보호하고 편안함을 얻게 하라고 지시했다.⁸⁾ 야인의 침략이 또 있을 경우 사실상 조선의 군사 행동을 허락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해 5월에는 올랑합 5백여 기가 여연의 조명간 구자(趙明干

4) 『世宗實錄』 권68, 世宗 17년 6월 13일 계축

5) 『世宗實錄』 권69, 世宗 17년 7월 16일 을유

6) 『世宗實錄』 권69, 世宗 17년 7월 25일 갑오

7) 『世宗實錄』 권69, 世宗 17년 9월 21일 기축

8) 『世宗實錄』 권71, 世宗 18년 2월 17일 계축

口子)를 다시 공격해 조선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⁹⁾ 다음 달 세종은 신료들에게 태종대의 정벌과 이만주의 침입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만주에 대한 제어책을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97명의 신료들이 세종의 지시에 따라 야인 제어 대책을 보고했다.¹⁰⁾ 세종은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신료들이 출병을 건의했지만 흉년 때문에 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변방 방어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건주위 야인들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¹¹⁾

실록의 기록에서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세종이 4품 이상의 신료들에게 변방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내용에는 파저강 정벌 계획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 변방 제어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태종대 정벌을 통해 야인을 제압했던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¹²⁾ 실제로 신료들이 제안한 변경 대책에는 찬반의견이 섞여 있었지만 반대의견이 훨씬 많았다.¹³⁾ 정벌 시행에 찬성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았지만 매우 적었다. 조정의 대부분이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다음과 같은 의견까지 제시되었다.

저 이만주란 자는 산간의 조그마한 오랑캐입니다. 그 산세의 험함에 의지하고 홀라온의 세력에 의탁하여, 숲속에 숨어 있다가 몰래 도둑질할 계획을 노리고 있으니 그 죄가 가득차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크게 거사하여 들어가 정벌하여 북방을 돌아보게 하는 우환을 영원히 근절시킬 때가 지금입니다.

9) 『世宗實錄』 권72, 世宗 18년 5월 23일 무자

10) 『世宗實錄』 권72, 世宗 18년 6월 20일 을묘

11) 『世宗實錄』 권73, 世宗 18년 윤6월 16일 경진

12) 『世宗實錄』 권72, 世宗 18년 6월 20일 을묘

13) 세종은 4품 이상의 대신들이 건의했던 외구 제어책 두 질을 초출, 등사하여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蕝)에게 보냈다. 상당히 많은 양의 기록이었는데 이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정벌에 관한 것이었다. 의견에 대한 건의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정벌 시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조정에서는 출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世宗實錄』 권73, 18년 世宗 윤6월 18일 계미).

그러나 적도들이 이와 같은 까닭은 모두 전일에 (저들의) 죄악을 토벌하는 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 정벌하게 되면 그들의 분노가 더욱 깊어지게 되어 보복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변경이 충실하지 못한데 어찌 그들을 감당하겠습니까?¹⁴⁾

위의 기록에 따르면 건의자는 이만주 세력이 조선의 변경을 침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야인들이 최근 조선의 변경을 침입했던 원인이 조선의 정벌 때문임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토벌에 반대했다. 야인들의 침입이 증가한 중요한 원인이 오히려 조선의 정벌이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세종은 함길도 감사 정흠지(鄭欽之)에게 전지를 내려 조선의 변경을 침입했던 야인의 정체에 대한 정보들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정보 활동을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세종은 이만주가 흘러온 울적함이 조선의 변경에 침입한 일에 자신은 관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도 공격을 당했다고 했던 진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선의 변경을 침입한 세력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김종서의 보고를 통해 이만주 세력이 실제로 다른 여진 세력에게 공격당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동시에 세종은 이만주가 여러 번 침입해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마땅히 토벌해야 하지만 흉년 때문에 군사를 움직일 수 없어 아직 내버려두고 있다고 했다.¹⁵⁾

조선의 변경을 침입했던 여진 세력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그 주체라고 의심했던 이만주가 다른 세력들에게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세종은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만주 세력에 대한 재정벌 의지를

14) 『世宗實錄』 권73, 18년 世宗 윤6월 18일 계미

15) 『世宗實錄』 권74, 世宗 18년 7월 18일 신해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세종이었다. 앞서 그는 신하들의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의사를 표명했다.¹⁶⁾ 하지만 당시 신료들이 실제로 정벌을 건의했던 기록은 찾기 어렵다. 또 파저강 야인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던 조치를¹⁷⁾ 통해서도 세종의 정벌 의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와중에 흘러온 울적합의 조선 변경에 대한 침입은 계속 되었다.¹⁸⁾ 9월 말에는 3천여 명에 달하는 울적합이 경원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¹⁹⁾ 이러한 상황이 되자 세종 역시 이만주가 흘러온 울적합과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만주 세력과는 상관없이 흘러온 울적합이 단독으로 변경을 침입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세종은 끝까지 파저강 야인과 흘러온 울적합의 공모설을 부정하지 않았다.²⁰⁾

조선의 정벌이 침입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당연히 울적합 정벌이 준비되어야 했다. 조선의 변경을 계속 침입하고 있었던 것은 이만주 세력이 아니라 흘러온 울적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은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반면 울적합에 대한 정벌 의지는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²¹⁾ 이것은 조선의 대외정벌이 단순히 외부 세력의 침입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16) 『世宗實錄』 권73, 世宗 18년 윤6월 16일 경진

17) 위와 같음.

18) 『世宗實錄』 권74, 世宗 18년 9월 7일 기해

19) 『世宗實錄』 권75, 世宗 18년 10월 3일 을축

20) 『世宗實錄』 권75, 世宗 18년 10월 6일 무진

21)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는 세종에게 울적합 정벌을 건의했다. 이에 세종은 재이(災異)와 흉년이 겹치고 북방의 민심이 안정되어 있지 못해 경솔히 군사를 일으킬 수 없다며 정벌 계획을 일단 유보하도록 지시했다(『世宗實錄』 권75, 世宗 18년 11월 5일 병신). 세종은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세종의 태도 역시 조선초기 대외정벌의 원인을 외부 세력의 침입에서만 찾는 시각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준비되어 시행된 대외정책의 한 가지였음을 의미한다.

다음 해(1436) 5월 세종은 야인들이 계속 침범한다면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평안도 변경 지역에 대한 체탐(體探) 활동을 통해 이들의 근거지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²²⁾ 이 와중에 함길도 감사 이숙치(李叔峙)는 이만주가 아목하(阿木河) 지방 야인들의 건주위 이주를 허락하는 내용의 칙서를 받아서 국경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건주좌위 도독이던 동범찰(童凡察)은 이만주의 세력권으로 이주해 살고자 했지만 조선의 눈치를 보느라 옮겨가지 못하고 있었다. 범찰은 지휘 이율흑(李兀黑)을 명에 보내 이주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고, 황제가 이들의 이주를 공식적으로 허락한다는 칙서를 내렸던 것이다.²³⁾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는 이만주가 국경 근처에 와서 여러 날을 머무르니 기회를 봐서 토벌할 것을 건의했다.²⁴⁾ 하지만 세종은 함부로 움직이지 말도록 지시했다.²⁵⁾

그런데 세종은 사흘 후 정승들을 불러 이만주가 성지를 청탁하여 조선의 국경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며 토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황희 등은 이만주가 성지를 받들고 와 있으므로 토벌할 수 없고, 침략하려는 기미가 없는데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킬 수 없다며 반대했다. 또한 토벌에 대한 소식이 명에 전해지는 것은 더욱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록 성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니, 성지가 왔던 오지

22)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11일 경자

23)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12일 신축

24) 이만주가 머물렀던 곳은 실록의 기록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함길도감사 이숙치의 보고 내용과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의 보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황제의 칙서를 전달하기 위해 아목하(阿木河) 지방까지 직접 와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5)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13일 임인

않았던 진실로 논할 것이 없다. 하물며 전에 성지가 있어, “야인에게 만약 성과를 올릴 만한 형세가 있거든 비록 그 처소에 들이닥쳐 사로잡아 오더라도 오히려 가하다.”고 했다. 지금 이유 없이 갑자기 국경 근처에 이르렀으니 어찌 토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저들이 혹여 우리 땅에 더욱 가까워진다면 역시 명분 없는 군사라 생각하여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버릴 수 없다는 것인가?²⁶⁾

위의 기사에서는 세종이 이만주가 아목하 지역의 야인들에게 황제의 칙서를 전하기 위해 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칙서의 내용은 조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세종은 다른 국가나 세력에게 내린 황제의 지시는 조선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세종은 이만주가 이유 없이 국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만주가 황제의 칙서를 전달하라는 황명(皇命) 때문에 이 지역에 와 있다는 점을 세종은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만주 역시 황명을 전하러 온 자신을 조선에서 공격하거나 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국경 근처까지 칙서를 갖고 직접 왔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은 자기만의 논리를 강변하면서 이만주에 대한 정벌을 정당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조선에 내려트던 칙서의 내용 중에 “야인에게 만약 성과를 올릴 만한 형세가 있거든 비록 그 처소에 들이닥쳐 사로잡아 오더라도 오히려 가하다.”고 한 부분을 근거로 이만주 토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세종은 황제의 지시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거나 무시하고 있었다. 특히 이만주에 대한 토벌이라는 국가적 목표 앞에서 사대명분까지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은 새로 설치된 4진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26)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16일 을사

지적하며 정벌 계획을 중지시켰다.²⁷⁾ 일단 신하들의 정벌 반대의 견을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안도 변경 지역에서는 체탐 활동을 강화하면서 파저강 야인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²⁸⁾ 세종은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내린 전지에서 체탐 활동의 강화가 정벌에 필요한 적의 형세와 지형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했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정보 활동은 오히려 적에게 조선의 의도가 발각될 위험성이 있으니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적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²⁹⁾ 세종은 체탐 활동과 정벌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표명했던 것이다.

결국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蕝)은 체탐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적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파저강 정벌에 대한 계획을 상언했다.³⁰⁾ 이에 세종은 대신들에게 계축년(세종 15년, 1433)에 파저강을 정벌하면서 다시 거사할 계획이 있었다는 점과 황제의 칙서에 야인의 소굴을 추궁하라고 한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파저강 정벌에 대한 뜻이 오래 전부터 있었음을 밝히며, 정벌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가을에 출병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³¹⁾ 이 과정을 살펴보면 세종은 사실상 정벌 의사를 확정해 놓고 있었으면서도 신료들과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때문에 세종은 이천에게 내린 전지의 초고를 직접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 역시 국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도승지 신인손(辛引孫)과 좌부승지 김돈(金敦)에게만 보여주었다. 아울러 보안을 이유로 다른 신료들에게 정벌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도록 지시

27)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20일 기유

28)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21일 경술;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28일 정사

29)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6월 9일 정묘

30)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6월 11일 기사

31)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6월 14일 임신

했다. 그리고 예전 논의에서 정벌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찬성 신개(申概)에게 두 승지를 보내 용병 계획을 논의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³²⁾

세종은 집권 전반기에는 비교적 많은 토론을 거쳐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국정 주도권을 국왕이 가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논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많았지만 대신들의 의견을 많이 묻고 또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파저강 정벌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결정하는 일에서 세종은 대신들의 의견을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신료들의 논의가 정벌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자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소수 측근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벌의 시행을 결정했다.³³⁾

이는 세종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 자신의 의도를 보다 많이 반영할 것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태조대 요동 정벌 추진 과정과 같이 국왕과 최측근 신하들이 국정의 중심에서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운영 방식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세종의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세종 15년에 단행했던 파저강 정벌의 성공이었다고 생각한다. 세종은 정벌의 성과를 통해 대외적으로 조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에 성공했음은 물론 국내 정치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상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해서 얻은 성과였던 만큼 세종은 정벌의 성공을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

32)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6월 14일 임신

33) 실록의 기록에서 파저강 재정벌을 지지했던 것은 승지들과 신개 정도로만 확인된다. 하지만 세종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종서가 함길도 도절제사로 있으면서 홀라온 울적함에 대한 정벌을 계속 건의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역시 세종의 파저강 정벌 추진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으로 세종은 정벌이라는 큰일을 거의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대외정벌을 시행해 이를 바탕으로 파저강 일대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판단한다.

당시 조선의 재정벌 목표 중 중요한 한 가지가 이만주의 포착이었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충분히 설명되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아직 이만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승지 김돈은 이만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한양에 와 있었던 범찰의 수하 고치(古赤)에게 정보를 얻을 것을 제안했다.³⁴⁾ 조선은 결국 고치에게서 이만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이를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전달했다. 당시 세종은 이만주가 정벌군을 피해 도망가거나 이주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했다.³⁵⁾

조선에서 정벌을 통해 이만주를 포착하고자 노력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된다. 우선 건주위 야인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이만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은 여진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조선에서는 여진 세력이 경제와 군사 등의 문제에서 자신들에게 의지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능력 있는 추장을 중심으로 여진 세력을 규합해 주변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면 조선의 통제력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당시 조선에서 이만주가 조선보다는 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추장이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만주는 파저강 일대로 이주해 올 때 조선의 허락을 구하기에 앞서 황제의 성지를 받아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³⁶⁾ 이러한 구도에서 조선은 이만주가 파저강에 살면서 조선의

34)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7월 19일 정미

35)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7월 19일 정미

36) 『世宗實錄』 권24, 世宗 6년 4월 26일 신미

영향력 아래에 들어온다기보다는 명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타타르(韃靼) 군의 침입 때문에 파저강 일대로 이주해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했을 수 있다.

더욱이 이만주는 파저강 일대로 이주해 오고서도 조선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이만주가 파저강 일대, 더 크게는 압록강 일대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선을 상국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태도 역시 조선의 불만을 키웠던 것 같다.³⁷⁾

또한 조선에서는 이만주를 명이 압록강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보낸 일종의 전초 세력으로 의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만주는 해당 지역에서 원래부터 생활하면서 조선과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명의 관직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명의 관직을 받은 상태에서 사실상 조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여겨졌던 파저강 일대로 이주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만주 세력이 조선과의 교역이나 교류에 크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들이 명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적 수요를 해결하면서 부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압록강 일대의 여진 세력에 대한 명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물론 조선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될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압록강 일대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만주 세력이 압록강과 파저강 일대에서 거주하면서 조선의 주도권과 지배력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조선의 정벌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8월 14일 세종은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명령을 전하여 정벌을

37) 실제로 이만주가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했던 시기가 파저강 1차 정벌 이후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정황은 더욱 명백해진다.

통해 적의 괴수인 이만주를 사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때문에 다른 적들을 놓친다면 오히려 둘 다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적의 근거지 소탕을 목표로 삼도록 지시했다.³⁸⁾ 좌찬성 신개는 정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적의 괴수를 잡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상등의 공으로 포상할 것을 건의했다.³⁹⁾ 조선에서는 같은 달에 성절하례사를 파견했는데 파저강 정벌에 대한 내용은 주본에 포함되지 않았다.⁴⁰⁾ 조선은 파저강 정벌을 일단 명에 보고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월 14일 평안도감사는 지난 7일 도절제사 이천이 정벌군 8천여 명을 3길로 나누어 출동시켜 압록강을 건넜다는 사실 등을 보고했다.⁴¹⁾ 8일 후 평안도감사는 다시 정벌군의 교전 상황과 전과, 회군 사실 등을 보고했다. 정벌군은 11일에 고음한(古音閑)을 공격했다. 좌군은 홍타리(紅拖里)로 향했고, 도절제사의 군대는 오자점(吾自岾)에서 강을 따라 내려와 적의 근거지를 공격했다. 파저강 일대에 대한 정벌은 6일간 계속되었는데 야인들이 미리 알고 숨거나 도망가서 소규모 전투만 진행되었을 뿐이었고 큰 전과를 얻지는 못했다. 정벌을 통해 조선이 죽이거나 잡았던 적군은 60명에 불과했다.⁴²⁾

세종은 정벌의 전공에 따라 이천과 박안신 등에게 벼슬을 하사했다. 특히 이들은 조선 건국 이후 최초로 외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을 겸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⁴³⁾ 하지만 이번 정벌은 작전의 최대 목표였던 이만주 포착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8)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8월 14일 신미

39)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8월 22일 기묘

40)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8월 28일 을유

41)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9월 14일 신축

42)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9월 22일 기유

43) 「以尹延命爲嘉靖海平君 李藏正憲戶曹刑書 兼平安道都節制使 沈道源中樞院使 鄭甲孫藝文提學 金孟誠戶曹參判 禹承範禮曹參判 朴安臣嘉靖工曹參判 兼平安道都觀察使 姜壽同知中樞院事 李宣中樞院副使 時無以京職帶外任者 李藏安臣 以征伐之功特拜是職 蓋寵異之也」(『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9월 25일 임자)

파저강 정벌에 비해 획득한 전과도 매우 적었다.

비록 정벌군의 규모가 지난 정벌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만 대규모 정보 활동 등을 통해 상당 기간을 준비해서 시행했던 군사 행동의 성과로는 부족함이 많았다. 이만주의 포착이나 적지의 소탕이라는 두 가지 정벌 목표가 모두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⁴⁴⁾ 그러나 세종은 이번 정벌을 통해 이만주를 잡지는 못했지만 당류(黨類)를 많이 잡았고, 우마와 곡식 등을 모두 태웠으니 거의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⁵⁾ 세종 자신은 정벌 결과를 성공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정벌의 성과를 성공적인 것이라고 정리했던 세종의 견해는 논공 포상 과정에서 대신들의 반발을 야기했던 것 같다. 세종이 정벌의 논공포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신들의 의견을 구했기 때문이다.⁴⁶⁾ 실록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벌에 대한 논공 과정에서 전공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상을 중지하거나 최소한 축소하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것은 우의정 노한(盧閑)이었다. 그는 이천이 토벌한 것은 적의 농막 한두 곳에 불과하다는 점과 적을 구분하지 않고 부녀자까지 모두 죽였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천이 얻은 전과는 여연 판관 이종효(李宗孝)에게 2~3백 명의 병력만을 거느리고 가게 했어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은 포획한 인원이 60여 명에 이르고 군사가 온전히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날에는 정벌의 승전을 치하했다가 다시 정벌의 성과를 부정하는 태도를 강하게

44) 노영구는 파저강 2차 토벌의 최대 목표였던 추장 이만주의 제거에 실패한 점과 논공 과정에서 정벌군의 사령관 이천의 승진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세종 당시에도 2차 토벌전을 성공적인 전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노영구, 앞의 논문, 141쪽 참조).

45)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9월 29일 병진

46) 『世宗實錄』 권79, 世宗 19년 10월 17일 계유

비판했다. 결국 세종은 노한의 발언을 문제 삼아 그를 파직했다.⁴⁷⁾

세종의 조치는 노한의 발언 내용 자체와 태도 등을 문제 삼았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종이 노한을 파직했던 근본적 원인은 그가 정벌의 성과를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노한이 재정벌의 전공은 2~3백 명의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세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 같다. 즉 노한의 파직 사유는 성급한 발언이나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벌의 성과를 부정했던 부분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눈여겨 볼 것은 노한이 우의정이었다는 점이다. 세종은 정승의 위치에 있는 대신이라 하더라도 정벌의 성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자 쉽게 파직했다. 세종은 정벌의 평가를 부정하는 의견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는 정벌의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이 국왕의 권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의정 노한이 파직된 이후 조정에서는 정벌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전공 포상 조치를 반대하는 의견 자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정국은 1차 파저강 정벌의 성과를 통해 세종이 국왕 중심의 정국 주도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조선의 대외정벌에 대한 평가는 가시적인 패배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패들은 결코 실패를 언급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세조대까지 이어지고, 성종대가 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세종이 대외정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외·국내 정치에서 큰 성과를 얻었던 경험은 후대의 왕들에게도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실제로 세조와 성종·연산군은 물론 중종·명종 등 조선전기의 국왕들은 모두 대외 영향력 확대와 국내

47) 『世宗實錄』 권79, 世宗 19년 10월 17일 계유

정치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외정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3. 북방 개척과 대외정벌

앞서 세종대의 대외정벌이 외적의 침입에 대한 보복의 성격 보다는 조선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준비되어 시행되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정벌의 목적이 대외 영향력 확대와 국내 정치에서 국왕권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도 설명했다. 이 중 대외 영향력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이 얻고자 했던 성과가 무엇이었던지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세종대 역점 사업이었던 북방 개척 문제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군의 설치는 조선의 파저강 정벌이 준비되고 단행되었던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4군의 본격적인 설치시기가 조선의 대외정벌 시기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정벌과 영토 확장 문제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비록 6진이 설치되었던 두만강 지역은 세종대에 정벌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결국 세조의 집권기에 단행되었다. 더욱이 세종대 역시 두만강 일대에 대한 정벌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조선의 정벌과 영토 확장 문제의 연관성은 더욱 깊어진다. 조선초기의 대외정벌과 영토 확장은 모두 건국 직후부터 계획해 세종의 집권기에 실행해서 성과를 얻었던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대외정벌은 성공할 경우 조선의 국위를 높이고 국왕 자신의 권위와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반대로 정벌이 실패로 끝날 경우 조선의 국위나 국왕의

권위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측되었다. 그럼에도 조선초기의 국왕들은 정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행했다. 국왕의 권위 신장과 정치 주도권의 확대를 위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까지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책이 바로 조선초기의 대외정벌이었다.

세종대는 상당한 준비를 갖추어 오랜 시간 동안 4군6진(四郡六鎭)을 설치했다. 4군6진의 설치의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을 조선의 영토 경계선으로 만들었다. 4군6진의 설치와 이와 관련된 조선의 영토 의식 등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한다.⁴⁸⁾

4군의 신설은 세종 1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조에서는 시변강(時蕃江)의 자작리(慈作里)가 여연과 강계 사이에 있는 요충지가 되므로 따로 군읍을 설치하고 이름을 자성(慈城)으로 하자고 건의했다. 세종이 이를 받아들여 자성군이 설치되었다.⁴⁹⁾ 자성군의 설치의 4군 신설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성군의 설치 시점이 1차 파저강 정벌 직후였다는 점이다. 자성군의 설치가 조선의 정벌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만주의 여연 침입이 조선의 정벌을 야기했고, 정벌을 계기로 4군의 설치가 본격화되었던 것으로 설명했다.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되었던 조선의 파저강 정벌은 야인의 침입을

48)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宋正炫, 1965 「世宗朝의 北方政策」 『湖南文化研究』 3

宋炳基, 1981 「3. 東北・西北界의 收復」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方東仁, 1995 「4. 4군 6진의 개척」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오종록, 2001 「세종 시대 북방 영토 개척」 『세종문화사대계』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尹薰杓, 2005 「朝鮮前期 北方開拓과 領土意識」, 『韓國史研究』 129, 韓國史研究會

49) 『世宗實錄』 권60, 世宗 15년 6월 1일 임오

명분으로 사용했을 뿐 조선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준비되어 시행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외정벌처럼 4군의 설치도 북방의 영토를 확장하고 압록강을 경계로 삼고자 했던 조선의 북방 진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종대 대외정벌과 영토 확장 계획의 연관성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된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고려의 윤관은 17만 병력을 거느리고 여진을 소탕하여 주진을 개척해 설치했으므로, 여진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나라의 위령(威靈)을 칭송하니 그 공이 진실로 적지 않다. (윤)관이 주를 설치할 때 길주(吉州)가 있었는데, 지금의 길주가 예전 길주와 같은가? 고황제께서 조선 지도를 친람하시고 조서를 내리기를, ‘공험진(公嶮鎭) 이남은 조선의 경계다.’고 하셨다. 경들은 참고하여 이르라.” 했다. 상께서 이때 바야흐로 파저강 정벌에 뜻이 기울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전교가 있었다.⁵⁰⁾

세종은 고려대 윤관(尹瓘)의 주진 개척과 설치를 언급하며 조선의 경계가 공험진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지시가 파저강 정벌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세종의 뜻이 반영된 것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던 사관의 기록은 당시 정벌이 조선의 영토 개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세종이 공험진을 언급한 부분을 통해 당시 그가 생각했던 조종구지(祖宗舊地)가 공험진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공험진에 대한 조선의 의식은 세종 이전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태종은 건주위 설치 문제로 인해 명이 압록강 북변 일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윤관이 세운 비석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⁵¹⁾ 결국 태종은 공민왕의 집권 당시 원과 홍무제가 공험진 이남에 대한 고려의 관할을 인정

50) 『世宗實錄』 권59, 世宗 15년 3월 20일 계유

51) 『太宗實錄』 권7, 太宗 4년 4월 27일 정유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지역과 여기에 속한 10처 인원에 대한 조선의 관할권을 요청했다.⁵²⁾

명에서는 칙서를 보내 조선의 요청 중 10처 인원에 대한 관권만을 인정해주었다.⁵³⁾ 공협진 이남의 관할권에 대한 명 측의 정확한 태도는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이는 당시 명에서 조선의 공협진 이남에 대한 관할권을 다시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홍무제에게 이미 관련 지역의 관할권을 인정받았던 조선은 당연히 공협진까지를 자국의 영역으로 생각했다.

파저강 일대에 대한 두 차례의 정벌을 마친 세종은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金宗瑞)에게 공협진의 정확한 위치와 선춘령비(先春嶺碑)의 위치·내용 및 동북 9성의 위치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⁵⁴⁾ 두 차례에 걸친 정벌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협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조선의 영향력을 이 지역까지 확대하려는 세종의 의도가 반영된 지시였다고 생각한다.

두만강 유역의 6진 설치도 4군의 설치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세종의 최측근이었던 김종서를 함길도 도절제사로 파견해 6진 설치를 주도하도록 했는데, 이 시기는 4군을 본격적으로 신설하기 시작했던 시기와 겹친다.

6진 설치가 완성된 시기는 4군 설치 시기보다 늦었다. 하지만 조선에서 4군과 6진의 신설을 시작해서 완성하기까지의 시기는 대부분 겹치고 있다. 또한 두만강 유역의 유력 추장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여진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살해되자 조선에서는 이 기회를 활용하고자 했다.⁵⁵⁾

두만강 유역에서는 압록강 유역과는 달리 세종대에 여진 정벌이

52) 『太宗實錄』 권7, 太宗 4년 5월 19일 기미

53) 『太宗實錄』 권8, 太宗 4년 10월 1일 기사

54) 『世宗實錄』 권86, 世宗 21년 8월 6일 임오

55) 『世宗實錄』 권62, 世宗 15년 11월 19일 무술

시행되지 않았다. 정벌과 북방 개척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세종은 이 지역에 대한 정벌 의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세종은 함길도 변경 지역 야인들의 정보 제공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했다.⁵⁶⁾ 조선초기의 대외정보 활동 강화는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했지만 정벌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종 19년(1437) 3월 김종서는 혐진 울적합(嫌眞 兀狄哈) 정벌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세종은 파저강 야인을 정벌했을 때와 비교하며 당장의 정벌 시행은 무익하다는 점을 강조했다.⁵⁷⁾ 그렇지만 세종은 다음 달 김종서에게 홀라온에 대한 간첩 활동과 이들의 동정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⁵⁸⁾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천시(天時)를 기다리자며 울적합에 대한 출병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⁵⁹⁾ 세종이 두만강 유역의 여진 세력에 대한 정벌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기록들이라 하겠다. 김종서는 세종 20년(1438)에도 이 지역에 대한 정벌을 건의했고,⁶⁰⁾ 두만강 유역 야인들의 동정에 대한 정보 활동 역시 계속되었다.⁶¹⁾

세종대 시행되지 않았던 모련위(毛憐衛) 정벌은 결국 세조대에 단행되었다. 세조대의 정벌은 모련위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낭발아한(浪孛兒罕) 부자 등을 조선에서 처형했던 일에서

56) 『世宗實錄』 권75, 世宗 18년 11월 27일 무오 ; 『世宗實錄』 권75, 世宗 18년 12월 22일 계미

57) 『世宗實錄』 권76, 世宗 19년 3월 11일 신축

58)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4월 3일 계미

59)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4월 13일 임신

60) 『世宗實錄』 권80, 世宗 20년 1월 19일 갑진

61) 『世宗實錄』 권89, 世宗 22년 5월 6일 정미

비롯되었다. 자연스럽게 낭발아한의 남아 있던 일족들은 조선을 공격했고, 세조는 이를 명분으로 모련위 정벌을 단행했다. 전후의 사정은 크게 다르지만 조선에서 낭발아한 부자를 제거해서 모련위 야인들의 구심점을 없애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굳이 정벌을 단행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조선의 북방 진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은 여진 정벌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직(授職)·내조(來朝) 정책이나 변경 지역의 무역을 통해서 야인들을 통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 인원을 동원해 정벌을 단행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4군6진의 설치로 설명되는 조선의 북방 영토 확장은 처음에는 크고 작은 요새였던 진(鎭)과 구자(口子)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남방 지역 백성들의 대규모 이주와 이들에 의해 진행된 농경지 개간을 통해 뒷받침되었다. 아울러 진과 구자들을 연결하는 행성을 축조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이 가지고 있는 국경선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했다.⁶²⁾

세종대 대외정벌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정벌 실패의 위험성에 관한 부분이다. 대외정벌의 성공은 조선의 국위를 높이고 국왕 자신의 권위와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상당한 병력과 물자 등을 동원해 시행하는 만큼 정벌이 실패할 경우 조선의 국위나 국왕의 권위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 또한 만만치 않았음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조선에서는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외정벌을 시행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세종은 태조나 태종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왕위를 승계 받은 인물이

62) 오종록, 앞의 책, 817쪽.

아니었다. 더욱이 후계자 순위에 앞서 있는 두 형을 대신해 왕위에 올랐다. 양평대군과 효령대군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이었고 셋째로서 왕위에 오른 세종은 태조나 태종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실 태종이 굳이 상왕으로 남으면서 세종에게 왕위를 승계했던 것은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자신의 후계자였던 세종이 국왕의 역할에 보다 더 잘 적응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방식은 세종도 문종에게 왕위를 넘기는 과정에서 거의 비슷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대마도 정벌의 시행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명의 일본 정벌 계획 등으로 인해 조선에서 대마도 정벌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대마도 정벌이라는 대규모 정책이 세종의 즉위년에 시행되었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마도 정벌은 태종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세종의 왕위 안착을 돕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마도 정벌의 성과를 통해 국체의 상승과 국왕권의 확대를 이미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정벌의 실패를 신료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정국이 형성되었던 것에서도 대외정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태종이나 세종 역시 대외정벌의 실패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특정 시점에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고 국왕권의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국내적 사안으로도 정치적 결단을 통해 국왕권의 확대나 국왕의 정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얻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설사 성공하더라도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국왕이 주도해서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고, 이것이 대외정벌이었다.

대외정벌은 군사력을 동원해 외부 세력을 공격하고 성과를 활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정책이었다. 대외정벌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세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외정벌은 국왕이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패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성과가 훨씬 크다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세종은 신료들의 강한 반대에도 정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했던 것이다.

특히 파저강 재정벌의 결정 과정과 정벌 이후 논공행상 과정에서 보였던 세종의 태도나 독단적으로까지 보이는 국정 운영 방식은 세종이 정벌의 성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세종의 이러한 국정 운영 방식은 집권 말년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종에게 대외정벌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정책이었다. 이 때문에 세종은 정벌의 성공을 위해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 정보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정벌에 대한 많은 준비를 거쳐 실패의 위험성을 최소화했다. 실제로 대외정벌의 성공은 큰 성과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세종은 조선에서 보다 중심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종이 대외정벌을 이용했던 방식은 후대의 왕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4. 맺음말

세종의 재위기는 조선의 대외정벌 정책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였다.

세종은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저강 일대에 대한 재정벌을 단행했다. 이는 1차 정벌 때의 성과를 통해 세종의 국정 주도권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의 파저강 재정벌에서 최우선 목표는 이만주의 포착이었다.

보다 중요한 원인은 압록강 일대의 여진 세력에 대한 명과의 주도권 문제였다. 조선은 사실상 자신이 영향력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파저강 일대에 이만주 세력이 명의 승인을 명분으로 이주했던 상황을 좌시할 생각이 없었다. 따라서 조선은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을 통해 압록강 일대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조선의 정벌이 외적의 침입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당연히 올적합 정벌이 먼저 준비되어야만 했다. 당시 조선의 변경을 계속 침입하고 있었던 것은 이만주 세력이 아니라 홀라온 올적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은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반면 올적합에 대한 정벌 의지는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의 대외정벌이 단순히 외부 세력의 침입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어 시행된 대외정책의 하나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천은 정벌군 8천여 명을 인솔하고 파저강 재정벌을 단행했다. 세종은 정벌의 전공에 따라 이천과 박안신 등에게 벼슬을 하사했다. 특히 이들은 조선 건국 이후 최초로 외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을 겸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재정벌은 이만주 포착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정벌에 비해 획득한 전과도 매우 적었다. 하지만 세종은 재정벌의 성과를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세종이 대외정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외·국내 정치에서 큰 성과를 얻었던 경험은 후대의 왕들에게도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실제로 세조와 성종·연산군은 물론 중종·선조 등 조선전기의 국왕 대부분은 대외 영향력 확대와 국내

정치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외정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대외정벌은 세종대 역점 사업이었던 북방 개척 문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4군의 설치에 조선의 파저강 정벌이 준비되고 단행되었던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4군의 본격적인 설치시기가 조선의 대외정벌 시기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정벌과 북방 개척 문제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대외정벌은 성공할 경우 조선의 국위를 높이고 국왕 자신의 권위와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반대로 정벌이 실패로 끝날 경우 조선의 국위나 국왕의 권위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측되었다. 그럼에도 조선초기의 국왕들은 정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행했다. 국왕의 권위 신장과 정치 주도권의 확대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책이 바로 조선초기의 대외정벌이었다.

대외정벌은 군사력을 동원해 외부 세력을 공격하고 성과를 활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정책이었다. 대외정벌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세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외정벌은 국왕이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패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성과가 훨씬 크다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세종은 신료들의 강한 반대에도 정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했다.

[원고투고일: 2015.4.4, 심사수정일: 2015.5.20,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정벌, 대외정벌, 대외정책, 왕권, 대외관계

<ABSTRACT>

Re-conquest of the Pajeo River and Policies for
Conquering the foreign territory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of Joseon Dyansty

Lee, Kyu-chul

During the period of Sejong's reign over the Joseon, the policy for conquering foreign powers began discussing more seriously. Since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it had continued to show interests in the northern regions. In addition, the King Taejo and Taejong strived to secure influence in the surrounding areas of Amnok River and the Duman River,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with the Ming. One of these representative foreign policies of the Joseon was the 'onquest' against the savages.

In the face of strong protest from the retainers, Sejong was determined to carry out the re-conquest of the regions surrounding the Pajeo River. This showed that Sejong had expanded his political power over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e first conquest. The ultimate goal of the Joseon occupying the Pajeo River again was to capture Lee Man Ju, chief of the barbarians called Jurchen. This was because the Joseon had an intention to spread its clout around by removing the figure playing a pivotal role within the Jurchen population in the region of Geonju-wi.

More importantly, it was the struggle with the Ming to gain the upper hand over the hegemony of the Jurchen group centering on the whole area of the Amnok River. It seems to me that the Joseon would not shut its eyes to the groups led by Lee Manju, who received the approval from the Ming to move them in the

Pajeo River area that the Joseon considered under its influence. Besides, the Lee Manju group put more emphasis on a close rapport with the Ming rather than with the Joseon. The Joseon, therefore, sought to obtain the actual control over the entire area of the Amnok River by getting rid of the forces of Lee Manju.

The foreign policy for conquests outside the Joseon was the most suitable and useful one to attack external influences using military strength and take advantage of the achievements. It's because such conquest policy could have an impact on foreign powers as well as domestic groups. This is why foreign subjugation became a proper type of policy that can be politically used in various ways. Since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failure, if it was successful, it would be expected to produce a bigger fruit, King Sejong took the lead to push ahead and carry out the conquest even when facing strong objection from his subjects.

Key words : conquest, foreign conquest, foreign policy, royal authority, foreign relationshi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김 경 태*

1. 서론
2. 일본군의 편성과 특징
3. 영천성 주둔 일본군의 실상
 - 가. 영천성 주둔 일본군에 대한 재고찰
 - 나. 영천성 주둔 일본군의 행동 방식
4. 결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서론

1592년 4월 14일 조선에 상륙한 일본군은 부산, 상주, 충주 등지에서 조선의 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했고 5월 초에는 한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선 남부 전역을 지배하기에는 충분한 병력을 투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상을 서둘렀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

따라서 한성 이남의 여러 지역에는 일본군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 많았다. 경상우도 지역에서는 광재우의 봉기를 시작으로 의병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일본군의 진입이 수월하지 않았던 전라, 충청 지역에서도 의병이 일어났다.

임진전쟁¹⁾ 당시 경상우도와 전라도, 충청도에서 활동한 의병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경상좌도 의병에 대해서는 위의 지역에 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병 관련 사료의 발굴과 더불어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²⁾

1) 한국학계에서는 이 전쟁의 명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김문자, 「전쟁과 평화의 근세 한일 관계—임진왜란과 통신사」, 『지역의 전쟁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박수철, 「15·16세기 일본의 전국시대와 도요토미 정권 ‘임진왜란’의 재검토」,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한명기, 「‘난동’, ‘정벌’, ‘원조’를 넘어 ‘임진왜란’을 부르는 동아시아 공통의 용어를 위하여」, 『역사비평』 83, 2008;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韓日關係史研究』 39, 2011; 김기봉, 「1592년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문명사적 관점에서의 성찰—」, 『韓國史學史學報』 26, 2012) 일본과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이 전쟁을 지칭하는 용어인 ‘文祿·慶長の役’과 ‘抗倭援朝戰爭’은 각각 자국의 연호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대국주의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용어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임진왜란’은 국제전쟁으로서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고, 전쟁의 규모와 조선이 입은 피해를 오히려 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위의 논의에서는 한·중·일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중 하나로 ‘임진전쟁’이 제안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임진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김경태, 「임진전쟁 강화교섭 전반기(1593.6~1594.12), 조선과 명의 갈등에 관한 연구」, 『韓國史研究』 166, 2014, 57~58쪽).

2) 文守弘, 「壬亂 中 慶尙左道地方의 義兵活動」, 『素軒 南都泳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太學社, 1984; 李謙周, 「壬辰倭亂時의 嶺左義兵活動一斑—蔚山地方 義兵의 例—」,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 15-2, 1984; 崔孝軾, 「壬辰倭亂 中 慶州戰鬪」, 『慶州史學』 10, 1991; 崔孝軾, 「壬辰倭亂 中 永川城 탈환전투의 고찰」, 『大丘史學』 47, 1994; 崔孝軾, 「壬亂 中 慶州寺院의 抗戰활동」, 『芝邨金甲周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芝邨金甲周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94; 崔孝軾, 「壬亂 初 慶州 義兵活動 研究」, 『慶州史學』 16, 1997; 崔孝軾, 「경주의 蚊川會盟에 대하여」, 『慶州文化』 6, 2000; 崔孝軾, 「慶州府의 壬亂義兵기록에 관한 연구」, 『新羅文化』 19, 2001; (이상의 논문을 비롯한 최효식의 경상좌도 의병에 대한 연구는 최효식, 『임진전쟁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3;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등의 단행본에 수록되었다) 정진영, 「안동지역의 壬亂義兵」, 『安東文化研究』 4, 1990; 禹仁秀, 「蔚山地域 壬亂義兵의 活動과 그 性格」, 『歷史教育論集』 31, 2003;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경상좌도 방위활동」, 『軍史』 76, 2010; 김진수,

그러나 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선의 의병이 맞서 싸웠던 일본군의 편성체제와 행동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군의 행동양상이 언급되었다고 할지라도 대개 그들의 복상 경로와 개별 전투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그들이 어떤 체제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전투와 후퇴, 그리고 주둔의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³⁾ 의병연구를 비롯한 전투사가 완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투 상대였던 일본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일 것이다.

근래 일본학계에서는 임진전쟁에 참전한 일본 장수들의 동향을 고증하는 방식의 연구가 다수 배출되었으나,⁴⁾ 조선이나 명 사료와의 비교 고찰 없이 일본 사료만을 이용하여 일본군의 동향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경상좌병사 박진(朴晉)과 권응수(權應銖)의 활동을 중심으로-」, 『軍史』 84, 2012; 이육,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의병 활동과 성격」, 『壬辰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 2,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 3) 근래 한국학계에서는 일본군의 행동양식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김만호, 「임진전쟁기 일본군의 함경도 점령과 지역민의 동향」, 『歷史學研究』 38, 2010; 김정태, 「임진전쟁 전반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동향 -전공(戰功)의 위기와 강화교섭(講和交渉)으로의 가능성」, 『大東文化研究』 77, 2012; 김문자, 「임진전쟁기의 강화교섭과 加藤清正 -조선왕자의 送還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 신윤희, 「임진전쟁기 성주전투와 일본군의 동향」, 『歷史學研究』 53, 2014.
- 4) 근래의 연구성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津野倫明, 『長宗我部氏の研究』, 吉川弘文館, 2012; 井原今朝男, 「上杉景勝の朝鮮出兵と熊川倭城」, 『長野縣立歴史館 研究紀要』 3, 1997; 中野等, 「文祿の役における立花宗茂の動向」, 『日本歴史』 597, 1998; 中野等, 「豊臣政権の大陸侵攻と寺澤正成 : 文祿の役における兵站輸送をめぐる」, 『交通史研究』 50, 2002; 津野倫明,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毛利吉成の動向」, 『高知大學人文學部人間文化學科 人文科學研究』 9, 2002; 津野倫明, 「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 『海南史學』 42, 2004; 津野倫明, 「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 『織豊期研究』 8, 2006; 津野倫明, 「朝鮮出兵における鍋島直茂の一時歸國について」, 『高知大學人文學部人間文化學科 人文科學研究』 13, 2006; 織田祐輔, 「文祿の役における「船手衆」の動向 -脇坂安治を中心に」, 『海南史學』 47, 2009; 山内讓, 「來島村上氏と文祿・慶長の役」, 『松山大學・松山大學論集』 24卷 4-2號, 2012; 中野等, 「唐入り(文祿の役)における加藤清正の動向」,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56, 2013 등.

본 논문에서는 조선 의병이 거둔 큰 승리 중 하나인 영천성 전투를 대상으로 하여 경상좌도 내륙지방에서 활동하던 일본군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영천성 전투에 대해서는 이형석,⁵⁾ 문수홍,⁶⁾ 최효식⁷⁾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⁸⁾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의병에 참여했던 權應銖의 『白雲齋實紀』 권2에 실린 「永川復城記」(鄭湛이 지음)를 주 자료로 삼고 『宣祖實錄』 『亂中雜錄』 『寄齋史草』 등을 참고하여 전투의 전말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에 대한 기술은 단편적이다. 영천성 전투는 일본군의 주요 이동경로였던 경상좌도에서 획득한 최초의 탈환전이었음에도 의병이 맞서 싸운 상대에 대한 정보는 한정적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우선 조선 사료에 일본군에 대한 정보가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에 있다. 조선의 기록에는 일본군의 정체, 병력 수, 이동경로가 모호하게 서술되었으며, 기존의 영천성 전투 관련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기에 일본군의 동향은 단순하게 묘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천성 전투를 직접적으로 다룬 일본 사료 역시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진전쟁 초기 일본군의 체제와 전투 방식, 그리고 경상좌도에서 활동한 일본군의 양상을 알려주는 사료를 통해 영천성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본 논문에서는 『毛利家文書』, 『鍋島家文書』 『淺野家文書』 등의

5) 李炯錫, 『壬辰戰亂史』,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67, 422~429쪽 (李炯錫, 『壬辰戰亂史』上·中·下, 新現實社, 1974 등으로 증보개정).

6) 文守弘, 「壬亂 중 慶尙左道地方의 義兵活動」, 『素軒 南都泳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太學社, 1984.

7) 崔孝軾, 「壬辰倭亂 중 永川城 탈환전투의 고찰」, 『大丘史學』 47, 1994 (최효식, 『임진전쟁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3;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에 수정 후 재수록).

8) 그 외에도 이광수, 「영천지역의 壬亂 의병활동」,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이재수, 「永川 邑城과 임진왜란」, 『역사교육논집』 52, 2014 등의 연구에서 영천성 전투를 다루고 있다.

문서집에 수록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이하 일본군 장수들의 書狀類와 타지리 아키타네(田尻鑑種)의 『高麗日記』, 텐케이(天荊)의 『西征日記』, 시모세 요리나오(下瀬頼直)의 『朝鮮渡海日記』, 요시노 진고자에몬(吉野甚五左衛門)의 『吉野甚五左衛門覺書』, 제타쿠(是琢)의 『朝鮮日記』, 핫토리 덴에몬(服部傳右衛門)의 『服部傳右衛門覺書』와 같은 일기류, 오보에가키(覺書)류 등에서 경상좌도 지방의 의병활동을 전하는 기록을 참고로 하여, 영천성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은 누구이며 어떠한 행동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추적해보겠다. 서장류의 경우 대부분 원본이 남아 있는 1차 사료이며, 일기류의 경우 이동 경로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비교적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오보에가키류는 후대에 변형이 가해진 경우가 있지만 공식 문서에 드러나지 않는 사건 등을 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사료와 함께 조선의 사료를 상호 비교하여 작업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2. 일본군의 편성과 특징

다음은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하기 약 1개월 전인 1592년 (음력) 3월 13일에 일본군 장수들에게 내려진 부대편성 명령서를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⁹⁾

9) 『毛利家文書』 885.

〈표 1〉 1592년 3월 13일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부대편성 명령서

고려[조선을 지칭]로 도해할 병력에 관한 일		
1번	5,000 7,000 3,000 2,000 1,000 700	소 요시토시(宗義智)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마츠라 시게노부(松浦鎮信)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 오무라 요시아키(大村喜前) 고토 스미하루(五島純玄)
	합계 : 18,700	
2번	10,000 12,000 800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나베시마 나오히데(鍋島直茂) 사가라 요리후사(相良頼房)
	합계 : 22,800	
3번	5,000 6,000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오토모 요시무네(大友吉統)
	합계 : 11,000	
4번	2,000 10,000 2,000	모리 요시나리(森吉成)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다카하시 모토타네(高橋元種) 아키츠키 타넨가(秋月種長) 이토 스케타카(伊東祐兵) 시마즈 토요히사(島津豊久)
	합계 : 14,000	
5번	4,800 3,900 3,000 7,200 5,500 700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토다 카츠타카(戸田勝隆) 초소카베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 하치스카 이에마사(蜂須賀家政) 이코마 치카마사(生駒親正) 구루시마(來島) 형제 (미치유키(通之), 미치후사(通總))
	합계 : 25,000(개별 부대의 병력 수를 합하면 25,100명이나 원문에는 25,000으로 표기되어 있음)	
6번	10,000 1,500 2,500 800 900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모리 히데카네(毛利秀包) 다치바나 무네시게(立花宗茂) 다카하시 무네마스(高橋統增) 치쿠시 히로카도(筑紫廣門)
	합계 : 15,700	
7번	30,000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8번	10,000	(쓰시마(對馬)에 주둔) :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9번	8,000 3,500	(이키(壹岐)에 주둔) : 도요토미 히데카츠(豊臣秀勝) (같은 곳) 호소카와 타다오키(細川忠興)
	합계 : 11,500	
도합 : 158,700 (명)		

- 위의 병력은 문서에 지정된 대로 조속히 도해할 것. 순풍이 불지 않으면 하루를 기다리고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대기한 뒤에 섬과 섬¹⁰⁾을 이동할 것. 만약 날씨가 좋지 않는데도 도해하여 말 한 필, 사람 하나라도 잃게 된다면 처벌할 것이다. 또한 날씨가 좋을 때 방심하여 도해하지 못한다면 처벌할 것이다.
- 말은 고려로 건너보낸다고 해도 진지 구축을 할 때는 필요가 없으므로 모든 병력이 건너간 후에 보낼 것
- 위의 문서에 지정된 병력 외에는 모두 나고야(名護屋)에 주둔할 것. 한 사람이라도 도해한다면 처벌할 것이다.
- 이번 전쟁에서는 선박이 중요하므로 선박을 준비하는 만큼 전공으로 취급할 것이다. 제 병력은 부두에서 선박 담당자[奉行]에게 증명서를 받은 후 차례로 도해하고, 고려에 도착하면 자신이 타고 온 선박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박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쓰시마로 돌아오게 하여 다음 병력이 이용하게 하라.
- 고려가 명 침략에 동의한다면 위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차례로 도해할 것.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병력은 고려 근처의 섬으로 이동한 뒤 선박을 정렬하라. 그리고 차례와 관계없이 모든 병력이 논의하여 고려 땅의 어떤 항구에도 일제히 착진하여 진영을 확보한 후 축성공사에 착수할 것. 이후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주고쿠(中國)의 병력은 물론, 아와지(淡路)의 병력,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 이하의 병력도 위의 병력들과 같이 일제히 도해할 것

이 부대편성 명령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발급한 것이다. 이 문서는 일본의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에서도 자주 인용되었다. 이 명령서와 함께 부대의 조선 도해 순서와 도해 전의 주둔지, 선박 담당자를 지정한 문서도 전달되었다.¹¹⁾ 이 두 가지 문서는 특정한 전투에서 자신의 병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배치·운용하기 위한 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종류의 명령서에는 발급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장을 찍었으며, 수신인으로 지정된 각 장수들에게

10) 이키섬과 쓰시마섬을 뜻함.

11) 『毛利家文書』 886.

12)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에 앞서 부대를 편성을 지시한 진다테서(陣立書)의 성격에 대해서는 三鬼清一郎, 「陣立書の成立をめぐる」,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113(史學 38), 1992를 참조.

전해졌다.¹³⁾

일본군은 1591년 후반부터 출진기지인 규슈(九州) 히젠(肥前) 지역의 나고야성에 집결하고 있었으며 1592년 3월 13일의 명령으로 나고야를 떠나 조선을 향해 출발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교토(京都)를 출발하여 나고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 명령서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각 장수들 사이에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았다. 부대의 순서는 도해 순서에 불과했다. 이들 부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정점으로 하였고, 장수들은 그 아래에 서로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즉, 히데요시가 직접 일본군 전체를 지휘하는 체제였다. 히데요시의 명령은 자신의 명령임을 나타내는 붉은 인장을 찍은 명령서(도요토미 히데요시의 朱印狀으로 통칭)의 형태로 각 군의 장수들에게 전달되었다. 전선의 장수들에게 전략적 결정권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전투 국면에 따라 우키타 히데이에가 회의를 주재하거나 일본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그 외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현지의 협의사항이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 변경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지휘 형태는 그의 도해가 연기를 거듭하면서 혼란을 겪었고 변형을 거치게 되나,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기본적인 형태는 유지되었다.¹⁴⁾ 이처럼 합의 체제를 가지지 않고 히데요시 이하에 각각의 장수들이

13) 이 명령서와 동일한 문서는 『小早川家文書』 501, 『鍋島家文書』 29, 『加藤清正家藏書』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 전쟁 시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國重顯子, 「豊臣政権の情報伝達について」, 『九州史學』 96, 1989; 佐島顯子, 「文祿・慶長役の秀吉朱印狀の送達について」, 『福岡女學院大學紀要』 1, 1991; 佐島顯子, 「秀吉と情報」, 『消された秀吉の眞實—徳川史觀を越えて』, 柏書房, 2011을 참고.

14)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9~40쪽; 이처럼 임진전쟁 중 조선 현지에서 전체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朱印狀)를 통해 전략이 지시, 변경되던 일본군의 특징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中野等, 『秀吉の軍令と大陸侵略』, 吉川弘文館, 2006을 참조하길 바란다.

서로 분리된 상태로 히데요시와 직결-혹은 토리츠기(取次)와 같은 중개역을 통해 연결-되는 형태는 전쟁이라는 비상정국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양상이 아니라 히데요시 정권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였다.¹⁵⁾

또한 조선에 건너갈 각 장수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영지에서 병력과 군량을 마련해야했고, 그것을 수송할 선박도 준비해야만 했다. 또한 전쟁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군량은 조선 현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¹⁶⁾ 병력과 군량, 선박 준비는 결코 원활하지 않았다. 많은 장수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도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물론 자신이 메워야 했다.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지에 병력과 물자 수송을 재촉해야만 했다.¹⁷⁾

이들은 나고야에 집결하여 출진을 준비하였고, 이후 이키, 쓰시마를 거쳐 차례차례 조선으로 건너왔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소 요시토시 등으로 구성된 제1군은 3월 13일에 쓰시마에 도착하였다. 4월 13일 쓰시마에서 출발하여 14일에 부산에 상륙한 후 최초의 전투를 치렀다. 이후 동래-기장-양산-밀양-대구-인동-선산-상주-문경-충주-여주를 거쳐 5월 2일 밤~5월 3일 새벽에 한성에

15) 山本博文, 「幕藩初期の大名統制機構と對外關係(第一章, 第二章)」, 『幕藩制の成立と近世の國制』, 校倉書房, 1990, 참조.

16) 中野等, 「朝鮮侵略戰爭における豊臣政權の兵糧補給について」,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35, 九州文化史研究所, 1990; 中野等, 「(第1編 第1章) 第1次朝鮮侵略戰爭における豊臣秀吉の輸送・補給政策」, 『豊臣正權の對外侵略と太閤檢地』, 校倉書房, 1996; 中野等, 「唐入り」と兵站補給體制」, 『日本の時代史13 天下統一と朝鮮侵略』, 吉川弘文館, 2003.

17) 山本博文, 『島津義弘の賭け』, 讀賣新聞社, 1997; 北島万次, 『加藤清正』, 吉川弘文館, 2007; 김경태, 「임진전쟁 전반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동향 — 戰功의 위기와 講和交渉으로의 가능성」, 『大東文化研究』 77, 2012; 中野等, 「唐入り(文祿の役)における加藤清正の動向」,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56, 2013등의 연구에서는 가토 기요마사와 시마즈 요시히로가 병력과 군량, 선박 조달의 문제에 고심하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진입했다.

제 2군은 4월 18일에 부산에 도착했다. 4월 19일에는 양산에서 출발하여 언양을 공격했다. 이어서 21일에는 경주를 점령한 뒤 하루를 머물렀다. 가토 기요마사는 일본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내일(23일) 이곳을 떠나 다음 성인 영천을 공격할 것입니다. 반드시 소문을 듣고 성을 버리고 후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이후 신녕-의흥-의성-안동-영주-죽령을 거쳐 4월 28일, 혹은 29일에 충주에 도착했다. 이어 1군과 다른 길을 선택하여 5월 3일 한성으로 들어갔다.¹⁸⁾

구로다 나가마사 이하의 3군과 4군의 모리 요시나리도 2군과 같은 4월 18일에 부산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미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한 부산이 아니라 김해를 공격한 후(4월 19일), 창원-창녕-현풍-성주-금산-추풍역-황간-영동-옥천-청주-진천-죽산까지 전진한 후 2군과 같은 경로를 통해 5월 7일~8일경 한성으로 들어갔다.

4군에 속했던 시마즈 요시히로는 다른 부대보다 늦은 5월 3일에 부산에 도착했다. 5군의 상륙과 이동경로를 전해주는 사료는 많지 않다. 6월 중 조선에 도착하여 한성으로 향하고 있던 시마즈 요시히로의 가신 니이로 타다마스(新納忠増)의 『朝鮮渡海之記』와 『鍋島家文書』에 실린 문서에 나타난 부산~한성 주둔상황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5군에 속한 장수들이 상주에서 한성에 이르는 경로의 성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⁹⁾ 시모세 요리나오(下瀬頼

18) 이하 일본군 각 부대의 전쟁 초기 이동 경로는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의 「第一章 第一軍乃至第三軍の京城進撃」, 「第二章 第四軍以下諸軍の動靜」, 『文祿慶長の役別編第一』, 東洋文庫, 1936을 참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침략전쟁시기 일본 역사학계의 분위기에 따른 표현상의 문제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러나 일본의 사료와 조선 사료를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일본군의 이동경로와 전투상황을 고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은 분명하며, 이 부분에 한정한다면 현재로서도 인용의 가치가 있는 연구이다.

19) 池内宏, 「第二章 第四軍以下諸軍の動靜」, 『文祿慶長の役 別編第一』, 東洋文庫, 1936, 73~92쪽; 『鍋島家文書』 42((1592년) 12월 10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

直)의 『朝鮮渡海日記』²⁰⁾의 뒷부분에는 나고야에서 평안도 순안까지(지명은 의주까지)의 일본군 주둔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5군 소속 장수들의 주둔지는 『朝鮮渡海之記』, 『鍋島家文書』에 기재된 것과 유사하다. (다음의 <표 2>와 <표 3>을 참조)

6군은 4월 18일~19일에 부산에 도착한 후 5월 중순에 한성을 지나 북진했다가 5월 25일에 경상도를 거쳐 전라도 지역으로 남하했다. 7군의 모리 데루모토는 6군과 함께 부산에 도착하여 북상하다가 성주에서 전진을 멈추었다. 6월 12일에는 주둔지를 개령으로 옮겼다. 쓰시마 주둔이 지정되어 있던 8군의 우키타 히데이에는 5월 6일~7일 경 한성에 입성했다.²¹⁾ 9군의 호소카와 타다오키는 6월 17일 경 조선에 도착했다. 도요토미 히데카츠는 5월 16일 이전에는 조선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부산과 동래에 주둔했다.

일본군 주요 장수들이 한성에 입성하는 5월 6일~7일 경, 그들 사이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²²⁾ 가토 기요마사가 6월 1일에 일본에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고려(조선)의 일은 지역을 분할(國割)하여 각자 (그 지역을) 접수하였습니다. 저는 수도에서 북쪽으로 韃靼지역 경계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 (황해도)는 구로다 나가마사가 접수하고, 이보다 더 나아가 大唐(명나라) 국경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접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²³⁾ 회의는 점령지역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土佐國蠹簡集』에 보인다. 이 문서집에는 「高麗八笏之石納覺之事」 제목의 문서가 있는데

서), 『鍋島家文書』 43((1592년) 12월 10일 나즈카 마사이에(長東正家)의 副狀).

20) 『防長叢書』 6, 防長史談會, 1934.

21) 『吉野甚五左衛門覺書』 1592년 5월 6일~7일.

22) 『吉野甚五左衛門覺書』 1592년 5월 6일~7일.

23) 1592년 6월 1일 가토 기요마사의 보고서 (『韓陣文書』).

24) 池内宏, 「第三章 入京諸軍の動靜及び平壤占領」, 『文祿慶長の役 別編第一』, 東洋文庫, 1936, 114~117쪽.

여기에서 각 부대의 주둔지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²⁵⁾ 즉, 경상도는 모리 데루모토, 전라도는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충청도는 5군의 시코쿠(四國) 부대, 강원도는 모리 요시나리, 경기도는 우키타 히데이에, 황해도는 구로다 나가마사, 영안도(함경도)는 가토 기요마사, 평안도는 고니시 유키나가이다. 그러나 표기된 바와 같이 각 지역에 1인의 장수만이 주둔한 것은 아니고 충청도의 경우와 같이 함께 배치된 각 부대의 동료 장수들이 나누어 주둔했을 것이다. 3월 13일의 명령으로 조선에 도해한 각 군의 장수들은 자체적인 회의를 거쳐 위와 같이 조선 8도를 분담하여 지배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6월 3일 내려진 히데요시의 명령은 조선 현지 장수들의 의도와는 달랐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주둔하던 장수들에게 추가로 보내는 부대와 함께 명나라로 진격할 것을 명하였고, 이미 지배하에 들어온 조선 영토는 代官을 보내어 지배한다는 뜻을 밝혔다.²⁶⁾ 장수들의 8도 분담 결정은 히데요시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즉, 히데요시와 현지 장수들의 의사에는 차이가 있었다.²⁷⁾ 조선에 있던 제 장수는 히데요시가 파견한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 마시타 나가모리(増田長盛), 오타니 요시즈구(大谷吉繼) 등

25) 『高知縣史』 古代中世史料編, 高知縣, 1977; 池内宏, 「第三章 入京諸軍の動靜及び平壤占領」, 『文祿慶長の役 別編第一』, 東洋文庫, 1936, 117~118쪽에 수록.

26) 6월 3일의 명령서는 『毛利家文書』 903(한문서장), 904 등;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장수에 대한 명으로의 진격 명령과 대관 파견에 대한 내용은 「等持院文書」(1592년) 6월 세이쇼 죠타이(西笑承兌)의 서장에 보인다. [北島万次, 『朝鮮日々記・高麗日記』, そしえて, 1982, 87~88쪽; 北島万次編, 『壬辰倭亂-秀吉の朝鮮侵略-關係史料稿本』, 2005; 中野等, 『秀吉の軍令と大陸侵略』, 吉川弘文館, 2006, 102~103쪽에서 재인용];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6월 3일에 발급한 여러 종류의 명령서에 대해서는 中野等, 「天正二十年六月三日附豊臣秀吉朱印狀をめぐって」(三鬼清一郎編, 『織豊期の政治構造』, 吉川弘文館, 2000)를 참조.

27) 池内宏, 「明將祖承訓の敗走以後に於ける我が軍の態度」, 『史學雜誌』 29-7, 1918; 北島万次, 『朝鮮日々記・高麗日記』, そしえて, 1982, 95쪽; 中野等, 『秀吉の軍令と大陸侵略』, 吉川弘文館, 2006, 104~116쪽 참조; 나카노 히토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후 일본군 장수들의 한성회의 결과를 전해들은 이후에도 자신의 뜻(6월 3일의 명령)을 관철하기로 하였다고 보았다.

세 부교(奉行：도요토미 정권 내에서 핵심 정무를 담당했던 이들에게 주어진 직명)가 자신들에게 조선의 영토를 분배하러 온 사자라고 생각했다.²⁸⁾

그런데 이 명령을 직접 전하기 위해 추가 부대와 함께 건너오던 세 부교가 한성에 도착하던 7월 중순, 전장에서는 커다란 변수가 발생했다. 조승훈이 이끄는 명군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둔한 평양성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세 부교는 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에서 부교들이 가져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 국경으로의 진격 명령은 보류되었다.²⁹⁾ 이러한 상황에서 영천성 전투가 발발하였다.

3. 영천성 주둔 일본군의 실상

가. 영천성 주둔 일본군에 대한 재고찰

영천성 전투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영천성에 주둔하던 적이 어떤 부대였는지, 병력의 규모는 어떠한지, 그곳에 어떤 의도로 주둔하고 있었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영천성 전투를 다루고 있는 조선의 사료에는 일본군의 정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선 『白雲齋實紀』의 「永川復城記」를 살펴보겠다. 이 사료에 의하면 영천에 수 만 명의 일본군이 있었다고 한다. 권응수 등이 이끄는 의병은 5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7월 14일에는 군위에서 오는 일본군을 박연에서 맞아 승리했다. 7월 22일에도 거림의 적을 격파하여 군위로 가는 길을 막았고, 하양으로 향하는 적도 막았다. 영천성을 수복하기 위해

28) 『西征日記』 1592년 7월 16일.

29) 池内宏, 「明將祖承訓の敗走以後に於ける我が軍の態度」, 『史學雜誌』 29-7, 1918.

모인 의병은 3,560여 명이었다. 의병은 24일부터 성에 접근하여 전투를 준비했다. 25일에 작은 접전이 있었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한 차례 접전 후 적이 패주하여 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장수차림의 왜인이 성 아래로 투신하였는데 정대임이 참수했다. 적의 명장 法化라는 자였다. 27일 화공으로 성을 불태웠다. 많은 적을 사살했다. 빠져나와 살아남은 자는 몇 명(數三人)에 불과했다. 아군 전사자는 83명, 부상자는 238명, 노획한 적의 말은 200필, 총통과 장검이 900여 자루였다고 한다.

『白雲齋實紀』에 수록된 「與孫參奉書」는 영천성 전투 직후의 편지로 보인다. 영천성 전투에서 생포한 자는 몇 명(數三人) 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1593년 2월 말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장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권응수 이하의 의병이 5월 초부터 영천 근방에서 소규모 전투를 계속했다. 7월 14일에 어사라고 칭호한 적 100여 명이 군위에서 오는 것을 신녕, 거림원에서 접전하여 37명을 베었다. 22일에는 영천에서 오는 300여 명의 적을 추격하여 30여 명을 사살했다. 그리고 영천성 전투에서는 300여 급을 베었는데 불타죽은 적은 헤아릴 수 없으며 겨우 2명만이 살아남았다는 것, 수급과 노획물은 박진의 처소에 보냈다는 것이다.

『宣祖實錄』에 의하면, 일본군 1천여 명이 영천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권응수 등이 2천여 명을 거느리고 성을 포위한 다음 포로 공격하고 불을 질러 승리했다고 하였다. 획득한 수급은 517 급이라고 하였다.³⁰⁾ 또 『宣祖修正實錄』에 의하면, 일본군 1천여 명이 영천성에 주둔하면서 안동에 주둔한 적과 서로 응하고 있었는데, 권응수 등의 의병군이 성을 포위한 뒤 화공하여 수백 급을 베었다고 하였다. 탈출한 자는 수십 명에 불과하였으며 이후 안동 이하에

30) 『宣祖實錄』 권30 선조25년(1592) 9월 15일.

주둔한 적이 모두 철수하여 상주로 향했다고 기록하였다.³¹⁾

『亂中雜錄』은 『경상순영록』에 근거하여 영천성 전투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우선 영천성 전투 이전에 奉告御使라고 자칭하면서 영천에서 신녕으로 향하던 일본군을 권응수 등이 박연에서 맞아 싸워 이겼다. 이후 영천성을 공격하였는데 수백여 급을 베었다. 또한 영천성 전투 이후 군위에 있던 일본군은 철수하여 개령으로 향했으며, 의성·안동·예천의 적도 풍산 구담으로 물러났다가 상주로 모였다고 하였다.³²⁾

조선 사료를 살펴보자면 영천성에 주둔하던 일본군의 소속부대, 장수의 명칭, 병력 수 등이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략 공통된 서술이라면 경상좌도 지방의 일본군들이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으며, 영천성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약 1천여 명 정도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영천성 전투에서 의병과 맞섰던 일본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먼저 『壬辰戰亂史』에서는 5군 소속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부하였다고 보았다.³³⁾ 당시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을까. 다음의 표를 통해 살펴보겠다. 이 표는 시모세 요리나오(下瀨頼直)의 『朝鮮渡海日記』와 『鍋島家文書』에 나타난 일본군 장수들의 주둔 현황을 간략화한 것이다. 지명과 인명 오기는 수정하였다. 장수의 이름나 발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에 나타난 그대로 표기하였다.

31) 『宣祖修正實錄』 권26 선조25년(1592) 8월 1일(무자).

32) 『亂中雜錄』 권2 임진년 하, 8월 1일, 8월 3일.

33) 李焞錫, 『壬辰戰亂史』,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67, 422~429쪽.

〈표 2〉『朝鮮渡海日記』 수록 일본군 주둔 현황

주둔지	주둔 장수	주둔지	주둔 장수
조선 橫島	모리 데루모토 휘하 모리 모토키요(毛利元清) 모리 모토마사(毛利元政)	충주	하치스카 이에마사 휘하
조선 石山	모리 데루모토 휘하 깃카와 히로이에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음죽	하치스카 이에마사 주둔
부산포	도요토미 히데카츠	죽산	후쿠시마 마사노리 주둔
동래	도요토미 히데카츠 휘하	新城	후쿠시마 마사노리 휘하
양산	타니 모리토모(谷衛友) 이시카와 사다미치(石川貞通) 이나바 노리미치(稻葉典通)	양지	나카가와 히데시게?
언양	벳쇼 요시하루(別所吉治)	新城	우키타 히데이에 휘하
新城		新城	우키타 히데이에 휘하
청도	고사쿠 사에몬타이후 (小作左衛門大夫)	과천	우키타 히데이에 휘하
新城		新城	이시다 미츠나리 휘하
대구	이나바 사다미치(稻葉貞通) 니시무라 사베이(西村左兵衛)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파주 新城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휘하
新城		新城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휘하
인동	기노시타 시게카타(木下重堅) 난조 모토키요(南條元清)	개성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주둔
개령	모리 데루모토 본진	新城	모리 데루모토 휘하
선산	미야베 나가후사(宮部長房) 가키야 츠네후사(垣屋恒總)	평산	모리 데루모토 휘하
新城	토다 카츠타카 휘하	新城	모리 데루모토 휘하
상주	토다 카츠타카 주둔	봉산	오무라 스미요리(大村純賴) 오토모 요시무네 휘하
함창	초소카베 모토치카 휘하	황주	오토모 요시무네 주둔
문경	초소카베 모토치카 주둔	중화	고니시 유키나가 휘하 모리 데루모토 휘하
新城	하치스카 이에마사 휘하	평양	고니시 유키나가 주둔
新城	하치스카 이에마사 휘하	순안	모리 데루모토 선봉 수비
		숙천	

〈표 3〉 『鍋島家文書』 수록 일본군 주둔 현황 (1592년 12월 10일자 명령)

주둔지	주둔장수
부산포	도도 사부로 사에몬노조(百々三郎左衛門尉) (도도 츠나이에(百々綱家)?) 미와 치카이에(三輪近家 : 도요토미 히데카츠의 가신)
동래	도요토미 히데카츠 부대
양산	도요토미 히데카츠 부대
밀양	벳쇼 요시하루(別所吉治) 도요토미 히데카츠 부대
대구	이나바 사다미치(稻葉貞通) 사이무라 마사히로(齊村政廣)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기노시타 시게카타(木下重堅) 난조 모토키요(南條元清)
선산	미야베 나가후사(宮部長房)
함창	초소카베 모토치카
문경	초소카베 모토치카
충주	하치스카 이에마사 이코마 치카마사
죽산	후쿠시마 마사노리
양지	나카가와 히데시게(中川秀成) 우키타 히데이에
한성	마시타 나가모리 이시마 미츠나리 오타니 요시츠구

위의 기록에 의하면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충청도 죽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지명으로 표기된 곳은 기존의 조선 읍성이나 옛 성을 이용하여 진지를 마련한 곳이고 新城은 새로 성을 구축한 곳이다.³⁴⁾ 일본군 장수들은 자신의 부하를 다른 진영, 부산에 파견하거나,

34) 임진전쟁 시기 일본군의 축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고하였다. 유재춘, 「임진전쟁시 일본군의 조선 성곽 이용에 대하여 -철원 성산성 사례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4, 2003; 太田秀春,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日本軍の築城觀の變遷について -朝鮮邑城の利用から倭城築城への過程を中心に」, 『朝鮮學報』 181, 2001(太田秀春, 「第二章 朝鮮の役に於ける日本軍の築城觀の變遷」, 『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 清文堂, 2005에서 수정·증보).

병력을 빌려주는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소규모의 병력을 지니고 있었던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영천이라는 원거리에 부대를 나누어 두었을 가능성은 낮다.

『임진전란사』는 영천성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부대라는 판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1926년에 일본 참모본부에서 편찬된 『日本戰史 朝鮮役』의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영천성 전투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한 뒤 ‘부대장은 미상. 일설에는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부대라고 함’이라는 주를 달았다. 이어서 경주성 전투에 대한 서술 아래에도 ‘수비를 맡은 장수는 미상이나 일설에는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부장 다가와 나이키(多川內記)라고 함’이라는 주가 붙어 있다.³⁵⁾ 『임진전란사』의 서술은 『일본전사 조선역』을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전사 조선역』의 체제는 각각의 서술마다 일일이 사료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둔장수를 명시하지 않고 추측성의 주를 단 것은 그만큼 근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전사 조선역』은 어디에 근거하여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부하가 영천성과 경주성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서술하였던 것일까. 나베시마(鍋島)가문에서 2군의 장수였던 나베시마 나오시게를 현창하기 위해 편찬한 『直茂公譜考補』에는 서술의 근거로 추정되는 사료가 게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高麗軍記」라는 자료에서 인용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먼저 “세 부교가 도해한 후 부산포에서 한성까지의 경계와 제 군무의 통용을 위해 연계성(繫ノ城)을 구축할 것. 경상도에서도 요해지를 건설하여 각자 수비할 것. 성을

35) (日本) 參謀本部編, 『日本戰史 朝鮮役』, 偕行社, 1924, 206쪽; 崔孝軾, 「壬辰倭亂 중 永川城 탈환전투의 고찰」, 『大丘史學』 47, 1994, 87쪽에서는 영천성 전투 당시 남천에 투신한 이는 ‘福島正則(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부장인 법화였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참고문헌으로는 『임진전란사』와 영천시에서 편찬한 『영천의 전통』, 그리고 『日本戰史 朝鮮役』을 제시하였다.

수비할 장수는 다음과 같음”이라는 명령 뒤에 부산포성, 안골포성, 가덕성, 죽도성, 서생포성, 경주성, 충주성, 춘천성, 그 외의 연계성(繫城)을 수비할 장수들의 명단과 병력 수가 표기되어 있다. 이 중 경주성을 수비할 장수로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성주 대리(城代) 다가와 나이키(田川内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³⁶⁾

『直茂公譜考補』의 내용상 이 문서가 실린 지점은 조승훈이 이끄는 명군이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패배한 다음 부분이다. 편찬자는 이 문서가 1592년 7월경의 사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제 이 문서의 신뢰도를 살펴볼 차례이다.

현재까지의 분석결과, 『直茂公譜考補』(에 실린 「高麗軍記」) 외의 자료에서는 이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문서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떨어트리는 것은 부산포성을 수비할 장수로 치쿠젠 주나곤 히데아키(筑前中納言秀秋), 즉 고바야카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의 이름이 명기된 부분이다. 1582년 출생한 히데아키는 1593년 3월에 나고야까지 출진하기는 했으나 조선으로 건너가지 않고 8월에 돌아갔다. 그가 조선에 파견되는 것은 정유재란이 발발한 이후였다. 그리고 이름을 히데토시(秀俊)에서 히데아키로 바꾸는 것은 1597년 6월의 일이다.³⁷⁾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1592년 7월 경에 ‘히데아키(秀秋)’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건너왔다는 것, 혹은 건너올 예정이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실제 이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혹은 존재했던 것이고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3명의 부교가 조선으로 건너와서 한성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이전과 상황이 달랐고, 조선에 있던 일본군 장수들이 연계성 축성과 주둔을 위해 경상도 지방에 병력을 나누어 보낼 상황은 아니었다. 즉, 1592년 하반기에 영천성과 경주성에

36) 『直茂公譜考補』 권7 加藤清正於兀良哈擒王子 明兵援朝鮮(『佐賀縣近世史料』 제1편 제1권, 佐賀縣立圖書館, 2003, 649~650).

37) (일본)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編, 『國史大辭典』, 吉川弘文館, 1975.

주둔하던 병력이 후쿠시마 마사노리 부대의 소속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한편 최효식은 가토 기요마사 등이 이끄는 제2군의 병력이 주둔했을 것으로 추측했다.³⁸⁾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가토 기요마사가 영천을 경유한 것은 사실이다.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종군승려였던 제타쿠(是琢)의 『朝鮮日記』에는 자신이 속한 부대의 이동경로로 보이는 지명이 차례로 표시되어 있는데, 부산포-동래부-양산-수영-언양-경주-영천-신녕-의흥-의성-군위-비안-용궁-예천-함창-문경-충주 순이다.³⁹⁾ 제2군에 속한 부대는 모두 영천을 경유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에서 영천으로의 진격을 준비하던 중, 가토 기요마사와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일본에 보낸 보고서에는 “입구 쪽(口々 : 경상좌도 지역) 성에도 군량이 많으므로 사람을 남겨놓고 (히데요시의) 출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⁴⁰⁾ ‘입구 쪽 성’이란 이동 경로로 볼 때 부산 등 해안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宣祖修正實錄』의 의병장 柳宗介에 관한 기사에는 “이 때 가토 기요마사가 안변에 있으면서 경주의 적과 상응하였다. 一枝의 군사가 영동의 고성, 강릉에서 평해에 이르기까지 마구 약탈하였다”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⁴¹⁾ ‘경주의 적’이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경주에 가토 기요마사의 병력 일부가 주둔하였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명 침략을 목표로 두고 있던 가토 기요마사가 다수의 병력을 후방에 남겨놓기는 어려웠을

38) 崔孝軾, 「壬辰倭亂 중 永川城 탈환전투의 고찰」, 『大丘史學』 47, 1994.

39) 『佐賀縣史料集成』 5.

40) 1592년 4월 21일(明曆 22일)가토 기요마사와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連署 보고서(『韓陣文書』(中野等, 『豊臣正權の對外侵略と太閤檢地』, 校倉書房, 1996, 78쪽에서 재인용)).

41) 『宣祖修正實錄』 권26 선조25년(1592) 8월 1일 무자.

것이다. 경상좌도 여러 지역에 남겨둔 이들은 진격로와 부산-일본 현지의 연락을 원활히 하거나 조선으로 건너올 예정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을 것이다. 병력을 남겨두었다고 할지라도 이후 경상좌도에 진입한 모리 데루모토의 병력에 의해 대체되었을 것이다.

영천성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주둔한 이가 누구였는지 파악한다면 해답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와 <표 3>을 참고하자면 경상도 중남부 지역에 주둔하는 것으로 기록된 장수들 중 3월 13일의 명령서(<표 1>)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영천성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아닐까. 조선으로의 도해 순서가 명시된 3월 13일의 명령서 이전에도 병력 배치에 관한 명령서가 발급된 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1592년 1월 5일의 명령서이다.⁴²⁾ 그리고 이 명령서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문서가 존재한다.⁴³⁾ 후자, 특히 세 번째 문서(『武家事紀』 수록 문서)에 의하면 3월 13일 명령서에 명시된 장수들 이외에도 총 수 28만이라는 많은 장수들이 나고야에서 출진을 대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⁴⁾

이 문서에는 <표 2>와 <표 3>에서 경상도 중남부에 주둔하는 것으로 표기된 장수들의 이름과 병력 수가 확인된다. 난조 모토키요(南条元清), 미야베 나가후사(宮部長房), 기노시타 시게카타(木下重堅), 사이무라 마사히로(齊村政廣),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벳쇼 요시하루(別所吉治), 이나바 사다미치(稻葉貞通) 등이다. 이들은 최소 500에서 최대 2,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도해하도록 지정

42) 『黒田家文書』 176.

43) 『淺野家文書』 81과 山鹿素行, 『武家事紀』 卷31 續集 古案 豊臣家下 道行之次第(『武家事紀』 中卷, 山鹿素行先生全集刊行會, 1916, 494~498쪽).

44) 이케우치 히로시는 이 세 문서가 원래 하나의 완성된 명령서의 형태였으나 각각의 문서집에 실리는 과정에서 형태를 달리하였다고 보았다.(池内宏, 『文祿慶長の役』 正編 第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4, 232~250쪽)

되어 있었다.

이들은 3월 13일자 명령서에 명시된 장수들이 조선으로 도해한 이후에 차례로 건너와 경상좌도 중남부 각지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수들의 주둔지는 영천 근처였으며, 다른 지역의 일본 장수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에 대한 약탈점령을 시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영천성 전투의 상대는 이들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 같은 소규모 장수들의 활동을 기록한 사료는 많지 않기에 직접적인 사료를 통해 행동을 재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경상도 점령을 지휘했으며, 다수의 병력을 거느리고 여러 차례 의병과의 전투를 치른 모리 데루모토군의 동향을 통해 이들의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파악해보겠다.

나. 영천성 주둔 일본군의 행동 방식

영천성에 주둔하던 부대는 모리 데루모토나 도요토미 히데카츠의 부하일 가능성도 있다. 모리 데루모토는 3만이라는 많은 병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표 2>와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휘하의 부대를 분산하여 다른 지역에 파견하기도 했다. 부산과 동래에 부대를 주둔시켰던 히데카츠의 군사가 영천부근까지 진출했을 수도 있다. 비교적 많은 사료를 남기고 있는 모리 데루모토 휘하 장병들의 동향을 통해 영천성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의 행동 방식을 재구성해보겠다.

조선에 상륙한 이후, 모리 데루모토는 그가 인솔한 대부분의 병력과 함께 경상좌도에 머물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카츠도 부산과 동래에 주둔한 채 북상하지 않았다. 두 장수는 일본에서의 상륙과 북상을 위한 중요한 통로인 경상도를 나누어 통치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모리 데루모토에게는 경상도 지역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위한 숙박소 건설을 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⁴⁵⁾

그는 경상좌도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령을 시도했다. 본진은 성주, 선산에 두었다가 6월 12일 개령으로 이동했다. 그의 부하들은 경상좌도의 여러 지역으로 파견되어 점령과 약탈 활동을 이어갔다. 이하에서는 모리 데루모토의 가신인 요시미 모토요리(吉見元頼)의 휘하에 있던 시모세 요리나오(下瀬頼直)의 『朝鮮渡海日記』를 중심으로 모리 데루모토 부대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겠다.

시모세 요리나오는 요시미 모토요리와 함께 1592년 5월 4일 부산에 도착했다. 휘하부대가 인솔 장수보다 늦게 도착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⁴⁶⁾ 이들은 이동 경로에 진지를 건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조선인을 쫓아내기도 했다. (『朝鮮渡海日記』 5월 8일, 11일, 17일) 전쟁 발발 초기 일본군이 오기도 전에 도망쳤던 조선인들은⁴⁷⁾ 시일이 지나면서 산성과 같은 험지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시미 모토요리 등이 창녕 부근에 만든 진지에는 70명을 주둔시켰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5월 12일) 경로에 건설한 진지에는 이처럼 약간 명의 병력을 주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모리 데루모토의 서장에서도 이동 경로에 건축 중인 진지에 경비 부대를

45) 池内宏, 「第二章 第四軍以下諸軍の動靜」, 『文祿慶長の役 別編第一』, 東洋文庫, 1936, 95~110쪽; 모리 데루모토는 5월 중순 경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도해에 대비하여 숙박소를 건설하라는 명령을 전달받았으며, 구로다 나가마사로부터 후방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1592년) 5월 26일 모리 데루모토가 시시도 다카이에(宍戸隆家)에게 보낸 서장의 두 번째 항목 [『卷子本嚴島文書』 94(廣島縣編, 『廣島縣史』 古代中世資料編 3)] 다른 부대와 함께 북상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임무가 생겨서 경상도에 머물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후방 지원이라는 임무를 띠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46) 시마즈가의 니이로 타다마스(新納忠増)(『朝鮮渡海之記』), 나베시마가의 타지리 아키타네(田尻鑑種) (『高麗日記』)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47) 『服部傳右衛門覺書』에 의하면 조선인들은 동래성 전투 이후 밀양, 대구, 인동, 선산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에 대적하지 않은 채 성을 비우고 도망쳤다고 한다.

남겨두었다고 하였다.⁴⁸⁾ 이는 일본군이 복상한 후 경상도에 남은 일본군이 1백여 명, 혹은 50~60명씩 모여 곳곳에 주둔하고 있으며, 성주성에는 고작 40~50명만이 주둔하고 있다는 김성일의 보고와도 맞아 떨어진다.⁴⁹⁾

경상좌도의 일본군은 각 거점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조선 읍성 등을 활용하여 성곽을 개축하거나, 기존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단기간에 비교적 간단한 방어시설(繫城, 付城 등)을 신축하였으며,⁵⁰⁾ 여기에 소수의 병력을 주둔시켰다. 이들은 주둔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나아가 식량을 약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을 살해하거나 생포하기도 했다. (『朝鮮渡海日記』 7월 26일(明曆 27일), 7월 28일(明曆 29일), 8월 4일(明曆 5일) 등) 일본군이 준비해 온 군량은 대략 6개월분 정도였다.⁵¹⁾ 나머지는 조선 현지에서 조달해야만 했다. 조선인이 순순히 식량을 내놓지 않는 이상, 약탈을 통해서만 군량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조선인의 공격(『朝鮮渡海日記』 7월 2일(明曆 3일), 7월 27일(明曆 28일) 등)을 유발했다. 성주에 머물던 모리 데루모토는 5월 26일 영지에 보낸 서장에서 이미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즉, 조선인들이 일본군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고 있으며, 일본군이 적은 인원으로 다니면 半弓을 쏘아 상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을 지배하기에 일본군 병력이 너무 적다는 의견을 개진

48) (1592년) 5월 26일 모리 데루모토가 시시도 다카이에(宍戸隆家)에게 보낸 서장의 두 번째 항목 (『卷子本嚴島文書』 94).

49) 『宣祖實錄』 권27 선조25년(1592) 6월 28일 병진.

50) 유재춘, 「임진전쟁시 일본군의 조선 성곽 이용에 대하여 -철원 성산성 사례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4, 2003; 太田秀春,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日本軍の築城觀の變遷について -朝鮮邑城の利用から倭城築城への過程を中心に」, 『朝鮮學報』 181, 2001 (太田秀春, 「第二章 朝鮮の役に於ける日本軍の築城觀の變遷」, 『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 清文堂, 2005에서 수정・증보).

51) 1592년 1월 5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加藤清正家藏文書』 37).

했다.⁵²⁾

모리 데루모토 휘하의 안코쿠지 에케이(安國寺惠瓊)는 5월 14일에 부산을 출발하여 성주에서 모리 데루모토를 만난 후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후인 6월 8일, 일본에 서장을 보냈다. 여기서 그는 양산과 현풍 사이에서 산에 올라가 농성하던 조선인을 공격하였다는 것, 일본인이 왕래할 때 조선인이 반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전했다.⁵³⁾ 7월 16일(明曆 17일)에 한성에 도착한 세 부교 중 한 사람인 마시타 나가모리도 조선인이 일본군에 협조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일본군을 공격하고 있으나, 전술상으로도 수적으로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임을 토로했다.⁵⁴⁾ 전쟁 초반부터 경상도 남부에서 중북부에 이르는 지역에서 일본군에 대한 조선인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의 기록에는 이처럼 산으로 도망친 조선인이 갑자기 ‘반궁’으로 공격하였다는 내용이 자주 발견된다.⁵⁵⁾ 도망과 게릴라적 공격은 일본군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행위였다. 일본군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일본군의 기록에 나오는 빈도만큼이나 그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일본군의 약탈과 조선인의 공격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은 점차 거세졌다. 모리 데루모토가

52) (1592년) 5월 26일 모리 데루모토가 시시도 다카이에(宍戸隆家)에게 보낸 서장의 두 번째, 세 번째 항목(『卷子本嚴島文書』 94).

53) (1592년) 6월 8일 안코쿠지 에케이가 동료들에게 보낸 서장의 첫 번째, 아홉 번째 항목 (『卷子本嚴島文書』 95).

54) (1592년) 8월 28일 마시타 나가모리가 이시다 마사즈미(石田正澄)에게 보낸 서장 [『(福井縣立圖書館)松平文庫所藏文書』 (三鬼清一郎, 『朝鮮役における國際條件につい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62(史學21), 1974, 13~14쪽(180~181)에서 재인용].

55) 『高麗日記』 1592년 5월 10일, 10월 중순, 1593년 2월 22일의 기록; (1592년) 5월 26일 모리 데루모토가 시시도 다카이에(宍戸隆家)에게 보낸 서장(『卷子本嚴島文書』 94); (1592년) 6월 8일 안코쿠지 에케이가 동료들에게 보낸 서장(『卷子本嚴島文書』 95) 등.

6~7월에 안동, 8~9월에는 성주에 병력을 파견한 예와 같이 공격의 규모가 클 경우 여러 지역의 병력을 모아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풍, 김천, 성산 등지에서도 의병이 발생하는 등 (9월 11일, 9월 13일, 9월 14일 : 각각 明曆 보다 1일 빠름) 경상도 지역 곳곳에서 조선인의 일본군에 대한 공격의 규모는 커졌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인의 공격에 대응하기 어려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리 데루모토군이 경상도에서 이와 같이 고전하고 있을 무렵, 조승훈이 이끄는 명군이 고니시 유키나가 등이 주둔하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7월 17일) 당시 조선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물론 히데요시가 파견한 부교들도 앞으로의 전쟁 양상에 대해 위기감을 느꼈고, 전투 직후인 대책회의를 소집했다.⁵⁶⁾

그리고 모리 데루모토에게는 세 부교로부터 평안도를 진압해달라는 요청이 도착했다.⁵⁷⁾ (『朝鮮渡海日記』 7월 18일 : 明曆 19일) 이 기사에서는 이 요청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는 명나라 진격을 명한 6월 3일의 명령서에 입각한 요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 부교는 북상 중에 이미 조선의 상황이 일본에서의 예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그러므로 데루모토에 대한 평안도 진압 요청은 역시 달라진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모리 데루모토는 병에 걸려 직접 병력을 이끌고 전선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⁵⁸⁾ 자신은 진지에 머문 상태에서 10월

56) 회의는 8월 7일~13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회의의 진말에 대해서는 池内宏, 「明將祖承訓の敗走以後に於ける我が軍の態度」, 『史學雜誌』 29-7, 1918을 참조.

57) “(안동 지역을 진압하던 중) 關白様より大谷刑部少輔・増田右衛門尉・石田治部少輔 彼三奉行衆 御朱印持參候て 安藝宰相殿江ハ京都より西目平安道と申國御しつめ (御鎮め)候へと被仰渡候由候て(後略)” ; 평안도의 평양 이남은 이미 일본군의 점령하에 있었다. 따라서 ‘진압(御しつめ : 御鎮め)’이라는 표현은 명군의 재공격에 대비한 방비강화를 의미한 것으로 생각한다.)

말 경 자신의 병력만을 평안도로 보냈다. 『朝鮮渡海日記』와 〈표 2〉, 〈표 3〉에서는 1차 평양성 전투 이후 모리 데루모토 병력이 한성 이북으로 북상하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명군의 공격을 받은 일본군이 평양을 전선으로 삼아 방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조선 남부지역의 방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의병 봉기가 빈발하고 있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더 큰 적’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을 북상시켜야만 했던 것이다.

모리 데루모토 휘하의 군사가 영천성에 주둔하였다는 사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도요토미 히데카츠의 부하였다는 사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영천성과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하던 모리 데루모토 휘하의 군사들이 이동 경로상에 소규모 주둔지를 건설하고 병력 주둔시키는 과정, 그들의 조선인에 대한 약탈과 조선인에 의한 끊임 없는 저항 등의 상황을 전하는 자료를 통해 영천성 전투 당시 일본군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상좌도 지역의 사족과 일반 민중들은 일본군의 살해와 약탈 행위에 분노하여 봉기했다. 일본군은 이에 힘겹게 대응했고 시간이 갈수록 주둔지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평양에서의 대규모 전투를 예상한 일본군은 모리 데루모토의 군사마저 동원해야 했고, 경상좌도 지역의 방어에는 공백이 발생했다. 조선 의병과의 전투를 견디기 어려워진 일본군은 보다 큰 거점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쟁 양상의 변화를 활용하여 의병들은 경상좌도의 중요 거점을 확보해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군이 남해안으로 퇴각한 이후에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조선은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58)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모리 데루모토의 귀국을 명했다. (1592년) 9월 24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 (『毛利家文書』 890).

4. 결론

임진전쟁 시기 의병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병이 맞서 싸웠던 일본군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의병연구에서는 의병의 상대였던 일본군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근거에 토대하여 일본군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전투는 상대방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과 ‘적’이 남긴 사료 대한 분석 없이 조선의 사료만으로는 전투를 온전히 재구성하기 어렵다. 전투를 다룬 사료는 시대가 지날수록 전공을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소홀히 한 연구는 일방적인 전공기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의 임진전쟁 의병연구가 임진전쟁이라는 국제전쟁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활용과 해석이라는 부분에서 보다 균형을 갖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진전쟁 당시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대 배치 명령서에서 지시된 편성체제 하에서 움직였다. 그들은 명 침략이라는 히데요시의 큰 전략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각 부대는 각각의 장수와 그의 가신, 그리고 가신이 거느린 개인 부대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스스로 병력과 군량을 준비해야만 했다. 군량을 약탈할 것인지, 영지에서 운송할 것인지, 대여할 것인지는 부대를 이끄는 장수가 판단해야했다. 전진 과정이나 주둔 시에 맞닥뜨리게 되는 전투에서 어떤 전술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도 자신에게 있었다. 영천성에서 의병과 싸운 일본군을 파악하기 힘든 이유는 이처럼 각 부대가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영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 부대가 누구의 부대인지, 전투에 참전한 이가 누구였는지를 전하는 사료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발급한 부대 배치 명령서와 그 외 전쟁 초기 주둔 현황을 전하는 사료를 활용하여 영천성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의 정체에 접근했다. 이를 통해 그들이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부하였다는 학설은 근거가 매우 미약하며, 영천을 경유하여 북상한 가토 기요마사 등 2군 소속 부대일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9번 부대 이후에 조선에 들어온 소규모 영주급의 장수가 이끄는 군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개령에 본진을 두고 경상도 내륙 여러 지역에 부대를 파견하고 있던 모리 데루모토 휘하의 군사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9번 부대의 장수로 부산에 주둔하면서 부산·동래·양산·밀양 방면에 휘하의 부대를 포진하고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카츠의 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리 데루모토가 경상도 중북부 지역에 머물면서 북상한 일본군을 지원하고, 도요토미 히데카츠가 부산에서 모리 데루모토 진영까지의 병참을 총괄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영천성 전투가 벌어진 시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행동 양상은 모리 데루모토 휘하 부대의 기록을 통해 접근하였다. 전쟁 초반부터 벌어진 일본군의 약탈과 살해행위는 조선인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선인의 저항에 끝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영천성 전투와 같은 규모의 전투에서도 패배를 겪었다. 이후 일본군은 주력부대는 명군이라는 새로운 적을 방비하기 위해 한성~평양에 이르는 지역에 집결하였다. 경상좌도에 남은 일본군은 곳곳에 설치한 주둔지에서 철수하여 방어가 수월한 거점으로 모이게 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영천성 전투를 직접 언급한 일본 사료나 영천성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이 어떤 장수의 부대였는지 확정할 만한 사료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일본군의 편성 체제, 전쟁

이후의 행동 경로, 경상좌도 지역에서 벌어진 실제 전투와 작전을 참고하여 영천성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다. 영천성에 입성한 일본군의 행동 방식 역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무비판적인 답습을 경계하고 개별 전투사의 재구성을 위한 대안적인 방법론을 제안하였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분명하다. 앞으로 소규모 영주급 장수들이 남긴 사료 조사 등 보다 면밀한 작업을 통해 영천성 전투를 비롯한 개별 전투의 실상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또한 일본군이 평양 전선을 강화한 이후, 조선 남부에 남아있던 일본군의 행동 양상과 조선 의병의 대응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원고투고일: 2015.4.5, 심사수정일: 2015.5.21,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임진전쟁, 임진왜란, 영천성 전투, 의병, 권응수, 도요토미 히데요시, 모리 데루모토, 도요토미 히데카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The Activities of Japanese Armed forces in Kyeongsang Province in the Early Period of Imjin War : Battle of Yeongcheon Fortress

Kim, Kyong-tae

To evaluate the activities of the righteous voluntary army during the Imjin War period, it is imperative to grasp those of their adversaries, the Japanese army. Researches up until now have not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army and some of them even illustrated the circumstances based on inappropriate grounds. Every battle needs at least one army and its counterpart. Without analyzing the adversaries and the materials written by them, it is hard to fully reconstruct the circumstances of a battle only with the materials written by people of Joseon to reflect it's perspective. This is why we need to understand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army using Japanese historical records.

During the war, the Japanese army moved on war footing directed by the order of deployment of Toyotomi Hideyoshi. They had to follow Hideyoshi's grand strategy of invading Ming China. Yet each troop consisted of a general, his vassals, and the soldiers under their command and it had to procure its own rations and forces. How they procure the provisions was up to the judgement of the general: he had to make his own decision whether to pillage, to transport them from its domain, or to rent. He was also given mandate to decide what kind of tactics they would take for the battles during the army's advancing or stationing. The independent nature which each troop assumed renders it hard to trace the Japanese troops; information on the Japanese army, such as to

whom the troop belonged, who participated in the battle, is hard to find from historical records. And this is why it is hard to grasp the Japanese army who fought against the righteous voluntary army at Yeongcheon fortress.

Using various orders of deployment issued by Toyotomi Hideyoshi,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Japanese army who participated in the Battle of Yeongcheon Fortress must have been small scale troops which entered Joseon after the 9th troops or troops under the Mori Terumoto and Toyotomi Hidekatsu. Meanwhile, from the records of the troops under Terumoto, this article traced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Army in Kyeongsang Province during the period of Yeongcheon fortress. From the early phase of war, pillage and violence by the Japanese army incurred strong resistance of Joseon people. Yet the Japanese army could not cope with situation and the righteous army staged a series of riots here and there. After the battle at Yeongcheon Fortress, the Japanese army suffered repeated defeats at subsequent battles of similar scale. After that, the main body of the Japanese army assembled along the line from Hanseong to Pyeongyang in order to defend the region from their new enemy, Ming army. The remnant troops left in Kyeongsang Province retreated from their various posts and gathered into positions where they could easily defend themselves. This made it possible for Joseon to recover the region which was exploited as main passage and posts of the Japanese army.

Key words : Imjin War, Imjin Waeran, Battle of Yeongcheon Fortress, righteous army, Kwon ung-su, Toyotomi Hideyoshi, Mori Terumoto, Toyotomi Hidekatsu

임진왜란과 固城 의병의 활동 양상

신 윤 호*

1. 머리말
2. 임진왜란 초기 고성지역의 상황
3. 『雙忠錄』과 『雙忠實紀』 검토 및 분석
4. 고성지역 의병의 조직과 전투
 - 가. 의병의 조직과 그 특성 나. 九萬·尺岷 전투
5. 정유재란과 고성왜성
 - 가. 기문포해전과 의병장 박애상 나. 고성함락과 고성왜성 축성
6.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임진왜란은 조·명·일 삼국이 관계된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다. 명나라까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이 당초 征明假道, 즉 조선을 거쳐 명나라 정벌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개국 이후 약 200년간 큰 전쟁이 없어

* 국립진주박물관 연구원

군제의 폐단이 야기되었고 일본의 침략에 의해 국방상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예컨대, 개전 20일 만에 한성을 점령당하였고 약 2~3개월 만에 호남을 제외한 조선 전역이 일본군에 의해 유린되었다. 반면,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기까지 약 100년간 내전이 있었으니 이 과정에서 전쟁을 수행할 엄청난 수의 정예병들이 자연스럽게 양성되었다.¹⁾

조선과 일본의 군사력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나 결국 일본군이 퇴각함으로써 전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은 의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명군의 출병도 큰 역할을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은 곳곳에서 수십 혹은 수만 명 단위로 기병하여 유격전으로 일본군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본고에서는 고성지역의 전황과 의병활동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는데 다만, 김준형에 의해 진주성전투가 있기까지 진주 주변에서의 의병활동에 관하여 연구하면서 고성지역도 함께 다루었으며, 최명철은 최균·최강·이달 등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을 뿐이다.²⁾

고성은 해안지역으로서 수륙 양면으로 적침에 노출된 곳이었다. 임진왜란 초, 일본수군이 남해안을 침략하여 원군이 이끄는 경상우수군을 무찌르고 진해·고성·사천 등지로 상륙하였으며, 창원·함안·진해 등지의 육로를 통하여 침략해 오기도 하는 등 일본군의 분탕과 횡행은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 와중에도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니 최균·최강·이달·안신갑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의병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고성뿐만 아니라 진주·사천·진해·창원·웅천에

1) 일본의 戰國時代로서 수많은 정병을 양산한 戰國大名의 성장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참조 된다. 구태훈, 「임진왜란 전의 일본사회-전국시대 연구 서설」 (『사림』 29, 수선사학회, 2008); 速水融(조성원, 정안기 옮김), 『근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 해안, 2006.

2) 김준형, 「진주 주변에서의 왜적방어와 의병활동 - 제1차 진주성 전투 이전-」 (『경남문화연구』 17, 경남문화연구소, 1995)
최명철, 『임진왜란기 고성 지역 의병장에 관한 연구 - 최균, 최강, 이달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4)

이르기까지 그 활동범위가 매우 넓었다. 고성의병의 활약상을 논하기 위한 자료로서 최균·최강의 유고 및 행적을 다룬 『雙忠錄』과 『雙忠實紀』를 들 수 있는데, 이외에 여타 사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여 그 간행과정과 성격을 알아보고, 중요한 부분은 사료비판을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정유재란 시기 고성현령 조응도와 박애상의 활동상, 고성왜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고성출신 인물들은 이 외에도 많으나 모두 다룰 수 없으므로 고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례에 한정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임진왜란 초기 고성지역의 상황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은 1번대~9번대까지 15만여 대군을 이끌고 부산에 상륙하였다.³⁾ 부산진에 이어 동래부까지 함락하고 군사를 나누어 곧바로 북상하여 5월 2일 한성에 입성하였다. 조선은 대규모 적침에 놀라 지방수령들이 앞 다투어 달아났고 임금까지 피난을 떠나는 등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한편, 부산으로부터 남해안을 통해 진격해온 일본 수군은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도도 타카도라(藤堂高虎)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선단이었다. 이들은 일본군이 나고야성에서 부산으로 침략하는 배의 수송이 원활하도록 對馬島, 壹岐島 등에 배치되었고, 조선이 복종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공격에 가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⁴⁾

고성지역에 일본군이 처음 침략해온 시기는 4월 말경이었는데,

3) 豊臣秀吉朱印狀案-天正20年 3月 13日付-(『秀吉と文祿・慶長の役』,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 2007, 24~25쪽)

4)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79쪽.

원균의 경상우수군을 격파하고 진해·고성 연안으로 출몰하던 일본 수군으로 추측된다. 이후 원균은 원균을 요청하여 이순신의 전라좌수군과 연합한 후 5월 8일,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합포·적진포·사천·당포·당항포 등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때 일본군은 황급히 상륙하여 도주하였는데 함선이 격파되어 사천·고성·진해 등 육로로 횡행하며 분탕질을 하였다. 5월 말경 일본군이 고성을 점령한 후 西進하여 사천성까지 점령하였다.

사천성을 점령한 일본 장수는 가메이 코레노리(龜井茲矩[眞矩])로서 사천 부근에 배를 정박하고 상륙하여 사천성 뿐 아니라 곤양·하동까지 진출하였다.⁵⁾ 한편, 고성성을 점령한 후 수비하고 있던 일본군은 호리노우찌 우지요시(堀内氏善)라는 수군 장수였다. 일본 선단을 이끌던 그가 상륙하여 고성을 침략한 과정을 살펴보면, 4월 일본수군이 경상우수군을 와해시킨 후 도도 타카도라 등과 함선 50여 척을 거느리고 거제도에 주둔하고 있었다.⁶⁾ 이때 조선의 수군 가운데 전라좌수군과 경상우수군이 연합한 후 진격하여 5월 7~9일, 옥포·합포·적진포 등에서 승전한 후 잠시 물러나 있었다. 이 해전에서 파선된 일본수군은 진해·고성 등지에 상륙하여 분탕질을 하였다. 진해현감은 도주하고 고성현령 金絢은 형벌이 가혹하여 민심을 잃은 자로서 백성들의 이반현상으로 버티지 못하고 도주하였다.⁷⁾ 그 외의 일본선단은 다시 여러 부대로 나누어 사천·곤양, 고성·진해 등지로 진출하여 상륙한 후 각지를 침략한 상황이었다. 이때 이미 일부 일본군이 횡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호리노우찌 우지요시가 가세하여 고성성을 점령한 것으로 보이며, 가메이 코레노리 역시 사천·곤양 지역으로 침략한 것으로 보인다.

5월 29일, 전라좌수영에서 이순신이 출발하여 노량해역에서

5)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204쪽.

6)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205·214쪽.

7) 『선조실록』 27권, 25년, 6월 丙辰(28일).

원군과 합세하였다. 사천 선창 앞바다에 이르자, 선창에 일본군 4백여 명이 진을 치고 일본군선 12척이 정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북선을 선봉으로 삼아 공격하고 적선을 불태우자 일본군들은 육지로 도주하였다. 이어 조선수군은 당포에 있는 적을 발견하였는데, 당포 선창에 배를 대고 성 안팎으로 진을 친 일본군을 다시 공격하여 적선을 모두 불태웠다. 이때 우후 이몽구가 왜선을 수색하여 가메이 코레노리의 금부채를 발견하였다.⁸⁾ 즉, 가메이의 군대가 사천을 비롯하여 당포부근까지 포진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군은 조선수군에 의해 해상로가 봉쇄되자 점령한 읍성을 중심으로 수성전에 들어갔으며 사천·고성·진해 등에 주둔한 일본군은 서로 군사 백여 명이 왕래하며 연락선을 형성하고 육로를 통한 진격을 꾀하였다.⁹⁾ 5월 말경, 초유사 김성일은 김대명·한계·정승훈에 군사 6백여 명을 모집하여 고성의 崔壩·李達 부대와 합세하여 사천·고성의 적을 공격하자 적은 웅천·김해 등지로 달아났다. 이에 창원 마산포까지 진격하여 진을 쳤다.¹⁰⁾ 이후 다시 일본군이 고성·사천 등지로 침입하였고, 고성의 일본군이 진주로 침범할 기세를 보이며 남강 이남지역까지 박두하자, 진주판관 김시민·사천현감 정득열·곤양군수 이광악 등이 군사를 정비하여 사천·고성·진해 등지의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고성에는 일본군과 이에 부역한 조선인들이 고성성을 굳게 지키고 있어 탈환하지 못하고 돌아왔다.¹¹⁾

김시민을 필두로한 군사들이 고성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진주로 회군했을 때, 흩어졌던 사졸들이 모여 군세가 1천여 명에 달하였다.

8) 『이충무공전서』 권2, 狀啓一, 『唐浦破倭兵狀』.

9) 『征蠻錄』 坤, 承政院 開圻(7월 15일).

10) 『난중잡록』 1, 임진년 5월 20일; 『雲圖實紀』 권1, 「事實大略」 25년(壬辰) 5월 20일(閔老峯所撰中興誌).

11) 『선조실록』 27권, 25년, 6월 丙辰(28일).

사천의 일본군이 진주를 범하려 한다는 소식에 김시민은 우병사 조대곤과 함께 사천성으로 진격하였다. 十水橋에서 싸워 깨뜨리고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여 사천성 아래까지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얼마 후 사천성을 지키던 가메이 코레노리는 밤을 틈타 고성성으로 도주하였는데, 고성성을 수비하던 호리노우찌 우지요시는 이미 웅천으로 퇴각하였기 때문에 가메이 코레노리의 군대가 고성성을 수비하게 되었다. 김시민이 이끄는 군사가 다시 고성성을 공격하기 위해 永善縣에 진을 쳤다가 밤중에 大屯嶺을 넘어 새벽에 고성성 아래에 당도하여 군세를 과시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며칠 후 밤에 달아나 8월 말, 진해의 일본군과 합세하여 창원으로 퇴각하였다.¹²⁾ 이로써 사천·고성·진해를 수복하였으니 이 공로로 김시민은 진주목사로 승진하였다.

고성지역은 임진왜란 초부터 조선군과 일본군의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부산·김해·창원 등지에 주둔한 일본군의 침략에 시달렸으며, 거제도·가덕도 등에 주둔한 일본수군의 분탕질이 끊이지 않는 등 수륙 양면으로 일본군의 출몰이 잦아 혼란의 중심에 놓인 곳이었다. 일본군의 예봉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던 만큼 향토수호를 위한 의병활동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12) 『난중잡록』 1, 임진년 8월 4일·9일; 『고대일록』 권1, 임진년 秋9월 1일(丁巳);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204-205쪽;

특히 『일본전사-조선역-』의 관련 서술내용에 의하면 가메이 코레노리가 고성에서 창원을 거쳐 부산으로 철병한 이유가 하시바 히데카츠[羽柴秀勝]의 철군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김시민軍의 압박이 있었던 사실은 기술하지 않았다. 이는 참고자료의 여러 내용 가운데 일부만 선택적으로 인용한 결과라 판단된다. 여러 사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조선 측이 사천성을 공격하자 고성성으로 도주하였고, 다시 고성성을 공격하자 창원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에 비춰봤을 때 비록 가메이군이 고성성에서 철군명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이미 전세가 일방적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3. 『雙忠錄』과 『雙忠實紀』 검토 및 분석

〈표 1〉 『雙忠錄』과 『雙忠實紀』의 구성과 내용

『雙忠錄』 (1823刊)			『雙忠實紀』 (1929刊)		
序	上之二十三年癸未(1823), 柳尋春		序	上之二十三年癸未(1823), 柳尋春	
世系	1世~20世까지의 世系圖		重刊雙忠實紀 編定總例	중간한 이유와 수정·편집된 내용 사례 서술	
詩	贈舍弟投筆時 蘇湖公		先系	始祖 및 1代~10代祖까지의 행적을 기록	
	次姜白川應璜想思詞五首			事實	
	敬次徐藥峯消韻贈姜白川此詩出 二公并狀		詩	送季弟汝堅壩赴舉	
	次姜白川此詩出二公并狀, 附原韻			次姜渭瑞應璜想思詞四首	
	贈姜白川			次徐藥峯消韻渭瑞	
	亂定後歸故庄			次姜渭瑞見贈	
	與舍弟自京還鄉			贈姜渭瑞	
	投筆			亂定後歸故山	
	喜孫兒始生二首			與季弟自京還鄉	
권1 書	與姜松窩僞書 壬辰六月十五日			권1 遺稿	投筆
	與姜松窩書 壬辰九月十三日		喜孫兒生二首		
	答姜白川應璜書 壬辰十月十三日		與姜士盎僞○ 壬辰		
	答姜松窩書 壬辰臘月十七日		與姜士盎		
	答姜白川書 乙未二月十三日		答姜士盎		
	答姜白川書 乙未九月初一日		答姜渭瑞 壬辰		
	答姜白川書		答姜渭瑞 乙未		
	答姜白川書 丙申七月十六日		答姜渭瑞		
	與姜松窩		答姜渭瑞 丙申		
	答姜松窩		答姜渭瑞		
實記	蘇湖公實記		狀	上觀察使狀	
	蘇溪公實記			行狀二	
				墓碣銘二	

권2	遺事	龍蛇倡義事蹟	권2	家乘	
		濟州勝戰事蹟		敘述	
		蘇湖公遺事		遺事	蘇湖公遺事
		蘇溪公遺事			蘇溪公遺事
	補遺	本縣邑誌	挽蘇溪二		
趙公慶男山西雜錄		贈職焚黃韻			
徐藥峯洳與姜白川書		권3	褒典	敎加里浦僉節制使崔壩書	
李忠武公舜臣與姜白川書				宣武原從功臣錄勳 敎書	
察訪公諱振虎蘇湖公季子答姜松窩書				道儒請贈 上言	
권3 附錄	敎書			敎加里浦僉使崔壩書	本孫請贈 上言
				蘇湖公行狀	禮曹回 啓
	行狀	蘇溪公行狀	禮曹關文		
		狀後識	禮曹再 啓		
	碣銘	蘇湖公碣銘并敘	敎旨二		
蘇溪公碣銘并敘		焚黃告由文二			
詩	姜松窩偁贈蘇湖公	請諡 上言後禮曹回 啓			
	輓	輓蘇溪公	권4	褒典	諡狀二
		道山祠奉安文			諡狀
		常享祝文			敎旨
		祠宇上樑文			宣諡時告由文二
講堂重修上樑文		請旌 上言後禮曹回 啓			
附	雙忠錄跋二首	권4	祠院	禮曹立案	
	道內士林呈營請褒狀			祠宇上樑文	
	本縣士林呈繡衣金學淳請褒狀			講堂重修上樑文	
	請 贈時道儒上言			奉安文二	
	本孫請 贈上言			常享祝文二	
啓目	禮曹回 啓	권5	倡義諸賢錄	祠宇重修上樑文	
	禮曹下本道關草			祠宇重修記	
	禮曹再 啓			還安告由文二	
	從遊諸賢錄				
	敎旨			증직교지(최균)	권5
증직교지(최강)					
奉安文	蘇湖公奉安文	雙忠實紀舊本跋			
	蘇溪公奉安文	雙忠實紀重刊跋			
	遺墨後敘				

고성지역 의병활동의 주축은 최균·최강 형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료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료로서 1823년에 간행한 『쌍충록』과 1929년에 간행한 『쌍충실기』를 들 수 있다. 이 두 사료는 그 내용상 큰 차이는 없으나 『쌍충록』 간행 이후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어 『쌍충실기』 간행시

이러한 추가 내용을 반영하였다. 『쌍충실기』의 「重刊雙忠實紀編定總例」는 추가된 내용 및 목차 구성의 연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다. 예컨대, 『쌍충실기』 권2의 「家乘」·「敍述」·「遺事」는 『쌍충록』 권2의 「龍蛇倡義事蹟」·「濟州勝戰事蹟」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고 근거로 삼았던 출처별로 분류하여 각각 제목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권5의 「從遊諸賢錄」·「倡義諸賢錄」은 이 책에서 고증된 것만 가려서 새로이 구성하였다.

『쌍충록』과 『쌍충실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권1의 「書」다. 이는 임진왜란 중에 주고받은 간찰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최균·최강 형제와 간찰을 주고받은 인물은 姜僞과 그의 아들 姜應璜이다. 강칭의 자는 士蟲, 호는 松窩이며 강응황의 자는 渭瑞, 호는 白川이다. 그런데 이 간찰의 내용 및 간행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거나 참고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아래의 『쌍충록』에 수록된 간찰 원문을 최균이 강응황에게 보낸 답서다.

答姜白川應璜書壬辰十月十三日
鳳城分手後蠹樹蒼蒼送君舍情物非人而如是則人可以勿不如哉耿耿兵燈不寐者久矣已而帳外有聲開戶視之豚兒來到忽傳半百里心既三復燈前如對吾尊合席妮妮而欣然有喜色矣不料金別將且擎一千里手滋初聞驚愕茫然開緘是乃行施後平安消息而問術於愚矣然吾尊之用兵古之太公兵仙則餘外秘策問於天問於地問於神而何問於庸陋一賤姿乎如愚之愚向者鼎津軍伍既失偶與趙君宗道郭君再祐纔到本營雖有對壘之舉卯君月前與別將李達安信甲往救李統使熊川鎮而尚未返營心甚訝鬱示中興兒起送之教不啻慇懃情誼而振兒以子弟軍官昨送熊川鎮手下無人未副盛教茹恨爲如何哉惠來想思詞律忘拙和呈豈無一粲笑耶詩見上餘不備洞下散人均拜¹³⁾

13) 『쌍충록』 권1, 「答姜白川應璜書壬辰十月十三日」

첫째, 간찰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지 않았다. 본문에 ‘李統使’라는 단어가 있다. 李統制使, 즉 이순신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統制使(삼도수군통제사)라는 직책은 1593년 8월 15일 이순신이 최초로 임명되면서 생겼다. 그런데 이 편지는 壬辰(1592) 10월 13일에 쓴 것으로 이때는 통제사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모순이다. 날짜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책 간행 당시의 관점에서 명칭을 바꿨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이를 『쌍충실기』에 실린 원문과 비교해본 결과, 『쌍충록』에 비하여 『쌍충실기』는 간찰의 글자를 바꾸거나 여러 부분에서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 앞서 다루었던 ‘李統使’가 『쌍충실기』에는 ‘李水使’로 수정되어 있으며, 권율을 가리키는 ‘權元帥’¹⁴⁾가 ‘權光州’¹⁵⁾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본문의 □칸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쌍충실기』에서는 누락된 부분이다. 간찰의 내용이 곳곳에서 누락되었음에도 그 연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舊本(쌍충록)을 참고했음에도 이정도로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고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비단 위의 본문 뿐 아니라 모든 간찰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與姜松窩」·「答姜松窩」이 두 간찰 내용은 『쌍충실기』에 수록하지 않았다.

셋째, 간찰의 작성한 날짜를 삭제하였다는 점이다. 간찰의 사료적 가치가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점인데, <표 1>의 권1, 「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쌍충록』에는 정확한 연월일을 기록하고 있으나 『쌍충실기』에는 이를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간찰의 작성시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최균이 강응황에게

14) 『쌍충록』 권1, 書, 「答姜松窩書 壬辰臘月十七日」.

15) 『쌍충실기』 권1, 書, 「答姜士盎」.

보낸 답서가 壬辰(1592) 10월 1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인 듯하다. 편지의 내용에 “아우(최강)가 이달·안신갑과 한 달 전에 웅천의 李統使(이순신)를 구원하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바탕으로 보면, 이순신의 수군과 연계하여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순신의 수군이 웅천에서 전투를 벌인 시기는 1593년 2월~3월이다. 이 답서를 쓴 10월 13일은 1차 진주성전투(10월 5~10일)가 끝난 직후인데, 최강·이달은 이 진주성전투를 외원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본진(담티고개)에 있던 최균이 몰랐을 리가 없을 뿐 아니라,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하에서 진주성 수성방략에 따라 임진왜란 초부터 1차 진주성전투를 마칠 때까지 일관되게 진주성 주변에서 활동했던 최강·이달 부대가 갑자기 9월 즈음부터 한 달 가량 웅천에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그렇다면 편지의 내용대로 최강·이달·안신갑 등이 웅천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일까. 앞서 서술하였듯이 1593년 2~3월, 이순신의 수군이 웅천에서 육상군과 협력하여 한 달 이상 웅천에 머무르며 수륙양면으로 적들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다.¹⁶⁾ 이순신이 1593년 2월에 올린 장계¹⁷⁾에는 수륙 합공을 위해 이미 경상우도순찰사(김성일)에게 공문을 보내 병마를 거느리고 웅천을 공격하도록 했다고 한다. 따라서 김성일의 지휘 하에 있던 최강·이달 부대가 이때 웅천으로 부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달의 『雲圃實紀』에는 그의 집안 기록인 『家乘』과 『쌍충록』을 전거로 하여 웅천에서 왜적과 싸우는 이순신을 구원하러 이달·최강·안신갑이 함께 갔다고 하였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16) 『난중일기』 癸巳年 2월 18~20일·3월 6일.

17)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二, 「令水陸諸將直擣熊川狀」.

二十六年癸巳二月(1593년 2월)

李舜臣進攻倭人於熊川 義兵將李達·崔垺·安信甲往救之 前後八戰 敵勢大挫家乘

蘇湖崔公答姜應璜書略曰 月前卯君與李達安信甲往救李統使于熊川鎮而 尙未返營心甚訝鬱云云雙忠錄¹⁸⁾

특히 『쌍충록』을 전거로 밝힌 기사는 위의 편지 내용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적을 1593년 2월의 기사로 밝혀놓았다는 점이다. 『쌍충록』을 근거로 직접 내용까지 인용하였으나 그 행적의 시기만큼은 다르게 기록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따라서 최균이 강응황에게 보낸 답서(壬辰 10월 13일)는 최강·이달 부대가 진주성전투에 참전했던 사실, 이순신 수군이 육상군과 연합하여 치른 웅천전투, 『운포실기』에 수록된 사례 등을 참고해 보면, 계사년(1593) 2월~3월 사이에 쓰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끝으로 살펴볼 부분은 『쌍충실기』에 수록된 「上觀察使狀」¹⁹⁾이다. 이 문서는 『쌍충록』에 수록되지 않았는데 뒤늦게 발견되어 『쌍충실기』에 수록하였다. 그 내용은 최강이 1592년 7월 초에 고성에서 왜적과 전투한 결과를 관찰사 김수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이탁영의 『征蠻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탁영은 김수의 종사관이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받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지만 몇 곳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전문을 살펴보자.

‘固城縣伏兵將崔垺馳報內 倭賊二千餘名 今七月初三日 分三運入來爲去乙 率軍五十餘名 先運接戰射中三倭 賊勢暫退 老弱軍乙良 專數登山 更率精勇軍三十餘名 一時隱伏要路處 多設弓弩 村家焚蕩回軍時 先鋒二倭亦逢弩致死 賊徒載去中路燒燼爲乎所馳報是白齊’²⁰⁾

18) 『운포실기』 권1, 「事實大略」, 二十六年癸巳二月.

19) 『쌍충실기』 권1, 遺稿, 書, 「上觀察使狀」.

20) 『정만록』 坤, 承政院 開坼(7월 15일).

위의 전문은 두 사료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만 『쌍충실기』에 실린 내용에는 글자가 결실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다. 예컨대, 『정만록』에는 ‘七月 初三日’로 기록되었으나 『쌍충실기』에는 ‘七月 初缺日’이라 기록되었다. 또 『정만록』에는 ‘率軍五十餘名’이라 하였으나 『쌍충실기』에는 ‘率軍二十餘名’이라 하여 거느린 군사의 수가 30명의 차이를 보인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정만록』의 기록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문에 보이듯이 처음에 50여 명을 거느리고 싸우다가 노약한 군사를 산으로 올려 보내고 30여 명의 정용군으로 싸웠다고 하였다. 만일 『쌍충실기』의 기록대로 처음에 20여 명을 거느리고 싸웠다면 노약군을 산으로 보낸 후에는 20여 명 이하가 되어야 하지만 30여 명으로 싸웠다고 하였기 때문에 『쌍충실기』의 기록이 誤字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글자가 결실되거나 틀린 것은 『쌍충실기』 간행 당시 이 문서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글자 판독이 되지 않거나 오판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쌍충록』·『쌍충실기』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각각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자료들의 간행과정에서 고의적 가감, 또는 오판 등 의문점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할 경우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4. 고성지역 의병의 조직과 전투

가. 의병의 조직과 그 특성

고성에서의 倡義는 전주최씨, 함안이씨 등 사족층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전주최씨 문중이 고성에 처음 자리 잡은 시기는 16세기 초, 최균·최강의 부친인 崔云哲이 이사하면서부터이다. 즉, 九萬의

昆季峰아래에 집터를 정하고 ‘蘇臺’라 하였다. 함안이씨 문중은 9세손 仁亨·義亨·禮亨·智亨이 김종직의 문인으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무오·갑자사화로 인해 화를 입고 낙향하여 고성에서 살게 되었으며, 이후로는 관료로 진출하지 않고 은둔하여 학문에만 전념하였던 것이다.²¹⁾

재지사족으로서 전주최씨와 함안이씨는 고성에서의 입지가 확고한 만큼이나 외세의 침략에 맞서 가장 먼저 의병을 조직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강은 만형인 최균을 찾아가 기병할 의지를 보였고 최균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전투를 준비하였다. 우선 최균의 아우인 崔垵로 하여금 가족들을 데리고 의령 자굴산으로 피난케 하고 장성한 가족과 노복들을 뽑았다. 그리고 가산을 풀어 고을의 장정 수백 명을 모집하였다.²²⁾

이달의 경우는 1591년 10월에 부친상을 당하여 묘를 지키고 있었는데, 전란이 발생하자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했다가 잠시 돌아와 보니 부친의 묘가 파헤쳐져 있었다. 이에 분개하여 喪中임에도 의병을 일으켜 최균·최강의 부대와 연합하였다. 이달의 수하 병사들은 家僮들과 鄉里의 장정 30여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달의 부친이 생전에 가동들과 마을의 소년들에게 공시를 나누어주며 사냥을 장려하고 추석과 단오에 씨름대회를 열어 포상하는 등 용맹함과 건장함을 길렀다고 한다.²³⁾ 이들이 모두 이달의 휘하 군사로 편성되어 최균 부대로 달려왔다.

일반적으로 의병은 가족, 친인척, 향리의 親友들로 조직되었으니 고성의병도 이러한 양상이었다. 이달은 최균의 伯父의 외손자로서 從甥姪이었다. 안신갑의 경우는 최균의 여동생의 아들이자 甥姪

21) 『쌍충실기』 권1, 「行狀」; 최명철, 「임진왜란기 고성 지역 의병장에 관한 연구-최균, 최강, 이달을 중심으로-」(창원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4).

22) 『쌍충실기』 권2, 「家乘」.

23) 『雲圃實紀』 권1, 「事實大略」 25년(壬辰).

이었으며 최균의 조카·사위, 아들들이 준비하였다. 박연홍·최한·정준 등은 고을의 壯士들로서 자원하여 군관으로 활약하였다. 아래의 <표 2>²⁴⁾는 의병 지휘부의 출신과 역할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의병의 구성

직책	성명	성분 및 역할
의병장	崔均(1537~ 1616)	전략 및 군량조달 담당
의병장	崔堉(1559~ 1614)	최균의 아우, 선봉장
의병장	李達(1561~ 1618)	최균의 從甥姪, 선봉장
의병장	安信甲	최균의 甥姪, 선봉장
군관	朴連弘	密陽人
군관	崔憫	全州人
군관	丁俊	昌原人
군관	崔興虎	최균의 장남
군관	崔勇虎	최균의 從姪
군관	崔角虎	최균의 조카(균의 아우 堉의 아들)
군관	崔振虎	최균의 막내아들
군관	徐舜凱	최균의 사위, 문서·금전출납 담당

최균·최강 의병조직의 운영상의 특성은 이원적 구조로서 유격전과 방어전을 나란히 진행하였으니, 최균은 본가인 소대계상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전략에 따라 담티고개²⁵⁾로 진을 옮겨서 이곳을 본영으로 삼고 최강·이달 등은 담티고개(본영)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인 진주·사천·진해·웅천까지 활동반경을 넓혀 중흥무진하였다.

즉, 최균은 50대 중반의 고령이기 때문에 유격전보다는 그의

24) 『쌍충실기』 권2, 「家乘」; 권5, 「倡義諸賢錄」.

25) 현재 고성군 개천면 청광리에 소재하는 곳으로서 『고성지』에 ‘塙峙 在九萬 蘇湖 崔均 壬亂留陣處 石築周圍 約一里許’(『고성지』 권1, 古蹟)라고 기록되었다. 또한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담티계성지에 성벽이 길이 50m, 너비 2m 규모로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118~119쪽)

식견을 바탕으로 계책을 세우고 군량조달을 담당하였다. 담티고개는 고성과 진주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서 고성과 진주를 통하는 要路였다. 길이 좁고 산이 험준하여 “이곳이야말로 지키기도 좋고 적에게 속임수를 쓰기도 쉽다”라며 ‘風雲將’이라 써서 길목에 달아 놓았다. 군량조달을 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고개에 올라 여러 가지가 달린 횃불을 들게 하여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불을 끄고 사람이 없는 듯 했다가 다시 불켜기를 반복하는 등 일본군을 교란시키는 疑兵策을 구사하기도 하였다.²⁶⁾ 이처럼 담티고개 방어는 결과적으로 진주를 지키는 방편이 되었다.

최강·이달 등은 담티고개를 본거지로 하여 주변지역으로 활발히 부원하였으니, 임진년 5월에는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하에서 김대명·한계·정승훈 등과 합세하여 고성·사천을 점령한 일본군을 웅천·김해까지 축출하였으며, 7월 진주를 침범하려던 일본군에 대항하여 김시민군과 합세하여 진주로부터 고성까지 추격하였다.²⁷⁾ 이후 대둔령을 넘어 고성성을 압박하자 며칠 후 일본군은 창원까지 퇴각하여 사천·고성·진해를 수복하였다. 10월 1차 진주성전투 당시에는 망진산으로 진출하여 진주성을 포위한 일본군을 견제하였으며 이달은 頭骨坪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²⁸⁾

최균·최강·이달·안신갑을 주축으로 하는 조직은 고성을 대표하는 의병의 사례로서 구만동 담티고개를 본진으로 하여 최균을 중심으로 전략·전술을 세우고 군량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강·이달·안신갑을 중심으로 정예부대를 꾸려 고성 주변지역을 종횡무진하며 유격전을 펼쳤다가 담티고개로 회군하여 군사를 정비하였다. 이는 의병의 장점인 지리를 이용한 유격전술을 구사하면서 담티고개에 병참기지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의병진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26) 『쌍충실기』 권2, 「家乘」.

27) 『征蠻錄』 坤, 承政院 開圻(7월 15일).

28) 『난중잡록』 2, 壬辰 10월 6일.

즉, 안정적인 군수·군량 보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유격전을 펼 수 있었으니 그 戰力이 배가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관군과 연합하여 토적활동을 하는 등 고성뿐만 아니라 진주·사천·진해지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고성의병의 활동상이 기록된 『쌍충실기』 및 『운포실기』 등을 토대로 보면 그 규모가 수백여 명에 이른다. 그런데 최강이 관찰사 김수에게 보낸 書狀²⁹⁾에 의하면 최강 부대가 50명 또는 30명 정도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서술한 고성의병의 특성에 잘 나타나듯이 최강이 이끌고 다니던 정예부대의 인원 불과한 것으로 담티고개에 상주하여 병참활동을 하던 의병은 그 활동상이나 병력의 수효가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九萬·尺峴 전투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최강은 만형인 최균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휘하 군관으로서 박연홍·최한·정준 등과 문중자제인 용호·각호·진호 등 장성한 가족과 노복들이 함께 하였다. 그 외의 가족들은 둘째인 최계로 하여금 의령 자굴산으로 피난가게 하였다. 최강은 최균의 권고에 따라 박연홍과 함께 우선 고성군수에게 알현한 후 무기 등을 지원 받아 구만동으로 돌아왔다. 이때 일본군이 이미 마을을 침략하여 분탕질하고 있었으니 당시 고성지역을 침범한 일본군은 원군의 경상우수군을 깨뜨리고 4월말 경 배둔 부근으로 상륙하여 九萬·馬巖 등 여러 갈래로 진군하였다. 최강은 일본군의 분탕질을 보고 본진으로 돌아오는 길에 反加嶺에서 어린 조카 정호를 구출하였다. 한편, 최균은 그의 본가인 蘇臺 溪上(구만면 효락리)에 진을 치고 있다가 최강이 도착하자 즉시 군사를 정비한 후 일본군을

29) 『征蠻錄』 坤, 承政院 開圻(7월 15일).

공격하여 밤새도록 치열한 전투 끝에 격퇴시켰다.³⁰⁾

5월 8일,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와 新川에 사는 李應星의 처 羅氏 부인이 순절하였고 까치골[鵲旨洞]에 사는 羅應璧·羅彦麟·羅致紋 등 나씨 일가가 일시에 참화를 당하였다.³¹⁾ 이응성은 이달의 再從叔으로 당시 북관에서 정문부와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씨 일가의 참화소식에 마암에 있던 이달이 3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달려와 최균·최강·안신갑 부대와 합류하여 나씨 일가를 점거한 일본군을 공격하여 淸巖까지 쫓아내었다.³²⁾

이때 쳐들어 온 일본군은 5월 8일 적진포에서 여염집을 약탈하던 무리들의 일부로 보이는데 경상우수군 전라좌수군이 적진포해전을 치른 후 근처에 사는 향화인 李信同이 찾아와서 한 진술에 의하면, 어제(초7일) 포구로 와서 약탈하고 날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른 아침에 반수는 배를 지키고 반수 가량은 고성으로 향하였다고 한다.³³⁾ 즉, 일본군의 반수는 고성으로 향하였고 배를 지키는 나머지 반은 조선수군에게 격멸당한 것이었다. 초8일 아침에 고성으로 향했던 일본군이 구만 등지 일대를 횡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의병들이 다시 축출하였던 것이다.

5월,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로 관군과 의병의 규합이 이루어지고 진주성 방어에 전략이 수립되었다. 김시민·곽재우·조종도·최균·최강 등 경상우도의 관·의병이 이 전략에 따라 낙동강 및 사천·고성·진해 등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³⁴⁾ 진주성은 호남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을로서 진주를 지키는 것은 적침으로부터 유일하게 보전된 호남을 보호하는 길이었다. 고성의병이 본진을 소대계상에

30) 『쌍충실기』 권2, 「家乘」; 『운포실기』 권1, 「事實大略」 25년(壬辰).

31) 『쌍충실기』 권2, 「遺事」.

32) 『운포실기』 권1, 「事實大略」 25년(壬辰); 『쌍충실기』 권1, 「遺稿」, 書, 「與姜士盎一脩 壬辰」(蘇湖蘇溪).

33) 『이충무공전서』 권2, 狀啓一, 「玉浦破倭兵狀」.

34) 『난중잡록』 1, 임진년 5월 20일; 『쌍충실기』 권1, 「事實」.

서 담티고개로 옮기게 된 시기도 김성일이 부임하여 지휘를 시작한 5월 말경이었으니 진주성 방어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담티고개는 유격전을 펴기 좋을 뿐 아니라 고성과 진주를 통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진주로 가는 길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위치였다.

5월~8월 경, 사천성에는 가메이 코레노리, 고성성에는 호리노우찌 우지요시가 각각 점거하고 있었다. 여기에 여러 해전에서 조선 수군에 패배한 일본군이 황급히 상륙하여 고성·진해 등지를 횡행하고 있었다.

7월 초3일, 고성의 일본군이 3대로 나누어 진격하자 최강은 50여 명을 이끌고 일본군 선발대와 싸워 3명을 쏘아 맞추고 격퇴시켰다. 이어서 늪고 약한 군졸을 산으로 올려보내고 정예병 30여 명으로 요로에 매복하여 弓弩를 설치하였다. 마을을 분탕하고 다시 쳐들어오는 일본군을 맞아 2명을 쏘아 죽이자 적이 퇴각하였다.³⁵⁾

7월 초 7일, 김시민이 이끄는 부대가 고성으로 진출하였을 당시 일본군이 3대로 나누어 法川, 尺峴, 鳥峴으로 각각 진격하였다. 이에 복병장 鄭惟敬이 좌우로 공격하여 척현 밑에서 일본군의 선봉 20여 명과 교전하던 중 척현 위에 있던 일본군 70여 명이 내려와 구원하여 퇴각하였다. 이에 활을 끊임없이 쏘아 일본군에 중상자가 많았는데 길이 좁고 험하여 비록 머리는 베지 못하였으나 적을 격퇴하여 민가를 보전하였다.³⁶⁾ 8월에 일본군이 다시 진해·고성·사천을 점령하자 김시민을 중심으로 최군·최강·이달의 부대가 합세하여 사천의 적을 추격하자 고성성으로 달아났다. 이에 대둔령을 넘어 고성성의 적을 압박하였고 수세에 몰린 일본군은 며칠 후 퇴각하여 진해의 적과 함께 달아났다. 이들을 추격하여 平小太, 解文,

35) 『征蠻錄』 坤, 承政院 開圻(7월 15일).

36) 『정만록』 坤, 承政院 開圻(7월 15일), “晉州判官金時敏馳報內 今七月七日 固城留屯倭賊 分三運 一運來于法川 一運向于尺峴 一運往于鳥峴等處爲去乙 伏兵將鄭惟敬

穎黠 등 적장 3명을 생포하여 함안으로 돌아왔다.³⁷⁾ 이로써 사천·고성·진해를 수복하였다.

1593년 제2차 진주성전투 이후 전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고 본격적인 삼국 간의 강화교섭이 진행되었다. 일본군은 경상도 해안 지역으로 후퇴하여 울산·서생포·동래·기장·두모포·양산·죽도·안골포·가덕 등지를 점거하고 있었으며, 고성을 비롯한 웅천·김해·창원·함안·진주·사천·곤양 등지는 수시로 출몰하며 약탈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었다.³⁸⁾

5. 정유재란과 고성왜성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전투 이후 일본군은 경상도 연해지역에 주둔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명·일 간의 강화교섭이 본격화하였다. 강화교섭 시기에는 부산·김해 및 가덕도·거제도 등지에 일본군이 주둔하여 그 주변을 왕래하며 분탕하거나 접전하는 등 조선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성지역의 경우 간혹 농사를 짓고 사는 백성들은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자주 출몰하여 산막을 불태우고 노략질 하거나 살해하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피해를 당하거나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

최강이 김덕령의 별장으로서 고성 경계지역에 복병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1596년 7월, 이몽학의 난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한 후 공초하는 과정에서 ‘김덕령은 호남에서 거병하고, 홍계남은 영남에서 거병한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때 김덕령이 잡혀갔고 며칠

37) 『쌍충실기』 권2, 「敍述」(嶺營古蹟); 『고대일록』 권1 萬曆壬辰 秋9월 20일, 적장의 이름이 『쌍충실기』에는 ‘平小太’로, 『고대일록』에는 ‘小平太’로 기록되었다.

38) 『선조실록』 권87, 30년 4월 辛巳(21일).

후 막하에 있었던 최강 역시 붙잡혀 갔다.³⁹⁾ 최강은 석방되었으나 김덕령은 고문으로 죽고 말았으니 최강 부대는 그 이후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병의 사기가 크게 꺾였으며 은둔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정유년(1597) 일본군의 침입은 전라도 공략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것은 임진란 때 조선을 거쳐 명나라 정복을 목표로 했던 정책과 크게 달라졌던 것이다. 전라도는 유일하게 적침으로부터 보전되었던 곳으로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었다. 이에 일본은 강화교섭 진행과정에서 조선의 남부 4道 할양을 요구하였으며, 관철되지 않자 정유년에 다시 침공하여 실력으로 차지하고자 하였다.

가. 기문포해전과 의병장 박애상

정유년 고성 of 상황은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침공하기 수개월 전인 거제 기문포해전으로부터 전란이 시작되었으니 이 해전을 살펴보자. 강화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일본군의 출몰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조선군과 일본군 간의 분쟁이 잦았으며 정유년에 와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 1597년 3월 8일, 왜선 3척이 거제 기문포에 정박하고 상륙하였다는 소식에 통제사 원균이 전라우수사 이억기, 안골포만호 우수, 거제현령 안위, 고성현령 조응도 등의 군선을 거느리고 출발하여 9일 아침 기문포에 도착하였다. 일본군이 배를 정박해놓고 산기슭에서 나무를 베고 밥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항왜 南汝文을 보내 그들을 회유하여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기 위해 돛을 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총통을 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조응도가 지휘하는 고성의

39) 『고대일록』 권2, 丙申 7월 庚寅(25일)·辛卯(26일)·8월 甲辰(9일).

전선이 가장 앞서 나갔는데 그는 판옥선에 射夫·格軍 등 1백 40여 명을 거느리고 출격하였다. 3월 9일 助羅浦 경계의 古多浦에서 접전⁴⁰⁾하였는데 일본군 20여 명이 올라와 교전 중 대부분의 군사가 바다로 뛰어내려 다른 전선으로 구제되기도 하였으나 조응도가 전사하고 射夫·格軍 등 다수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성 의 판옥선을 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는데, 임치첨사 洪堅, 홍덕현감 李容濟가 적들이 타고있는 판옥선에 불을 질러 모두 소탕하고 배에서 뛰어내린 적들을 참수하였다.⁴¹⁾

이 전투에서 통제사 원균의 지휘로 적선 3척을 포획하고 수급 47급을 베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측의 요시라가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별목하는 군사를 해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어겼다며 강하게 항의하였다. 이때 豊茂守의 사졸 32명, 고시니 유키나가의 사졸 15명이 모두 참살 당하여 살아 돌아오는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도합 47명으로서 원균이 취한 수급 47급과도 일치한다. 특히, 豊茂守가 김응서에게 전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군대의 왜 32명이 중선 한 척을 타고 나무를 벨 일로 거제 옥포 지경에 가서 정박하고 있었는데, 조선수군이 유인하여 은밀히 다 죽였으므로”⁴²⁾라고 하였다. 또한 조라포 지경의 고다포에서 접전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기문포해전은 옥포와 조라포(고다포)의 인근 해역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거제도의 동쪽 해상에서 있었다.

한편, 이 해전과 관련된 인물로서 고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雲汀 朴愛祥(1554~1597)을 들 수 있다. 1854년에 창건한 新道洞祠에 조응도와 박애상의 위패를 나란히 모셨는데⁴³⁾ 이는 그가 조응도와 함께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기문포해전

40) 『선조실록』 권86, 30년 3월 戊申(18일).

41) 『선조실록』 권86, 30년 3월 甲寅(24일).

42) 『선조실록』 권86, 30년 3월 乙卯(25일).

43) 『鐵城誌』 권2, 祠院, 新道洞祠.

에서 조응도가 3월 9일에 전사하였는데, 박애상의 「墓碣文」⁴⁴⁾에는 박애상이 3월 29일에 橘島 해상에서 조응도와 함께 싸우다 전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시신을 찾지 못하여 옷과 신발을 거두어 초혼장을 지냈다. 특히, 이 묘갈문은 조응도의 傍孫 趙鏞遠이 1855년에 찬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정유년 3월 29일 왜적과 굴도 해상에서 싸우다가 조공(조응도)과 동시에 순절하였다.”⁴⁵⁾라고 한 것을 미루어 보면, 조응도의 후손들조차 조응도와 박애상의 전사한 날을 3월 29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구나 조응도가 전사한 후 3월 17일 원균의 아우인 元堧이 고성현령에 제수되었으니⁴⁶⁾ 3월 29일에 전사했다는 묘갈문의 기록은 착오이다.

조응도와 박애상이 함께 전사했음에도 『선조실록』과 「묘갈문」에 전사한 날이 일치하지 않은 연유를 보자면, 『선조실록』은 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교적 정확한 시간과 상황을 서술하였고 「묘갈문」은 수군의 전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문중에 박애상과 조응도 등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시기가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박애상의 경우는 시신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망한 날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이 후대(1855년)에 작성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조응도와 박애상이 전사한 곳과 관련하여 기문포가 거제도의 어느 곳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앞서 서술하였듯이 옥포와 조라포의 인근 해역이었는데 박애상이 조응도와 함께 굴도 해상에서 전사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굴도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굴도라는 명칭은 「거제부지도」(1872)⁴⁷⁾에 표기된 것이 유일하다. 이

44) 『竹山朴氏忠質公波譜-固城·鐵城-』甲卷(2000), 墓碣文, 「雲汀公諱愛祥墓碣文」(1855).

45) 위의 책, “...丁酉三月二十九日與倭戰於橘島之海與趙公同時殉節...”.

46) 『竹溪日記』권4, 丁酉萬曆三十年 三月 丁未(17일).

47) 「巨濟府地圖」(1872년 지방지도), 奎10512 v.2-10, 여타 각종 고지도에는 ‘柚子島’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도 유자섬이라고 한다.

굴도는 柚子島라고도 불리는 곳으로서 조선수군이 칠천량에서 거제현(고현) 앞 유자도 바다 어귀로 진을 옮겼던 일이 있었다.⁴⁸⁾ 그런데 거제도의 서쪽 바다, 즉 沙谷里·長坪里의 북쪽 해안에 있어서 기문포해전의 위치와는 반대쪽이라는 점이 의문이다. 옥포와 조라포 인근에서 교전중 적들이 북쪽으로 달아나 추격하긴 했지만 서쪽으로 진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



48) 『난중일기』 계사(1593) 5월 24일·25일 기사

나. 고성함락과 고성왜성 축성

일본은 14만여 대군을 정비하여 해상에서는 7월 중순 칠천량해전에서 원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을 격파하여 남해안에서 제해권을 장악하였고, 육로로 진격하여 8월에 남원성을 함락시킨 뒤 전라도 전역을 장악하였다. 경상우도의 경우는 고성을 비롯해 김해·창원·함안·진주·하동 등 남부지역에 모두 적들이 웅거하였고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⁴⁹⁾

임진란 당시 전라도 의병은 경기도 및 경상도 등지로 진출하여 국토회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정유재란에 와서는 전라도가 일본군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의병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그 외의 지역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의병의 활동이 크게 쇠퇴하여 소규모 단위로 활동하거나 관군 혹은 명군을 협찬하는 정도에 그쳤다. 의병활동이 전라도에 침략하기 전에 경상도 연해지역은 이미 일본군의 소굴이 되어있었으며, 동쪽으로는 울산·서생포, 서쪽으로는 전라도 순천에 이르기까지 해안지역 곳곳에 왜성을 쌓았다. 일본군이 이처럼 해안지역에 성을 쌓은 이유는 본토와의 연락이 용이하기 때문인데, 해로를 통한 군수조달 및 비상시 본국으로 철수하기 좋은 위치였다. 즉,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려는 의도였다.

고성은 일본군이 점거한 후 고성읍성의 일부를 개수하여 왜성을 쌓았다. 이때 고성지역 역시 의병활동이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왜성을 축성할 수 있었다. 고성왜성은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의 부장 깃카와 히로이에[吉川廣家], 가쓰라 모토쓰나[桂元綱]에 의해 축성되었다. 즉, 1597년 10월 23일에 명령서를 내려 고성읍성 남부 구릉에 짓도록 하였다. 그리고 축성 이후 수성군은

49) 『선조실록』 95권, 30년 12월 乙丑(9일).

고바야카와 히데카네[小早川秀包], 다치바나 무네토라[立花統虎], 타카하시 무네마스[高橋統增], 츠쿠시 히로카도[筑紫廣門]가 맡았다.⁵⁰⁾ 고성에 주둔군에게 1598년 3월, 군량 2천석이 일본 본토로부터 지급되었으며⁵¹⁾ 병력은 1598년 9월 경 약 6~7천 명이었다. 인근 지역인 진주에 약 400명, 사천에 7~8천 명 가량 주둔하였으며 남원·창원·김해·거제 등지와 서로 연락망을 형성하고 있었다.⁵²⁾

이후 사천성에 주둔하고 있던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군이 조명연합군을 물리치고 순천왜성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군을 구원하기 위해 출발하였는데 이때 고성에 주둔하고 있던 다치바나 무네토라 등도 함께 구원군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노량 해역에서 11월 19일, 조명연합군과 일대 격전을 치르고 부산으로 퇴각하였다. 이로써 고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모두 철수하였고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 7년간의 전란이 종식되었다.

고성왜성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구로이타 카즈미[黑板勝美]가 1916년 조선사적유물조사⁵³⁾를 실시하면서이고, 반 미치오[伴三千雄]가 1922년 9월에 城址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현재 고성왜성은 민가가 들어서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면서 왜성의 흔적을 확인하였고⁵⁴⁾, 2006년에는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고성읍성을 발굴하였는데⁵⁵⁾ 읍성의 일부만 해당될 뿐, 인접한 왜성까지는 조사하지 못하였다. 즉, 지금까지 본격적인

50)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附記 44쪽.

51)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附記 82쪽.

52) 『선조실록』 권104, 31년 9월 庚戌(28일)

53) 黑板勝美, 「朝鮮史蹟遺物調査報告復命書」(『黑板勝美先生遺文』, 吉川弘文館, 昭和四九年) 52頁.

54) 『고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55) 『고성읍성지』, 동아대학교박물관, 2006.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伴三千雄가 고성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郡吏의 안내를 받아 城址에 이르자 한눈에 일본식으로 축성된 것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중앙의 가장 높은 자리에 本丸이 있고 그 서쪽에는 本丸보다 조금 낮은 커다란 二之丸터를 확인하였다. 本丸의 동부에서부터 남부로 꺾어 둘러진 성곽[帶郭]이 있으며 그 西南 쪽 즉, 二之丸의 남부에 돌출되어 있는 것이 三之丸이다. 帶郭과 三之丸의 외면은 구릉이 끝나는 곳이 절벽이다. 고성왜성은 기존하는 조선성의 남부에 이어져 있고 3면이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평탄한 논과 접해 있다. 북쪽은 좁고 길게 되어있으며 조선성의 위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올챙이 모양과 같다고 한다. 그리고 바닷물이 가까운 곳까지 들어와 있어서 성터에서부터 바라보면 보일 정도라고 한다.⁵⁶⁾

6. 맺음말

임진왜란시 고성지역은 수로를 통해 진격한 일본군에 의해 분탕되었고, 육로로 횡행하는 일본군들에 의해 그 피해가 막대하였다. 임진년 고성지역을 점거한 일본군 장수는 5~8월은 호리노우찌 우지요시였으며 그 이후 가메이 코레노리가 점거하기도 하였다.

고성왜병의 활동은 『쌍충록』·『쌍충실기』를 분석하여 그 성격과 간행과정의 의문점을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부분적으로 검증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서술하였다. 의병의 조직은 최균·최강·이달을

56) 伴三千雄, 「再び南鮮に於ける文祿慶長の築城に就いて」(『歴史地理』46卷3号, 大正14年 9月).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구성원들은 가족·친인척, 혹은 향리의 지인들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당시 의병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조직 운영상의 특성을 보면 최균을 중심으로 담티[牆峙]에 본진을 두고, 최강·이달을 중심으로 정예병을 이끌고 고성 및 주변 고을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유격전을 펼치는 의병의 장점을 살리면서 본진을 별도로 두어 안정적으로 병참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전투와 병참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부대를 운용함으로써 그 역량을 극대화한 것이었다.

이 의병들의 활동상은 고성에서 일본군과의 전투를 수행하면서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에 따라 김시민 등의 부대와 연합하여 진주·사천·진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며 명성을 떨쳤다. 또한 수군과 연합하여 해안지역에 주둔한 일본군을 수륙 양면으로 공격하기도 하였다.

한편, 고성현령 조응도와 의병장 박애상이 함께 활동하였는데, 정유년 3월 9일 거제도 기문포해전에서 함께 전사하였다. 다만 기문포해전의 위치는 거제도 옥포와 조라포 인근의 바다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며, 굴도 해상에서 전사했다는 사료의 내용도 그 위치와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조응도와 박애상의 활약상의 대체적인 사실은 확인된 셈이며 기문포해전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단서로서 거제도의 굴도(유자섬)가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박애상의 문중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으니 이와 같은 지방 및 문중 자료에 간혹 중요한 사실이 기록된 경우가 있다. 여기서 지방사 연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정유재란시 조선의 의병들은 장기전으로 인해 쇠퇴해져 있었는데, 임진란 당시 전라도 의병은 경기도 및 경상도 등지로 진출하여 국토회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정유재란에 와서는 전라도가

일본군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의병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그 외의 지역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의병의 활동이 크게 쇠퇴하여 소규모 단위로 활동하거나 관군 혹은 명군을 협찬하는 정도에 그쳤다.

조선의 남부지역을 장악한 일본군은 동쪽으로는 울산·서생포로부터 서쪽으로는 순천에 이르기까지 해안지역 곳곳에 왜성을 쌓고 장기전을 준비하였다. 고성을 점령한 일본군은 고성읍성 남부에 왜성을 쌓았는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고성왜성의 일부가 잔존해 있었다. 당시 일본인에 의해 고성왜성이 본격적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는데 伴三千雄는 本丸과 그 서쪽의 二之丸, 남서쪽의 三之丸를 비정하였고 전체 지형과 주변 지리를 상세히 묘사하였다.

[원고투고일: 2015.3.30, 심사수정일: 2015.5.20,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임진왜란, 고성의병, 최균, 최강, 이달, 쌍충록, 쌍충실기, 기문포, 박애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The aspects of the Activities of Goseong Righteous
voluntary Army (義兵) during the Imjin War

Shin, Yun-ho

During the early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national defense power of Joseon Dynasty had proved its vulnerability in comparison with strong military strengths of Japan, and the entire territory of Joseon except Honam had fall into the hands of Japanese armed forces within two months. Despite the remarkable differences between the military strengths of Joseon and Japan, the major strengths for Joseon to overcome the invasion had rooted from voluntary civilians troops raised for Justice. It is true that deployment of Ming troops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but, the nationwide movements of voluntary civilian troops had raised civil armies of tens and thousands soldiers all over the country, and pressurized Japanese military forces through guerilla tactics. One of the great examples of such voluntary civilian forces' acts is the ones of Goseong region. Goseong is located in a costal area, and thus, was exposed to the enemy forces both from the land and the sea. During the early periods of the invasion, rampancy of Japanese army in the region was beyond description. Japanese naval force had invaded from the southern sea, defeated the Gyeongsang Left Wing Naval Army led by Won Gyun, and made its way into Jinhae, Goseong and Sacheon while land force of Japan invaded by land through Changwon, Haman and Jinhae. Japanese commanders those who had occupied Goseong through naval paths were Gamei Koren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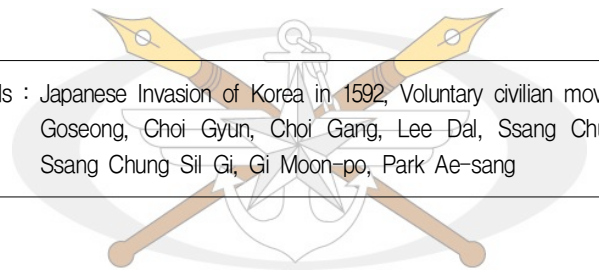
and Horinouchi Ujiyoshi. They were among the Japanese forces that had invaded Joseon through the southern sea with fleet of vessels.

Movements of voluntary civilians against these invasions were very active and bodacious, and the greatest examples of such movements in Goseong region are the civil troops' actions raised by Choi Gyun, Choi Gang, Lee Dal and An Shin-gab. Their activities area was very broad including Jinju, Sacheon, Jinhae, Changwon and Woongcheon on top of Goseong. For their forms of activities, in particular, roles in logistics and combat activities were assigned on people separatedly, and the troops were managed efficiently. They set their military headquarter in a location safe from enemy forces so that elders, females and children can concentrate on logistic activities such as military procurement while young men including Choi Gang, Lee Dal and An Shin-gab formed combat units and mounted guerilla actions from different locations around the military commanding posts. Choi Gyun was already an aged man at the time. He was a man of great intelligence and possessed great knowledge on military tactics, and therefore, stayed in the headquarter to organize combat strategies and to work on overall management of the troops.

『Ssang Chung Rok (雙忠錄)』 (1823) and 『Ssang Chung Sil Gi (雙忠實紀)』 (1929), books containing texts and documents left by Choi Gyun and Choi Gang and records of their activities, are the major historical sources to examine voluntary civilian movement in Goseong. Since these are the sources of great significance, a thorough review of their historical accuracy is required. 『Ssang Chung Rok』 is a recording of great activities of the brothers Choi Gyun and Choi Gang, and Ssang Chung Sil Gi』 is a revised and expanded version of the former. These two books were published 200 years after the invasion, and thus, some contradictions were observed in many aspects including dates and ter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through examination in comparison to other sources.

Activities of Jo Eung-do and Park Ae-sang, the government officers of Goseong at the time of Jung Yu Jae-ran, and they had died in a navel battle near Geojedo Island. After that, Japanese forces had re-occupied Goseong, and parts of Goseong Town Wall was modified into Japanese fortress. The Goseong Japanese Fortress was first examined by Japanese schola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Currently, small parts of the fortress wall are still remaining since most parts of the fortress were demolished and replaced with private residential houses.



Key words :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Voluntary civilian movement in Goseong, Choi Gyun, Choi Gang, Lee Dal, Ssang Chung Rok, Ssang Chung Sil Gi, Gi Moon-po, Park Ae-sang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최용덕(崔用德)의 항공독립운동과 광복군 내 역할*

김기동** · 강창부*** · 이지원****

1. 머리말
2. 중국 공군 활동을 통한 항공독립운동 역량 함양
3. 광복군의 주도권 장악과 공군 창설의 노력
4.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일제에 의해 주권을 상실한 후, 한국의 많은 지식들은 주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운동은 무력을 활용한 독립군의

* 이 연구는 2014년 공군사관학교 국고연구비로 수행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임(과제번호 KAFA 14-08). 원 제목은 「항공독립운동과 공군 발전의 역사인물 연구-최용덕의 생애와 업적-」이었으나 전문가 조언과 추가 연구를 통해 「최용덕(崔用德)의 항공독립운동과 광복군 내 역할」로 수정함.

**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조교수, 주저자

*** 공군사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 공군사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공동저자

활동부터 외교 분야에서의 노력, 교육 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독립운동의 내용은 학계와 민간단체의 활발한 관심에 따라 상당수가 규명되었으며, 최근 독립기념관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통사를 간행하기도 하였다.¹⁾

한편 민간 작가들의 저술을 통하여 독립운동에서 항공 분야를 활용한 활동도 전개되었다는 사실이 ‘항공독립운동’²⁾이라는 용어로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역사학계의 연구나 개개인의 회고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이 규명되었으나³⁾ 대중화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후속 연구 역시 미미하였다.⁴⁾ 민간 작가들은 이러한 배경을

1) 독립기념관은 2007년부터 60권 규모의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발간하였다.

2) ‘항공독립운동’은 무장독립운동에 있어서 항공력을 활용한 독립운동도 있었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이는 독립운동에서 실질적으로 항공력의 구축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으나, 국권을 상실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군사 분야에서 중요성이 부각된 항공력을 활용한 독립운동이 시도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여 그 의도에 방점을 두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용어는 실질적인 항공력 운용 차원을 넘어서 그것의 구상까지도 대상으로 포함한다. 다만 이것은 식민지 한국인이 항공력을 활용해 對日戰에 나섰던 개념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대일전 참전과 독립운동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 작가들의 저술은 이를 혼동하는 사례가 엿보이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경계하면서 ‘항공독립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3) 역사학계의 성과로는 盧伯麟 연구에서 윌로우스(Willows) 비행학교를 언급한 이현희, 홍선표 등의 저술과 중국 군관학교 활동을 분석하면서 중국 공군 출신의 활동을 언급한 한상도의 연구, 여성사적 측면에서 權基玉을 주목한 김영주, 윤선자 등의 연구, 그리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던 홍윤정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李炫熙,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桂園 盧伯麟將軍 研究』, 신지서원, 2000 ; 홍선표, 「노백린과 윌로우스 한인 조종사 양성소」, 『미주한인 사회와 독립운동』 1,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남가주기념사업회, 2003 ; 韓相禱, 『在中韓人軍官學校研究 - 金元鳳, 金九의 抗日運動基盤과 관련하여(1919~1935)』,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洪允靜, 「獨立運動과 飛行士 養成」, 『國史館論叢』 107, 2005 ; 金永柱, 「韓國最初의 女流飛行士 權基玉」, 『역사와실학』 32, 2007 ; 尹善子, 「한국독립운동과 權基玉의 飛翔」, 『한국근현대사연구』 69, 2014 참조.

4) 최근 중국학계에서 중국 공군 소속 한국인 비행사를 주제로 한 연구가 발표되었

바탕으로 好史的 입장에서 추가 사례의 발굴을 통하여 대중서를 출간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과 대중서를 통하여 미국의 월로우스 비행학교가 부각되었고,⁵⁾ 중국 공군 소속으로 대일전선에서 활약하였던 한국계 조종사들 역시 주목받았다.⁶⁾

민간 작가들의 저술은 대중적 흥미 유발의 수준을 넘어서 ‘공군의 뿌리찾기’라는 명목으로 공군의 관심까지 유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새롭게 주목받은 일제시대 한국계 항공인들의 행적을 부각시켜 육군이나 해군에 비하여 미흡한 역사적 유구성을 강조하려는 공군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최용덕(崔用德, 1898~1969)은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 창설과 발전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⁷⁾ 중국 공군과 광복군,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에서 고위급 인사로 활약하였던 최용덕은 이들의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작가들 역시 최용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인식하여 최용덕의 생애와 활동을 주제로 한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하였다.⁸⁾ 그러나 최용덕이 전개한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기보다는 항공 분야와 관련한 내용만 국한하여 서술하였으며, 발굴한 사료의 부족을 작가적 상상력으로 메웠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⁹⁾ 또한 발굴한 사료 역시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 해석까지 이르지 못하여

지만, 관련 인물을 발굴, 정리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崔鳳春, 「民國時期中國空軍航校韓籍飛行員考述」, 『朝鮮·韓國歷史研究』 14, 2013 참조.

5) 한우성·장태한, 『1920, 대한민국 하늘을 열다』, 21세기북스, 2013

6) 이윤식, 『신화의 시간』, 비씨스쿨, 2012

7) 공군 창설에 있어서 최용덕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京鄉新聞』, 1958년 8월 28일).

8) 이윤식, 『장석 최용덕의 생애와 사상』, 공군본부, 2007

9) 또한 해당 도서는 최용덕 외에 다른 한국계 비행사들의 사례를 방만하게 수록하여 최용덕 연구라는 초점을 선명하지 않다.

사료의 오독이 발생한 부분도 많다.¹⁰⁾ 학계 연구자들도 중국 공군 학교 출신이나 비행사 출신 독립운동가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최용덕을 언급하였지만,¹¹⁾ 단순 사례 제시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기존 서술의 한계는 최용덕이 중국 공군에서 활약하였던 내용과 임시정부의 광복군 소속으로 활동하였던 사실 사이의 연계성을 선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활동은 단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운동가 중에는 비행기 조종사 출신도 있다는 사실 규명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최용덕에 관해 알려진 단편적 사실, 최용덕이 중국 공군의 고위 간부였으며, 광복군에서도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조망을 통하여 중국군에서 복무한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광복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역시 그를 통하여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용덕이 중국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광복군에서부터 공군 창설을 시도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 공군 창설을 주도함으로써 공군 창설의 주역으로 비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연구가 독립운동사 연구의 심화라는 학술적 차원을 넘어서 공군의 정책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공군사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최용덕의 활동에 관한 올바른 접근은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제시대 최용덕이 전개하였던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활동이 지닌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10) 한자어나 인명조차도 잘못 쓴 부분이 상당한데, 반복적인 오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윤식의 경우 怡隆洋行을 태룡양행으로, 何應欽을 하응음으로 잘못 표기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개정판을 내면서 용어의 오기 문제는 일부 정정을 하고 있지만, 사료 자체를 잘못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 서술에서 각주를 통하여 오류를 바로잡도록 하겠다.

11) 한상도, 앞의 논문, 1992 ; 崔鳳春, 앞의 논문, 2013

최용덕이 중국 공군 소속으로 활동하였던 사실을 밝힌 뒤, 이것이 이후 광복군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서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당시 중국군 소속으로 활약하였던 한국인들의 활동이 독립운동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애석하게도 현재 최용덕의 개인 기록의 상당수는 유실된 상황이다.¹²⁾ 또한 임시정부 자료나 중국 공군 자료 역시 중·일전쟁의 혼란 속에서 상당수가 사라진 형편이다.¹³⁾ 따라서 관련 사료가 파편적으로 남아있어 최용덕의 생애를 복원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된 사료를 바탕으로 한 추적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적 한계로 인해 일부 내용의 소략화가 불가피했음을 미리 밝힌다.

2. 중국 공군 활동을 통한 항공독립운동 역량 함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가. 무장독립운동 가담과 항공력의 중요성 인식

최용덕은 1898년(광무 2) 9월 19일 한성부 성북동에서 태어났다.¹⁴⁾ 본관은 경주이며, 2등군의를 역임하였던 최익환(崔益煥)과

12) 외손녀(반춘래)의 증언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최용덕의 가족이 피신할 때, 관련 자료를 챙기지 못하여 소실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윤식, 앞의 책, 2012, 82~83쪽 참조.

13) 예를 들어 임시정부와 중국 등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외무부 자료 등이 유실된 바람에 현재 자료집에는 趙素昂이 개인적으로 소장한 기록만이 수록된 상황이다.

14) 『하늘의 개척자 崔用德 將軍』, 공군본부, 1956, 67쪽
중국측 연구에서는 최용덕이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났다가 서울로 이사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당시 일본의 첩보자료에서는 함경도 출신으로 파악하고 있

태안이씨 사이의 셋째 아들이다.¹⁵⁾ 아호는 창석(滄石)이며, 중국에서 활동하였을 당시 그는 아호를 중국식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최용덕의 아버지 최익환은 본격적으로 서양의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의학교(醫學校)를 1903년(광무 7) 2회 졸업생으로 이수하였다.¹⁶⁾ 이듬해인 1904년(광무 8) 군제(軍制) 개편에 따른 군의국(軍醫局) 설치로 의학교 출신을 군의(軍醫)로 시취하자, 최익환은 여기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원이력서에는 최익환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어 자세한 활동을 파악하기란 어렵다.¹⁷⁾

최용덕은 서구식 교육을 받은 뒤 대한제국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던 아버지 최익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08년(융희 2) 민간의 근대적 교육기관이었던 서울 미동(美洞)의 봉명학교(鳳鳴學校)가 개교하자 입교하여 수학하였다.¹⁸⁾ 최용덕은 봉명학교에서 중학과정까지 이수하였는데, 봉명학교가 폐교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1913년에 졸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⁹⁾

최용덕은 15세가 되던 해에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유학하여 후

다. 일본 자료는 최용덕과 함께 활동하고 있었던 元山 출신의 徐曰甫를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손염홍 역시 최용덕을 함경도 출신으로 비정하였는데, 일본측 자료를 토대로 한 듯하다. 반면에 중국의 연구는 어떠한 근거로 그를 의주 출신으로 규정했는지 불분명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각각에 관해서는 崔鳳春, 앞의 논문, 2013 ; 「北京·天津附近在住 朝鮮人の 狀況 報告書 進達の 件」(1925년 3월 20일), 『일본외무성기록』 ; 손염홍, 『근대 북경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역사공간, 2010, 65쪽 참조.

15) 『東亞日報』, 1927년 10월 2일

16) 『官報』, 1903년 7월 15일

17) 의학교 졸업생들의 활동에 관해서는 裴圭淑, 「大韓帝國期 官立醫學校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53~68쪽 참조.

18) 이윤식은 봉명학교가 1907년에 설립되었다고 보았으나(이윤식, 앞의 책, 2007, 76쪽), 이는 1908년의 착오로 보인다. 봉명학교는 1908년 4월 20일에 개교하였다(『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9일).

19) 1914년 1월 17일 자 『독립신문』에 봉명학교가 폐교한 지 오래되었다는 기사가 실린 것으로 보아 1913년 즈음에 폐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독립신문』, 1914년 1월 17일).

이원중학[匯文中學]을 중퇴한 뒤, 충시중학[崇實中學]을 고학으로 2년 만에 마쳤다.²⁰⁾ 최용덕이 중국으로 유학한 배경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보았을 아버지의 경험과 한국인이 세운 사립학교가 탄압받는 상황이 최용덕의 중국 유학에 영향을 끼쳤지 않나 싶다. 최용덕의 회고에도 중국 유학을 망명으로 언급하고 있다.

1914년 충시중학을 졸업한 최용덕은 곧바로 뚬치루이[段祺瑞] 군벌 휘하의 육군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베이징 난위엔[南苑]에 자리한 이 군관학교는 이후 뚬치루이가 직리파[直隸派]와 평토평[奉天派]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지원을 받아 참전군(參戰軍)을 창설하면서 참전군군관학교로 불리기도 하였다.²¹⁾ 1916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최용덕은 참전군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²²⁾

최용덕은 독립운동에 있어서 군사적 경험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뚬치루이의 참전군에서 활동하였다. 후술하겠지만, 당시 최용덕과 함께 활동하면서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서왈보(徐曰甫)²³⁾는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의 안정적 정권 수립이 필요하며, 뚬치루이가 여러 군벌 가운데 가장 군사적 권위가 높다고 밝혔던 바 있다.²⁴⁾ 따라서 뚬치루이군에서의 활동은 독립운동을 위한 안정적 여건을

20) 『朝鮮日報』, 1924년 11월 17일 ; 『東亞日報』, 1927년 10월 2일 ; 『매일경제』, 1969년 8월 16일 『조선일보』 기사에는 최용덕이 충시중학교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오나 오보로 보인다. 『매일경제』 기사에는 최용덕이 유학한 시점을 13세로 언급하였는데, 만13세를 의미하는 듯하다.

21) 뚬치루이의 참전군 창설에 관해서는 朴堧洙, 『「臨時約法」體制와 段祺瑞軍閥政權(1916-1920)』,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4장 참조.

22) 『東亞日報』, 1927년 10월 2일 ; 한상도, 앞의 논문, 1992, 114쪽

23) 생몰년도 1887년~1926년. 함경남도 원산 출신으로 일본의 한국 병합 후 베이징으로 망명하여 난위엔항공학교를 졸업한 뒤 중국 공군으로 복무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張家口 근처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영면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서왈보의 약력에 관해서는 독립운동자 공훈록 참조.

24) 『東亞日報』, 1925년 1월 1일

마련하는 차원까지 생각한 것이었다.

또한 최용덕은 1919년부터 상하이[上海]와 베이징, 평톈, 안둥[安東] 등에서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²⁵⁾ 이때의 활동은 안동의 이룡양행(怡隆洋行)을 통한 임시정부 교통국의 업무에 참여했던 듯하다. 최용덕이 3·1운동 소식을 뒤늦게 듣고 기뻐하였다는 회고는²⁶⁾ 그가 뚝치루이군에 가담하였던 시점에서도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최용덕은 서왈보와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1919년 6월 서왈보와 임기반(林基盤), 김사익(金思益) 등이 독립을 위한 군사행동 단체로서 대한독립청년단(大韓獨立靑年團)을 결성하였을 때, 최용덕의 집을 본부로 삼을 정도로 이들 사이의 유대감은 끈끈하였다.²⁷⁾ 권기옥(權基玉)의 회고에 따르면 1920년 최용덕이 바오딩항 공학교[保定航空學校]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서왈보의 도움 덕분이었다.²⁸⁾

25) 『하늘의 개척자 崔用德 將軍』, 공군본부, 1956, 67쪽

26) 위의 책, 36~37쪽

27)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별책 2, 국사편찬위원회, 2009, 41~42쪽 ; 손염홍, 앞의 책, 2010, 43쪽 손염홍은 대한독립청년단(학생단)을 기본적으로 非무장독립운동단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정기관에서는 대한독립청년단이 무장독립운동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참고로 대한독립청년단은 단장으로 申采浩를 추대하였다. 그러나 신채호는 당시 상하이에 있었고, 대한독립청년단이 해산된 후에야 베이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이끌었던 것 같지는 않다.

28) 이영신, 「한국 최초의 전투비행사 서왈보 소전(小傳)」, 『新東亞』 544, 2005년 1월 최용덕은 1951년에 연설한 「중국에서 활약하던 우리 鳥人들」에서 서왈보와 함께(중국)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서왈보가 난위엔항공학교[南苑航空學校]을 1919년 10월에 졸업하였다는 언급을 감안한다면 최용덕 역시 1916년에 난위엔의 육군군관학교를 이수하고 장교 복무를 한 뒤, 난위엔항공학교 과정에 응시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난위엔항공학교의 학생들은 군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용덕은 난위엔항공학교에서 중국식 가명 사용 문제로 퇴교되었다가 같은 계열인 바오딩항공학교로 복교하였던 듯하며, 서왈보가 그를 위해 힘써주었다는 권기옥의 회고는 복교 과정에서의 일로 해석된다. 난위엔항공학교의 개략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李珉, 「北洋軍閥時期的軍事航空事業」, 『縱橫』, 2011년 11월 참조.

대한독립청년단은 일본의 압박으로 1920년 3월 해산되었지만,²⁹⁾ 베이징 일대의 한인(韓人)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베이징 역시 독립운동 근거지로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독립운동의 노선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이승만(李承晩)과 결별한 박용만(朴容萬)이 베이징에 온 뒤, 신채호(申采浩) 등과 결합하면서 베이징 일대의 독립운동은 무장독립운동의 노선으로 급선회하였다.³⁰⁾

1921년 4월 신채호 등이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을 성토하였을 때, 최용덕은 서알보 등과 함께 지지 서명을 하였다.³¹⁾ 이때의 성토문은 임시정부의 외교독립론·준비론에 반발하면서 독립전쟁론을 천명하는 내용이었다. 즉, 최용덕은 무장독립운동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용덕은 서알보 등과 함께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김원봉(金元鳳)의 주도로 결성된 의열단은 초기 임시정부와 협력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외교독립론·준비론에 불만을 품고 베이징의 무장독립운동 노선에 가담하였다.³²⁾ 이때 최용덕은 의열단의 무장독립운동 노선에 동의하여 가입하여 참모진이 되었고,³³⁾ 국내로의 폭탄 수송 계획 수립과³⁴⁾ 김상옥(金相玉)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최용덕은 무장독립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의열단에 동조하였을 뿐이었지, 의열단의 핵심인물인 김원봉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29)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II, 原書房, 412쪽

30) 무장독립운동을 천명한 박용만은 외교적 노선을 견지한 이승만과 대립하고 있었다.

31) 「이승만 반대격문 송부의 건」(1921년 4월 19일) 독립기념관 관리번호: 3-003861-223 참고로 이 문서에는 베이징 거주자를 'O'으로 체크하였는데, 최용덕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때 최용덕이 허베이성[河北省]의 바오딩항공학교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2) 위의 성토문에는 김원봉 역시 서명하였다.

33) 김영범,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997, 82~83쪽

34) 『韓國獨立運動史』 32(義烈團 I), 국사편찬위원회, 1996, 114~124쪽

하지는 않았다. 최용덕은 베이징 일대에서 사회주의계열의 성장이 미숙하였던 1920년대 초반의 상황³⁵⁾에서 의열단으로 활동하였지만,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자 1923년 서왈보 등과 함께 신의단(申義團, 伸義團, 信義團)을 조직하여 의열단에 대항하는 별도의 독립운동 방안을 구상하였다.³⁶⁾ 또한 당시 그가 서왈보와 함께 조직하였던 한교동지회(韓僑同志會)는 공산주의와 아나키스트 계열을 배제하고 있었다.³⁷⁾

이와 같이 최용덕은 베이징 일대의 한인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무장독립운동의 성향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는 김원봉 계열과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최용덕은 김원봉 계열이 광복군에 합류하였을 때에도 그와 노선을 달리 하면서 대립하였다.³⁸⁾

최용덕은 바오딩항공학교를 졸업한 뒤, 1924년 우페이푸[吳佩孚] 군벌 소속으로 제2차 펑즈전쟁[奉直戰爭]에 참전하였다.³⁹⁾

35) 辛珠柏, 「1920, 30年代 北京에서의 韓人 民族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23, 2002, 87~88쪽

36) 조규태, 「1920년대 중반 在北京 創造派의 民族唯一黨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7, 2003, 252쪽 이때의 정치적 대립은 김원봉이 최용덕 등이 속했던 창조파를 지원하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하였는데, 이 지점을 전후하여 베이징 일대 한인사회의 사상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좌·우 대립의 속성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7) 손영홍, 앞의 책, 2010, 62~66쪽

38) 이윤식은 최용덕이 통합 정신의 입장에서 김원봉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고 보면서 李草生의 공판기록을 근거로 들었다(이윤식, 앞의 책, 2007, 179~183쪽). 그러나 이초생이 자술서에 쓴 朝鮮民族革命黨 조직도의 崔昌錫은 최용덕의 이명이 아니다. 이 최창석은 싱즈군관학교[星子軍官學校]를 나온 뒤 김원봉과 활동하다가 이후 연안[延安]으로 이동하여 武亭과 합류하고 북한으로 갔던 崔昌益이 썼던 異名이다.

39) 『東亞日報』, 1924년 11월 16일 ; 『朝鮮日報』, 1924년 11월 17일
1927년 10월 2일의 『東亞日報』 기사에는 최용덕이 바오딩항공학교 재학 중에 펑즈전쟁에 투입되었다고 쓰여 있다. 이 기사는 최용덕의 졸업연도를 1924년으로 보고 있는데,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최용덕이 작년에 이미 졸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최용덕의 자필이력서에는 1920년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록마다

즈완전쟁[直皖戰爭] 후 즈리파가 안후이파로부터 공군을 인수하자 자연스럽게 최용덕도 우페이부 군벌 소속이 되었던 것이다.

제2차 펑즈전쟁은 중국 항공작전이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였다고 평가될 만큼 전쟁의 양상이 치열하였고, 군사기술적 측면에서도 당시의 혁신이 그대로 반영되었다.⁴⁰⁾ 당시 국내에서는 최용덕의 사망 오보가 나오기도 할 정도로⁴¹⁾ 그 역시 최전선에서 활동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목도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항공력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 데 충분하였다.

최용덕의 언급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 했던 서왈보의 인터뷰를 통하여 항공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던 이유를 추가적으로 엿볼 수 있다. 서왈보는 중국 내전에 참전하면서 석민지 상황인 한국에 항공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서왈보는 인력과 비용 면에서 항공력이 효율적인 방략이라고 역설하였고, 이에 따라 비행사 양성에 전력하여 최용덕을 비행사로 만들었다고 하였다.⁴²⁾ 항공력에 대한 서왈보의 인식은 최용덕에게도 마찬가지로 자리하였다고 하겠다.

최용덕은 일제의 한국 병합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무장독립운동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중국 군벌에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김원봉의 노선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보였고,

출업연도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최용덕 자필이력서』, 공군박물관 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40) 이 전쟁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유럽의 제1차 세계대전과 유사한 형태의 전투가 이루어졌다. 보병과 기병, 항공기와 전함이 모두 전투에 동원되었고, 군사기술적 측면에서도 19세기 이래 유럽에서 시작된 기관총, 항공기, 철조망, 지뢰 등의 혁신이 총동원되었다. Arthur Waldron은 이러한 양상을 토대로 하여 제2차 펑즈전쟁을 아시아에서 ‘현대전’의 기원으로서 평가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Arthur Waldron, *From War to Nationalism: China's Turning Point, 1924-1925*,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3~5 참조.

41) 『東亞日報』, 1924년 11월 16일 ; 12월 3일

42) 『東亞日報』, 1925년 1월 1일

중국 공군 소속으로서 군벌 간 전투에 참전하여 항공력의 위력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가 광복군에서 김원봉 계열을 견제하면서 공군 창설에 앞장서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나. 중국 공군 복무를 통한 장제스 정권의 신임 획득

평즈전쟁 당시 최용덕은 조윤식(趙潤植)⁴³⁾ 등과 함께 쑨촨팡[孫傳芳]의 지휘 아래 전쟁에 참여하였다. 당시 우페이푸 군벌은 쑨촨팡의 주도 아래 황하 이남의 평토파를 공략하고 있었다. 최용덕은 뤼양항공학교[洛陽航空學校] 소속으로 여기에 투입될 병력을 양성하는 한편,⁴⁴⁾ 산시[陝西], 허난[河南], 텐진[天津] 등의 전투에도 직접 참여하였다.⁴⁵⁾

1926년 최용덕은 북벌에 나선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이 양쯔강[楊子江] 일대까지 진출하자 장제스 휘하로 들어갔다. 당시 국민혁명군에는 김홍일(金弘壹)이 총지휘부 소령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홍일은 허잉친[何應欽]의 요청에 따라 최용덕을 국민혁명군으로 합류시키는 공작을 전개하였고, 이에 최용덕이 응하였던 것이다.⁴⁶⁾

최용덕은 이전부터 국민혁명군에 합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가들은 대체로 국민혁명군의 이념에 동조하고 있었다. 이는 국민혁명군의 반제국주의 기치에 대한 신뢰였다. 최용덕은 권력 쟁탈전의 속성만 강하였던 베이양[北洋]군벌 내에서의 활동보다 국민혁명군에의 합류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때 상관이었던

43) 생몰연도 1894년~1950년. 바오딩육군포병학교 제8기생으로 서찰보, 최용덕 등과 함께 우페이푸 군벌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뤼양군사학교에 한국인들의 입교를 주도하여 이들이 항일전선의 중견간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44) 「支那側の 鮮人に 대한 軍事教育에 관한 件」(1924년 10월 18일), 『일본외무성기록』

45) 『東亞日報』, 1927년 10월 2일

46) 金弘壹, 『大陸의 憤怒-老兵의 回想記』, 文潮社, 1972, 218~219쪽

평위상[馮玉祥]이 국민혁명군에 합류하였던 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당시 출격을 회피하고자 비행기 핵심부품을 일부러 제거한 뒤, 국민혁명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보고⁴⁷⁾는 애초에 최용덕 등이 국민혁명군과 싸울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민혁명군에 합류한 최용덕은 1등비행사로 북벌에 참여하였다.⁴⁸⁾ 1926년 당시 국민혁명군의 항공전력은 전투기 40대, 수송기 12대, 정찰기 2대 수준이었으며,⁴⁹⁾ 그나마도 베이양군벌 소속이었던 전력이 많았다. 제2차 펑즈전쟁에서 양측 모두 100여대 이상의 비행기를 투입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⁵⁰⁾ 국민혁명군의 항공전력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1등비행사였던 최용덕의 역할은 두드러졌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그는 베이징 진격 직전 수상비행대(水上飛行隊) 부대장에 임명되어 작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⁵¹⁾

1928년 국민혁명군의 베이징 무혈입성으로 북벌이 일단락된 이후, 최용덕은 난징[南京]의 제4항공대 부대장, 수상비행대장, 난창[南昌] 공군기지의 교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다.⁵²⁾ 이때 최용덕은 동료와 훈련생들에게 많은 신망과 존경을 얻었으며,⁵³⁾ 덕분에 1928년 그는 중국인 동료 비행사의 처제(胡耀東, 후에 胡用國으로 개명)와 결혼도 할 수 있었다.⁵⁴⁾

특히 이때 최용덕은 상관인 양관유[楊官宇] 등과 함께 광시성[廣西省]에서 장파쿠이[張發奎]의 반란을 토벌하는 공적을 세우기도

47) 위의 주

48) 『東亞日報』, 1927년 10월 2일

49) 何布峰·謝安邦, 『中國民國軍事史』, 人民出版社, 1994, 63쪽

50) Waldron, op. cit., 1995, p.50

51) 奚紀榮·武吉雲, 『抗戰前中國航空隊史略(上)』, 『軍事歷史研究』, 2003

52) 崔鳳春, 앞의 논문, 2013, 308쪽

53) 羅英德, 「中國에서의 韓國空軍-崔滄石의 活動을 中心으로」, 『(中國人士證言)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博英社, 1983, 47쪽

54) 『朝鮮日報』, 1928년 4월 17일

하였다.⁵⁵⁾ 또한 그는 1930년 反장제스 운동이 중원대전(中原大戰)으로 확대되자 역시 양관유 휘하의 부대장으로 참전하여 장제스의 승리에 기여하였다.⁵⁶⁾ 즉, 최용덕은 북벌 이후 장제스 정권의 보위를 위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1931년 광저우[廣州]에서 反장제스 정부인 광저우 국민정부가 수립되면서 양상이 변화하였다. 당시 광저우 국민정부에는 장후이장[張惠長]이나 양관유와 같은 핵심전력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때 최용덕은 임무 수행을 명분으로 아내 호용국을 잠시 떠났다고 한다. 이를 이청천의 한국독립군(韓國獨立軍)과 결부시킬 수도 있겠지만,⁵⁷⁾ 수년간 함께 한 직속상관들을 따랐다는 추정이 더 타당하다. 한국독립군의 결성은 1931년 말에 가서야 이루어지며, 그나마 초기 간부 명단에 최용덕은 빠져있기 때문이다.⁵⁸⁾ 무엇보다 양측이 일촉즉발의 첨예한 대립을 보임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핵심전력인 최용덕이 빠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광저우 국민정부는 反장제스의 입장을 취하였지만, 정치적 노선에서 양립이 불가능한 성격은 아니었다. 광저우 국민정부는 장제스의 정권 독점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하였던 것이며, 민국혁명의 입장에서 중국을 통일한다는 입장 자체는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광저우 국민정부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55) 張惠長の 報告, 「在空軍殲擊下張發奎與桂系叛部已潰散分竄將候命肅清唐生智叛逆」(1929년 12월 14일), 臺灣國史館 문서번호: 002-090101-00010-057

56) 陳晉, 「歷史回眸: 廣東航空史略」, 『廣州文史資料存稿選編(三)』, 中國文史出版社, 1986; 楊官宇의 전보, 「楊官宇等電張惠長等今日派機四架共帶炸彈三十九枚赴蘭封一帶偵炸」(1930년 5월 ○일), 臺灣國史館 문서번호: 116-010103-0057-022; 「楊官宇等電張惠長等今晨派楊國柱等赴曹州一帶轟炸傷敵軍二三十」(1930년 5월 ○일), 臺灣國史館 문서번호: 116-010103-0057-054

57) 이윤식, 앞의 책, 2007, 164~168쪽

이윤식은 1931년 최용덕이 아내 호용국에게 작별을 고했던 사실을 이청천 산하에 합류하기 위해서라 추정하고 있다.

58) 張世胤, 「韓國獨立軍의 抗日武裝鬭爭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1989, 327~328쪽

언제든지 장제스와 힘을 합칠 수 있는 관용을 지니고 있었으며, 장제스 역시 그러하였다. 1931년 9월 만주사변(滿洲事變)이 발발하자 양측이 평화적으로 재결합할 수 있었던 이유다.⁵⁹⁾

따라서 최용덕이 광저우 국민정부에 합류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경력에 크게 해가 되지 않았다. 1935년 당시 장제스의 전용기 조종사로 한국인인 손기중(孫基宗)⁶⁰⁾이 활동하고 있었다.⁶¹⁾ 최용덕은 손기중을 전용기 조종사 후보로 추천하였고, 장제스는 이를 적극 신임하여 부기장으로 임명하였다.⁶²⁾ 이처럼 최용덕은 중국 최고 수뇌부의 안전과 직결된 인선에도 관여할 정도로 장제스 정권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

최용덕은 만주사변 발발 후 광저우 국민정부와 장제스 정권 사이의 갈등이 종식되고, 1932년 4월 윤봉길(尹奉吉) 의거에 힘입은 임시정부와 중국 간 협조 모드 조성으로 이청천 중심의 한국독립군이 중국 관내로 이동하자 한국독립군에도 합류하였던 듯하다.⁶³⁾ 1932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난징항공대에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⁶⁴⁾ 특히 중국의 협조 아래 뤼양군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인 군사교육이 시행되면서 이곳에서 교관생활을 했던 최용덕 역시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이다.⁶⁵⁾

59) 이하 서술에서 공산정권을 지칭하지 않는 한, 중국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의미한다.

60) 생몰연도 1911년~1991년. 손기중은 해방 이후 북한에 합류하기는 하였지만, 1944년 국민당 고위층의 사위가 되는 등 당시 장제스의 휘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가 북한에 합류하게 된 이유는 이념적 지향보다는 중국에서 민항기 부기장으로 활동하는 와중에 중국이 공산화됨에 따라 북한대사관으로 국적이 이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61) 『東亞日報』, 1935년 5월 1일

62) 羅英德, 앞의 회고, 1983, 51~52쪽

63) 1933년 한국독립군이 중국 관내로 이동하였을 때, 이동한 사람들 중 최용덕의 이름이 확인된다(池憲模, 『靑天將軍의 革命鬭爭史』, 東亞出版社, 1949, 163~164쪽).

64)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3, 국사편찬위원회, 2009, 76쪽

65) 한국인들의 뤼양군관학교 입교 경위와 교육운영에 대해서는 한상도, 앞의 논문,

이 당시 중국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한국인의 동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공산당이나 일본군으로 투신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는 전력의 핵심인 공군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934년 난창기지사령관 저우즈러우[周至柔]는 최용덕과 김은제(金恩濟), 장성칠(張聖七), 김진일(金震一) 등 한국인들이 매우 충실히 복무중이니 염려 말라는 보고를 올렸다.⁶⁶⁾ 최용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의 신뢰를 획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최용덕은 중국 공군 신분으로 직접 대일전선에 참전하였다. 1938년 당시 그는 난창기지 사령관으로 항일전선을 지휘하고 있었고, 이후 난창기지가 점령당하자 중국 공군 대령으로 중국의 임시수도였던 한커우[漢口]에서 복무하였다.⁶⁷⁾ 즉 그는 직접 전투에 나서기보다는 중국 공군의 지휘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 공군으로 오랫동안 복무하면서 고급장교로까지 진급하여 핵심부서에서까지 활동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최용덕은 대체로 장제스 주도의 국민정부에서 중국의 민국혁명과 항일투쟁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장제스 정권의 신임은 장제스 전용기 부기장 인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인 출신으로 국민정부의 공군 발전을 위하여 활약하였던

1992, 261~278쪽 참조.

66) 周至柔의 전보, 「國民政府軍事委員長南昌行營機要課電報摘由箋」(1934년 8월 13일), 臺灣國史館 문서번호: 002-080200-00174-014

67) 이윤식의 책에서는 최용덕은 중국 공군의 장성급까지 올랐던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최용덕은 국민정부에서 1935년 소령을 달았고, 2년 뒤 중령으로 진급하였다. 대령 진급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중·일전쟁 발발 후 공적을 인정받아 진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44년 미국 정보당국이 安原生으로부터 입수한 첩보에는 최용덕이 중국 공군 대령이자 광복군 소장으로 나와있는데(『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2, 국사편찬위원회, 2009, 61쪽), 이를 감안하면 최용덕은 대령이 중국군으로서의 최종 계급으로 보인다.

최용덕은 윤봉길 의거 이후 한·중의 공동 항일투쟁이 전개되자 양측의 가교 역할로서 입지가 중요해질 수 있었다.

3. 광복군의 주도권 장악과 공군 창설의 노력

가. 광복군과 중국 사이의 가교 역할 수행

최용덕은 중국 공군 소속으로 충실히 복무하면서도 독립운동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중·일전쟁 발발 이후 그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그는 난창기차 인근의 항저우[杭州]에서 민석린(閔石麟)이나 이범석(李範奭) 등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⁶⁸⁾

최용덕은 주로 이청천과 함께 활동하고 있었고, 이후 광복군 창설 후에도 이청천의 참모격으로 있었다. 최용덕이 언제부터 이청천과 긴밀한 관계가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최용덕이 1920년대 베이징에서 서왈보 등과 활동하였을 당시부터 상호간의 연결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용덕과 서왈보 등이 소속되었던 베이징의 한교동지회는 창조파의 입장에서 이청천 등과 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⁹⁾

이청천 등이 중국 관내로 돌아온 이후 최용덕은 독립운동의 역량 결집을 위한 여러 세력의 민족혁명당 통합에 참여하였다. 민족혁명당은 비록 김구(金九) 계열이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1935년 단계에서는 김원봉과 조소앙(趙素昂), 이청천, 최동오(崔東昨), 김규식

68) 羅英德, 앞의 회고, 1983, 47~48쪽

69) 「北京·天津附近在住 朝鮮人の 狀況 報告書 進達の 件」(1925년 3월 20일), 『일본 외무성기록』

(金奎植) 등이 합류한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세력이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최용덕은 김원봉과 노선을 달리하고 있었고, 이는 이청천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족혁명당은 이청천과 김원봉 사이의 갈등으로 사실상 해체되었고,⁷⁰⁾ 1937년 이청천은 여기서 이탈하여 조선혁명당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그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김구, 조소앙 계열과 통합하여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 약칭 光復陣線)를 구성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김원봉은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 약칭 民族戰線)을 조직하였다.⁷¹⁾

광복진선을 구성하였던 김구와 조소앙, 그리고 이청천 계열은 이후 임시정부의 여당격으로 자리한 1940년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창당하여 통합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광복군 창군이 당면 목표로 제시되었다.⁷²⁾

독자적 군대를 양성하겠다는 한국독립당의 계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이들이 중국 관내에 있는 상황인데다가 자금 역시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지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은 광복군을 중국군사위원회에 예속시켜 동맹군이 아닌 지원군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원봉 계열의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는 황푸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 출신들이 중국군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을 이용하여 중국의 광복군 인준을 저지하고 있었다.⁷³⁾

70) 당시 김원봉 계열의 재정운용 독점과 중국 공산주의 세력과의 교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김원봉과 이청천은 대립을 보이고 있었다(金喜坤, 「중국관내 독립운동정당의 활동」, 『한국사』 50, 국사편찬위원회, 282쪽).

71) 만주사변 이후 중·일전쟁 발발 때까지 독립운동세력의 통합 및 분기 과정에 관해서는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 지식산업사, 2004, 132~135쪽 참조.

72) 1940년 5월 9일에 선언된 한국독립당의 黨綱과 黨策에 광복군 편성이 명시되어 있다(『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4, 국사편찬위원회, 2009, 28쪽).

73) 한시준, 앞의 책, 1993, 76~83쪽

1940년 9월 17일, 한국독립당은 독자적으로 광복군을 창설하여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장제스는 이를 축하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때, 광복군의 주요 간부 명단에서 최용덕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최용덕은 10월에 들어서야 비서처 업무를 관장하여 총사령 이청천을 보좌하는 위치로 광복군에 소속되었다.⁷⁴⁾ 최용덕의 합류가 늦었던 까닭은 당시 중국 육군 대학교에서 고급참모 과정을 이수 중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⁷⁵⁾

중국이 광복군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1941년 봄, 최창익 등 조선의용대의 상당수가 이탈하여 공산당 계열에 합류하자⁷⁶⁾ 한국인의 무력 활동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은 깊어졌다. 장제스는 광복군에게 중국군사위원회의 예속을 강요하였고,⁷⁷⁾ 결국 광복군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한국광복군행동 9개준승(이하 9개준승)’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광복군의 9개준승 수용으로 광복군 총사령부는 참모처, 총무처, 정훈처의 3개 처로 편제가 구성되었고, 각 처의 요직에는 중국군 인사가 파견되었다. 1942년 현재 광복군 총사령부의 간부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광복군 총사령부 간부인원(1942)*

부 서	처 장	편제 인원	실재 인원	한국인	중국인
참모처	元 喆	22	9	1	8
총무처	崔滄石	25	17	7	10
정훈처	黃紹美	15	13	-	13
기 타		15	6	4	2

*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6, 국사편찬위원회, 2005, 64~69쪽

김원봉은 의열단원들을 대거 이끌고 황푸군관학교 4기로 입교하였다. 의열단의 황푸군관학교 입교에 관해서는 한상도, 앞의 논문, 1992, 124~134쪽 참조.

74) 『韓國獨立運動史』, 愛國同志授護會, 1956, 357쪽

75) 최용덕의 자력기록표에는 1940년 중국 육군대학교 졸업이라 기재되어 있다(「최용덕 자력기록표」, 공군본부 자료번호: 20637).

76) 韓相禱, 「金元鳳의生涯와抗日歷程」, 『國史館論叢』 18, 1990, 203쪽

77) 胡春惠, 辛勝夏 譯, 『中國안의韓國獨立運動』, 檀國大學校出版部, 1978, 147쪽

광복군 총사령부의 3개 처장은 모두 중국군 소속의 인물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총무처장으로는 중국군 소속이지만, 한국인이었던 최용덕(최창석)이 임명되었다. 최용덕은 중국군의 지침을 받으면서도 광복군의 실무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로 비견되었기 때문이다.

최용덕은 이청천이 1937년 임시정부의 군사위원회 상무위원이 되어 군사정책에 간여했을 당시부터⁷⁸⁾ 광복군 창설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최용덕은 중국군 내에서 광복군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또한 광복군 입장에서 그는 총사령인 이청천과 뜻을 같이 하는 아군이였다. 광복군 창설 초기 임시정부와 중국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최용덕은 양측의 입장차를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였던 것이다.

광복군의 주요 인물로 자리한 최용덕은 한국인으로서의 최연소 광복군 소장이자 총무처장으로서 운영 실무에 관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당시 중국군 대령 마치평[馬起鵬] 등 중국군 인사들이 총무처 경리과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최용덕 역시 중국 공군 대령이었고 선임자였기 때문에 관련 업무 파악 및 지시에 어려움은 없었을 듯하다.⁷⁹⁾

광복군의 9개준승 수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원은 소극적이였다. 따라서 임시정부 내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었고, 급기야 9개준승 폐기 요구까지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군 사위원회는 광복군에 대한 대대적 검열로 대응하였다. 중국군사위원회는 1943년 5월과 7월, 광복군의 전반 사항에 대한 일체 점검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총무처장이었던 최용덕은 중국군사위원회의 점검에 관한 업무

78)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9, 국사편찬위원회, 2006, 52~55쪽

79) 광복군 총사령부의 각 보직별 보임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6, 국사편찬위원회, 2005, 64~69쪽 참조.

협조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특히 이때의 점검은 광복군의 실제 예상 소요경비를 추산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었는데, 최용덕은 경리과의 총괄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원만한 점검을 유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사위원회의 점검 과정에서 최용덕의 공적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점검 이후 중국이 광복군의 공작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3년부터 임시정부는 광복군 운영에 별도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⁸⁰⁾ 이처럼 최용덕은 광복군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면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회하는 데 기여하였다.

최용덕의 임시정부와 중국 간 가교 역할 수행은 이후 광복군이 김원봉 계열을 포용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을 때에도 지속되었다. 전황에 따라 수시로 거처를 이동하고 있었던 임시정부는 각 지역의 문서 수송을 위하여 중국 공군의 지원을 받았고, 최용덕은 비행교육 제자이기도 하였던 당시 중국 공군 운송책임자(羅英德)와 긴밀한 협조 속에 문서 수송 업무를 수행하였다.⁸¹⁾

또한 1942년 광복군의 물자 수급과 대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광복군 총사령부 관병소비합작회사(官兵消費合作會社)가 창립되었을 때, 최용덕은 이사 주석으로서 충칭[重慶]시 정부와 협력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다. 관병소비합작회사는 임시정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중국 관내에서 등기 문제가 발생하였고, 최용덕은 중국군사위원회와의 협력 속에서 충칭시 사회국으로부터 등기 허가와 물자 공급을 약속받았던 것이다.⁸²⁾

80) 중국군사위원회의 광복군 점검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시준, 앞의 책, 1993, 121~124쪽 참조.

81) 羅英德, 앞의 회고, 1983, 47~48쪽

82) 관병소비합작회사의 제반 문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9, 국사편찬위원회, 2006, 189~207쪽 참조. 최용덕은 이청천, 조덕수와 함께 김원봉 다음으로 많은 금액인 8000원을 투자하였다. 다른 대원들이 보통 800원 수준에서 투

요컨대 광복군의 창설부터 운영에까지 최용덕은 중국과의 협조 속에서 제반 업무를 지원, 수행하고 있었다. 그가 광복군의 실무를 총괄하는 참모로서 활약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일단 총사령인 이청천의 심복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지만, 무엇보다 중국 공군에서의 업적을 기반으로 장제스를 비롯한 중국 당국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광복군에서 그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나. 광복군 내 좌파 계열 견제

9개준승에 따라 초기 광복군의 지휘권은 중국군사위원회에 있었다. 그렇지만 임시정부 내에서 9개준승의 폐지에 대한 강경론이 대두하고, 카이로 회담에 따라 중국의 한국 문제 처리에 대한 유화적 입장이 나타나면서 1944년 9월 광복군의 지휘권은 임시정부로 이관되었다. 비록 임시정부로서는 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한 새로운 관계 정립의 과제를 안은 것이기도 하였지만, 어찌되었건 광복군 운영에 있어서 독자성을 획득한 성과이기도 하였다.

광복군의 독자성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광복군을 구성하고 있었던 각 세력 사이의 문제가 불거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용덕은 중국과의 가교 역할보다는 이청천의 참모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최용덕은 중국군사위원회의 점검이 끝난 후 1943년 7월 광복군의 편제가 개편되면서 참모처의 고급참모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이때의 인사이동은 채원개(蔡元凱)와 서로 보직을 맞바꾼 것이었는데,⁸³⁾ 채원개 역시 중국군 소속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에 총무처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던 듯하다. 한편으로 최용덕은

자하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83)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 국사편찬위원회, 2005, 293쪽

수뇌부에서 이청천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시 맡았던 셈이다.

최용덕의 보직 변경은 중국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자 그에
 게 요구되는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942년 좌파인 김원봉 계
 열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합류함에 따라 양대 무장독립운동세력
 은 통합을 이루었지만, 이내 내부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 사이
 의 갈등도 나타났다. 특히 김원봉이 부사령의 신설을 요구하여 이
 에 임명되었고,⁸⁴⁾ 임시정부 내에서 조직한 민족혁명당(民族革命
 黨)이 합류 직후 치러진 10월의 임시의정원 선거에서 재적의원의
 1/3에 육박하는 당선 성과를 내자 한국독립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⁸⁵⁾ 원내에 진입한 이들은 곧바로 9개준승 등을 빌미로 한
 국독립당이 주도하고 있는 광복군을 견제하였다. 또한 1943년 5월
 김원봉 계열은 미얀마의 영국군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면서 독자적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었다.⁸⁶⁾ 따라서 이청천은 광복군 내에서 자신
 들의 헤게모니를 고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최측근이자 베이징에서의
 활동부터 김원봉과 반대 노선을 보였던 최용덕을 지휘부의 고급참
 모로 다시 임명하였던 것이다.⁸⁷⁾

이듬해 3월 최용덕은 한국독립당에 입당하였다.⁸⁸⁾ 그는 이전에
 도 한국독립당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지만, 이때의 입당은 광복군,
 나아가 임시정부 내에서 이청천 계열의 입지를 보위하는 역할 수행에

84) 위의 자료집, 261쪽

85) 이현주, 「1942년 조선민족혁명당의 임시의정원 참여와 노선투쟁」, 『한국독립운동
 사연구』 33, 2009, 111~115쪽

86) 한시준은 민족혁명당이 독자적으로 영국군과 협력하였던 사실의 배후에는 광복군
 과 중국군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들이
 개입하였을 소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민족혁명당이 단독으로 영국과
 지원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자체도 당시 광복군 내부의 갈등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본다. 한시준의 견해에 관해서는 한시준, 앞의 책, 1993, 260~265쪽 참조.

87) 1942년 11월 임시의정원에서의 9개준승 논의 당시 이청천은 조선의용대가 편입
 된 이래 곤란한 점이 많았다는 언급을 하면서 김원봉 계열의 견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 국사편찬위원회, 2005, 51~52쪽).

88)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4, 국사편찬위원회, 2009, 228쪽

목적이 있었다. 최용덕은 입당 후 이청천 주도하의 제3구에서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며 향후 방략을 모의하였다.⁸⁹⁾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최용덕은 꾸준히 이청천의 참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김원봉 계열과 대립하고 있었다. 해방 직전 양측의 대립은 사실상 분열 직전의 상황에까지 치달았다. 김원봉 계열은 총사령인 이청천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으며, 이청천 역시 최용덕·조시원(趙時元) 등을 브레인으로 삼아 그들을 사사건건 견제하고 있었다.⁹⁰⁾

양측의 대립은 광복군 내 권력다툼이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념적 지향이 다르다는 데에서 기인하였다. 이 대립은 전술한 것과 같이 베이징에서의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사상적 갈등까지 심화되면서 상호간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졌다. 비록 김원봉 계열이 광복군에 합류한 이후 좌파적 성향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최용덕은 여전히 이념적 차이를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당시 광복군을 지원하고 있었던 장제스는 반공의 성향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장제스 휘하에서 활동하였던 최용덕이 9개준승을 빌미로 소련에 대한 협조 요청⁹¹⁾까지 도출해냈던 김원봉 계열을 좋게 보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즉, 최용덕은 김원봉 계열에 대한 이념적 불신에서 광복군의 주도권을 고수하려는 책략을 펼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복군 내 이청천 계열의 주도권은 해방 때까지 이어졌다. 그들의 영향력은 광복군에 파견되어 있었던 중국군 인사들이

89) 위의 자료집, 231쪽

9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3, 국사편찬위원회, 2006, 266쪽

91) 이현주, 앞의 논문, 2009, 122~123쪽

여기에는 이청천도 참여하였지만, 9개준승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우려에서였지 소련에 대한 연대감 때문은 아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진급을 위해 이청천과 최용덕에게 로비를 할 정도였다.⁹²⁾ 이에 반해 김원봉 계열은 인도·미얀마 전선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실정이었다. 이들의 갈등은 미국 정보당국에서도 인지할 정도로 치열하였고,⁹³⁾ 이후 최용덕의 활동은 이 점을 고려하여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다. 광복군의 공군 창설 계획 주도

광복군 내에서 최용덕이 보여주었던 행보는 베이징 시절부터 견지해왔던 입장과 상통하였다. 즉, 독립을 위해서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공산주의나 아나키스트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그의 생각이 광복군에서도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광복군 내에서도 항공력을 건설해야겠다는 의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술하였듯이 최용덕은 중국 공군의 최일선에서 활동해왔고, 이를 통해 항공력의 힘에 대하여 실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독립운동에서 공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고, 1940년 항공건설위원회 주임을 역임하면서 광복군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공군을 창설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⁹⁴⁾

92)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1, 국사편찬위원회, 2006, 110~112쪽

9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6, 국사편찬위원회, 2008, 182~183쪽; 188~189쪽; 193~201쪽

94) 이윤식은 최용덕이 1937년부터 임시정부 군무부의 항공건설위원회(공군설계위원회)의 주임을 역임하였다고 보았다(이윤식, 앞의 책, 2007, 293쪽). 그러나 현전하는 군무부 관련 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이윤식은 최용덕이 7년간 항공건설위원회 주임을 역임하였다는 기록(『최용덕 자필이력서』, 공군박물관 소장)을 토대로 해방 시점인 1945년에서 역으로 계산하여 1937년부터라고 본 것이 아닐까 추정되는데, 이것은 해방 이후에도 임시정부가 존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추정이다. 관련 기록의 7년간은 1940년부터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국으로 귀환한 1946년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공군 정훈감실에서 간행한 최용덕 장군의 책자에서도 1940년부터로 명기하고 있다(『하늘의 개척자 崔用德將軍』, 공군본부, 1956, 2쪽).

광복군 창설 이후에도 그는 1943년 8월 공군설계위원회가 조직되자 부주임으로 선임되어 임시정부의 공군 창설 계획을 주도하고 있었다. 공군설계위원회는 군무부장이 자동으로 주임을 겸직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자는 부주임인 최용덕이었다.⁹⁵⁾

최용덕의 공군 창설 노력은 단순히 항공력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광복군 내에서 좌파인 김원봉 계열을 견제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 전술한 것과 같이 김원봉 계열은 광복군에 합류한 이후 이청천 계열이 9개준승에 얹매어 있는 동안 영국군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에 이청천 계열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용덕을 참모처장으로 전직시킨 뒤, 그를 활용하여 항공력을 도입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광복군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게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중국의 패권 확대에 대한 우려와 임시정부 내 분열을 이유로 임시정부와 그 산하의 광복군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임시정부의 주미외교위원부(駐美外交委員部)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在美韓族聯合委員會) 등은 연합군과 함께 직접 참가하는 것이 임시정부 승인과 한국의 즉각적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 판단하였다.⁹⁶⁾

물론 이때의 승인은 우파인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후에 최용덕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미국 방문까지 추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⁹⁷⁾ 그는 어디까지나 독립국가가 한국독립당의 성향에 따라 건설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95)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 국사편찬위원회, 2006, 297~298쪽

96) 황묘희, 『重慶 大韓民國臨時政府史』, 景仁文化社, 2002, 165~173쪽

97) 최용덕 등의 미국 방문 추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2, 국사편찬위원회, 2006, 58~62쪽;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6, 국사편찬위원회, 2008, 182~191쪽 참조.

영국군과 함께 전선에 투입된 김원봉 계열의 활동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략으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한 항공력 도입에 힘썼던 것이다.

항공력의 도입은 보유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할 수 있는 한 방략이었다. 당시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구는 일찍부터 항공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절감하고 있었다.⁹⁸⁾ 김구와 최용덕 등은 소수의 병력을 투입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어 미국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항공력 활용에 주목하였다. 더구나 당시 중국 공군은 일본군의 공격으로 사실상 전투 능력을 상실하여 항공작전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복군이 항공력을 일부나마 구축할 경우 미국과 함께 전투에 가담한다는 의의도 있었다.

광복군의 공군 창설 계획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합작하여 진행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1944년에 수립된 공군 창설 및 작전 계획은 매우 구체적으로 구상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⁹⁹⁾

광복군은 일단 중국 공군에서 활동하였던 최용덕, 이영무(李英茂), 정재변(鄭再變) 등 조종사 5명과 정비인원 6명을 소집한 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연락기를 조차하여 수송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이를 비행대 창설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양국 항공학교에서 비행사를 양성한 뒤, 동맹군 비행대의 일원으로 주로 선전작전에 참가시키며 양국으로부터 각종 비행기를 추가 조차하여 비행대의 정식 창설을 꾀하고자 하였다. 한편 태평양 전구에는 미국

98) 김구는 1930년대 중반부터 중국 공군의 활동을 목도하면서 독립운동에 있어서 항공력 구축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홍선표, 「항공독립운동을 통해 본 대한민국 공군의 기원」, 『역사적 고찰을 통한 한미 연합공군력 발전방향』(제1회 공군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4, 9~13쪽 참조.

99)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1, 국사편찬위원회, 2006, 86~89쪽

소재 비행사를 소집하여 광복군의 이름으로 전쟁에 투입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결과적으로 비행기 조치가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사 양성까지는 일부 시행되었다. 대표적으로 김구의 차남인 김신(金信)은 쿤밍[昆明]의 공군군관학교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인도의 미군기지로 이동하여 비행훈련을 받고 있었다.¹⁰⁰⁾ 그는 훈련 도중에 해방이 찾아와 임시정부 비행대 소속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미국에서 잔여 훈련을 이수한 뒤 한국 공군에서 복무하면서 참모총장까지 역임하였다.¹⁰¹⁾

비록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광복군의 공군 창설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타국에 자리한, 군사 재정의 상당수를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광복군이 공군 창설까지 시도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항공력에 대한 당시의 전망을 바탕으로 광복군 내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구축한 최용덕의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최용덕은 스스로가 항공력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의 효용성을 실감하여 공군 창설에 절실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항공력의 가시적인 성과가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해방 이후 최용덕의 귀국 기사에서 그를 항공총장으로 추켜세웠던 데¹⁰²⁾에는 이러한 활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최용덕의 광복군 활동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00) 중국은 전쟁에서의 패전으로 인하여 내륙으로 후퇴하자 영국령이었던 인도 라호르(Lahore)에서 비행훈련을 이수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에 관해서는 『我空軍學校遷印訓練』(1943~1944년), 臺灣國史館 문서번호: 020-011903-0004 참조.

101) 이상은 김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 돌베개, 2013 참조.

102) 『東亞日報』, 1946년 7월 23일

따라서 그의 활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험에서 나온 신념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최용덕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 기초군사훈련을 다시 받아 소위로 임관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공군 창설을 위해 투신하였던 모습은 항공력에 대한 그의 신념을 잘 보여준다. 강군 육성을 위한 항공력 확보, 나아가 공군 창설은 그의 이상이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일제시대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을 무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국권을 상실한 현실과 중국의 내전, 그리고 일제의 중국 침략에서 태평양전쟁까지 이어지는 혼란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다.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주역인 최용덕의 생애는 그 혼란기를 관통하고 있다.

최용덕은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냈다. 그의 청년기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역량을 축적하는 시기였다. 그는 17세에 뚝치루이 군벌 휘하의 육군군관학교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청년기를 중국군에서 보냈다. 그는 뚝치루이와 우페이부, 쑨원팡, 그리고 장제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반복했던 중국의 여러 군벌 지도자 휘하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복무하였다. 이러한 최용덕의 청년기 행적은 당시 중국의 정치적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취의 변화 속에서도 독립이라는 그의 목표는 일관되고 확고하였다. 뚝치루이 군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시점에서부터 그는 서알보 등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내전 상태의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중국 군벌의 현역 신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지닌 본연의 목적이 독립운동에 있음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그의 독립운동 노선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2가지는 독립운동의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첫째로 무장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하여 항공력의 효용성에 대한 신념을 들 수 있다. 당시 중국 군벌은 항공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고, 최용덕은 그런 군벌 아래 비행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군벌 간 내전의 경험은 항공력이 지닌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후 그는 광복군 창설 때까지 중국 공군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축적해가고 있었다.

셋째는 김원봉 계열에 대한 대립적 입장이다. 초기에는 좌·우 대립까지는 아니었던 듯하나 어느 시점부터 최용덕은 좌·우의 관점에서 상호간의 대립에 대응하였던 듯하다. 그가 줄곧 우파 계열에서 활동하였던 내력이 이를 심화시켰을 것이다. 해방 직후 광복군은 반공세력 구축을 명분으로 중국 관내에서 확군에 나서는데,¹⁰³⁾ 여기에 그가 베이징 일대의 책임자가 되었던 사실은 그동안의 경험이 그를 우파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만들었음을 시사한다.

일제시대 여러 세력과 영역에서 산견되는 최용덕의 행적은 결국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수렴된다. 그의 일관된 활동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다. 광복군 확군 실패와 미군정의 임시정부 미승인, 그리고 해방 직후의 열악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한으로 건너온 뒤, 공군 창설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방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그의 일관된 의지가 작동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항공력까지 갖춘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우파 성향의 독립운동을 지향하였고,

103) 염인호, 「해방 후 韓國獨立黨의 中國 關內地方에서의 光復軍 擴軍運動」,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266~273쪽

이를 바탕으로 해방 후 남한 공간에서 항공력 구축에 앞장섰던 것이다.

본 연구는 독립운동과 항공 분야에서 각각 별도의 내용처럼 산견되는 최용덕의 행적을 유기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각의 행적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광복군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광복 후 최용덕이 공군 창설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건군과의 연계성 역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성과가 중국 등에서 해당 국가의 소속으로 활동한 한국인들의 행적과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후 건국 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15.4.2, 심사수정일: 2015.5.19,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무장독립운동, 최용덕(최창석), 서월보, 이청천(지청천), 김원봉, 항공독립운동, 광복군, 공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Gen. Choi Yongdeok's Achievements in the Aviation Independence Movement and His Role in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Kim, Ki-d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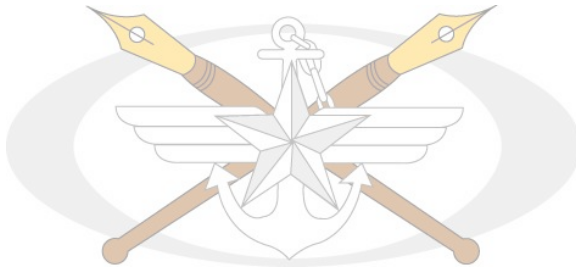
Gen. Choi Yongdeok is considered as the Father of the Korean Air Force. This research aims to trace Gen. Choi's nationalism military activities before the Korean Independence and to reveal the background of his devotion to the creation of the Korean Air Force under the poor condition after the Independence.

Gen. Choi had devoted himself to the armed independence movement after his exile to China follow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and showed a tendency towards anti-socialism. He joined the Chinese air forces under the influence of Seo Walbo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to implement an independence movement and beca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air power in military operations while he was acting as a pilot in the Chinese Civil War. The trust from the Chinese Nationalist(Kuomintang) Government, that he had obtained in the Chinese air forces, would be so instrumental to increase his role in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Gen. Choi joined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onc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ad established such an armed organization. He acted as a mediator between the Independence Army and the Chinese Army through the trust he had got from the Kuomintang Government. He tried continuously to create an air force as a means of obtaining an approval from the allied force of the Independence Army. Meanwhile, he did not lower his vigilance

against Kim Wonbong's socialist group in the Army in order to make sure of right-wing's dominant position within the Army. In short, Gen. Choi sought the independence movement with a right-wing inclination and did his utmost to the creation of an air force in South Korea in the context as above.

Key words : Armed Independence Movement, Choi Yongdeok(Choi Changseok), Seo Walbo, Lee Cheongcheon(Ji Cheongcheon), Kim Wonbong, Aviation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Independence Army, Air Forc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소 동정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국방정책변천사」 2집 연구편찬 워크숍
 - 일시 / 장소 : 2015. 4. 23.(목) 14:00~16:00 / 연구소
 - 주관 : 연구소장
 - 내용 : 1) 집필 대상 및 시기, 국방정책의 분석의 틀 설정
2)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의 상관관계, 평가 서술
 - 인원 : 토론위원 6명, 연구소 내부인원 8명

○ 전사적지 견학

기 간	4. 29.(수)	5. 18.(월)~21.(목)
장 소	다산유적지/실학박물관 역사박물관(남양주)	낙동강방어선, 진해 등
인 원	연구소 전직원	남정욱 책임연구원 등 2명

- 2015년 전반기 자문위원 자문회의
 - 일시 / 장소 : 2015. 5. 28.(목) 10:00~14:00 / 연구소
 - 주관 : 연구소장
 - 내용 : 1) 환담, 연구소 일반현황 소개
2) 자문회의, 오찬 등
 - 인원 : 자문위원 4명, 연구소 부실장 6명

김용달(국민대학교 교수), 정용욱(서울대학교 교수),
홍규덕(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홍성표(아주대학교 교수)

- 「군사」지 계속평가 및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시험적용

구 분	학술지 계속평가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시험적용
기 간	2015. 4월 ~ 6월	2015. 7월 ~ 2016. 6월
주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비고	결과발표 : 6월 말	예규 보완 후 공고 예정

2. 인사이동

- 연구소 직원 전입
 - 5급 박기옥(정보자료실장) : 6월 중
- 연구소 직원 퇴직 및 명예전역
 - 군무관리관 이양구(연구소장) : 2015. 6. 30.
 - 육군중령 최윤철(과병사연구장교) : 2015. 6. 30.
- 연구소 직원 신규임용
 - 4급 김경록(선임연구원) : 2015. 4. 1.
 - 일반계약직 4호 이왕우(선임연구원) : 2015. 6. 1.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자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한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E-mail로 전송하여야 함.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MS워드 사용 가능

(군사지 편집위원회 E-mail : imhc2@mnd.go.kr)

나. 전송시 인적사항, 연락처, 논문 초록(국문·영문, 각 A4지 2매 이내), 주제어(Key Word) 10단어(국문·영문) 등이 명기된 '투고신청서'와 '저작물이용허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영문초록은 250~300단어 내외로 작성.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원고료, 심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우편번호 : 140-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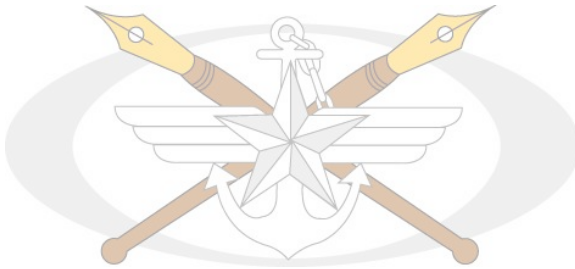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정정보)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
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7. 1

부분개정 2008.12.1

부분개정 2009.11.1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테

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편집위원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편집위원(가나다순)

기광서(조선대학교)	김용달(독립기념관)
김종수(군산대학교)	김태국(연변대학교)
남정옥(군사편찬연구소)	서상문(군사편찬연구소)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오영섭(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이근옥(서강대학교)
이명환(前공군사관학교)	이민웅(해군사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재범(경기대학교)
정용욱(서울대학교)	진석용(대전대학교)
홍규덕(숙명여자대학교)	

편집간사

정정모(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軍史 2015/6(第95號) 군사편찬연구소

2015년 6월 8일 印刷
2015년 6월 15일 發行

發行處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印刷處  M15050347

Military History

Vol. 95. 2015. 6

Suh, Sang-mun	Reargument of Sino-North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Establishment
Kim, Bo-young	The Agenda on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suggested in Geneva Political Conference held in 1954
Lee, Mi-sook	A Study on Transformation of ROK National Defense Policy focused on National Defense Objective
Baek, Jun-kee	A Study on the Path and Process of the Alliance Transformation and Security Strategy Change in the Post-Soviet Transition Period of East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ase of Ukraine and Czech Republic
Kim, Tae-hyun	How to understand Book I, Chapter 1 of On War(written by Carl von Clausewitz)?: 'Escalation(Entgrenzung)' and 'De-escalation (Begrenzung)' of the war
Yoon, Sung-hwan	The Real Nature of the 'daein(大人)' and the 'daedaero(大對虜)' in late Goguryeo
Yoon, Kyeong-jin	Reexamination of Battles that involved islands(located in the middle of the sea) during the War against the Mongol Invasion forces: Determining the location of the Jo island(槽島), and examining the results of Goryeo troops' amphibious operation which broke out when Goryeo troops returned to the land from A-ju island(牙州海島 出陸戰鬪)
Lee, Kyu-chul	Re-conquest of the Pajeo River and Policies for Conquering the foreign territory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of Joseon Dyansty
Kim, Kyong-tae	The Activities of Japanese Armed forces in Kyeongsang Province in the Early Period of Imjin War : Battle of Yeongcheon Fortress
Shin, Yun-ho	The aspects of the Activities of Goseong Righteous voluntary Army (義兵) during the Imjin War
Kim, Ki-doong	Gen. Choi Yongdeok's Achievements in the Aviatinal Independence Movement and His Role in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mnd